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2016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성과를 담은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16년 3,170건의 조정사건 및 13건의 중재사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피해 구제율은 72.3%를 기록하였습니다. 접수·처리 건수 및 피해구제율 모두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5년의 경우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 및 그 여파로 특정 종교 신도들의 다량 신청건이 일괄 피해구제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의 조정신청 건수는 2,156건으로 전체 건수의 68.0%를 차지, 지난해와 동일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된 이래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원 기사를 전파한 타 매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문안’을 마련해 조정을 통한 일괄적인 피해구제 및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복제기사 및 댓글로 인한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조정 과정에서 기사검색 및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이 급증함에 따라 2016년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수를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912건의 법익침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인종·종교·질병·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피의자 신상정보 공표 금지기준의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시정권고 심의 기준도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금년에도 E-Book으로 발간하였습니다.

2016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 측면에서 특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25건을 엄선하여 신청내용과 처리결과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등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으나,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예년처럼 중재부별 접수순서에 따라 간략한 사건개요 위주로 정리하여 별도의 목록으로 실었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전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집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 절차와 다양한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비롯해 언론계, 법조계 등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목 차

▶ 제1부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13
언론조정·중재사건 현황	17
제1장 조정사건 접수 현황	19
제2장 조정사건 처리 현황	27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64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0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1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3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76
제8장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79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81
시정권고 현황	83

▶ 제2부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 사례	93
사례 1 유명 제과회사가 특정 업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을 추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제과식품 주식회사 對 주식회사 뉴스타운 (2016서울조정952·953 정정·손배청구) ..	95
사례 2 신청인이 작곡한 곡이 성의 없고 질 낮은 음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배○○ 對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016서울조정987·988 정정·손배청구)	99
사례 3 뇌물수수 혐의자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박○○ 對 주식회사 조선방송 (2016서울조정1193·1194 정정·손배청구)	103
사례 4 여성호르몬제의 부작용에 대한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닌 단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 유한회사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2016서울조정3 정정청구)	108
사례 5 사회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을 자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김○○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2016서울조정175·176 정정·손배청구)	111
사례 6 익산시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뉴스통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언론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익산시 對 익산인터넷뉴스 (2016전북조정8·9 정정·손배청구)	114
제2장 반론보도 사례	119
사례 7 모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한 약가 산정 및 약제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 對 주식회사 올댓닥터스 (2016서울조정977·978, 2016서울조정1021·102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121
사례 8 사드(THAAD) 보도와 관련하여 KBS 사내에 보도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방송공사 對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2016서울조정1111·1112, 2016서울조정1113·111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130

목 차

사례 9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 對 주식회사 매일방송 (2016서울조정1319 반론청구)	137
사례10 귀농한 신청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부농만을 꿈꾸고, 농촌에서도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경북일보 (2016대구조정3·4 정정·손배청구)	142
사례11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속초시 對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2016경기조정63 반론청구)	148
제3장 추후보도 사례	153
사례12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외 3인 對 주식회사 채널에이 (2016서울조정288·289, 2016서울조정290·291(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155
사례13 모 지자체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對 한국방송공사,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2016서울조정2153·2154, 2016서울조정 2155·2156, 2016서울조정2219·2220(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159
제4장 손해배상 사례	165
사례14 전단 배포 중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두고 불법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016서울조정388·389, 2016서울조정390·391(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167
사례15 자살자를 수치화한 신청인의 웹툰을 보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송○○ 對 주식회사 매일방송, 주식회사 매경닷컴 (2016서울조정1966, 2016서울조정1967(병합) 각 손해청구)	174
사례16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켜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 對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016서울조정635·636 정정·손배청구)	177

사례17 병원에서 의료기록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식회사 (2016경기조정131 손배청구)	181
제5장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183
사례18 고등학생인 신청인이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송○○ 對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2016서울조정972·973 정정·손배청구)	185
사례19 신청인이 지하철에 앉아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장 ○ 對 네이버 주식회사 (2016서울조정1254 손배청구)	194
사례20 탈북여성 중매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사진 및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최○○ 對 한국방송공사 (2016서울조정1108 손배청구)	197
사례21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음식점 내부가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임○○ 對 주식회사 채널에이 (2016서울조정8, 2016서울조정9(병합) 각 손배청구)	200
사례22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의 옹벽 디자인이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 對 주식회사 국제신문사 (2016부산조정1·2, 2016부산조정3·4(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203
제6장 기타 사례	207
사례23 강남에 소재한 한 여행사의 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강남 여행사”로 칭하여 동일 상호의 여행사에 피해를 입혔다. ○○여행사 對 주식회사 와이티엔 (2016서울조정189·190 정정·손배청구)	209
사례24 구청의 시정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어○○ 對 이데일리 주식회사 (2016서울조정791·792 정정·반론청구)	212
사례25 사드(THAAD) 도입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배치 지역은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 對 주식회사 통일뉴스 (2016서울조정1246 정정청구)	216

목 차

▶ 제3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개인적 법익 침해	223
제1장 사생활 침해	225
사례1 제2016-33호	225
사례2 제2016-214호	227
사례3 제2016-296호	228
사례4 제2016-881호	230
제2장 피의자 신원공개	232
사례5 제2016-46호	232
사례6 제2016-594호	234
제3장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235
사례7 제2016-50호	235
제4장 고소고발 보도	236
사례8 제2016-362호	236
제5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238
사례9 제2016-227호	238
제6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240
사례10 제2016-2호	240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241
사례11 제2016-238호	241
사례12 제2016-355호	243

사회적 법익 침해	245
제1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247
사례13 제2016-861호	247
제2장 성관련 보도	248
사례14 제2016-260호	248
제3장 자살 관련 보도	249
사례15 제2016-326호	249
사례16 제2016-783호	250
제4장 마약 관련 보도	251
사례17 제2016-170호	251
제5장 총격, 혐오 보도	252
사례18 제2016-336호	252
제6장 기사형 광고	253
사례19 제2016-203호	253

목 차

▶ 제4부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257
서울중재부	259
부산중재부	497
대구중재부	507
광주중재부	517
대전중재부	532
경기중재부	544
강원중재부	569
충북중재부	572
전북중재부	579
경남중재부	587
제주중재부	600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605



제 1 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 조정사건 3,170건 접수·처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3,170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했다. 2015년 5,227건에 비하면 약 2천여 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세월호 참사 관련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 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피해구제율은 2015년의 77.9%보다 감소한 72.3%를 기록했다.

▶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52.4% 역대 최고

2016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 건수는 1,66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52.4%를 기록했다.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며, 그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신청인들이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신문으로 전파된 보도에 따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MBC-TV가 65건으로 최다. 팟캐스트 2건도 접수·처리

2016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MBC-TV가 65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 중앙일간지 중에는 경향신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은 MBC-TV에 이어 SBS-TV 54건, KBS-TV 41건의 순이었다. 또 인터넷신문은 동아닷컴이 31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15년에 이어 KBS미디어가 45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오늘 팟캐스트를 조정 대상 매체로 인정해 직권조정결정하였다.

▶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에 주력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원 언론보도가 포털의 블로그·카페 등에 전파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댓글로 인한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 등이 증가했다.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에 근거할 때 복제기사나 댓글 등과 관련해 완전한 피해구제가 힘들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피해구제를 위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법에 미비한 점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법률 개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223만 원, 최고 3천만 원

2016년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11,311만 원이었다. 중재부 조정액은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 까지로 나타났다. 중앙액은 100만 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223만 원으로 2015년 약 160만 원에 비해 60만 원 가량 증가했다. 최저액은 1만 원으로 최근 3년 간 가장 적었다. 반면 최고액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기록했다. 2016년 손해배상청구 1,069건 가운데 실제 금전 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70건으로 6.5%에 불과하지만 금전배상 외 피해구제 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져 30.4%라는 높은 조정성립 결과가 나왔다.

▶ 시정권고소위원회, 차별 금지 등을 이유로 총 912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91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015년 438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정권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인터넷신문 등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매체수를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한 데다, 심의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2016년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사회적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해 성별을 포함한 인종·종교·질병·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최근 제·개정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표금지기준의 예외 요건 조항을 명확히 했다.

언론조정·중재사건 현황



제1장 조정사건 접수 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6년 조정사건 3,170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2014년 조정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의 조정사건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부인 권윤자 씨와 유 전 회장과 연관한 종교단체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2년 간 대량으로 조정을 신청한 까닭에서 비롯됐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조정사건 수만 보자면 2014년 2,931건, 2015년 3,319건, 2016년 3,170건으로 3년 연속 3천 건 안팎의 건수를 기록했다.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 현황

(2012. 1. 1. ~ 2016. 12. 31.)

구 분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청 구 건 수	2,401	2,433	19,048	5,227	3,170
전년대비 증감	277	32	16,615	-13,821	-2,057

2. 청구권별 현황

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2016년 조정사건 3,170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555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2%), 추후보도청구 160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청구권별 현황을 보면 정정보도청구가 가장 많기는 하나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는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 비해 정정보도청구는 10.0%이상 감소한 반면, 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4.2%, 3.9% 증가하였다.

표 1-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2014	2015	2016	합계
청구명				
정 정	12,888(67.7)	3,098(59.3)	1,555(49.1)	17,541(63.9)
반 론	305(1.6)	419(8.0)	386(12.2)	1,110(4.1)
추 후	130(0.7)	150(2.9)	160(5.0)	440(1.6)
손 배	5,725(30.1)	1,560(29.8)	1,069(33.7)	8,354(30.4)
계	19,048(100)	5,227(100)	3,170(100)	27,445(100)

* () 안의 숫자는 %

3. 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16년 조정청구현황을 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청구가 1,919건(6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기업체 390건(12.3%), 일반단체 373건(11.8%), 지자체 90건(2.8%) 등의 순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정인과 종교단체가 청구한 대량사건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일반단체와 언론사의 청구 건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공공단체와 기업체의 청구 건수는 예년보다 증가하였다.

표 1-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2014	2015	2016	합계
신청인				
개 인	13,021(68.4)	3,123(59.7)	1,919(60.5)	18,063(65.8)
국가기관	71(0.4)	85(1.6)	64(2.0)	220(0.8)
지 자 체	81(0.4)	117(2.2)	90(2.8)	288(1.0)
공공단체	103(0.5)	54(1.0)	67(2.1)	224(0.8)
일반단체	315(1.7)	570(10.9)	373(11.8)	1,258(4.6)
종교단체	4,954(26.0)	728(13.9)	110(3.5)	5,792(21.1)
기 업 체	331(1.7)	379(7.3)	390(12.3)	1,100(4.0)
언 론 사	90(0.5)	87(1.7)	74(2.3)	251(0.9)
교육기관	82(0.4)	84(1.6)	83(2.6)	249(0.9)
계	19,048(100)	5,227(100)	3,170(100)	27,445(100)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 유형별 청구 건수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방송 423건(13.3%), 일간신문 405건(12.8%), 인터넷 뉴스서비스 330건(10.4%), 주간신문 168건(5.3%), 뉴스통신 165건(5.2%) 등의 순이었다. 신문은 지방일간지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간신문 168건, 중앙일간지 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보다 지방일간지 청구 건수가 더 많은 점이 눈에 띈다. 방송은 지상파 TV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합편성채널 120건, 종합유선방송 51건, 라디오 7건의 순이었다. 지난 3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 추세에 있던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1-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매체유형		연 도	2014	2015	2016	합계
신문	일간신문		1,378(7.2)	619(11.8)	405(12.8)	2,402(8.8)
	주간신문		139(0.7)	138(2.6)	168(5.3)	445(1.6)
방 송			3,776(19.8)	892(17.1)	423(13.3)	5,091(18.5)
잡 지			25(0.1)	18(0.3)	16(0.5)	59(0.2)
뉴스통신			1,117(5.9)	264(5.1)	165(5.2)	1,546(5.6)
인터넷신문			8,436(44.3)	2,490(47.6)	1,661(52.4)	12,587(45.9)
인터넷뉴스서비스			4,177(21.9)	799(15.3)	330(10.4)	5,306(19.3)
기 타				7(0.1)	2(0.1)	9(0.0)
계			19,048(100)	5,227(100)	3,170(100)	27,445(100)

* () 안의 숫자는 %

표 1-5 2016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6. 1. 1. ~ 2016.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 넷신 문	인터 넷뉴 스서 비스	기타
	중앙 일간 지	지방 일간 지	기타 일간 지	주간 신문	지상파		종합 유선 방송	종합 편성 채널					
					TV	라디 오							
3,170	164	208	33	168	245	7	51	120	16	165	1,661	330	2
(100)	(5.2)	(6.6)	(1.0)	(5.3)	(7.7)	(0.2)	(1.6)	(3.8)	(0.5)	(5.2)	(52.4)	(10.4)	(0.1)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현황

2016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2,972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3.8%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초상권 침해 81건(2.6%), 사생활 침해 51건(1.6%), 재산상 손해 33건(1.0%), 성명권 침해 19건(0.6%)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의 영향으로 예년과 다른 침해 유형별 비중을 보였지만 2016년은 예년과 유사한 침해 유형별 비중을 보였다. 기타 법익 침해 사건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 사건이었다.

표 1-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2014	2015	2016	합계
침해유형				
명예훼손	18,793(98.7)	4,891(93.6)	2,972(93.8)	26,656(97.1)
초상권 침해	208(1.1)	205(3.9)	81(2.6)	494(1.8)
음성권 침해	5(0.0)	14(0.3)		19(0.1)
성명권 침해	8(0.0)	10(0.2)	19(0.6)	37(0.1)
사생활 침해	14(0.1)	56(1.1)	51(1.6)	121(0.4)
재산상 손해	17(0.1)	51(1.0)	33(1.0)	101(0.4)
기 타	3(0.0)		14(0.4)	17(0.1)
계	19,048(100)	5,227(100)	3,170(100)	27,445(100)

* () 안의 숫자는 %

* 2011년부터 침해유형 중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6.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 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151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전체의 85.4%인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15건(9.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 7건(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 분류

(2016. 1. 1. ~ 2016.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 분류	청구 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129(85.4)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15(9.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7(4.6)
계	151(100)

* () 안의 숫자는 %

7.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6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하자면, 사건·사고·고발 등을 다룬 사회 분야가 2,209건으로 가장 많은 69.7%를 차지했고, 정치·선거 분야가 278건으로 8.8%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 175건(5.5%), 스포츠·연예 분야 119건(3.8%), 경제·산업 분야 107건(3.4%), 종교 분야 88건(2.8%), 국방·외교 분야 4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 청구 건수는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국정교과서 관련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6. 1. 1. ~ 2016. 12. 31.)

조정대상보도 분야	청구 건수
사회(사건/사고/고발)	2,209(69.7)
정치·선거	278(8.8)
교육	175(5.5)
스포츠·연예	119(3.8)
경제·산업	107(3.4)
종교	88(2.8)
국방·외교	44(1.4)
보건·복지	41(1.3)
레저·생활	32(1.0)
노동	32(1.0)
미디어	27(0.9)
환경	12(0.4)
기타	6(0.2)
계	3,170(100)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6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보도를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991건으로 81.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탐사·심층·기획보도가 296건(12.1%), 오피니언 54건(2.2%), 사설 39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6. 1. 1. ~ 2016. 12. 31.)

조정대상 보도 유형	청구 건수
스트레이트	1,991(81.5)
탐사·심층·기획보도	296(12.1)
오피니언	54(2.2)
사설	39(1.6)
인터뷰	21(0.9)
가십	9(0.4)
사진	4(0.2)
만화·만평	1(0.0)
기타	29(1.2)
계	2,444(100)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한편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보도를 세부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 관련 보도가 전체 사건의 78.2%인 5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92건(12.7%),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5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보도 유형별 현황 (2016. 1. 1. ~ 2016. 12. 31.)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보도 유형	청구 건수
뉴스	568(78.2)
시사고발	92(12.7)
교양정보	56(7.7)
연예·스포츠	8(1.1)
드라마	2(0.3)
계	726(100)

* () 안의 숫자는 %

9. 중재부별 현황

2016년 전체 조정청구 건수 3,170건 중 2,266건(71.5%)은 서울 8개 중재부가, 904건(28.5%)은 지역 10개 중재부가 접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 비해 서울중재부의 조정청구비율은 대폭 감소한 반면, 지역중재부의 청구비율은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중재부 중 경기중재부의 접수건수가 183건(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중재부 163건(5.1%), 경남중재부 145건(4.6%) 등의 순이었다.

표 1-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중재부	2014	2015	2016	합 계
서울중재부	17,750(93.2)	4,225(80.8)	2,266(71.5)	24,241(88.3)
부산중재부	138(0.7)	78(1.5)	110(3.5)	326(1.2)
대구중재부	113(0.6)	80(1.5)	73(2.3)	266(1.0)
광주중재부	83(0.4)	214(4.1)	163(5.1)	460(1.7)
대전중재부	96(0.5)	84(1.6)	66(2.1)	246(0.9)
경기중재부	548(2.9)	259(5.0)	183(5.8)	990(3.6)
강원중재부	16(0.1)	42(0.8)	15(0.5)	73(0.3)
충북중재부	71(0.4)	71(1.4)	50(1.6)	192(0.7)
전북중재부	53(0.3)	78(1.5)	55(1.7)	186(0.7)
경남중재부	150(0.8)	62(1.2)	145(4.6)	357(1.3)
제주중재부	30(0.2)	34(0.7)	44(1.4)	108(0.4)
계	19,048(100)	5,227(100)	3,170(100)	27,445(100)

* () 안의 숫자는 %

10. 접수 유형별 현황

예년과 달리 위원회 전자문서(Eye-Net)를 이용한 조정신청은 대폭 감소했다. 2014년과 2015년에 전자문서 이용률이 높았던 것은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 대부분이 전자문서로 접수된 데서 기인한다. 2016년의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 접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우편에 따른 조정신청은 총 2,265건이었다. 뒤이어 전자문서(Eye-Net) 488건(15.4%), 방문 302건(9.5%), 우편 114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술 신청은 단 1건밖에 없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구 분 연 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합계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	19,048 (100)
2015	409 (7.8)	130 (2.5)	1,913 (36.6)	2,772 (53.0)	1 (0.0)	2 (0.0)	5,227 (100)
2016	302 (9.5)	114 (3.6)	2,265 (71.5)	488 (15.4)	1 (0.0)	-	3,170 (100)

* () 안의 숫자는 %

제2장 조정사건 처리 현황

1. 연도별 처리현황

2016년 조정사건 3,170건을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366건(43.1%), 조정성립 961건(30.3%), 조정불성립결정 416건(13.1%), 직권조정결정 300건(9.4%), 기각 108건(3.4%), 각하 19건(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권조정결정의 비율이 9.4%로 2015년(6.1%)과 비교해 3.3%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각 중재부가 조정성립이 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도 직권조정결정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판단한다. 또 실제로 직권조정결정을 한 사건 중 60.7%가 양 당사자 동의를 거쳐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결정은 13.1%로 2015년(13.6%)에 비해 0.5%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피해 구제율
			동의	이의	계속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	6.1	0.7	0.6		5.8	0.6	0.4	85.8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18.0	4.2	1.9		13.6	6.2	0.6	55.6	
2016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	30.3	5.7	3.7		13.1	3.4	0.6	43.1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text{조정성립}+\text{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 건수}-(\text{기각}+\text{각하})} \times 100$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등을 의미함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청구요건이 적합한 사건 중 심리 결과와 상관 없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16년 피해구제율은 72.3%로 2015년 피해구제율(77.9%)에 비해 5.6% 하락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졌던 대량사건이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되면서 피해구제율이 높았던 반면, 2016년에는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구제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 도	구 분	청구 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2015		5,227	354	4,873	3,797	77.9%
2016		3,170	127	3,043	2,201	72.3%
계		27,445	663	26,782	22,726	84.9%

3. 청구권별 처리현황

2016년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손해배상청구 73.1%, 정정보도청구 70.4%, 반론보도청구 69.8%의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데다 반론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은 같지만, 나머지 청구권의 피해구제율은 등락이 있었다.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0.8%, 반론보도청구 32.4%, 추후보도청구 20.0%, 손해배상청구 30.4%로 2015년과 비교해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은 각각 15.6%, 13.2%씩 상승하였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정정	12,888	626	59	62	(1)	629	(7)	22	36	11,454	(10,904)	90.4
	반론	305	108	12	10	(1)	39	(2)	1	4	131	(117)	80.0
	추후	130	29	18	1		23		3		56	(49)	75.6
	손배	5,725	393	44	49	(1)	414	(7)	80	36	4,709	(4,350)	85.5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정정	3,098	470	88	48		420	(2)	63	17	1,992	(1,836)	79.4
	반론	419	168	23	12	(1)	44		37	3	132	(102)	77.6
	추후	150	33	13	2		1		12	1	88	(83)	94.2
	손배	1,560	269	94	39	(1)	245	(2)	210	11	692	(612)	73.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2016	정정	1,555	479	86	64	(2)	223		53	7	643	(485)	70.4
	반론	386	125	27	14		45	(3)	20	2	153	(99)	69.8
	추후	160	32	3	5		4	(2)		5	111	(106)	92.3
	손배	1,069	325	66	35	(2)	144		35	5	459	(359)	73.1
	계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차지하는 개인 사건의 피해구제율이 74.1%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건 수로는 다섯 번째이지만 종교단체가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이 79.6%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는 회사(72.2%), 국가기관(69.8%), 일반단체(6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봤을 때 개인 사건의 수와 피해구제율이 상위에 포진하는 것은 여느 때와 유사하다. 다만 다른 유형의 신청인 사건 처리결과는 해마다 상이한 사회 이슈의 성격 등 외부 여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므로 피해구제율 변동에 유의미한 점은 없어 보인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개 인	13,021	579	78	45	(3)	677	(15)	97	44	11,501	(10,877)	89.7	
	단 체	국가기관	71	19	1	12		26			13	(6)	36.6	
		지자체 공공단체	184	60	3	40		16		28	37	(23)	55.1	
		일반단체	351	142	22	16		24	(1)	5	3	103	(61)	73.6
		종교단체	4,954	206	8			292		4	1	4,443	(4,250)	90.2
		회사	421	121	17	9		61			213	(172)	73.6	
		교육기관	82	29	4			9			40	(31)	78.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개 인	3,123	476	122	48	(2)	369	(2)	295	27	1,786	(1,621)	79.4	
	단 체	국가기관	85	47	13	2		4		1	18	(14)	88.1	
		지자체 공공단체	171	55	15	16		25			60	(39)	63.7	
		일반단체	570	162	38	34		66	(2)	16	2	272	(241)	80.3
		종교단체	728	15	3			131		2	2	575	(570)	81.2
		회사	466	149	25	19		94		8	1	170	(128)	66.1
		교육기관	84	36	2	2		21			23	(20)	69.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2016	개 인	1,919	530	100	82	(4)	200	(5)	63	17	927	(724)	74.1	
	단 체	국가기관	64	21	7		12		1	23	(16)	69.8		
		지자체 공공단체	157	67	3	2		38		1	46	(33)	66.0	
		일반단체	373	122	24	5		77		28	117	(85)	67.0	
		종교단체	110	55	16	6		12		2	19	(15)	79.6	
		회사	464	139	20	13		63		14	1	214	(165)	72.2
		교육기관	83	27	12	10		14			20	(11)	60.2	
	계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6년 위원회가 접수한 조정청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자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가 204건, 공무원 172건, 문화예술인 113건, 국회의원 1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년에 비해 교육자와 공무원 사건 수가 크게 늘었는데 국정농단 시국 관련 사건이 많았던 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피해구제율로 보자면 연예인이 100.0%를 기록했고, 공공기관장이 92.6%를 나타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무직(90.5%), 시민활동가(88.9%), 회사원(88.7%), 공무원(85.3%), 학생(87.9%), 군인·경찰(85.7%) 등이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반면 그간 피해구제율이 높은 편이었던 종교인(54.5%), 언론인(50.0%)의 2016년 피해구제율은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피해구제율이 낮은 직업군인 금융업종사자는 2016년에도 피해구제율이 50.0%인 언론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태껏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던 법조인, 의료인,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등의 피해구제율은 다소 높아진 수치를 나타냈다.

표 2-5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구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101	28	3	6	4			60	(42)	72.3	
법조인	19	5			7			7	(7)	63.2	
공무원	172	51	12	11	13		9	76	(76)	85.3	
군인·경찰	35	16	7		1			11	(7)	85.7	
기초광역단체장 ·의원	66	28		5	10	2	2	19	(18)	74.2	
정당정치인	53	7	3	2	7	1		33	(26)	69.2	
의료인	38	16	4		4	2		12	(9)	80.6	
문화예술인	113	24	21	6	8	4		50	(35)	73.4	
종교인	33	9	2	3	10			9	(7)	54.5	
회사원	91	36	7	4	17	6		21	(18)	71.8	
언론인	70	21	4	19	7	2		17	(9)	50.0	
교육자	534	90	17	12	(4)	28	(2)		387	(284)	74.3
개인사업가	204	67	12	8		48	(3)	2	67	(41)	60.9

구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금융업종사자	12	6				4			2		50.0
연예인	37	5							32	(32)	100.0
학 생	41	8	3	4			6	2	18	(18)	87.9
시민활동가	28	13				3		1	11	(11)	88.9
공공기관장	27	10		2					15	(15)	92.6
조합대표협회장	39	11				9	2		17	(13)	64.9
주부	20	8				3	2		7	(7)	83.3
무직	42	13	2			2			25	(23)	90.5
알 수 없음	60	16	2			3	22		17	(15)	86.8
기타	84	42	1			12	12	3	14	(11)	78.3
계	1,919	530	100	82	(4)	200	(5)	63	17	927 (724)	74.1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기타 매체를 제외하고 뉴스통신의 피해구제율이 8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인터넷신문(77.5%), 신문(68.7%), 인터넷뉴스서비스(67.7%), 방송(57.6%), 잡지(35.7%) 순이었다. 예년의 경우 높은 수치를 보였던 방송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피해구제율이 낮아진 점이 두드러진다. 뉴스통신과 신문의 피해구제율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예년과 유사한 경향이지만, 그 수치가 다소 낮아진 것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량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난 결과로 판단한다.

2016년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을 보면 신문이 33.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인터넷신문 30.0%, 뉴스통신 29.1%, 방송 28.1%, 인터넷뉴스서비스 19.7%, 잡지 1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립 결정 비율은 43.8%로 잡지가 가장 높았고, 방송(19.4%), 신문(13.9%), 인터넷뉴스서비스(13.3%)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의 조정성립률이 높은 것과 달리 조정불성립률은 낮은 경향이 있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신 문	1,517	216	20	7	243		7	2	1,022	(957)	79.1	
	방 송	3,776	99	16	19	152	(5)	18	3	3,469	(3,219)	88.9	
	잡 지	25	6	4	2			2		11	(7)	73.9	
	뉴스통신	1,117	70	4	7	28		22	4	982	(957)	94.5	
	인터넷신문	8,436	665	60	77	(3)	473	(4)	45	52	7,064	(6,799)	90.3
	인터넷뉴스 서비스	4,177	100	29	10	209	(7)	12	15	3,802	(3,481)	87.2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신 문	757	223	43	18	178		11	4	280	(239)	68.1	
	방 송	892	116	27	15	111		72	5	546	(499)	78.8	
	잡 지	18	11	2					2	3	(2)	93.8	
	뉴스통신	264	45	10	4	16		21		168	(156)	86.8	
	인터넷신문	2,490	482	91	55	(2)	306	(4)	108	21	1,427	(1,293)	79.3
	인터넷뉴스 서비스	799	63	45	8	99		110		474	(444)	80.1	
	기 타	7			1					6		0.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2016	신 문	573	228	32	29	(2)	94	(1)	19	2	169	(116)	68.7
	방 송	423	119	30	11		82	(3)	16	6	159	(79)	57.6
	잡 지	16	3				7		2		4	(2)	35.7
	뉴스통신	165	48	10			14		11		82	(69)	82.5
	인터넷신문	1,661	498	88	69	(2)	175	(1)	49	11	771	(652)	77.5
	인터넷뉴스 서비스	330	65	20	9		44		11		181	(131)	67.7
	기 타	2		2									100.0
	계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6년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사생활 침해(92.2%)와 성명권 침해(89.5%)의 피해구제율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의 피해구제율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반면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의 피해구제율이 각각 71.3%, 82.8%로 작년에 비해 피해구제율이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명예훼손은 취하가 1,264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911건(30.7%), 조정불성립결정 405건(13.6%), 직권조정결정 278건(9.4%) 순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는 조정성립 29건(35.8%)과 취하 27건(33.3%), 직권조정결정 14건(17.3%) 순이었다. 성명권 침해 사건이 모두 취하된 점은 특이한 점이다.

조정성립률로 보자면, 초상권 침해가 35.8%로 가장 높았고, 명예훼손(30.7%), 재산상 손해(30.3%), 사생활 침해(17.6%)가 그 뒤를 이었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명예훼손	18,793	1,111	118	112	(3)	1,035	(16)	45	71	16,301	(15,387)	89.1
	초상권 침해	208	25	13	8		66		57	4	35	(24)	42.2
	음성권 침해	5	2	1							2	(2)	100.0
	성명권 침해	8	5	1							2	(1)	87.5
	사생활 침해	14	8		2				1	3	(1)	69.2	
	재산상 손해	17	4			4	2		7	(5)	60.0		
	기 타	3	1				2				100.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명예훼손	4,891	866	169	99	(2)	683	(4)	191	31	2,852	(2,591)	77.8
	초상권 침해	205	25	11			10		130	1	28	(22)	78.4
	음성권 침해	14	7	2							5	(3)	85.7
	성명권 침해	10	4								6	(6)	100.0
	사생활 침해	56	7	34		14				1	(1)	75.0	
	재산상 손해	51	31	2	2	3	1		12	(10)	86.0		
	기 타												
	계	5,227	940	218	101	(2)	710		322	32	2,904	(2,633)	77.9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6	명예훼손	2,972	911	161	117	(4)	405	(5)	98	16	1,264	(956)	71.3
	초상권 침해	81	29	13	1		5		4	2	27	(24)	88.0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19									19	(17)	89.5
	사생활 침해	51	9	4			2				36	(34)	92.2
	재산상 손해	33	10	4			4		4		11	(10)	82.8
	기 타	14	2						2	1	9	(8)	90.9
	계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일간지 405건 중 397건이 명예훼손이었고, 초상권 침해가 6건, 성명권 침해가 2건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164건 중 조정성립은 53건으로 3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취하 42건, 조정불성립결정 34건 순이었다. 지역일간지는 208건 중 조정성립과 취하가 각각 87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불성립결정은 17건, 직권조정결정은 7건이었다. 주간지는 총 168건 중 162건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조정청구가 됐고 77건이 조정성립이었다.

방송은 423건의 청구 건수 중 명예훼손이 354건, 초상권 침해 36건, 성명권 침해 6건, 사생활 침해 12건, 재산상 손해 13건 등으로 이뤄졌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119건, 조정불성립결정 82건, 직권조정결정 41건, 기각 16건의 순이었다. 심리 전 취하로 피해가 구제된 일이 많았던 점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청구 1,991건 중 명예훼손은 1,890건이었고, 나머지는 사생활 침해 36건, 초상권 침해 32건, 재산상 손해 16건, 성명권 침해 등이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563건, 조정불성립결정 219건, 직권조정결정 186건, 기각 6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은 취하가 7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498건, 조정불성립결정 175건, 직권조정결정 157건, 기각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취하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65건, 조정불성립 219건, 직권조정결정 186건, 기각 60건이었다.

표 2-8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1

(2016. 1. 1. ~ 2016. 12. 31.)

매체유형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일 간 지	중앙일간지	164	158	4	2				53	28	34	7		42
	지역일간지	208	206	2					87	7	17	8		89
	경제지	27	27						8	1	13			5
	스포츠지	2	2							2				
	특수일간지	2	2						1			1		
	외국어일간지													
	무료일간지	2	2						2					
	소계	405	397	6	2				151	38	64	16		136
주 간 신 문	시사주간신문	16	16						5	8				3
	지역주간신문	98	92	4		1		1	51	8	20	3	2	14
	특수주간신문	33	33						11	3	7			12
	시사주간지	21	21						10	4	3			4
	소계	168	162	4		1		1	77	23	30	3	2	33
방 송	잡지	16	15		1				3		7	2		4
	중앙방송	170	131	19	4	10	5	1	50	15	41	11		53
	지방방송	49	45	2			2		11	1	10	4	2	21
	지역민방	26	23	3					8		5		2	11
	케이블tv	51	45	2	2		2		8	2	4		2	35
	라디오	7	7						2		1			4
	종합편성채널	120	103	10		2	4	1	40	23	21	1		35
	소계	423	354	36	6	12	13	2	119	41	82	16	6	159
뉴스통신		165	152	3	2	2	4	2	48	10	14	11		82

매체유형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취 하
인터넷	인터넷신문	1,661	1,594	18		4	32	7	6	498	157	175	49	11	771
	인터넷뉴스 서비스	330	296	14		4	4	9	3	65	29	44	11		181
	소계	1,991	1,890	32		8	36	16	9	563	186	219	60	11	952
기타	2	2								2					
총계	3,170	2,972	81		19	51	33	14	961	300	416	108	19		1,366

표 2-9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

(2016. 1. 1. ~ 2016.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취 하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35	35							16	16	3				
	국민일보	6	6								1	2	2			1
	동아일보	20	19			1				11		5				4
	매일일보	3	3							3						
	문화일보	5	5								1	3				1
	서울신문	6	6							1						5
	세계일보	7	7							1		2				4
	일간투데이	1	1							1						
	조선일보	17	17							1		11	2			3
	중앙일보	22	17	4		1				2	5	2				13
	한겨레	22	22							15	1	4				2
	한국일보	20	20							2	4	2	3			9
	소계	164	158	4		2				53	28	34	7			42
지역 일간지	The대한일보	3	3							3						
	경기매일	2	2													2
	경기신문	1	1							1						
	경기일보	7	7							2		1	2			2
	경남도민신문	5	5													5
	경남도민일보	4	4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역 일간지	경남매일	6	6							6					
	경남신문	4	4							4					
	경남일보	5	5							5					
	경북도민일보	4	4							4					
	경북매일	1	1												1
	경북일보	4	4							4					
	경상매일신문	1	1							1					
	경상일보	1	1												1
	경상투데이	4	4												4
	경안일보	4	4												4
	경인매일	1	1												1
	경인일보	1	1												1
	국제신문	12	12							3					9
	금강일보	2	2							1		1			
	기호일보	4	4							4					
	남도일보	2	2										2		
	뉴스경남	1	1							1					
	대경일보	4	4							4					
	대전일보	2	2							1					1
	대전투데이	1	1												1
	대한투데이	2	2												2
	도민일보	2	2							2					
	동양일보	9	9							7					2
	매일신문	6	4	2						2					4
	무등일보	3	3							1			2		
	부산일보	7	7												7
	새전북신문	6	6							1					5
	세종매일	2	2									2			
	수도일보	2	2									2			
	신아일보	7	7							4					3
	아시아타임즈	1	1									1			
	아시아투데이	3	3							3					
	아주경제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역 일간지	울산신문	4	4							2					2
	인천일보	7	7								3	1	1		2
	전남매일	1	1							1					
	전남일보	2	2												2
	전라일보	4	4							1					3
	전북도민일보	6	6							1					5
	전북매일신문	1	1							1					
	전북연합신문	2	2									2			
	전북일보	5	5										1		4
	전북중앙신문	4	4							1					3
	전주매일	2	2												2
	전주일보	1	1							1					
	제주신보 (제주新보)	2	2							2					
	제주일보	2	2							2					
	중도일보	1	1												1
	중부매일	1	1							1					
	중부일보	8	8							3	2	1			2
	충남일보	4	4							1		3			
	충청신문	4	4							1		1			2
	충청타임즈	2	2									2			
	충청투데이	2	2							1					1
	한라일보	2	2							1					1
	함양신문	2	2												2
	호남매일	2	2												2
	소계	208	206	2						87	7	17	8		89
경제지	매일경제	5	5							2					3
	서울경제	6	6							4		2			
	아시아경제	1	1								1				
	파이낸셜뉴스	2	2									1			1
	한국경제	12	12							2		10			
	헤럴드경제	1	1												1
	소계	27	27							8	1	13			5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스포츠지	스포츠동아	2	2								2				
	소계	2	2								2				
특조간사지	전자신문	2	2							1			1		
	소계	2	2							1			1		
문화일지	광주드림	2	2							2					
	소계	2	2							2					
중앙방송중앙방송	EBS-TV	3	3							3					
	KBS-1TV	41	25	6			2	5	2	1	9	2	4	1	25
	KBS-2TV	7	7								3		1		3
	MBC-TV	65	54	6				3	2		14	9	28	6	8
	SBS-TV	54	42	7			2	2	1		21	4	8	4	17
	소계	170	131	19			4	10	5	1	50	15	41	11	53
지방방송	MBC강원영동-TV	2	2								2				
	MBC경남(진주,창원)-TV	3	1						2			2			1
	경인KBS-1TV	4	4								2				2
	대전KBS-1TV	1	1												1
	부산KBS-1TV	4	4									1			3
	부산MBC-TV	3	3												3
	안동MBC-TV	1	1												1
	여수MBC-TV	6	6								4		2		
	울산MBC-TV	1	1												1
	전주MBC-TV	3	3								1				2
	제주KBS-1TV	10	9	1								1	5	2	2
	제주MBC-TV	4	3	1							2				2
	진주KBS-1TV	2	2												2
	창원KBS-1TV	3	3									2			1
	춘천KBS-1TV	2	2										2		
	소계	49	45	2					2		11	1	10	4	21
지역민방	CJB-TV	2	2								1				1
	G1-TV	3	3								3				
	JIBS-TV	2	2											2	
	KBC-TV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민 방	KNN	9	8	1						1		1			7
	OBS경인TV	3	2	1						1		2			
	TJB-TV	3	2	1								2			1
	UBC	2	2												2
	소계	26	23	3						8		5		2	11
케 이 블 TV	CBS TV	2	2									2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3	3												3
	KC TV	2	2											2	
	SBS CNBC-TV	2	1	1											2
	tvN	1	1												1
	YTN	22	19			2		1		6	2	1			13
	연합뉴스TV	14	13					1		2		1			11
	티브로드 경기뉴스	2	2												2
	현대HCN 충북방송	3	2	1											3
	소계	51	45	2		2		2		8	2	4		2	35
라 디 오	CBS-R	4	4							2					2
	SBS-R	1	1									1			
	광주BBS-R	2	2												2
	소계	7	7							2		1			4
중 합 편 성 채널	JTBC	28	26	2						9	3	8	1		7
	MBN	24	20	2				1	1	9	4	4			7
	TV조선	33	28	4				1		9	8	4			12
	채널A	35	29	2			2	2		13	8	5			9
	소계	120	103	10			2	4	1	40	23	21	1		35
뉴 스 통 신	KNS뉴스통신	4	4							4					
	NSP통신	2	2							2					
	국제뉴스	14	12					2		3		3	2		6
	내외뉴스통신	2	2												2
	뉴스1코리아	38	36				1	1		11	2	3	3		19
	뉴스시스	37	35			1		1		12		6	1		18
	아시아뉴스통신	5	4						1	4					1
	연합뉴스	63	57	3		1	1		1	12	8	2	5		36
	소계	165	152	3		2	2	4	2	48	10	14	11		8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시 사 주 간 신 문	일요시사	9	9							5	2				2
	일요신문	6	6								6				
	중앙Sunday	1	1												1
	소계	16	16							5	8				3
지 역 주 간 신 문	강화섬소식	1	1												1
	거제중앙신문	1					1			1					
	거창신보	2	2							2					
	경서신문	2	2									2			
	광명지역신문	1	1							1					
	군위일보	2	2									2			
	김포신문	1	1							1					
	김포저널	2	2								1	1			
	남원뉴스PAPER	2	2							2					
	남해시대	6	4	2						2	2	2			
	동대문포스트	2	2									2			
	목포시민신문	3	3							3					
	목포신문	2	2												2
	목포투데이	3	3							3					
	반월신문	3	3							1		1			1
	사비신문	2	2									2			
	상애신문	2	2							2					
	순창신문	2	2							1					1
	시민의소리	2	2							2					
	시사강원신문	1	1							1					
	시흥저널	3	3							3					
	안산신문	2	2							2					
	연수송도신문	2	2									2			
	연수신문	2	2									2			
	영남매일	2	2								1				1
	영등포신문	1	1									1			
	예향진도신문	2	2							2					
	육천신문	2	2							1		1			
	우리군민신문	6	6							4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역 주간 신문	의령신문	2	2									2			
	전남저널	2	2							2					
	전남희망신문	4	4							4					
	종로신문	2	2								2				
	종로저널	2	2							2					
	주간고향신문	1	1												1
	주간함양	1	1										1		
	충청리뷰	2	2												2
	콩나물신문	1	1											1	
	평택시민신문	2	2												2
	포스트 코리아신문	2	2							2					
	하동군민신문	1	1												1
	함안뉴스	4	2	2							2		2		
	함평우리신문	8	7						1	7				1	
	소계	98	92	4				1	1	51	8	20	3	2	14
특 수 주 간 신 문	optic weekly (옵틱위클리)	1	1								1				
	가스신문	1	1												1
	격주간 귀금속경제신문	2	2												2
	교통신문	1	1							1					
	기독신보	2	2									2			
	大紀元時報 (대기원시보)	1	1												1
	미디어오늘	4	4							2	2				
	밀양시민신문	3	3												3
	방송대신문	1	1												1
	백세시대	3	3							3					
	법보신문	1	1									1			
	부안저널	2	2							1					1
	수산신문	2	2												2
	에너지신문	2	2									2			
	의협신문	1	1							1					
	전국아파트신문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주간신문	주간침례신문	2	2									2			
	축산경제	1	1							1					
	크리스천 포커스	2	2							2					
	소계	33	33							11	3	7			12
시사주간지	시사인	2	2												2
	시사저널	8	8							5	1	1			1
	주간경향	4	4								3				1
	주간동아	3	3							1		2			
	한겨레21	4	4							4					
	소계	21	21							10	4	3			4
잡지	더 뮤지컬 (The Musical)	2	2										2		
	월간큐스포츠	2	2												2
	월간조선	3	3							3					
	월간중앙	1				1									1
	현대종교	8	8									7			1
	소계	16	15			1				3		7	2		4
인터넷신문	(주)수도권 의양신문	2	2								2				
	(주)티비리포트	3	3												3
	CBC뉴스	3	2				1								3
	CNN21방송	3	3									3			
	Doctors News (닥터스뉴스)	1	1							1					
	EBN	2	2							2					
	e글로벌이코노믹	3	3												3
	e뉴조 (뉴스앤조이)	12	12							2	2	8			
	e머니에스 (e money S)	3	3												3
	e머니워크	2	2								2				
	e머니투데이	14	9	1			1	3				1	5	1	7
	e상조뉴스	3	3									3			
	e중앙뉴스	4	4												4
	HBC 한북방송	3	3									1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kidok.com	1	1										1		
	kjtimes.com	1	1												1
	K신문	2	2												2
	LPN로컬 파워뉴스	1	1								1				
	NBS국민방송	2	2												2
	NGTV	1	1												1
	postshare	2	2												2
	YN뉴스	2	2								1				1
	거제여성신문	1						1		1					
	거제인터넷신문	1	1								1				
	거제타임즈	3	2					1		1					2
	경기도민뉴스	1	1							1					
	경남도민뉴스	1	1								1				
	경원일보	2	2												2
	고발뉴스닷컴	4	4									2			2
	교회와신앙	6	6							6					
	국제타임스	2	2												2
	국회뉴스 (A-News)	2	2												2
	굿모닝뉴스	1	1									1			
	금융소비자뉴스	2	2												2
	기독일보 씨디엔	2	2								2				
	남해타임즈 (인터넷 남해시대)	6	4	2						2	2	2			
	노컷뉴스	35	34	1						5	2	6			22
	뉴데일리	5	5							2		1			2
	뉴데일리경제	5	5								2				3
	뉴스21	2	2							2					
	뉴스깜	2	2							2					
	뉴스몰	2	2												2
	뉴스미션	2	2							2					
	뉴스세종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뉴스스토리	2	2												2
	뉴스엔	2	2												2
	뉴스웨이	2	2							2					
	뉴스웨이 경남	2	2							2					
	뉴스웨이 대구경북 취재본부	1	1							1					
	뉴스천지	2	2									2			
	뉴스타운	7	7								2		1		4
	뉴스타파	4	4								1	3			
	뉴스투데이한국	2	2										2		
	뉴스플러스	1	1							1					
	뉴스파플아이	1	1									1			
	뉴스핍	4	2				2				3				1
	뉴스한국닷컴	2	2												2
	당당뉴스	1	1												1
	대전뉴스	4	4							3					1
	대전시티저널	2	2							2					
	더리뷰	2	2												2
	더벨	2	2									1			1
	더엘(theL)	1	1												1
	더팩트	4	4								1				3
	더한국타임즈	1	1							1					
	데일리비즈온	1	1												1
	데일리메디	1	1									1			
	데일리안	5	5							1					4
	데일리저널	1	1												1
	데일리팝	2	2												2
	동두천, 연천신문	6	6							2		2			2
	동아닷컴	31	28				2	1		10	2	6	1		12
	등잔일보	2	2							2					
	디스패치뉴스	1	1							1					
	디오데오	3	3												3
	디트news24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딴지일보	1	1							1					
	라포르시안	4	4							4					
	레드카펫코리아 (피치원미디어)	1	1							1					
	로이슈	5	5							2	2			1	
	로컬상주	2	2							2					
	매경닷컴	12	10					2		1					11
	메디컬투데이	3	3												3
	모바일한경	1	1												1
	무카스뉴스	4	4												4
	문화뉴스	2	2										1		1
	미디어 전남	1	1												1
	미디어스	13	13							7					6
	미디어시티엔방송	2	2							2					
	미디어인뉴스	1	1												1
	미디어타임즈	2	2												2
	미디어펜 (Mediapen)	9	9							1		1			7
	미래한국 Daily	1	1							1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2	2												2
	민중의소리	7	5					1	1		2				5
	백제뉴스	1	1												1
	본헤럴드	2	2												2
	부자동네타임즈	1	1							1					
	아이एस플러스 닷컴(인터넷 일간스포츠)	1	1							1					
	부천미래신문	1	1							1					
	불교닷컴	1	1												1
	뷰스앤뉴스	4	4												4
	브레이크뉴스	6	6							1					5
	비마이너	2	2							1					1
	비아이코리아 (BI KOREA)	2	2							2					
	비주얼다이브	2	2												2
	비즈엔터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성결네트워크	2	2							1				1
	세계닷컴	25	24					1		3		2	1	19
	세계태권도 연합뉴스	2	2											2
	세종in뉴스	2	2							2				
	세종의 소리	2	2											2
	소비자가 만드는신문	1	1											1
	수원일보	1	1							1				
	순천투데이	2	2							2				
	워킹데일리	2	2							2				
	스타뉴스	3	2					1						3
	스타서울TV	3	2					1		2				1
	스타투데이	1						1						1
	스틸데일리	1	1											1
	스포츠Q	1	1											1
	스포츠 한국미디어	3	2					1			2			1
	시사1	1	1								1			
	시사IN Live (시사인 라이브)	8	8							2		2		4
	시사ON	2	2											2
	시사강원 인터넷신문	1	1							1				
	시사광명	1	1							1				
	시사브리핑	12	12									12		
	시사워크	4	4									1		3
	시사제주	2	2										2	
	시사포커스신문	2	2											2
	시크뉴스	1	1											1
	시포커스	2	2							2				
	씨앤비뉴스 (CNBNEWS)	3	3							1				2
	아시아경제닷컴	43	41					1	1	21	1	4		17
	아시아 투데이닷컴	16	16							5	1	3		7
	아이굿뉴스	1	1							1				
	아이뉴스24 (inews24)	4	4											4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아이티투데이	2	2												2
	아주뉴스 (인터넷아주경제)	10	10							1		2			7
	애플경제 인터넷	2	2												2
	양파티브이뉴스	2	1	1						2					
	에스티브이 (STV)	2	2												2
	에이블뉴스	6	6							4		1			1
	에픽미디어(노 컷일베)	2	2									2			
	엑스포츠뉴스	1						1							1
	엠스플 뉴스	2	2										2		
	영남타임즈	2	2							2					
	예장뉴스	2	2							1		1			
	오마이뉴스	17	17							9	3	2			3
	온나라타임즈	2	2												2
	온라인 중앙일보	30	26	2			2			6	5	1			18
	올인코리아	2	2												2
	와이드뉴스	3	3							3					
	우리안산넷	2	2							2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	1							1					
	월드투데이	7	6						1		2				5
	위키�트리 (wikitree)	4	3					1							4
	이뉴스투데이	5	5							1					4
	이슈타임	4	4								1				3
	이코노믹포스트	2	2							2					
	이투데이	5	4					1							5
	익산인터넷뉴스	2	2							2					
	인사이트	7	7												7
	인터넷 The대한일보	3	3							3					
	인터넷 가스신문	1	1												1
	인터넷 가평투데이	2	2							2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강원신문	3	3							3					
	인터넷 거제중앙신문	1					1			1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 문	1	1								1				
	인터넷 경기북부포커스	2	2												2
	인터넷 경기신문	3	3							1					2
	인터넷 경기일보	9	9							3		1	2		3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5	15									10			5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	5							2	2				1
	인터넷 경남매일	6	6							4	2				
	인터넷 경남신문	2	2							2					
	인터넷 경남일보	5	5							4					1
	인터넷 경북연합일보	2	2							2					
	인터넷 경북일보	2	2							2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6	6							6					
	인터넷 경상일보	3	3												3
	인터넷 경상투데이	4	4												4
	인터넷 경안일보	4	4												4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4	4												4
	인터넷 경향신문	70	70							23	21	3	3	1	19
	인터넷 광남일보	1	1												1
	인터넷 광주드림	3	3							2					1
	인터넷 교통신문	1	1							1					
	인터넷 국민일보	35	33				1	1		4	6	8	2		15
	인터넷 국제신문	19	19							2					17
	인터넷 국토경제신문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국토일보	1	1							1					
	인터넷 굿모닝충청	1	1												1
	인터넷 금강일보	4	4							2					2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1	1												1
	인터넷 기호일보	5	5							4		1			
	인터넷 김포신문	2	2							2					
	인터넷 김포저널	2	2								1	1			
	인터넷 김해뉴스	1	1								1				
	인터넷 남도일보	3	3										2		1
	인터넷 내외일보	2	2												2
	인터넷 내일신문	2	2												2
	인터넷 opticweekly (옵틱위클리)	1	1								1				
	인터넷 뉴스경남	2	2							1					1
	인터넷 뉴스토마토	2	2												2
	인터넷 뉴스포스트	2	2							2					
	인터넷 대구신문	1	1							1					
	인터넷 大紀元時報 (대기원시보)	1	1												1
	인터넷 대한투데이	2	2												2
	인터넷 덴탈포커스	4	4							2			2		
	인터넷 도민일보	5	5							2					3
	인터넷 동부매일	1	1												1
	인터넷 동양일보	9	9							7					2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1	1												1
	인터넷 매일신문	3	3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매일일보	4	4							4					
	인터넷 메트로	2	2												2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3	3							3					
	인터넷 목포투데이	3	3							3					
	인터넷 무등일보	3	3							1			2		
	인터넷 문화일보	7	7								4	2			1
	인터넷 미디어광명	2	2									2			
	인터넷 미디어오늘	11	11							10					1
	인터넷 미디어워치	5	5							2		3			
	인터넷 밀양시민신문	3	3												3
	인터넷 반월신문	3	3							1		1			1
	인터넷 법률신문(THE LAWTIMES)	2	2							2					
	인터넷 법보신문	3	3									3			
	인터넷 법보신문사	4	4								4				
	인터넷 베이비뉴스	1	1												1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2	2							2					
	인터넷 부산일보	10	9					1							10
	인터넷 부천매일	2	2									2			
	인터넷 불교저널	2	2							2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	2								2				
	인터넷 비즈니스한국	2	2												2
	인터넷 새전북신문	2	2							1					1
	인터넷 서울경제	19	18					1		8	2	2			7
	인터넷 서울매일	2	2							2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서울신문	16	16							3					13
	인터넷 수도권일보	4	4							2					2
	인터넷 수도일보	2	2									2			
	인터넷 수원시민신문	2	2												2
	인터넷 순창신문	2	2							1					1
	인터넷 스포츠경향	3	2	1											3
	인터넷 스포츠동아	2					1		1						2
	인터넷 스포츠서울	1	1												1
	인터넷 스포츠조선	4	4												4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2	2												2
	인터넷 시민의소리	2	2							2					
	인터넷 시민일보	1	1												1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2	2									2			
	인터넷 시사상조	2	2							2					
	인터넷 시사저널	13	13							5	1	2			5
	인터넷 시사주간 (sisa weekly)	9	9							4					5
	인터넷 시사타임즈	3	3												3
	인터넷 시흥저널	4	4							4					
	인터넷 신아일보	9	9							2					7
	인터넷 아시아글로벌	1	1							1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1	1									1			
	인터넷 에너지경제	2	2							2					
	인터넷 여성경제신문	1	1							1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4	4												4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여성신문	2	2												2
	인터넷 여수신문	1	1												1
	인터넷 옥천신문	2	2							1		1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6	6							4					2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2	2												2
	인터넷 울산신문	2	2							2					
	인터넷 월간 프레지던트	1	1							1					
	인터넷 위클리서울	2	2												2
	인터넷 위클리오늘	2	2								2				
	인터넷 이데일리	18	16	2						4	2		2		10
	인터넷 이지경제	2	2								2				
	인터넷 인천일보	12	12							2	4	1	1		4
	인터넷 일간경기	5	5							1		1			3
	인터넷 일간경인	1		1											1
	인터넷 일간스포츠	1		1									1		
	인터넷 일간투데이	7	7							3					4
	인터넷 일요서울	8	8							1	2				5
	인터넷 일요시사	16	16							7	2				7
	인터넷 일요신문	18	18								6	4			8
	인터넷 전국아파트신문	1	1												1
	인터넷 전남일보	2	2												2
	인터넷 전남저널	2	2							2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4	4							4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	2							1					1
	인터넷 제주신보 (제주新보)	3	2					1		2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제주일보	2	2							2					
	인터넷 종교와진리	2	2								2				
	인터넷 종로신문	2	2								2				
	인터넷 주간 한국증권신문	3	3							1					2
	인터넷 주간경향	4	4								3				1
	인터넷 주간동아	2	2									2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2	2									2			
	인터넷 주간현대	2	2												2
	인터넷 중부광역신문	2	2												2
	인터넷 중부매일	2	2							1					1
	인터넷 중부일보	15	14						1	6	2	1	1		5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1	1										1		
	인터넷 중앙Sunday	1	1												1
	인터넷 진도투데이	3	3							3					
	인터넷 창원일보	1	1												1
	인터넷 청년의사	2	2							2					
	인터넷 축산경제	1	1							1					
	인터넷 충북일보	2	2												2
	인터넷 충청타임즈	2	2									2			
	인터넷 충청투데이	7	7							4		2			1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4	4							4					
	인터넷 콩나물신문	1	1											1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4	3	1						2					2
	인터넷 태권도신문	2	2												2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1	11									1			10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2	2												2
	인터넷 팝콘뉴스	2	2												2
	인터넷 평택시민신문	2	2												2
	인터넷 포천뉴스	2	2							2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1	1												1
	인터넷 한겨레	41	40	1						21	6	4	1		9
	인터넷 한겨레21	4	4							4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2	2							2					
	인터넷 한국기독교신문	6	6							6					
	인터넷 한국마케팅신문	2	2												2
	인터넷 한국복지뉴스	3	3												3
	인터넷 한국스포츠통계	2	1				1						1		1
	인터넷 한국일보	28	28							4	11	2	4		7
	인터넷 한라일보	2	2							1					1
	인터넷 한익신문	1	1									1			
	인터넷 함안뉴스	2	2								2				
	인터넷 함양신문	2	2												2
	인터넷 헤럴드경제	28	27				1			3	3	3			19
	인터넷 호남매일	2	2												2
	인터넷 화성저널	2	2							2					
	일간에너지	2	2									2			
	일다	1	1								1				
	일요신문	5	5												5
	전라닷컴	1	1												1
	전자신문 인터넷	7	5	1					1				1	1	5
	제주도민일보	2	2									2			
	제주환경일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신문	제천뉴스저널	2	2									2			
	조선닷컴	43	39	1				3		8	4	10	5		16
	조선비즈닷컴	5	5							1			1	1	2
	조세금융신문	2	2												2
	조세일보	1	1												1
	중기이코노미	2	2							1		1			
	축제뉴스 (페스티벌뉴스)	1	1												1
	충남신문	1						1		1					
	충북인뉴스	2	2												2
	충청뉴스	1	1												1
	컨슈머타임스	3	3							1					2
	케이에스피뉴스 (kspnews)	2	2												2
	코람데오닷컴	2	2												2
	코리아뉴스타임즈 (KoreaNewsTim)	2	2												2
	코리아패션+텍 스뉴스	1	1												1
	코리아플러스	1	1												1
	쿠키뉴스	15	14						1	1			1		13
	크리스찬월드 모니터	2	2							2					
	통일뉴스	3	3									1			2
	통합뉴스	1	1												1
	투데이코리아	1	1							1					
	트래블데일리	1	1								1				
	특급뉴스	2	2												2
	티브이데일리	8	6	1				1			2				6
	파인뉴스	2	2											2	
	포커스뉴스 (focus news)	13	12	1						4	1				8
	폴리뉴스	2	2												2
	프라임경제	11	11							11					
	프런티어타임스	2	2												2
	프레스맨	2	2							1					1
	프레시안	13	13							9		1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프리미엄 조선	1	1												1
	한강타임즈	2	2												2
	한경닷컴	10	9				1			4			1		5
	한경플러스	1	1							1					
	한국NGO	2	2												2
	한국공보뉴스	1	1												1
	한국금융	1	1												1
	한인협	7	7							2					5
	함양뉴스 (인터넷 주간함양)	1	1										1		
	허핑턴 포스트코리아 (The Huffington Post)	5	5							4					1
	헤럴드POP	2	2												2
	현대중교 뉴스서비스	4	4									3			1
	호남뉴스24	1	1											1	
	호남타임즈	2	2							1					1
	호남투데이뉴스	2	2							2					
	충천뉴스투데이	1	1							1					
	화이트페이퍼	1	1												1
	소계	1,661	1,594	18			4	32	7	6	498	157	175	49	771
인 터 넷 뉴 스 서 비 스	Bing	1	1												1
	iKNN	10	10							1					9
	iMBC	23	19	4						4	4	10	3		2
	KBS미디어	45	38	3		1	3			6	1	9			29
	SBS콘텐츠허브	46	40	2		1	1	1	1	15	3	5			23
	wow한국경제TV	4	4												4
	구글	1	1												1
	네이버	13	13							2		1	3		7
	네이트	3	3												3
	뉴스아이즈	2	2												2
	다음	9	9									1	3		5
	소비라이프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BBS불교방송	7	7												7
	인터넷 CJ헬로비전	1	1												1
	인터넷 CTS기독교TV	4	4								4				
	인터넷 KBC	3	3							2					1
	인터넷 MBC경남 (진주,창원)	3	1					2				2			1
	인터넷 OBS경인TV	2	2									2			
	인터넷 SBSsports	2	2												2
	인터넷 TBS	6	6												6
	인터넷 tvN	1	1												1
	인터넷 TV조선	25	22	2				1		8	5	4			8
	인터넷 경기방송	2	2												2
	인터넷 광주BBS 불교방송	2	2												2
	인터넷 서경방송	1	1												1
	인터넷 여수MBC	6	6							4			2		
	인터넷 연합뉴스TV	12	11					1		2					10
	인터넷울산 MBC-TV	1	1												1
	인터넷채널A	24	19	2			1	2		9	3	3			9
	인터넷 티브로드 경기뉴스	2	2												2
	인터넷 평화방송	1	1												1
	인터넷 현대HCN 충북방송	3	2	1											3
	인터넷 JTBC	14	14							3	1	4			6
	인터넷 MBN	24	22					1	1	4	6	2			12
	인터넷 YTN	26	23				1	1	1	5	2	1			18
	소계	330	296	14			4	4	9	3	65	29	44	11	181
기타	미디어오늘 팟캐스트 (미오캣)	2	2								2				
	소계	2	2								2				
계		3,170	2,972	81			19	51	33	14	961	300	416	108	1,366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중 경향신문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서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각 22건, 동아일보 20건, 조선일보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높았던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조정불성립결정률이 높았다.

지역일간지는 국제신문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일간지는 한국경제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은 중앙방송(170건), 종합편성채널(120건), 케이블TV(51건), 지방방송(49건), 지역민방(2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송 중 MBC-TV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BS-TV 54건, KBS-TV 48건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은 채널A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TV조선이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48건으로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청구 건수를 기록한 JTBC는 2016년 청구 건수가 28건에 그쳤다. 케이블TV는 보도전문채널 YTN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을 비교할 때 아직은 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청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정성립률은 종합편성채널이 33.3%로 중앙방송(29.4%)보다 높고,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종합편성 채널이 17.5%로 중앙방송(24.1%)보다 낮았다. 또 중앙방송 중 MBC-TV는 조정불성립결정률이 43.1%로 가장 높았고, 종합편성채널 중 JTBC가 조정불성립결정률이 28.6%로 가장 높았다. 채널 A의 조정성립률은 37.1%로 가장 높았다.

뉴스통신은 연합뉴스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1코리아 38건, 뉴시스 37건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의 경우 취하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특수주간신문 중 미디어오늘이 4건, 시사주간지는 시사저널이 8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

인터넷신문은 동아닷컴(31건), 세계닷컴(25건), 아시아경제닷컴(43건), 온라인 중앙일보(30건), 인터넷 경향신문(70건), 인터넷 국민일보(35건), 인터넷 한겨레(41건), 인터넷 한국일보(28건), 조선닷컴(43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KBS미디어(45건), SBS콘텐츠허브(46건), 인터넷 TV조선(25건), 인터넷 채널A(24건) 등 지면이나 방송으로 기사를 공유하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를 상대로 한 청구 건수가 많았다. 인터넷으로만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 중에는 e뉴조(12건), 노컷뉴스(35건), 오마이뉴스(17건) 등이 높은 청구 건수를 보였다.

포털사이트는 네이버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3건을 기록했고,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은 다소 건수가 줄었다. 아울러 위원회 최초로 뉴스보도로 인정한 팟캐스트를 2건 접수해 처리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서울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은 2015년의 77.4%보다 다소 하락한 71.6%를 기록했다. 지역중재부의 피해구제율도 2015년의 79.8%에서 5.7% 하락한 74.1%로 나타났다. 서울중재부에 한하면 서울제6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이 82.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제7중재부 77.3%, 서울제8중재부 75.1%, 서울제5중재부 72.9% 등의 순이었다. 지역중재부는 광주중재부와 강원중재부가 동일하게 100.0%로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특히 광주중재부가 2년 연속 100.0%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대구중재부 79.5%, 전북중재부 74.1%, 경기중재부와 경남중재부가 6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강원중재부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광주(65.6%), 대구(47.9%), 전북(38.2%), 충북(38.0%) 중재부 등의 순이었다. 서울중재부의 전체 사건 조정성립률은 26.5%로 나타났다. 2015년의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조정성립률(24.3%)과 비교하면 2.2% 상승한 것이다.

표 2-10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4	서울1	2,014	73	19		6		21	2	1,893	(1,846)	97.3	
	서울2	251	77	18	13	33	(1)	3	1	106	(80)	71.3	
	서울3	354	109	21	16	74				134	(102)	65.5	
	서울4	396	132	18	54	12			29	151	(137)	78.2	
	서울5	2,201	145	18	20	453	(7)	19	34	1,512	(1,492)	77.4	
	서울6	2,586	76	3	4	50		1	1	2,451	(2,381)	95.2	
	서울7	7,243	64	7	1	27		1		7,143	(7,061)	98.5	
	서울8	2,705	102	21	14	(3)	267	(8)	55	3	2,243	(1,807)	73.3
	소 계	17,750	778	125	122	(3)	922	(16)	100	70	15,633	(14,906)	90.0
	부산	138	54				4				80	(51)	76.1
대구	113	32				11			1	69	(60)	82.1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의										
2014	광주	83	29				23				3	28	(14)	53.8		
	대전	96	46	4								46	(30)	83.3		
	경기	548	118				55		2			373	(270)	71.		
	강원	16	4				4					8	(8)	75.0		
	충북	71	22				9					40	(36)	81.7		
	전북	53	15	2			8		4			24	(12)	59.2		
	경남	150	48				68			2		32	(21)	46.6		
	제주	30	10	2			1					17	(12)	80.0		
	소 계	1,298	378	8			183		6	6		717	(514)	70.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서울1	554	84	50	23	(2)	58		45	4	290	(271)	80.6			
	서울2	232	54	16	12		42		11		97	(67)	62.0			
	서울3	311	61		9		68		51	6	116	(78)	54.7			
	서울4	353	43	17	12		37		70		174	(152)	74.9			
	서울5	455	74	39	20		192	(2)	2	4	124	(104)	48.8			
	서울6	543	68	7			69		5		394	(362)	81.2			
	서울7	1,115	84	7	3		29		19	1	972	(938)	94.0			
	서울8	662	114	37	11		88		104	2	306	(288)	79.0			
	소 계	4,225	582	173	90	(2)	583	(2)	307	17	2,473	(2,260)	77.4			
	부산	78	18				7	(2)				53	(41)	78.2		
	대구	80	17				15					48	(41)	72.5		
	광주	214	115	28					8	7		56	(56)	100.0		
	대전	84	25	2			4					53	(45)	85.7		
	경기	259	89	7	5		20		4	4	130	(111)	82.5			
	강원	42	18				4					20	(20)	90.5		
	충북	71	26				29			2	14	(14)	58.0			
	전북	78	28	6			8		2	2	32	(23)	77.0			
	경남	62	15				32		1			14	(13)	45.9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이								의	의		
2105	제주	34	7	2	6		8				11	(9)	52.9			
	소 계	1,002	358	45	11		127		15	15	431	(373)	79.8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2106	서울1	328	80	38	37		12		29	1	131	(55)	58.1			
	서울2	233	63	33	10		47		6	1	73	(60)	69.0			
	서울3	266	83				62		14		107	(88)	67.9			
	서울4	269	36	15	12		38		6		162	(127)	67.7			
	서울5	240	57	54	26		27		4		72	(61)	72.9			
	서울6	368	96	6			49		6	1	210	(195)	82.3			
	서울7	271	100	8	12		36		9	2	104	(93)	77.3			
	서울8	291	86	7	3		37		6		152	(121)	75.1			
	소 계	2,266	601	161	100		308		80	5	1,011	(800)	71.6			
	부산	110	19	2			3	(3)			86	(48)	65.5			
	대구	73	35				8				30	(23)	79.5			
	광주	163	107						14	4	38	(38)	100.0			
	대전	66	23				18				25	(19)	63.6			
	경기	183	60	13	2		33		7	2	66	(48)	69.5			
	강원	15	11						2		2	(2)	100.0			
	충북	50	19				8	(2)			23	(10)	62.0			
	전북	55	21				2		1		31	(19)	74.1			
	경남	145	53	3	16	(4)	24		4		45	(38)	69.5			
	제주	44	12	3			12			8	9	(4)	52.8			
	소 계	904	360	21	18	(4)	108	(5)	28	14	355	(249)	74.1			
	계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366	(1,049)	72.3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2016년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1,069건으로 전체 조정청구 건수 대비 33.7%를 차지했다. 2010년 이래 매년 30%대를 유지하던 손해배상청구건의 비율이 2015년 최초로 20%대로 떨어졌다가 30%대로 다시 상승한 것이다. 2011년(37.8%)부터 2015년(29.8%)까지 4년 연속 감소세에 있던 손해배상청구건 비율이 반등한 것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성립 30.4%, 직권조정결정 9.5%, 조정불성립결정 13.5%, 취하 42.9%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조정성립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했으나 피해구제율은 별 차이가 없었다.

2016년 손해배상청구 1,069건 가운데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70건으로 6.5%에 불과하지만 금전배상 외 피해구제 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져 30.4%라는 높은 조정성립 결과가 나왔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전체 조정 청구건수	손해배상 청구건수
2014		19,048	5,725 (30.1)
2015		5,227	1,560 (29.8)
2016		3,170	1,069 (33.7)

* () 안의 숫자는 %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1] (0.9)	414[7] (7.2)	80 (1.4)	36 (0.6)	4,709 [4,350] (82.3)	85.5
2015		1,560 (100)	269 (17.2)	94 (6.0)	39[1] (2.5)	245[2] (15.7)	210 (13.5)	11 (0.7)	692 [612] (44.4)	73.0
2016		1,069 (100)	325 (30.4)	66 (6.2)	35[2] (3.3)	144 (13.5)	35 (3.3)	5 (0.5)	459 [359] (42.9)	73.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6년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약 11,311만 원으로 2015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015년 손해배상 청구 평균액에 비해 액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손해배상청구 최저액은 10만 원이고, 중앙액은 2천만 원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동일했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분포한다. 중앙액은 1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동일했다. 평균액은 약 220만 원으로 3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4. 1. 1. ~ 2016. 12. 31. 단위 : 원)

구분 연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2015	2	60,000,000,000	129,582,591	20,000,000
2016	100,000	10,786,381,412	113,115,649	2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4. 1. 1. ~ 2016. 12. 31. 단위 :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2015		500,000	4,000,000	1,602,000	1,000,000
2016		10,000	30,000,000	2,235,000	1,000,000

표 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합계
2014		43 (38.4)	32 (28.6)	27 (24.1)	8 (7.1)	2 (1.8)	112 (100.0)
2015		23 (23.0)	28 (28.0)	49 (49.0)	-	-	100 (100.0)
2016		15 (21.4)	32 (45.7)	15 (21.4)	7 (10.0)	1 (1.4)	70 (100.0)

* ()안의 숫자는 %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은 최고 3천만 원, 최저 1만 원, 평균 약 265만 원으로 침해 법의 유형 중 가장 큰 평균 조정액을 보였다. 초상권 침해는 최고 75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약 212만 원, 사생활 침해는 최고 250만 원, 최저 75만 원, 평균 약 143만 원이었다. 또 재산상 손해는 최고 200만 원, 최저 100만 원, 평균 약 133만 원이었다. 2015년 음성권 침해가 최고 3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175만 원, 성명권 침해 한 건이 150만 원으로 조정된 바 있으나, 2016년은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었다.

• [손해배상사례 1]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D방송사는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신청인들이 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보도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었음에도 신청인들의 혐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D방송사는 신청인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액 8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손해배상사례 2]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E언론사는 신청인들이 생활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취재나 방송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주제와 관계없는 신청인들의 개인사를 무단으로 보도하여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과 함께 손해배상액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3-6 2016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6. 1. 1. ~ 2016. 12. 31. 단위 : 원)

침해유형	조정액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38	10,000	30,000,000	2,653,000	1,000,000	1,000,000
초상권침해	16	500,000	7,500,000	2,125,000	1,500,000	500,000
사생활침해	8	750,000	2,500,000	1,438,000	1,375,000	750,000
재산상손해	6	1,000,000	2,000,000	1,333,000	1,000,000	1,000,000
기타	2	500,000	1,000,000	750,000	750,000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6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1,069건(100%)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932건(87.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 60건(5.6%), 사생활 침해 43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명예훼손 사건이 취하 387건(41.5%), 조정성립 286건(30.7%), 조정불성립결정 137건(14.7%) 등의 순이었다. 침해 유형 중 초상권 침해 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사생활 침해 사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2.3%로 가장 낮았다.

표 3-7 2016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구 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932 (100)	286 (30.7)	87 (9.3)	137 (14.7)	30 (3.2)	5 (0.5)	387 (41.5)
초상권침해	60 (100)	22 (36.7)	8 (13.3)	4 (6.7)	3 (5.0)		23 (38.3)
사생활 침해	43 (100)	8 (18.6)	2 (4.7)	1 (2.3)			32 (74.4)
재산상 손해	24 (100)	7 (29.2)	4 (16.7)	2 (8.3)	2 (8.3)		9 (37.5)
기타	10 (100)	2 (20.0)					8 (80.0)
계	1,069 (100)	325 (30.4)	101 (9.4)	144 (13.5)	35 (3.3)	5 (0.5)	459 (42.9)

*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7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단체가 113건으로 전체 단체 중 가장 많이 청구했는데, 2015년 종교단체가 355건을 신청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세월호 참사 관련 대량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업체 92건, 종교단체 42건, 교육기관 25건, 언론사 14건, 지자체 13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 신청은 취하가 360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206건(27.5%), 조정불성립결정 75건 (10.0%), 직권조정결정 74건(9.9%), 기각 28건(3.7%) 등의 순이었다.

일반단체는 취하가 3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과 조정불성립결정이 각각 33건(29.2%)으로 동일했다. 국가기관이 1건을 신청한 바 있지만 취하로 마무리했다.

표 3-8 2016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6. 1. 1. ~ 2016. 12. 31.)

신청인 유형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개인		748 (100)	206 (27.5)	74 (9.9)	75 (10.0)	28 (3.7)	5 (0.7)
국가기관		1 (100)					1 (100.0)
지자체		13 (100)	8 (61.5)		1 (7.7)		4 (30.8)
공공단체		21 (100)	2 (9.5)		7 (33.3)		12 (57.1)
일반단체		113 (100)	33 (29.2)	7 (6.2)	33 (29.2)	6 (5.3)	34 (30.1)
종교단체		42 (100)	24 (57.1)	7 (16.7)	5 (11.9)	1 (2.4)	5 (11.9)
기업체		92 (100)	35 (38.0)	6 (6.5)	15 (16.3)		36 (39.1)
언론사		14 (100)	9 (64.3)		3 (21.4)		2 (14.3)
교육기관		25 (100)	8 (32.0)	7 (28.0)	5 (20.0)		5 (20.0)
계		1,069 (100)	325 (30.4)	101 (9.4)	144 (13.5)	35 (3.3)	5 (0.5)

* () 안의 숫자는 %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는 모든 매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16년 전체 청구사건 중 52.4%인 1,661건이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으로 2015년에 비해 청구 건수는 줄었으나 전체 청구사건에서 차지한 비율은 증가했다. 2015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량사건을 제외한 사건수가 1,766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한 점을 볼 때 2015년과 2016년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사건의 수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하다.

인터넷신문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46.4%(771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조정성립 30.0%(498건), 조정불성립결정 10.5%(175건)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2015년보다 다소 하락한 77.5%를 기록했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8,436 (100)	665 (7.9)	60 (0.7)	77 [3] (0.9)	473 [4] (5.6)	45 (0.5)	52 (0.6)	7,064 [6,799] (83.7)	90.3
2015	2,490 (100)	482 (19.4)	91 (3.7)	55 [2] (2.2)	306 [4] (12.3)	108 (4.3)	21 (0.8)	1,427 [1,293] (57.3)	79.3
2016	1,661 (100)	498 (30.0)	88 (5.3)	69 [2] (4.2)	175 [1] (10.5)	49 (3.0)	11 (0.7)	771 [652] (46.4)	77.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신청 건수는 2011년 510건을 기점으로 2012년 454건, 2013년 369건 등 3년 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 4,171건을 기록했으나 2015년 799건으로 다시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은 2015년 신청 건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16년도에는 대량사건이 접수되지 않은데다,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21.9%를 기록한 전체 사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조정신청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5.3%로 낮아진 데 이어 2016년에는 10.4%에 머무는 데 그쳤다.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만 두고 봤을 때 전체 사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조정 신청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8.9%, 2013년 15.2%, 2014년의 14.8%, 2015년 11.2%로 감소세에 있다. 이것은 아웃링크 기사의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도 자동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신청인이 아웃링크 기사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에 실익이 없다고 여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인링크 기사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181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 65건(19.7%), 조정불성립결정 44건(13.3%), 직권조정결정 29건(8.8%)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율은 2016년 67.7%를 기록했다.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4,177 (100)	100 (2.4)	29 (0.7)	10 (0.2)	209 [7] (5.0)	12 (0.3)	15 (0.4)	3,802 [3,481] (91.0)	87.2
2015	799 (100)	63 (7.9)	45 (5.6)	8 (1.0)	99 (12.4)	110 (13.8)		474 [444] (59.3)	80.1
2016	330 (100)	65 (19.7)	20 (6.1)	9 (2.7)	44 (13.3)	11 (3.3)		181 [131] (54.8)	67.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중재는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분쟁과 관련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부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절차이다. 2005년 중재제도 도입 이후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10건으로 청구 자체는 미진했다.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포털, IPTV 등이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중재사건 청구 건수는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으로 이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중재신청은 2014년 11건, 2015년 26건, 2016년 13건으로 10여 건에 불과하였다.

중재사건이 조정사건과 달리 처리 건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언론분쟁의 특성에 그 까닭이 있다. 일반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나,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사전에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어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또 과거 기사제공언론사 조정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된 때에 동일한 기사를 매개한 포털을 대상으로 중재사건이 이어졌는데, 최근 조정결과를 포털에 그대로 반영하는 추세에 따라 신청인이 별도로 포털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중재사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최근 3년 간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2014년과 2015년은 모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중재사건이었던 것과 달리 2016년은 총 13건 중 4건이 재산상 손해였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4		11	11							
2015		26	26							
2016		13	9						4	

2. 청구권별 현황

2016년 중재사건의 청구권별 신청 현황을 보면 추후보도가 5건(38.5%)이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각각 4건(30.8%)이었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4		정정	11	8				3
		반론						
		추후						
		손배						
		계	11	8				3
2015		정정	11	11				
		반론	7	7				
		추후	6	6				
		손배	2	2				
		계	26	26				
2016		정정	4	4				
		반론	4	4				
		추후	5	5				
		손배						
		계	13	13				

3. 매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매체 유형별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9건(69.2%), 신문·잡지 4건(30.8%)의 순이었다. 한편 처리결과는 모두 중재결정이었다.

표 6-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14. 1. 1. ~ 2016.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 문	뉴스 통신	방 송	잡 지
2014	11	10	1				
2015	26	1	15	5	1	4	
2016	13		9	4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6년 위원회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12건으로 2015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고 2014년 수치에 근접했다. 2014년 특정 기관이 한 매체를 상대로 다량의 조정청구를 했고, 그 가운데 40건이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2016년 자동소제기 건수는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소제기된 112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1심 재판 결과 인용되거나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성립된 사건이 16건, 취하된 사건이 11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78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14	119	60	10	48	1	9	62	48	26	27	23	43
2015	99	47	12	38	2	39	51	9	33	34	25	7
2016	112	62	14	31	5	54	33	25	16	11	7	78
계	330	169	36	117	8	102	146	82	75	72	55	128

※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성립은 인용에 포함하였음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21건, 지역주간지와 종합편성채널이 각 6건 등의 순을 나타냈다.

매체별로는 경향신문과 인터넷 경향신문이 각 14건, 12건으로 자동소제기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다량의 기획기사에 특정 기관의 조정신청이 자동소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겨레와 채널A가 4건의 자동소제기 건수를 기록했다.

표 7-2 2016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2014. 1. 1. ~ 2016.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건 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 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14	11	1	2		1	3		10	1				13
	문화일보	1	1				1							1	
	아시아경제	1	1				1								1
	한겨레	4	2	1	1			4							4
	한국일보	1		1				1						1	
지역 일간지	경남도민일보	2	1	1			2								2
	영남매일	1	1					1							1
지역 주간지	남해시대	2	1		1		2								2
	종로신문	2	1		1			2		2					
	함안뉴스	2	1		1		2				2				
주간지	일요시사	2	1	1			2								2
	일요신문	3	1	1	1		3								3
중앙 방송	KBS-1TV	1	1				1							1	
	MBC	2	1	1				1		1	1				1
종합 편성 채널	채널A	4	2		2		4								4
	TV조선	2	1		1			2			2				
인터넷 신문	경남도민뉴스	1		1				1							1
	기독일보시디엔	2	1		1			2			2				
	남해타임즈	2	1		1		2								2
	노컷뉴스	2	1		1			2		2					
	뉴데일리경제	2	1		1		2								2
	뉴스타운	2	1		1			2							2
	뉴스타파	1	1					1							1
	동아닷컴	2			1	1	2								2
	수도권의양신문	2		1	1			2							2
	아시아경제 닷컴	1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12	12				1			11	1				11

매체 유형	매체명	건 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 결과				
			정 정	반 론	손 배	추 후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	1	1			2								2
	인터넷 국민일보	2	1		1			2							2
	인터넷 김해뉴스	1	1				1					1			
	인터넷 문화일보	3	1		1	1	3							1	2
	인터넷 법보신문	4	1	1	2		2			2	2			2	
	인터넷 TV조선	2	1		1			2				2			
	인터넷 영남매일	1	1					1							1
	인터넷 일요서울	2			1	1	2								2
	인터넷 일요시사	2	1	1			2								2
	인터넷 종로신문	2	1		1			2			2				
	인터넷 채널A	2	1		1		2								2
	인터넷 함안뉴스	2	1		1		2					2			
	인터넷 한겨레	3	1		1	1	2	1			2				1
	인터넷 한국일보	1		1				1						1	
	인터넷 헤럴드경제	2			1	1	2				2				
	일요신문i	3	1	1	1		3								3
	조선닷컴	2	1		1		2								2
인터넷 뉴스 서비스	iMBC	1	1							1	1				
	인터넷 MBN	2	1		1		2								2
계		112	62	14	31	5	54	33		25	16	11		7	78

제8장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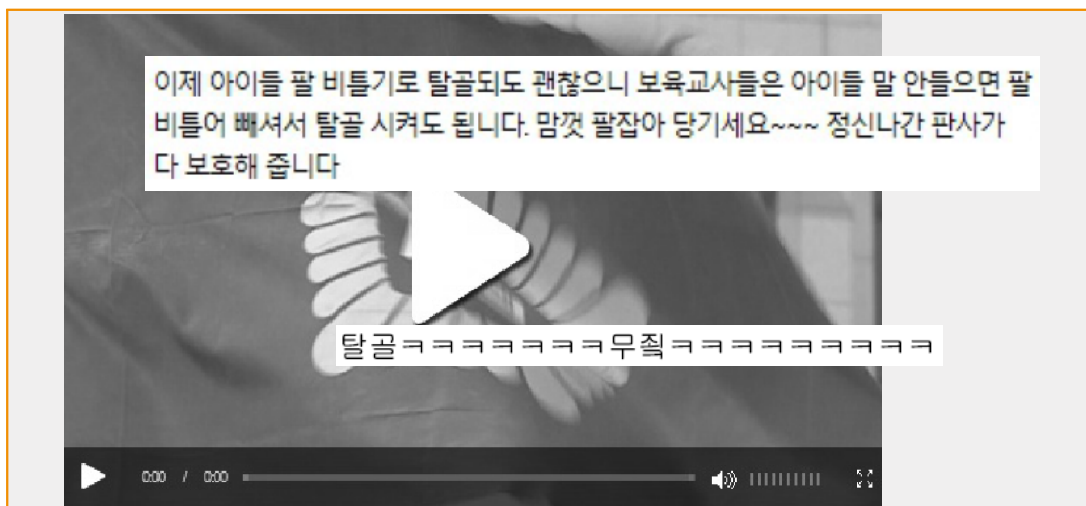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뉴스의 생산과정이나 소비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뉴스는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신속히 전파되고 있어 일부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타 매체에 복제된 기사, 댓글 등을 조정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피해구제를 위한 합의 의사가 있을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이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를 호소할 때 조정과정에서 인터넷 기사의 노출 및 검색 차단, 기사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정보통신망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실무처리 지침을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법률을 보완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 [사례]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1



G언론사는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원아의 팔꿈치를 고의적으로 탈구시킨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하였고, 이에 대한 댓글이 게재되어 신청인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심리결과 G언론사가 단정적인 표현을 기사에서 수정하고 댓글이 노출 및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례]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2

H언론사는 특정 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업계 관계자인 신청인이 발언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 및 보도하였고, 이 영상은 언론사 측 페이스북 및 포털을 통해 확산되었다.

심리결과 H언론사가 자체 웹사이트 및 페이스북에 게시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포털로 복제·전파된 영상 삭제에 협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표 1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981. 3. 31.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파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동의	이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1981	44	9			12(5)	1	2	20(2)
1982	50	19			19(5)		2	10(4)
1983	71	21			22(7)	1	1	26(8)
1984	54	12			29(8)	3		10(5)
1985	59	12			28(5)	4		15(7)
1986	49	14			10(2)	1		24(11)
1987	47	10			9(4)	1		27(2)
1988	55	16			12(5)		1	26(13)
1989	121	29			35(10)		6	51(21)
1990	159	42			43(10)	1	2	71(40)
1991	220	52			48(9)	3	1	116(43)
1992	381	81			79(12)	19		202(107)
1993	423	132			96(16)	8	2	185(84)
1994	541	162			127(10)	7		245(128)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1999	641	244	11	18(2)	102(17)	24	5	237(92)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15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101)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158)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148)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283(160)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250)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7	1,043	359	22	32(2)	194(5)	42	6	388(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237)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361)	73.9
2010	2,205	630	109	40(2)	157(5)	137	1	1,131(891)	79.2
2011	2,124	725	65	40(3)	285	44	14	951(680)	71.3
2012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71.5
2013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7.6
2014	19,048	1,156	133	122(3)	1,105(16)	106	76	16,350(15,420)	88.7
2015	5,227	940	218	101(2)	710(4)	322	32	2,904(2,633)	77.9
2016	3,170	961	182	118(4)	416(5)	108	19	1,366(1,049)	72.3
계	50,499	10,783	1,152	812(43)	5,876(326)	1,343	241	30,292(25,347)	77.0
	100%	21.4%	2.3%	1.6%	11.6%	2.7%	0.5%	60.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중재

(2005. 7. 28. ~ 2016.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5	0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2015	26	26				
2016	13	13				
계	631	573	48	1		9
	100%	90.8%	7.6%	0.2%		1.4%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 사항을 심의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제도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위원회는 2016년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두 차례 개정하였다. 첫째로 사회적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해 성별을 포함한 인종·종교·질병·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최근 제·개정된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표금지기준의 예외 요건 조항을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심의기준을 적용해 시정권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언론보도로 인한 다양한 법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위원회는 인터넷신문 등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2016년 심의대상 인터넷신문 매체수를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심의모니터링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 재택모니터 대신 상근 시정권고 전문 심의원 8명을 채용해 사무처 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인터넷신문 등을 중점 모니터링했다.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2,200여 개 매체를 심의해 전년도 438건보다 474건 증가한 912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 유형별로는 고소·고발 보도, 북한 이탈 주민 신원공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건수가 2015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시정권고를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고소·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고소·고발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시정을 권고한 건수가 262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시정권고(173건, 19.0%)와 개인의 사생활 및 초상, 성명 등 인격권 침해 보도에 관한 시정권고(134건, 14.7%)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단순 고소·고발 보도 시정권고 건수가 많은 것은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유명 연예인의 성적 문제 등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225개 매체에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독자는 피고소인인 연예인이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 간 시정권고 침해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마약 및 약물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6년에 28건으로 전년(135건)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반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6년 43건으로 2015년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 2016년에 북한 이탈주민의 신원을 공개한 75개 매체에 시정을 권고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주민 신원 공개	재난 보도	음란·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총격 혐오 감	성 관련 보도	여론 조사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9 (3.0)	51 (16.9)	73 (24.2)	75 (24.8)	13 (4.3)	4 (1.3)	2 (0.7)	
2015	438 (100)	92 (21.0)	5 (1.1)		1 (0.2)		10 (2.3)				16 (3.7)	62 (14.2)	135 (30.8)	14 (3.2)	8 (1.8)		95 (21.7)
2016	912 (100)	134 (14.7)	43 (4.7)	4 (0.4)	262 (28.7)	20 (2.2)	4 (0.4)	75 (8.2)		4 (0.4)	22 (2.4)	124 (13.6)	28 (3.1)	14 (1.5)	5 (0.5)		173 (19.0)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16년 시정권고결정 912건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인터넷신문이 698건(7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간지 117건(12.8%), 뉴스통신 69건(7.6%), 방송 17건(1.9%), 주간지 8건(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4. 1. 1. ~ 2016. 12. 31.)

연도	구분	총 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178 (58.9)
2015		438 (100)	35 (8.0)	49 (11.2)	10 (2.3)	3 (0.7)	44 (10.0)	297 (67.8)
2016		912 (100)	54 (5.9)	63 (6.9)	8 (0.9)	3 (0.3)	69 (7.6)	698 (76.5)
								17 (1.9)

* () 안의 숫자는 %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시정권고 비중은 2014년 58.9%, 2015년 67.8%, 2016년 76.5%로 시정권고 건수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다.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시정권고 건수가 많은 것은 2016년에 심의대상 인터넷신문을 기존 1,00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 보도에 대해서도 17건을 시정권고했다. 자살 방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11건), 연예인 사생활 침해 보도(3건), 단순 고소·고발 사건 보도, 북한 이탈주민 신원공개 보도, 범죄수법 묘사 보도(각 1건)에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표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6. 12. 31.)

연도	구분 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발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탈주 신원 공개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성 관련 보도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공중 덕 및 사회 윤리 침해	기타	
1981																				
1982																				
1983	3																		3	
1984																				
1985																				
1986	3	3																		
1987	6	4				2														
1988	37	16	3			9													9	
1989	180	36	92			52														
1990	311	67	169	12		63														
1991	264	34	140	16		70						1							3	
1992	390	34	227	3		123													3	
1993	344	10	228			106														
1994	204	7	132			58						7								
1995	282		131			29						121							1	
1996	310	11	122	22		26	8				4	117								
1997	469	2	76	182		21	78					109							1	
1998	348		29	151		16	14				1	137								
1999	240		20	126		17	11					66								
2000	234	2	8	67		54	6					97								
2001	231	1	9	70		22	10					119								
2002	142	1		88		9						44								

연도	구분 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등 침해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민 신원 공개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성 관련 보도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중도 및 사회리 치침해	기타	
2003	237	2	41	153		13	1					20							7	
2004	283	2	114	68		7	1					21	52						18	
2005	278	10	88	24		11						85	47					12	1	
2006	190	3	68	23		4	2				6	73	10						1	
2007	202	14	80	21		1	2					44	30	7					3	
2008	289	30	48	8		4					62	97	27	4	7				2	
2009	253	14	98	6			1				2	93		2		2			35	
2010	284	10	49	2		2					17	199	4			1				
2011	426	36	100			2					4	189	95							
2012	259	5	40			5	3				40	49	116						1	
2013	289	23	35				1				31	78	89	32						
2014	302	25	16			5			29	9	51	73	75	13	4	2				
2015	438	92	5		1		10				16	62	135	14	8		95			
2016	912	134	43	4	262	20	4	75		4	22	124	28	14	5		173			
계	8,640	628	2,211	1,046	263	751	152	75	29	13	251	1,192	1,546	86	24	5	268	12	88	0
(%)	100%	7.3%	25.6%	12.1%	3.0%	8.7%	1.8%	0.9%	0.3%	0.2%	2.9%	13.8%	17.9%	1.0%	0.3%	0.1%	3.1%	0.1%	1.0%	0.0%





제 2 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 사례



제1장 정정보도 사례

▶ 사례1

유명 제과회사가 특정 업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을 추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52·95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제과식품 주식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뉴스타운 (뉴스타운)
중 재 부	서울 제1중재부
접 수 일	2016. 6. 30.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손해배상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제과식품이 ○○제과의 상호, 역사, 연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 추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2016. 2. 2.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27회에 걸쳐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적법한 영업양도 계약에 의해 구 ○○제과의 상표권 일체를 양수받았고, 주식상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상표권 양수를 확인하고,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악의성이 있다며,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해당 기사에 부적법한 내용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뉴스타운 - 『○○제과 상장에 전국이 들썩 “뭔 일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경제/IT면) 외 26건

■ 내 용

형태적으로 실물 ○○제과 주식은 있는데 회계(재무제표)상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에나 나올 해괴망칙한 일일까? “영터리로 회계 처리한 잘못? 아님 정부기관, 채권단, ○○제과 원소유주, ○○제과식품이 짜고 치는 국민 대사기극?” 여하튼 이상야릇한 사건이 터졌다. 국내 유일의 해괴한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내노라”하는 회계전문가가 분석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다.

바로 1945년 국민의 기업으로 설립돼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제과의 경우다.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제과식품(주)(대표 신△△)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에 ‘유가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됐다.

“○○제과식품은 2001년 7월 □□□ 컨소시엄이 출자한 ○○제과식품제조(주)가 1945년 설립된 ○○제과주식회사의 제과사업부분을 양수하여 설립됐고 이를 2001. 11월 상호 변경한 회사”라며 신규상장을 표방하고 나선 것. 그러자 ○○제과주식회사 실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제과주권회복위원회’란 단체를 결성해 “○○제과식품의 단독상장은 불가하다”며 한국거래소에 25일 진정서를 접수했다.

‘○○제과주권회복위원회’에 의하면 “전국에 산재한 우리 ○○제과 주주들은 정부, 채권단, 법원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우리가 매수한 ○○제과 주식이 ○○제과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냐?”며 “우리 ○○제과주주들의 잘못이라면 1999년 출자 전환된 ○○제과주식을 매수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들에 의하면 아시안 월-스트리트는 2001. 7. 3 기사에서 “○○제과 채권단은 □□□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제과 지배지분을 4,800억원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매각당시 ○○제과 주식은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이 전부였고 그중 지배지분이라면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의 51%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바로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으로 그 51%에 해당하는 주식이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등은 “서류상 양도나 자산매각이니 하지만 회사의 상호와 연혁을 모두 넘겼다는 것은 지분매각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가 보유한 실물주식을 회수해 감자나 소각한 바가 없으니 우리가 가진 이대로를 ○○제과식품 주식 신주로 교환해 상장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2001. 7. 11설립했으나 1945년 설립된 ○○제과를 모두(○○제과의 제과부분 자산 부채 상표권 연혁 등)인수하였다는 ○○제과식품(주)은 1945년부터의 연혁을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2001년도에 □□□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양수도나 자산매각이 아닌

‘외자유치’로 표시하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양수도나 자산매각으로 회사의 연혁 등을 매도한 사례(판례)가 있는지? 지분매각이든 외자유치든 “자산=자본+부채” 공식에 의해 자본 즉 주식이 존재해야한다는 ‘대차평형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회계전문가들이 바빠졌다. 만약 ‘○○제과주권회복위원회’의 주장이 옳다면 ○○제과식품(주)측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허위(?)가 된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타운(www.newstown.co.kr)의 홈페이지 메인 초기화면의 중앙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한다.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제과 신규 상장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과식품이 “○○제과” 상호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제과식품이 2001년 7월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제과식품은 “○○제과”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이러한 상호 사용이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 ○○제과 잔존법인은 2001년 지난 상장 폐지 후 청산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으로 ○○제과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법적으로 ○○제과식품의 신규 상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언론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악의적 자극적인 표현으로 ○○제과식품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뉴스타운 홈페이지 경제/IT면 중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홈페이지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11.

[별지]

- 가. 제목 : “○○제과”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과 식품이 “○○제과” 상호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제과식품은 “○○제과”의 상표권자이자 영업양수인으로서 적법하게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장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례2

신청인이 작곡한 곡이 성의 없고 질 낮은 음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87·988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배○○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인터넷 경향신문)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7. 6.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음원 어뷰징 문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작곡한 음원을 한 사례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어뷰징과 무관하고 음원 수익도 많지 않다고 정정보도 및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 중 “성의 없고 질이 낮다”는 표현은 기자의 주관적 평가이나, 신청인이 어뷰징 음원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권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 『이런 모습 ‘ 짝퉁 음원 ’ ... 돈도 귀도 버렸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연예면)

■ 내 용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음원 사이트에서 ‘겨울왕국’을 입력한 뒤 목록 맨 위에 뜨는 곡을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곡은 엉뚱한 경음악이었다. 자세히 보니 앨범 재킷부터 영화 <겨울왕국>과는 상관없는 음원이었다. 아티스트는 ‘펀치펀치’. 수록곡 목록도 ‘겨울왕국 윈터’, ‘겨울왕국 피아노’, ‘겨울왕국 비트’ 등의 3곡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으며 오히려 오리지널 영화 OST보다 더 뒷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 곡 모두 전자악기 등에 샘플로 수록돼 있음직한 조악하고 단순한 음악이었다.

A가 경험한 것과 같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음원 사이트 멜론에 ‘별 그대’(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줄임말)를 입력하고 정확도 순으로 배열하면 상단에 뜨는 곡목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는 관련 없는 곡이다. 제목만 ‘별 그대’로 되어 있을 뿐 재킷 디자인이나 아티스트는 완전히 다르다. 음악 역시 단순한 경음악 반주가 반복될 뿐이다.

또 다른 음원 사이트 벅스에 ‘Moonlight’(월광)를 입력해 최신순으로 정렬해 보면 어떨까. 위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B라는 아티스트의 ‘Moonlight’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생각하고 클릭해보면 처음엔 월광 소나타 1악장의 4마디가 반복되는가 싶더니 이내 다른 연주곡과 뒤섞여 장난스럽게 연결된다. ‘월광’의 이름만을 빌린 엉터리곡이다.

최근 주요 음원 사이트에는 이 같은 음원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인기곡이나 유명 콘텐츠의 제목을 붙인, 성의 없고 질 낮은 음원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올리는 ‘음원 어부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음원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할 때 엉터리 음원들이 되레 상위권에 검색되는 경우가 잦다.

관련 업계에서는 2, 3년 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원 어부징을 통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일단 소비자가 음원을 클릭하고 나면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한다. 곡당 사용료는 많지 않지만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양으로 승부하면서 한 달에 수 백만 원씩 수익을 얻는 음원 공급자들이 꽤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을 현혹해 실수로라도 클릭하게끔 만들기 위한 교묘한 방법도 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곡 외에 <수상한 그녀> <비긴어게인> <어벤져스> 등 유명 영화 제목으로 검색할 때 제목만 빌린 엉뚱한 노래들을 꽤 발견할 수 있다.

벅스뮤직 C 그룹장은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음원을 하루에도 수 백개씩 악의적으로 내놓는 업체들이 꽤 있지만 음원 사이트에서 일일이 인위적으로 판단하거나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 같은 음원들이 쌓여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검색을 통해 ‘언어걸리는’ 것을 노리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오리지널 곡이 검색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련업계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형편없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창작물인 데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 전제하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제재 방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음원 어부징이 많은 장르는 뉴에이지나 동요, 국악, 클래식 등이다. 이들 장르는 가요나 팝에 비해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려 유지시키는 것이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어부징이 그만큼 잘 먹힌다는 이야기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D 사무국장은 “음원 사이트를 이용할 때 무턱대고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곡을 클릭할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정확한 곡명, 앨범의 재킷 디자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의 홈페이지 연예면 대중음악면의 기사 목록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이런 몸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홈페이지 연예면 대중음악면에 “이런 몸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라는 제목으로 B의 Moonlight라는 곡을 장난스럽고, 엉터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곡은 2013년 5월 뮤직 비디오로 먼저 제작하여 발표된 곡으로 당시 제작 과정에 40회 이상의 회의와 영상 촬영 당시 20명이 넘는 스텝이 동원된 큰 프로젝트였으며, 해당 음원은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그랜드 피아노로 녹음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이런 어뷰징 현상으로 수 백만 원씩 수익을 얻는 음원공급자 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B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음원 수익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B는 전혀 그런 수익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뷰징을 실제로 하는 음원 공급자와 B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지난 2016년 6월 16일자 홈페이지 연예>대중음악면에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라는 제목으로 B의 ‘Moonlight’라는 곡이 인기곡이나 유명 콘텐츠의 제목을 붙여 클릭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음원 어뷰징’ 곡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B의 ‘Moonlight’는 음원 어뷰징과는 관련이 없는 곡이며, 아티스트 B와 음원 어뷰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한국음악 콘텐츠산업협회, 벅스뮤직 등의 제보를 받고 기사화 한 것으로 확인 결과, 신청인은 ‘음원 어뷰징’으로 수입을 얻은 바 없으며, 보도에서 신청인의 ‘Moonlight’ 곡이 질이 낮고 엉터리라는 부분은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연예>대중음악면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6년 8월 18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경향신문 -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연예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3

뇌물수수 혐의자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93·119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조선방송 (TV조선)
중 재 부	서울 제5중재부
접 수 일	2016. 8. 19.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 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넥슨 김정주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수혐의자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뇌물수수자 중 1인과 동명이인일 뿐, 조정대상보도의 금품수수 사건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심리 전 신청인 사진이 사용된 부분을 편집하여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 게재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 청구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배상금액에 대해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중재부가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TV조선 - 강적들 프로그램 『넥슨 김정주의 꼬리자르기②』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 내 용

▷ 강변호사 : 김정주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신청인 사진 게재)



당시의 LG 부사장하고 넥슨의 감사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동시에 요구했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먼저 줬는데 이게 지금 죄수의 딜레마예요. 일단은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떠한 행위 아닌가?

- ▷ 이준석 : 이건 약간 의견이 ... 강변호사님이 약간 세 명의 주식공여자 가지고 묶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거기 김상현 대표 같은 분들은 업계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쓰리엔이라고 합니다. 넥슨, nhn, 엔씨소프트라고 경영진간의 상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씨는 넥슨에 거의 인수될 뻔 했다가 풀려난 케이스고 nhn의 최대 주주 중에 2대 주주가 넥슨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들 간의 주식거래는 진경준 같은 완전 업계 밖에 있는 외부 인사와의 주식거래와는 약간 다른 ...
- ▷ 함익병 : 아니 그것은 다른 얘기에요. 뭐냐면 김상현 대표가 있지만 원래 LG 지주회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준 사람에 ...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거예요.

(신청인 사진 게재)



그니까 진경준 감사장 김상현 대표 박○○ 감사 이 세 분은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미국 가 있는 지사장 ... 이거는 뭐냐 뇌물성 혹은 어떤 그 지주회사 구성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정확하게 나눠 준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뇌물 공여가 먼저 된 거예요.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TV조선 <강적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지난 8/3자 방송(142회) 중 실수로 동명이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한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자(142회) 방송 중 넥슨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감사장 및 전 □□□ 감사 박○○ 등에게 4억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전 □□□ 감사 박○○의 사진을 3회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 사용된 사진은 금품을 수수한 전 □□□ 감사 박○○의 사진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주)△△△△의 박○○ 대표님의 사진으로서,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 (주)△△△△의 박○○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박○○ 대표님은 전 □□□ 감사 박○○과는 다른 인물이며, 넥슨

김정주 대표의 금품전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배청구)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TV조선 <강적들> 프로그램에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다시보기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9.

[별지]

- 가. 제목 :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자(제142회) 방송 중 넥슨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 및 전 □□□ 감사 박○○ 등에게 4억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에서, 자료화면으로 전 □□□ 감사 박○○의 사진을 3회 인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때 인용된 사진은 금품을 수수한 전 □□□ 감사 박○○의 사진이 아닌, 동명이인인 (주)△△△△의 박○○ 대표의 사진으로서, (주)△△△△의 박○○ 대표는 넥슨 김정주 대표의 금품전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 방송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이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TV조선 - 강적들 프로그램 제151회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 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이의신청

▶ 사례4

여성호르몬제의 부작용에 대한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닌 단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3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한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 제7중재부
접 수 일	2016. 1. 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청인은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에 복용하는 여성호르몬제가 오남용 시 자궁근종, 유방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시판 중인 제품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고, 칼슘, 철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 식품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 내용과 신청인 제품이 무관함을 인정하고, 인터넷 다시 보기(VOD) 하단에 알람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알고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6일자)
- 내 용
 - ▷ 기 자 : 그런데 폐경기 후 찾아온 갱년기 증상 때문에 먹었던 여성호르몬제가 자궁근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김○○ : 에스트로겐이 주입이 되면 없던 근종도 생길 수 있고요 있던 근종은 더 커지고, 유방암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요.
 - ▷ 기 자 : 여성호르몬이 자궁근종과 유방암 등 여성질환에 관계가 깊다고 말하는 전문의.

그렇다면 주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건강기능식품을 여성호르몬제라고 잘못 보도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6일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라는 제목으로 여성호르몬제 섭취로 갱년기 여성들에게 자궁근종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본 방송은 “갱년기인가 싶어 여성호르몬제를 섭취하여도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리포터의 멘트와 동시에 여성이 ○○○○○○○의 □□□□ 제품을 섭취하는 화면을 방송하였는데, 사실확인 결과 ○○○○○○○의 □□□□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이에 오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알립니다]

이 방송 중 “알고 계십니까” 코너 시작 후 27초에 보여진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임을 밝혀 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보도문을 인터넷 MBC에 게재된 본 사건 조정대상방송 다시보기 화면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hoi4men/vod/index.html>) 최하단에 2016년 1월 25일까지 게재하되, 글자체 및 글자크기는 해당 화면의 “[알고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외주 제작사 포함)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1.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iMBC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2015년 11월 16일자, 2376회) 다시보기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5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75·17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 제8중재부
접 수 일	2016. 2.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고, 투먼시 공안국이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위 범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중국에서의 살인사건은 동명이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과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통해 중국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공안 수사팀이 한국에 파견되거나 협조한 사실 및 신청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1일자)
- 내 용
 - ▷ 앵 커 : 올 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범인이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중국에서도 토막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 기 자 : 지난 1996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인 투먼시의 한 다리 아래에서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공안은 같은 마을에 사는 중국동포 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19년이 흐른 지난 7월 투먼시公安국은 한국의 방송보도를 보고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의 수법이 투먼시 사건과 비슷하고 피의자 이름이 같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이△△ 시흥경찰서 수사본부장/지난 4월 : “처가 중국 내 주거지 매입을 위해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 ”

▷ 기 자 : 현지 공안은 곧바로 한국으로 수사팀을 보내 김○○이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 지난 4월 시흥시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오원춘, 작년 11월 박춘풍 사건에 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동포의 흉악 범죄였습니다.

▷ 김○○ : “후회합니다. 집사람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기 자 : 중국公安 당국은 김씨의 중국내 살인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있는 만큼 “양국간 공조를 통해 사법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5. 11. 2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씨가 19년 전에도 중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토막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公安으로부터 중국 투먼시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씨는 당시 현대상선에 재직하며 승선한 상태였고, 중국公安으로부터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중국 투먼시 살인사건은 동명

이인에 의해 범해진 사건으로, 김○○씨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시화호 토막 살인범 중국서도 토막 살인” 관련 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5년 11월 21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시화호 토막 살인범 김○○ 씨가 19년 전 중국 투먼시에서도 토막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가 없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 4. 8.(금)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MBC-TV〉 평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이브닝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정정보도문 아래자막 크기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4.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C-TV -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시화호 토막 살인범 중국서도 토막 살인”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6

익산시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뉴스통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언론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전북조정8·9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익산시
피 신 청 인	익산인터넷뉴스
중 재 부	전북중재부
접 수 일	2016. 3. 2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익산시가 언론 관련 조례의 입법 취지와 달리 예산을 부당하게 운용 및 집행하여 오히려 익산지역 신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익산시는 조례에서 정한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뉴스통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고, 익산시에서 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익산인터넷뉴스 - 『[탐사] 익산시, 익산시의회 ‘익산 지역신문 죽이기’ 편승(1)』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핫이슈면)

■ 내 용

익산시의회가 지난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 익산시에 출입하는 대형 언론사만 살아남고 지역을 대표하는 소수 언론사는 죽어가고 있어 법 취지에 맞게 운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예산집행 투명성을 언론사와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 의회에서 제정한 언론조례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함께 소수언론과 익산 지역신문이 조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평성에 ‘방점(傍點)’을 두어야 한다.

특히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특정 언론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제정된 조례로 인해 시에서 조례운용에 있어 허점투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언론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확실히 되고 있다. 이에 본지(익산인터넷뉴스)는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차별성 등을 하나씩 짚어가며 ‘기획, 탐사’로 보도하여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에 익산시가 편승하여 대형 언론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에 대비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구석구석 벌어지는 일들을 세심하게 보도하는 소수 지역신문 말살정책에 사명을 다하고자 보도의 목적을 두었다.

조정대상보도 2

- 익산인터넷뉴스 - 『[탐사2]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핫이슈면)

■ 내 용

익산시가 시를 출입하는 뉴스통신사에게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통신매체인 ‘뉴스1’에게 언론조례가 제정, 공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혈세를 지원해 왔다. ‘뉴스1’ 매체는 2011년 5월 26일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처음 등록하여 채 5년이 안되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언론조례가 제정, 공표된 이후로도 부당하게 이 업체에게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오면서 같은 조건에 있는 일부 지역신문들에게는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별성뿐만 아니라 법(조례) 위반으로 언론사와 시, 의회 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6년 1월 11일 제정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제3조(운용대상) 2항 1호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4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통신사)'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2항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라는 익산시에서 홍보비를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를 출입하는 '뉴스1(통신사)' 매체는 2011년 5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 신고를 필하고 있어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운용대상) 2항 1호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어 익산시는 5년이 안 된 지역신문 탄압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중앙에 있는 대형 언론사에게는 위법을 감수하여 가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떨치게 하고 있다. 익산시청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노컷뉴스(인터넷신문), 연합뉴스(통신사), 뉴시스(통신사), 뉴스1(통신사) 등 인터넷신문 매체와 뉴스통신 매체 기자들이 출입하면서 지역신문 기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언론을 앞세워가며 소위 갑질의 행태를 형성하여 지역신문들의 공간(기자실)을 차지하고 엄청난 시 혈세(광고비)를 지원받으며 공간을 비우는 등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제정, 공표한 언론조례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매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알권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보도하는 소수 "지역신문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조례"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시 혈세를 집행해야 할 익산시가 특정 언론사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며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신문은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최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건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각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영에 관한 조례' 보도 관련 정정 및 사과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1일 및 22일자 탐사면에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에서 관련 조례에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A뉴스통신사에게 부당하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신문 보도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따르면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A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에서 조례 내용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에서 부당하게 특정 언론사에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해서 익산시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1일 및 22일자 탐사면에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에서 관련 조례에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A뉴스통신사에게 부당하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신문 보도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따르면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A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에서 조례 내용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에서 특정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협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연속 보도해서 익산시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4월 12일(화) 정오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최상단 위치에 게재하되, 게재형식은 다른 상단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도록 한다. 게재 후 96시간 이상 초기화면 최상단에서 아래로 3번째 이상 위치를 유지한 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본 합의서에서 정한 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은 2016년 4월 11일(월) 정오까지 조정대상기사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보도문 (「[탐사1] 익산시, 익산시의회 ‘익산 지역신문 죽이기’ 편승(1)」, 「[탐사2]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협세(광고비) 집행」, 「[탐사3] 익산시 홍보담당관실, ‘전라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익산인터넷뉴스 ‘제소(提訴)’」)을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또한 위 보도문이 포털 블로그, 카페, 웹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공간에 복사 및 전재된 경우 피신청인 언론사 명의로 포털 사이트 등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포털 검색 등을 통해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게 피신청인이 해당 전재글에 대한 삭제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한다. 단, 인터넷 게시공간에 대한 삭제의무는 2016년 7월 31일까지에 한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5월 31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16년 6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합의를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기사작성기자 등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 일체의 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016. 4. 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익산인터넷뉴스 -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제2장 반론보도 사례



제2장 반론보도 사례

▶ 사례7

모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한 약가 산정 및 약제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77·978, 2016서울조정1021·102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올댓닥터스 (라포르시안)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7. 4.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화상환자용 특정 세포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과 약가 결정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기고자가 전제한 사실관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해당 약제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약가를 산정 받았다고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가 외부 필자의 기고문으로서 사실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청인 측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반론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라포르시안 - 『[기고] 지난주 약제급여평가위 회의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오피니언면) 외 4건
- 내 용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모 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3상 임상시험을 면제

해주자는 안전이 나왔고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부응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들이 말하는 규제완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3상 임상을 면제 해주고 바로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약회사가 힘도 안들이고 국민의 건강 보험료와 환자의 몸뚱이로 임상실험을 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전 제품이야 기술이 좀 덜 된 것이라도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에 따라 그 승패를 가름해 볼 수도 있지만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그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몸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별도의 토론과정이나 의견수렴 없이 일개 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다. 하긴 그런 것이 거기 한 곳뿐이라!

이거보다는 사안이 작지만, 지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보통 위원회의 회의 방식은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 일차 문제의 토론을 진행하고 문제제기된 사항에 대한 자료보완이 필요하면 안전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루거나 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그 후의 회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위원장이 표결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의 신기술 등에 대한 결정은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기초자료 보완 요구가 더 엄격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옥시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다. 일반 생활용품도 그럴진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의 제사안들은 그만큼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주 열렸던 약평위에서 ‘△△△-△△’에 대한 결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특정 약제에 대한 급여 결정과 약가 결정 사안 모두에 대해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심의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에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네트워크는 제약회사 ○○○○○○(당시의 회사명은 □□□□)의 약제인 ‘△△△’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고,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가격이 조정되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을 ‘□□□□’에서 ‘○○○○○○’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다른 약제인 ‘△△△-△△’를 급여 신청한 것이다.

보통 급여와 약가의 결정은 기존 약제와의 비교실험을 통한 효능효과의 증명과 기존 약제의 가격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에 대한 심의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야기 하기에 앞서 일단 두 가지 약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 다음과 같다.

화상 환자에게 쓰이는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사이언스이고 또 하나는 ○○○○○○이다. ◇◇사이언스의 제품인 ☆☆☆은 세포를 배양한 쉬트를 화상 부위에

붙이는 치료제이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 ‘△△△-△△’라는 제품은 세포를 다른 약제와 혼합하여 연고처럼 상처부위에 바르는 약제이다. 자, 그럼 지난 주 급평위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일단 이 약이 기존의 보험급여 약제인 ☆☆☆의 카피약이라면 왜 ☆☆☆과의 비교임상 자료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나와야 했다. 이를 설령 식약처가 허가해주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급평위 회의는 이런 요구를 아예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는 다른 치료재료를 섞어서 바르는 연고제로서 피부를 배양해서 파스처럼 상처부위에 붙이는 ◇◇사이언스의 ☆☆☆과 일단 제형도 다를뿐더러 다른 성분의 치료재료가 섞여 있어서 이미 다른 약임에도 불구하고 약평위는 두 제품의 주요성분인 세포의 종류와 적응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카피약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다.

세 번째, 이렇게 ○○○○○○의 제품인 △△△-△△처럼 바르는 세포치료제는 쥘트 형태로 붙이는 약제와는 달리 다른 치료재료와 섞어서 바르는데 이로 인한 효과가 해당 세포 때문인지 혼합한 다른 치료재료에 의한 효과 때문인지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그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약평위는 애초에 이런 임상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왜 안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네 번째, 좋다. △△△-△△가 백번 양보해서 ☆☆☆의 복제약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격과 관련한 문제는 두 제품이 개당 약제의 함량 세포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후발제품인 △△△-△△의 가격이 2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관계라면 함량을 비교해야 하고 세포치료제에서 함량은 세포수로 표시하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라면 약가를 세포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번 심평위 급평위는 세포수가 같음에도, 단지 △△△-△△가 기존 약제보다 두 배 가량의 면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두 배 가격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어야 마땅하다. 이 같은 논리라면 그럼 기존 약제인 쥘트 형태의 ☆☆☆을 얇게 분리해서 두 장으로 만들면 두 장 값을 줘야 하나? 또 혹시라도 병원에서 바르는 약을 2개 용량으로 더 얇게 넓게 발라서 3개 용량의 비용을 청구하면 심평위는 이를 걸려낼 방법이 있는가? 또 이 제품을 변형하여 같은 세포수지만 액체로 만들어서 더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을 더 줘야 하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전문가가 득실하다는 급평위를 통과했다하니 이 나라가 정말 돌아가도 한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뿐이다.

결론적으로 설령 복제약이라 하더라도 기존 가격 대비 최대 80~90%에 가격이 책정되는 게 맞다. 물론 이 정도로 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이번 약평위의 회의에서는 위 안전과 관련하여 유례없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여러 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러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여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였을까? 자료보완을 하고 재심사를 하면 될 것을 반대가 그리 많았는데도 왜 상식적이지 않게 통과시켰을까?

다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겠지만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뜯어봐야겠다. 가장 좋은 길은 원칙과 객관성에 기초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의 도덕적 가능자를 자꾸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제발 좀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자.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라포르시안(<http://www.rapportian.com>)의 홈페이지 뉴스 메뉴 중 오피니언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각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 외에 중재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관련 추가보도가 있다면 그 또한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피신청인이 본 건 관련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이 공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기 전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올댓닥터스는 2016년 8월 1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라포르시안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46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53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34,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9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787) 본문 하단에도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상시 게재해,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각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5.

[별지]

제 목 : [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본 문 : 지난 6월 16일 ○○○○○○(이하 ‘당사’)에서 개발한 심부2도 화상에 쓰이는 세포치료제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가 약평위를 통과하자 ○○○○네트워킹의 전 대표인 강○○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의 매주 기고문을 통해 심평원과 식약처를 질타하며 글을 쏟아내고 있다. 당사는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의 결과로 본 기고문을 통해 강○○ 씨의 주장 중 당사의 제품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려 한다.

더구나 기고자인 강○○ 씨는 ○○○○네트워크의 전 대표이고 당사와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한 차례 약연으로 얹혀 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사는 2014년 ○○○○네트워크가 당사의 다른 제품인 △△△에 대하여 근거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당사가 보도자료의 작성자를 형사고발하여 검찰로부터 명예훼손과 영업 방해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상대는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공익적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를 받기는 했으나, 현재 검찰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항고중이어서, 아직 최종심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당사는 형사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네트워크의 전 대표이자 현 고문인 이가 당사에 대하여 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고문의 겉으로 드러난 요지는 심평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비밀스럽고,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공적자원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축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 약평위 통과인 것처럼 말하면서, 급기야 다른 매체에는 △△△-△△가 물약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보험재정까지 퍼주게 생겼다는 요지의 기고문까지 신기에 이르렀다. 사실이라면 당사가 돌팔매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100억 원에 육박하는 연구개발비를 쓰면서 10년이 넘는 연구개발과 임상 1, 2, 3상 및 품목허가라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허가를 받은 국내 중소 바이오벤처기업이 만든 의약품을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사회운동가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그 주장의 근거로 당사와 당사의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는 심평원의 약평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 부적격한 업체에서 제조한 부적절한 제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하여, 공적자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되게 되었다라는 논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기초에서 당사와 당사 제품의 실명을 거론하고, 급기야 경쟁사 제품과 주관적인 비교까지 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나름 과학적인 근거라고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첫째, △△△-△△의 건강보험 등재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는 현재 심부 2도 화상에 쓰이고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이라는 제품의 대체가능약제이다. 새로운 질환이나, 그간 보험적용이 안 되던 분야에 보험 적용을 결정하는 제품처럼 보험재정이 추가로 책정되어야 하는 시장이 아닌 것이다.

즉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분야이고, 하나의 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경쟁 제품이 생긴 것이다. 독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가는 것은 경쟁사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더군다나 의약품 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여야 환자의 선택권과 사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시 한쪽의 제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가 건강보험에 진입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험재정의 손실은 없는 반면, 시장의 선택에 따라 경쟁사의 제품 매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약평위를 통과한 제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탈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주장은 적절한 대체가능약제가 있음에도 독점시장을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에 다르지 않다.

둘째, 강○○ 씨가 주장한 당사 제품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강○○ 씨는 △△△-△△를 복제약이라고 했으며, 그러한 가정하에 글을 썼다고 스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에 들어가는 폴록사머407을 혼합제제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특허까지 찾아가며 복합제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에 따라 △△△-△△의 유효성과 임상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세포수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임상결과를 비교해보니 경쟁제품에 비교하여 우월할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는 복제약이 아니다. 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서를 통해 복제약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답변을 제쳐두더라도 의약품허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제약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의 간략한 임상을 통해 동등성만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제약사가 복제약의 허가를 위해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품목허가를 받는지 묻고 싶다. 품목허가 후 시판 후 조사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남아있다. 전제나 가정이 틀리면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또한 사실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폴록사머407이 유효한 약제성분이 아닌 부형제라고 심평원이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록사머407의 원료제조사의 해외특허 출원내용에 ‘화상환자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 복합제제이고 따라서 폴록사머407과의 대조군 임상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사는 폴록사머407을 세포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약품특허목록으로 등재한 바 있다. 폴록사머407은 ‘가용화제, 겔화제, 계면활성제,

기제, 부형제, 봉해제, 습윤제, 안정화제, 용제, 유화제, 점증제, 현탁화제'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제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다. 폴록사머407이 화상환자의 상처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폴록사머407의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처에 습윤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상처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맹물을 의약품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조군 임상은 시판 허가된 의약품 또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화상 또는 피부상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폴록사머407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대조군 임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임상시험 규정에도 맞지 않고, 비윤리적인 임상을 하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폴록사머407의 특허는 단지 출원되었을 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이고 특허 출원인에 의해 포기된 특허이다. 포기된 특허임을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당사로서 알 길은 없다.

△△△-△△의 가격을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세포 수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다. 만일 두 제품이 동일한 세포라는 전제가 맞다면 그러한 주장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약제 간 유효성분은 제조방법, 특성, 규격 등이 다른 주성분 세포이며, 아울러 두 제품의 제형과 용법용량 등도 상이한 세포치료제이므로 세포수를 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유효한 효과면적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례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A라는 세포치료제가 있다. 이 약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하나의 제품에 들어가는 세포수가 1~4×10⁷개로 허가되어 있다. 즉, 동일한 제품이지만 제품에 따라 세포수가 적게는 1천 만 개에서 많게는 4천 만 개까지 네 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 씨의 주장대로라면 세포 수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다르게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식약처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그 정도 범위 내의 세포수일 때 기대되는 치료 효과가 동등하다는 임상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세포치료제의 경우 기존 화학약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사 제품과 임상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의 △△△-△△가 열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임상대상자의 평균연령과 상처의 깊이 및 면적에 대한 분석 없이 재상피화 기간만을 가지고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동등한 비교를 할 줄 모르거나, 의도를 가진 비교로 봐야 할 것이다. 두 제품의 직접비교 논문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비교하거나,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지면을 통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필요치도 않다. 강○○ 씨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라도 당사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

당사는 한해 수 백 수 천억의 흑자를 내는 대형제약사도 아니고, 현재 매년 수 십억의 적자를 보면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나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십년 가까운 연구결과가 의약품으로 하나 둘 세상의 빛을 보려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번 △△△-△△ 외에도 현재 손상연골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연골치료제의 임상을 마치고 내년도 품목허가를 준비 중이다. 시민사회활동가에게 지탄받아 사회악으로 척결되어야 할 부도덕한 기업은 더더욱 아니다. 기고자의 의도가 공공기관의 합리적 개혁이지, 개별기업에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사는 시민사회활동가의 활동을 막을 이유도 막을 능력도 없다. 다만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또한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강○○ 씨의 과거 전력으로 보았을 때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2014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와 당사 제품에 대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당사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사가 답변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사실을 쓰면 될 것이고, 당사의 해명이나 제공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글을 썼다면 한층 더 기고자의 글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 씨의 정의감과 열정 그리고 시민사회활동가로서의 역량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성숙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당사로서도 그러한 일이라면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일보- 『[반박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오피니언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8

사드(THAAD) 보도와 관련하여 KBS 사내에 보도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11·1112, 2016서울조정1113·111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인터넷 JTBC)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8. 4.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방송공사(KBS) 측이 사드(THAAD) 보도와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KBS 사측과 노조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드 보도 관련 내부 보도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의 전체 분량 대비 신청인 측 반론 내용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반론보도 게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신청인도 이 점을 수용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국회]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뉴스면)

■ 내 용

[앵 커] : 다음은 국회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KBS 내부가 요즘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최근 “사측이 사드 문제와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마침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우려를 담은 논평을 내놔던 해설위원이 갑자기 인사발령을 받으

면서, 이런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까지 나서서 사드 보도지침 문제를 거론하면서요, 정치 쟁점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는요, 양 반장이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반장/양원보] :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은 말이죠. 지난 11일 오전 KBS 1TV에서 방송됐던 뉴스광장의 〈사드 배치 결정 ... 과제는?〉이란 제목의 뉴스 해설입니다. 2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걸 뭐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대강의 내용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험난한 앞날 예고, 뭐 당연하죠, 예.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 우려, 실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가능성,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설득 노력 따라야, 당연히 정부가 최선의 설득을 해야겠죠.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정강현 반장, 이 논평 좀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야당 반장/정강현] : 그냥, 뭐 일반론이죠. 누구나 할 만한 그런 평, 그런 쉬운 내용 같은데요.

[국회 반장/양원보] : 그렇지요, 그런데 이 논평이 “편향돼 있다”, 혹은 “분란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다른 아닌 공영방송 KBS 고위층에 계신다~ 라고 KBS노조 본부가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요, 고대영 KBS 사장이 앞서 소개해드린 그 논평을 거론하면서, “중국 관영매체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선 안 된다”는 그런 우려를 전달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나흘 뒤에 아까 그 논평을 읽었던 그 해설위원은 갑자기 방송 문화연구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진 노조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KBS 사측은 “고대영 사장이 사드 보도에 원론적인 언급만 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보복 인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7월 15일. 그러니까 나흘 뒤에 똑같은 시간에 아주 재미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해설위원이 그 같은 시간에 출연해서 사드 논평을 냈는데 “국론 분열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 않는 국민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은 객원 해설위원입니다. 당연히 본업이 따로 있는 분이죠.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KBS엔 해설위원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객원 해설 위원까지. 뭐, 어쨌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다면. 아까 뉴스해설이 나가기 전날이었던 7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다”라는 말을 남기고 몽골로 떠났지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면서, KBS 사측과 노조 간의 이 감정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주군민들의 반발을 소개하는 리포트에까지 사측의 이런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이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KBS, 이제는 좀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워싱턴에서 지시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자, 다른 언론사의 내부 속사정을 얘기한다는 게 저 역시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KBS 보도지침 논란,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앵 커] : 네, 저희가 얼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당시 수석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KBS 얘기를 하게 됐네요. 지금 사드 보도지침 의혹이 KBS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구요, 아까 뭐 청문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부 회의에서 아마 다룰 만한 사안이 된 거 같구요. 일단 집중발제에서 우리 양반장이 얘기를 했지만, 한 해설위원의 인사로 인해서 이 사안이 더 지금 촉발이 됐네요.

[청와대 반장/임소라] : 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1일 오전 뉴스해설이 나간 그날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고대영 사장이 안보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KBS뉴스에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고, 얼마 있다 해당 해설위원이 사내 방송문화연구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논평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사드문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는 걸 아는데 중국이 경제보복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반길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이런 내용을, 내용이 담긴 논평이 과연 인사까지 내야할 사안이었나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앵 커] : 네 뭐 일단은 KBS 노조의 주장이잖아요. 노조의 주장이고 뭐 사측에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내놔겠죠.

[야당 반장/유상옥] : 네, 사측에 연락을 직접 해봤는데요. 일단 보도자료를 참고해라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 메일을 받아보니까요 문제의 임원회의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드 현안을 보도할 때 외교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특정 뉴스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특정 해설위원 인사조치 지시도 없다, 없었다. 사실과 다르게 임원회의 내용이 알려진데 대해 관련자를 엄중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난 15일 단행된 인사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반장/정강현] : 근데 이게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해설위원 중에 딱 그 사드 논평하신 분이 인사를 당했을까요? 아무튼 저런 사측의 해명에 노조는 기존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성재호 본부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임원회의 전달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쭉 그날 다 퍼지는데요, 뭐.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더군다나 이정현 녹취록 관련된 보도국의 침묵에 대해서 비판했던 기자까지 제주로 발령 내버렸잖아요.

[앵 커] : 네, 지금 뭐 KBS 노조위원장 주장을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물론 지금 사측에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요. 근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들어보니까 이정현 녹취록을 비판한 기사를 제주도로 발령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이걸 또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 반장/양원보] :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정부비판 뉴스에 대해서 좀 빠라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에 한 기자가 그런 어떻게 보면 치부가 드러났는데도 KBS 보도국이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반성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잠잠하니까 기자협회보에다가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기자 역시도 그 해설위원이 인사가 났던 그 당일날 같이 갑자기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경인총국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는데 6개월만에 또 제주도로 발령이 난 겁니다.

[야당 반장/정강현] : 정말 좀 이례적이긴 한 거 같아요. 보통 인사라는 게 1년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최소, 거의.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만에 또 인사가 난건데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제주도로 보낸 거면 유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KBS 내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는거 같아요. 문제 인사가 난 뒤에 기수별로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앵 커] : 네, 저도 기수별로 차례로 성명 냈다는 얘기 들었구요, 내용도 좀 읽어봤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하다보니까요, 이게 정치권으로 좀 옮겨 붙었잖아요,

논란이. 특히 야당 쪽에서는 지금 KBS의 보도지침 문제를 상당히 주목하기 시작을 했지요, 아까. 더민주 우상호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 반장/유상욱]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목하는게요, 지난 19일에 KBS 뉴스나인 리포트 때문인데, 성주군청 앞 사드 반대 집회에 외부 인사 단체들이 참가한 것을 확인했다. 바로 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고 나서요, KBS 전국기자협회가 “‘현장 기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에서, 뒷전에서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를 제작하라’ 이런 부당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까지 보도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야당이 가만있지 않겠죠? 들어보시죠.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KBS 사장은 경영에 전념하고, 보도는 보도하는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KBS의 룰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이것이 한 번만 더 재발되면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겠습니다.

[청와대 반장/임소라] :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방송법개정을 통해서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구성이 현재는 여야 각각 7 대 4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7 대 6, 그러니까 야당인사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고치자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중립성 시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보고있는거죠.

[앵 커] : 네, 아마 뭐 7 대 4에서 7 대 6이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거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다음 대선은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그런데 마침 어제 KBS 이사회가 열리려다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반장,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국회 반장/양원보] :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부 회의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측 KBS 이사들이 이거 진짜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사회 열어서 따져보자라고 소집요구를 딱 했는데, 여당 측 이사 7명 중에 6명이 불참을 해버린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산이 되버렸죠. 글썄요, 회사가 정말 저렇게 기자들이 성명까지 내고 또 녹취록 파문까지 불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진에 대한 이런 뭐 조치 같은 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앵 커] : 네, 아무튼 뭐 KBS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연구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연구라면 조금 그렇지만요. 아무튼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공영성이 의심받고 있고, 시비가 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가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거 같구요, 이렇게 될려면은 KBS 내부의 변화도 물론 중요 하겠

지만은 정치권의 각성,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특히 다음 대선 후보들이 어떤 KBS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문제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부 회의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다음 대선 우리가 어차피 취재를 해야 되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구요, 양반장, 일단은 오늘 그 KBS 청문회 가능성이 얘기 좀 큰 거 같고,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야당 쪽의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 같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거 같구요, 일단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야당, KBS 보도지침, 청문회 할 수도’ 이렇게 좀 정하겠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JTBC 뉴스(<http://news.jtbc.joins.com/>)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2일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KBS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를 근거로 “성주 시위 외부 인사 참가 확인” 리포트에 보도지침이 적용됐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 방송이 인용한 KBS 전국기자협회 성명서는 사실관계 및 표현상 오류 등을 이유로 KBS 사내게시판에서 자진 삭제된 바 있고, “성주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를 제작하라”는 KBS의 보도지침이나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해당 리포트는 정상적 업무절차에 기초하여 객관적 사실확인을 거쳐 제작·방송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6. 7. 22.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성주 외부세력을 부각시키라는 KBS의 보도지침과 워선의 부당한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리포트는 정상적인 편집회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제작되었으며, KBS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는 5시간 만에 자진 삭제되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정치부 회의〉 기화면(http://news.jtbc.joins.com/Replay/news_replay.aspx?fcode=PR10010301)에 위 제1항의 반론보도문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6년 9월 27일 10: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정치부 회의〉의 홈페이지 해당 〈다시보기〉 화면 하단의 「국회」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목 아래에 제1항의 반론보도가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JTBC -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7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9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319 반론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9.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한 위작 논란이 있고, 천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하였으며, 해당 미인도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故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신청인은 천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고, 미인도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압류품이 아닐 뿐 아니라,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패널로 참석한 미술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신청인 측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동일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N - 일요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천경자, 이우환 화백 위작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2일자)

■ 내 용

▷ 남자앵커 : 요즘 그림 위작 논란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자앵커 :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미술평론가, 그리고 박○○

미술칼럼리스트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남자앵커 : 어서 오십시오.

▷ 최○○ : 반갑습니다.

▷ 남자앵커 : 요즘 미술 위작 논란을 두고 “�음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위작 논란” 이런 얘긴데, 어떤 얘깁니까?

▷ 여자앵커 : 맞습니다. 세 가진데 먼저 한 번 그림으로 한 번 보시면요, 자, “�음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 생전에 어떤 작품을 두고 미인도를 두고 “내 작품 아니다”라고 하는데 남들은 “진품이다”라고 얘길 하고 있는 거구요, 미술관에서는 “천 화백의 작품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중략)

▷ 남자앵커 : 그런데 이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 분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 최○○ :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측 소장자인 소장처인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여러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요.

▷ 남자앵커 : 예예.

▷ 최○○ : 말하자면 그, 첫째 아드님, 첫째 자녀, 아드님이 '77년도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 때문에 아마 천경자 선생님의 첫 남편, 이혼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과의 사이에 낳으신 아드님인데 이 분이, 이 분들에게 뭔가 사상적인 혐의 같은 게 있어서 그 아드님이 소위 연좌제, 지금은 뭐 낫선 용어가 됐습니다만, 연좌제에 걸려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자 하는 걸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경자 선생님께서 말하자면 그림을 하나 그리셔서 그 당시 안기부 부장, 책임자 이신,

▷ 남자앵커 : 중앙정보부장.

▷ 최○○ : 예, 중앙.

▷ 남자앵커 : 아 그러니까 천경자 화백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한테 선물을 한 것이다?

▷ 최○○ : 예예.

▷ 남자앵커 : 아, 그 얘기군요?

▷ 최○○ : “당시 아드님 좀 무사히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 남자앵커 :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거죠?

▷ 최○○ : 예.

▷ 남자앵커 : 알겠습니다.

(중략)

▷ 최○○ :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서 그런, 그런 물건, 뭐 또 아시다시피 김재규라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압류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그 유래를 알고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작품 따로만 봐도 틀림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려주신 그런 자료는, 아마 91년도 거인가요? 근데 어찌됐든,

▷ 남자앵커 : 올해 초 통화했다는데요.

▷ 최○○ : 그런가요?

▷ 남자앵커 : 예.

▷ 최○○ : 아, 예. 자 어찌됐든 그런 말이, 뭐 좀 조작한 자료가 아니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MBN 집중진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자료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목 : “김재규 압류품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6월 12일 <엠비엔 집중진단 - 닳은 듯 다른 위작 논란> 프로그램에서 천경자 화백에 관한 미인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사정을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1)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1977년 당시 천경자 화백의 큰 아들이 미국유학을 가려할 때 부친에 관련된 사상적 혐의(즉 연좌제) 때문에 유학이 어렵게 되자 천경자 화백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담하면서 그림 선물을 하였다”고 최○○ 평론가와 사회자의 사회멘트를 통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또한 “그 무렵에 천경자 화백은 자신이 진채가 아닌 수채화풍으로 그린 작품 중 그 수준이 떨어지는 등으로 좀 버려진 작품에 대해서는 직접 바깥으로 나오서 소장자 앞에서 ‘늘 가짜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고 최○○ 평론가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3)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또한 미리 단정적으로 준비한 자막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김재규 / 1979년 전 박정희대통령 시해 / 천경자 ‘미인도’ 압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라는 자막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 소장 경위를 김재규 압류품으로 영상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경자 화백의 유족 이○○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 1) “천경자 화백의 큰 아들은 당시 미국 유학을 시도하거나 미국 유학을 간 사실이 없으며, 천경자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다. 최○○ 씨는 자신이 직접 알거나 목격하지도 못한 사실을 당시 국립미술관 사람들과 일부 화랑가 및 감정가들이 만든 풍문에 의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다”
 - 2) “당시 천경자 화백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에 관련하여 바깥에 나가 ‘그 수준이 떨어지고 버려진 작품’에 대해 ‘늘 가짜’라고 소장자 앞에서 부인한 사실이 없다. 천경자 화백이 바깥에서 작품 소장자에게 직접 그런 진위감정을 해준 사실 자체가 없다”
 - 3) “엠비엔 방송프로그램은 김재규 압류품을 기정사실로 처리하여 그 소장경위에 대해 “김재규 / 천경자 ‘미인도’ 압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라는 자막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이 거론해오고 있는 미인도는 ‘당시 김재규 자택에서 나온 압류품 확인과정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것이 아니라, 1980년 5월 3일경에 문화공보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물품무상관리전환을 해준 것일 뿐’이고 달리 김재규 소장품 압류내역이나 그 미인도 압류품의 크기 재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2일 천경자 화백에 관한 미인도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장녀 이○○ 씨는, 천경자 화백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으며, 미인도의 김재규 소장품 압류품 출처설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천경자 화백이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과 관련해 패소한 사실이 없고, 작품 소장자에게 직접 진위감정을 해준 사실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MBN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말미에, 제1항의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방송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10. 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9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10

귀농한 신청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부농만을 꿈꾸고, 농촌에서도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대구조정3·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경북일보 (경북일보)
중 재 부	대구중재부
접 수 일	2016. 1.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청년 농업인 및 귀농 사례를 보도하면서 6년 전 도시에서 귀농한 신청인이 군의 귀농정책 및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정착하였고, 향후 부농의 꿈을 키워 갈 것이며, 군 장학회의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에서도 도시의 유명입시학원 인강 및 화상영어강좌를 수강하는 등 자녀교육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귀농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도된 데다, 부농을 바라고 귀농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에게 도시의 사교육을 수강하게 할 계획이 없음에도 귀농에 대한 신청인의 견해와 다르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도가 된 점은 인정되나, 성공한 귀농인을 다룬 미담기사인 점, 또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의 내용이 농업정책에 대한 주장으로 반론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론보도 수준에서 양 당사자가 수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재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경북일보 - 『“사과·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가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15면)

■ 내 용

까르르~ 깔까. △△와 □□네집의 저녁은 항상 밝은 웃음꽃이 피어난다. 여기는 바로 경북 의성군 ☆☆리 ◇◇리 지중해풍으로 새 단장한 김○○·김◎◎ 씨의 집이다.

김씨 부부는 학교를 졸업한 뒤 줄곧 대구에서 직장을 다닌 전형적인 대구토박이지만 8년 전 아내의 첫 발령지인 의성에 왔다가 첫눈에 반해 귀농·귀촌하게 됐다.

처음 의성읍에서 2년간 살다가 6년 전부터 ☆☆리 ◇◇리 마을로 옮겨와 본격적인 농부의 길을 걷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김○○ 씨가 귀농·귀촌을 결정한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평생 농사라고는 모르는 그로서는 농사일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이제는 제법 농사꾼다운 모습이 풍겼다.

그는 “마늘·고추·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은 소득이 적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은 편하고 좋다”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먹거리이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농사는 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생긴다”고 껄껄 웃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밭농사에서 벗어나 사과 및 특작도 열심히 배워서 부농의 꿈을 키워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농촌생활이 처음인데 귀농·귀촌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귀농·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 문제인데, 기술에는 빈집은 많지만 막상 살려고 들어와 보면 살 집이 없다.

이 문제를 김○○ 마을 이장께서 잘 도와주셔서 땅·집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 빈집을 구입해 뜯어내고 새 단장을 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면 즐거워했다.

◇◇리는 70여 가구에 120여 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벼·마늘·고추·사과 등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곳이다. 이웃집의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하며 서로 도와주는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다.

이 곳은 귀농가가 무려 여덟 집이나 되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젊은 마을이며, 마을주민들과 합심해서 농사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 의성지역이 귀농·귀촌 최적지라 하던데?

귀농·귀촌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북지역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의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데다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형 및 기후적 여건

등도 한몫하고 있다.

귀농정책 및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농업창업은 3억 원, 주택구입·신축은 5천만 원까지 2~2.7%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했다.

이에 힘입어 2011년~2014년까지 780가구(1천 454명)가 귀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44가구(395명)가 귀농할 정도로 인기다.

△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교육문제는?

김○○ 씨 부부는 △△·□□ 두 딸이 있는데 현재 즐거워하면서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다.

지금은 어리니까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사회에 나가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사교육에 찌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라면서도 의성군의 교육 열의가 대도시 못지 않다고 했다.

의성군 장학회(100억 원 조성)에서 의성지역의 중·고교에 미디어스페이스를 활용해 매일 아침 자습시간 및 방과 후에 강남인강반, EBS 교육방송 시청반, 화상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남인강반은 의성군청에서 전교생들에게 지원한 1년 수강권을 활용해 수준 높은 동영상 강의 시청, EBS 교육방송 시청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수준별, 과목별 교과학습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화상영어반은 필리핀 현지인과의 화상 통화로 컴퓨터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도 장학회 설립과 함께 서울·대구 등 유명입시학원 강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의 인터넷이 개설 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본격적인 ◇◇리로의 귀농 6년차인데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약 5천m²(1천 500여평)에 마늘·고추·콩 등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농부다.

아직은 소득이 적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은 편하고 좋다.

김○○씨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먹거리이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농사는 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과 및 특작도 열심히 배워서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가 건강하게 잘 자라 주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멀리 보고 큰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북일보 특집면(15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가겠다”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 ‘대구, 경북, 울산’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며, 48시간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의성군 ☆☆☆리 귀농인 김○○, 김◎◎ 부부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1월 3일자 15면 특집면에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나가겠다”는 제목으로 경북 의성군의 김○○, 김◎◎ 부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김○○, 김◎◎ 부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사이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김○○, 김◎◎ 부부는 본 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귀농에 대해 희망적인 메세지만 전하고, 실제로 귀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보도행태가 많아 경북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귀농을 하여 부농의 꿈을 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이 각종 FTA와 정부의 농업 천시 정책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역대 부농이니 6차 산업이니 하면서 농민들에게 헛된 꿈만 불어넣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빚만 늘어난 채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자재값 인상 등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부농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농업정책이나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 부부가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도시 못지않게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키우겠다는 식의 기사 보도에 황당하다”며 김◎◎ 씨는 “현직 교사로서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 몰기보다는 좀 더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의성지역의 교육정책도 대도시의 경쟁교육을 따라가기보다는 농촌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알림] 의성군 ☆☆☆리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15면(특집면) “사과·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 나가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다 의성군으로 귀농한 김○○·김◎◎ 부부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본지의 ‘농어민 氣살리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공한 귀농인의 사례를 찾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중 김○○ 씨가 “귀농에 대해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귀농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으나, 본지는 김○○ 씨 부부를 모범적인 귀농 사례로 판단해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 김○○ 씨는 “부농만을 기대하며 귀농한 것은 아니며, 최근 농산물 가격폭락,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고, 교사인 아내 김◎◎ 씨는 자녀 교육과 관련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적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으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기보다는 학교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성군의 교육열의에 관한 내용은 의성군 장학회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6. 1. 29.자 경북일보 9면 또는 15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의성군 ☆☆☆리 ◇◇리 김○○·김◎◎ 씨 부부)와 동일한 크기의 2단에 걸쳐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북일보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4. 피신청인이 위 1, 2항(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여 보도할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 2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6. 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경북일보-『[알림] 의성군 ☆☆☆리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9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11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경기조정63 반론청구
신 청 인	속초시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수원일보)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6. 5. 18.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급조된 신생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초 속초시가 토지매수자와 위 신생업체 간 매매 대금 납부 관련 계약 조건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토지매수자가 매수자격을 박탈당하여 사업권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속초시는 호텔부지인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매수자를 선정했고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이 사건 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이 연속 2회에 걸쳐 불출석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대로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조정대상보도 1

- 수원일보 - 『[포토]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 내 용

속초시 대포항 호텔사업 채권자 대표 임○○ 씨가 22일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속초 대포항 수익형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에 급조(3월 7일 설립)된 회사에 2천억 원대 사업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 대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의혹이 규명된 뒤로 청문회를 제발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수원일보 -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사회면)

■ 내 용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매머드급 해양 개발 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인 지난 3월 7일 급조된 A법인에 2천억 원 대 사업권 특혜를 주기 위해 역차별을 한 객관적 정황이 포착되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2011. 8. 30 제정) 제12 제1항은 “매입자는 매각 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가 □□□□(주)와의 계약에서는 위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매매 대금(150억 원 상당)을 분할 없이 일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 측은 수 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 회사 측 채권단 대표 임모 씨는 “속초시의 매수인 자격 박탈로 인해 토지 매입 계약금 17억여 원도 속초시에 몰수되어 직접적 손해만 3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는 2016년 3월 21일의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서는 “매입자는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자본금 5천만의 급조 회사인 A법인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분할 납부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축 허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취득한 해양호텔건축허가마저 취소 당할 위기에 처한 □□□□(주) 측은 “만약 속초시가 A법인처럼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주었다면 토지 매입 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매입자 지위 박탈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속초시 ○○○○과 박○○ 팀장은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조례제정 전 환매 특약에 따른 것”이라며 “본 계약은 조례 제정 후이지만 실시 협약은 조례 제정 전이기에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이 급조된 회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 21일 공유 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최대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온 2천억 원 대 ‘초대형’ 해양호텔 사업을 입찰 공고 며칠 전에 급조한 자본금 5천만 원의 ‘초소형’ 회사에게 사업권을 부여해 ‘역차별’을 하였다면, 건축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마땅히 중단하고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가 추진한 대포항 해양호텔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채권단 대표를 맡은 ◇◇◇(주) 임△△ 대표는 지난 22일 속초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탄원서를 드린 바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규명된 이후로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부디 연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속초시가 2011년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주)에도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더라면 현재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속초시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 규명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허가 취소를 서두른다면 속초시의 역차별로 17억여 원의 계약금 몰수와 직·간접 손해가 50여억 원에 이르는 □□□□ 측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보도 3

■ 수원일보 -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입찰 공고 직전에 자본금 5천만 원의 급조된 신생회사에 2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대표적 해양호텔 사업권 특혜를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채권단이 호텔부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다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좌초된 바 있는 대포항(대포동 937) 해양호텔 사업은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로 말미암아 사업 자체가 다시 장기 혼선을 빚을 수 있게 되었다.

채권단 대표인 임△△ (주)◇◇◇씨앤디 대표는 “속초시가 몰수해 간 약 17억 원의 토지

매입용 계약금은 저희 돈입니다. 채무자 측이 속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모텔하우스 부지로 기초 공사를 한 부지를 채권이 회수될 때 까지 유치권을 행사를 할 계획”이라며 “채무자 측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을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양수 받아 새로운 낙찰자와 협력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 중에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채무자인 □□□□(주) 측은 수 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일보(<http://www.suwo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가. 제목 :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 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22일, 25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및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속초시가 특정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고 당초 토지매수자에게 토지대금 분납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유재산(대포항내 호텔부지)을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입찰공고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동 부지의 계약 해지된 당초 토지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규정 관련 조례제정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업자 지위상실 및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라는 제목으로 속초시 대포항 내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여 장기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주) 측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매수인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관련 시설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상태이며 □□□□(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취소절차 진행 중임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합의간주

합의간주 이행결과

- 수원일보-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신청취지 참조〉

제3장 추후보도 사례



제3장 추후보도 사례

▶ 사례12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288·289, 2016서울조정290·291(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박○○ 외 3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중 재 부	서울 제5중재부
접 수 일	2016. 3. 3.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추후보도,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영어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불 꺼진 방에서 아이들에게 도깨비와 통화하라며 위협했고,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초상이 들어있는 CCTV 영상을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 당시 피의사실에 불과한 신청인들의 혐의를 상당히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학부모들의 피해 진술에 반해 신청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유, 당사자 간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의 및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 주장 나와』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16일자 뉴스면) 외 4건

■ 내 용

- ▷ 앵 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바로 옆 ○○에서 영어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를 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CTV의 사각 지대에 벌어진 폭행이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버젓이 체벌이 자행됐습니다.
- ▷ 기 자 : 유치원 교사가 불이 꺼진 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아이에게 들이댑니다.
두 사람이 CCTV의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신체 일부가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교사와 아이의 실랑이는 계속됩니다.
당시 5살이던 이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이 도깨비 방에서 도깨비와 통화하라”며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 ▷ 목격한 유치원생 : “말 안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어디를 때렸는데?) “엉덩이”
(또 어디 했는데?) “머리, 이마”
- ▷ 기 자 :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벽을 보고 선 채 손을 들고 체벌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여러 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 2명과 관리자 1명을 고소했습니다.
- ▷ 피해 아동 부모 : “너무 무섭다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고 막 우는거예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몸을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 ▷ 기 자 :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 유치원 교사 : “선생님이 토닥토닥해준 건데, 엄마가 맞았냐고 물어보면 5세 아이들은 ‘아, 그럼 때렸네’라고 생각해서”
- ▷ 기 자 : 경찰은 해당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추후보도문을 <채널A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종합뉴스(<http://news.ichannela.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 가. 제목 : “경기 ○○ 영어 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사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분)”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월 16일, 22일, 24일 <종합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라는 등의 제목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과 관련된 교사들 모두 2015년 11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경기 ○○ 영어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월 16일 「아동 학대 유치원 ‘도깨비방’의 실체는?’ 등 관련 보도에서 경기 ○○의 영어유치원 교사들이 불 꺼진 ‘도깨비방’에서 원생들을 체벌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교사들은 모두 2015년 11월 30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3월 30일 10:00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 채널A> 초기화면 주요 뉴스목록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화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며, 피신청인의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년 4월 5일까지 금 850만 원(신청인 박○○ 150만 원, 신청인 최△△·박□□ 각 200만 원, 신청인 송◇◇ 3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3.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채널A - 『경기 ○○ 영어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13

모 지자체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2153·2154, 2016서울조정2155·2156, 2016서울조정2219·2220(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KBS-1TV, 경인KBS-1TV, KBS미디어)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12. 21.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추후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현무암을 불법으로 채취해 조경용 석재로 팔아넘긴 일당이 체포됐고,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은 추후보도 방송 및 인터넷 게재를 수용할 수 있으나, 보도 당시 경찰서의 보도자료 및 추가적인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하였던 바,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해 추후보도를 보도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아울러 신청인은 KBS 외에도 신청인의 혐의사실을 보도한 47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를 청구했으며, 언론사들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심리 전 추후보도문을 게재하여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신청과 동일하게 모두 피해구제되어 종결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 단속 공무원은 ‘뒷집’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외 4건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버섯 대신 현무암』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 내 용

- ▷ 앵 커 : 버섯 키운다고 허가 받은 땅에서, 현무암 수억 원어치를 무단으로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 ▷ 기 자 :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 ▷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굴착기가 닿을 수 있는 곳은 굽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 ▷ 기 자 :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흥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다.
- ▷ 이○○(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 ▷ 기 자 :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 ▷ 김○○(○○경찰서 ○○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 ▷ 기 자 :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정대상보도 2

- KBS미디어 - 『조경용 현무암 6천 톤 불법 채석 일당·묵인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내 용

조경용 석재로 인기 있는 현무암을 대량으로 불법 채석해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경찰서는 현무암을 불법으로 캐내 조경용 석재로 팔아넘긴 혐의로 홍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산지 훼손을 묵인해 준 혐의 등으로 ○○군 공무원 이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 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군 ○○읍 ○○리 야산에서 현무암 6천 톤, 시가 6억 원 어치를 허가 없이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홍 씨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지만, ○○군 공무원 이 씨 등이 이를 묵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불법채취된 현무암은 전국 각지의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 1은 아래 추후보도문을 KBS-TV <뉴스12>외 4개 프로그램 및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 2는 KBS뉴스(<http://news.kb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 가. 제목 : “현무암 6,000톤 불법 채취 … 공무원이 묵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 11. 6.(뉴스 12)와 5개 프로그램에서 “현무암 6,000톤 불법채취 … 공무원이 뒷집”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세 차례나 신고 했지만 공무원 이 씨 등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군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현무암 불법채취를 묵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군청 공무원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7년 1월 11일까지 KBS-1TV 〈뉴스7〉 및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되,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7년 1월 11일까지 KBS NEWS 홈페이지(<http://news.kbs.co.kr>)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11일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제3항의 사항을 전송한다.
5. 피신청인들이 제2항~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제2항~제4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의 각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및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목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각 보도 (2017년 1월 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제4장 손해배상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사례

▶ 사례14

전단 배포 중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두고 불법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388·389, 2016서울조정390·391(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3. 16.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반론보도,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대학로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호객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공연 전단을 배포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을 촬영 및 보도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중재부는 신청인의 전단배포행위가 호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 게재 및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손해 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중앙일보 -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4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 내 용

주말에 서울 대학로를 훑 나가봤는지.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를 나갈 때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이가 있다. 속칭 ‘빼끼’라 불리는 호객꾼이다.

연극·뮤지컬 리스트가 빼곡한 책받침을 들고는 “배꼽 빠져요”라며 옷깃을 붙잡는다. 때론 앓되고 간혹 결령댄다. “빼끼가 대학로 물 흐른다”라며 술한 연극인들이 목청을 높이지만 잡초같다. 단속을 비웃으며 활개친다. 그래서 “뒤에 조폭이 있다” “점조직이다” 등 소문만 무성하다.

과연 대학로 빼끼는 누구인가. 그 세계를 알아보려고 빼끼 경력 5년의 박모 씨를 접촉했다. “이 바닥 좁다. 나라는 김새라도 보이면 당장 떠야한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인터뷰는 18일과 19일 두 번 진행됐다.

질의 : 단도직입적으로 빼끼는 누구인가.

응답 : “빼끼라는 말 거북하다. ‘전단팀’이라고 해달라. 제작사마다 기획팀·마케팅팀 있지 않나. 그런 업무처럼 공연 소개하는 전단지 만들고 돌리는 일을 한다. 홍보 직원인 셈이다. 단지 그 일을 책상에 있지만 앉고 거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한다. 가장 왕성하게 전단팀을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 M·S·Y 제작사다.”

질의 : 전단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응답 : “제작사에 소속되며 피라미드 구조다. 실장 한명에 팀장 서너명, 각 팀장 아래에 5~10명의 ‘알바’가 있다. 주말엔 고교생 알바가 많다. 전단팀은 비수기 때는 20명, 연말·방학 등 성수기 때는 40명 정도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대목엔 팀별로 80명까지 풀린다.”

질의 : 벌이는 어떤가.

응답 : “기본급 없다. 손님 물어오는 데로 돈 번다. 전단팀 판매액중 35~40%가 몫으로 떨어진다. 티켓 한장당 실장 5%, 팀장 10%, 알바 20~25% 할당된다. 알바는 100만 원 안팎, 실·팀장은 200만~300만 원 번다. 수입은 웬만한 대학로 배우보다 낮다. 현장까지 직접 뛰는 에이스급 실·팀장은 월 500만 원 찍는다. 4, 5년 전 경기 좋을 때는 월 1,000만 원 넘긴 이도 있었다.”

질의 : 구역은 정해져 있나.

응답 : “가장 인기있는 구간은 다 함께 들어가고, 나머지는 독점 방식이다. 혜화역 3번 출구는 안 간다. 우리끼리 ‘미라 나온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환자가 많아서다. 4번 출구도 별로 재미 못 본다. 노점상이 많아 시끄럽다. 노다지는 2번 출구다. 출구 바로 앞쪽은 S사만 들어간다. 골목길도 구간별로 주인이 있다.”

질의 : “빼끼가 순위 조작한다”고 원성이 높다.

응답 : “예전엔 했다.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식이었다. 예매사이트 순위 화면을 캡처해서 인쇄한다. 그걸 코팅해서 책받침 만드는데 우리 공연을 가짜로 집어넣는다. 하나는 3위, 다른 하나는 7, 8위로 한다. 1, 2위는 너무 티 나서 안 한다. 그걸 보여주며 손님 꼬드킨다. 근데 모바일 시대 아닌가. 허위 순위 얘기하면 바로 검색한다. 약발 떨어졌다.”

질의 : 뒤에 조폭이 있다는 소문이다.

응답 : “10년 전에는 그랬다고 한다. 동네 양아치면 몰라도 이런 푼돈을 놓고 어떤 주먹이 ‘쪽 팔리게’ 들어오겠나. 요즘 경기 정말 안 좋다.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작품은 후져도 빼끼한테 사면 싸다’는 인식 덕이었다. 근데 최근엔 저가 연극이 수두룩하다. 1만 원 밑으로 팔아선 우리도 남는 게 없다.”

질의 : 대학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주범 아닌가.

응답 : “우리가 하는 건 오프라인 영업이다. 영업은 전쟁이다. 전쟁터에서 무슨 반칙 운운인가. 연극 흥행 안 되면 핑계 필요하니, 그걸 빼끼한테 돌리는 거다. 그렇게 욕하면서 ‘표 팔아달라’고 뒤로 제안하는 건 또 뭐가. 메이저 제작사도 비수기 때는 요청 들어온다. M·S·Y가 빼끼 영업한다는 건 얼추 소문 나 있다. 관공서도 눈치채고 있다. 그럼에도 생존하는 데엔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대학로 빼끼 역사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 ‘개그콘서트’의 이름을 빌린 짝퉁 코믹극이 호객 행위에 적극적이었다. “지나가는 행인 끌어들이는 것도 일종의 연습”이라며 출연진이 직접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특정 표시가 된 전단지를 돌려 회수 양만큼 돈을 주었다.

2000년대 중반 개그 공연에 관객이 물리면서 빼끼간 다툼도 빈번해졌다. 구역을 둘러싼 몸싸움과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때는 인근 건달들도 관여했다는 후문이다. 대학로 빼끼 경력 10여년의 정모 씨는 “우리끼리 다툼은 할 망정 선을 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나마 관대하던 대학로 연극인들이 최근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데엔 뼈끼문화가 변질됐다는 우려가 있다. 단지 공연을 알리며 관객을 모집하는 수위를 넘어, 순위조작·허위정보·기만행위 등으로 다른 공연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고 있다. 명백한 영업방해라는 인식이다.

현재 호객행위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경범죄다. 한국연극협회 정대경 이사장은 “기업화된 뼈끼 연극 제작사는 폐업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극 물어보면 “1진 배우 다 지방 갔다” 악평

손님 낚는 4단계 기술

멀쩡히 걸어가던 행인을 어떻게 허름한 극장 안으로 데려올까. 대학로 뼈끼의 손님 낚는 4단계 기술은 치밀하다.

1. 포착하라. 무턱대고 달려 드는 건 하수다. 관람 의사가 있는지를 포착해내는 게 첫 단추다. ‘오랜만에 대학로 나왔는데 연극이라도 한번 볼까’라는 뜻이 있다면 서성에게 마련이다. 무언가 찾는 듯한 떨리는 눈매를 간파하라. 그리고 곧 슬며시 다가간다. “뭐 있는데요?”라고 말하는 이라면 ‘호객’이다.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덤터기를 씌울 수도 있다.
2. 흔들어라. 요즘 관객 그리 어수룩하지 않다. 최근 인기 공연이 무엇인지 얼추 안다. “보고 싶은 거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 있어요, 싸게 드릴게요”라고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다. 손님이 다른 작품을 거론하면 멈칫하며 탄식을 내신다.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왜요?”라고 물어오면 “아니요, 그냥 ... ”이라며 시선을 회피한다.
3. 악담하라. 기존 선택에 균열을 냈다면 이제 확인 사살이다. 악평을 퍼붓는다. 작품별 매뉴얼이 있다. ‘옥탑방 고양이’를 보고 싶어하면 “남자들끼리 뽀뽀해, 그런 취향이서?”라고 한다. ‘죽여주는 이야기’에 대해선 “아니 우울하게 자살하는 애기 좋아해요?”라고 고개를 젓는다. “1진 배우는 다 지방가서 오늘은 처음 서는 신인들인데 ...”도 단골 레퍼토리다.
4. 연기하라. 마지막 필살기다. 예매해주겠다며 전화 건다. “실장님, 저예요.” 물론 가짜다. “아, 자리 없어요, 기둥 뒤?” 이쯤에서 손님은 반쯤 포기한다. 그래도 고집부리면 또 전화거는 척을 한다. “보조석밖에 없대구요? 반 밖에 안보인다고 ... ” 결국 손님 입에서 “그럼 뭐가 볼 만 해요?”라는 말이 나온다. 그제서야 “이거 괜찮죠”라며 자신의 작품을 내민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문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경력 5년 ‘빼끼’가 털어놓는 뒷얘기”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온라인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com/>)의 홈페이지 문화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관련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문화면에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라는 제목으로 사진에 보도된 사람이 일명 빼끼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람들을 붙잡고 강매하는 방식의 호객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2면>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제목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앙일보

홈페이지 <문화면>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중간 이상 부분에 [별지]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19619616>) 및 (<http://news.joins.com/article/19619383>) 본문 하단에도 [별지]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한다. [별지]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9.

[별지]

가. 제목 : 『대학로 빼끼』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2016년 3월 10일자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목의 기사에서 M제작사가 빼끼 영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M제작사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으로 호객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6년 4월 15일자 문화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참조〉
-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사례15

자살자를 수치화한 신청인의 웹툰을 보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권을 침해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966, 2016서울조정1967(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 2. 주식회사 매경닷컴 (MBN, 인터넷 MBN)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11. 21.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자살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도입부에 온라인에서 주목을 끈 웹툰이라며 자살자를 수치화한 그림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웹툰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며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고, 피신청인에게 저작권료 개념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했으며,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N - 김주하의 뉴스초점 프로그램 『‘나’를 사랑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9일자, 인터넷 MBN 9월 19일자 뉴스면)
- 내 용



▷ 앵 커 : 작년 5월, 온라인에서 주목을 끈 웹툰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 2시간에 3명, 20시간 동안엔 고등학교 한 반 전체인 30명이 사라집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고속버스 탑승객 40명, 그리고 한 달이면 300세대 아파트 주민 1,200명이 사라지지요.

무슨 공포영화 같은 이 수치는 2013년에 자살한 14,427명을 수치화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텐데,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지키고 있지요. 2년 전 수치로 비교해도 인구 10만 명 당 27.3명, OECD 평균인 12명의 2배가 넘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난 2005년, 유명 여배우가 자살한 이후 한 달간 자살자는 총 1,160명. 그 전달에 비해 425명이 늘었고, 2004년 한 공직자와 기업인이 자살을 한 그 달에도 4,095명으로 평소보다 751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1994년부터 12년 간 조사해 보니, 유명인이 사망하면 평소보다 월 평균 137명이 더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후략)

조정신청취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3,000,000원을, 피신청인 2는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은 신청인에게 2017년 1월 25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경닷컴(인터넷 MBN)은 신청인에게 2017년 1월 25일까지 금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해당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사례16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켜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635·63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서울 제8중재부
접 수 일	2016. 4. 1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시켜 아동의 이마에 멍이 들었다고 보도했고, 보육교사가 보낸 해명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노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아동은 교사의 박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된 사건 이전에 가정에서 놀다가 상처가 난 것이었고, 훈육은 하되 체벌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임에도 마치 신청인의 반론인 듯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박치기와 멍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학부모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마치 이번 박치기 논란에 대한 해명인 것처럼 인식되게끔 편집되었다며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도 보도에 신청인의 실명이 노출된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보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손해배상 지급만을 원하여, 양 당사자간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4일자)

■ 내 용

▷ 기 자 : 어린이집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믿고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아동 학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 ▷ 피해아동어머니 : 손을 펴더니 자기 머리를 되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때린거야?) 그랬더니 응 엄마 이렇게 때렸는데 참았어. 안 울었어.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

- ▷ 학부모 : 선생님한테 어디 맞았어.

- ▷ 엄 마 : 그렇게 맞았어.

- ▷ 아 이 : 팔을 이렇게 잡더니 확 밀었어. 말 안 듣는다고.

- ▷ 기 자 : 피해아동은 한명이 아니라는데요.

한 아이는 어른만 보면 불안해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 ▷ 앵 커 : 후유증이 늘 큰 문제거든요.

- ▷ 학부모 : 괜찮아 잘못된 거 아닌데 왜 그래 잘못된 거 아냐.

- ▷ 학부모 : 집에 오면 (힘든 마음을) 다 폭발하는 거 같아요.

- ▷ 리포터 : 이런 아이의 모습에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 ▷ 피해아동어머니 : CCTV를 보고 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CCTV를 보고 다음날 하혈을 시작했거든요.

- ▷ 자 막 :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 박치기를 시키고 있는 보육교사의 모습.
(그림방송)

- ▷ 기 자 :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시킨 보육교사.

- ▷ 앵 커 : 교사라고 할 수 없는 거 같은데요.

- ▷ 박치기 피해아동어머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아이를 잡아끌어서 자기 힘으로 다시 우리 아이랑 박치기를 시켜요. 선생님이 머리를 맞닿은 그 상태 그대로 아이들이 무릎을 꿇어요.

- ▷ 앵 커 : 말이 되나요. 저게.

- ▷ 자 막 :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

- ▷ 기 자 : 보육교사의 이어진 태도에 학부모는 더욱 할 말을 잃었는데요.

- ▷ 학부모 : 자기 발밑에 애들 둘을 그렇게 벌을 세워놓고 보육교사는 다리 꼬고 앉아서 간식으로 나온 잔치국수 국물을 마시더라고요.

- ▷ 기 자 : 친구와 여러 번 머리를 부딪친 아이의 머리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훈육은 해도 체벌은 절대하지 않는다고 학대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 앵 커 : 머리를 부딪친 것은 체벌이 아닌가보죠.
 - ▷ 기 자 : 해당어린이집을 찾아가 보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 ▷ 어린이집 관계자 : 더 잘 아시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와서 찌르냐고요.
 - ▷ 기 자 :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고 피해아동들 역시 어린이집을 옮긴 상태입니다.
- 학부모들은 6개월치 CCTV 영상까지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답답한 상황.
- ▷ 경 찰 : 보육교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출석을 연기했어요. 보육교사가 임신중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나가세요.
 - ▷ 학부모 :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고요.
 - ▷ 기 자 :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모든 것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 ▷ 피해학부모 :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전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SBS-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아동학대 보육교사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모닝와이드)은 지난 4월 14일자 모닝와이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아동학대로 아이들을 상처 입히고 해당 보육교사는 훈육은 하되 체벌은 안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방송하였습니다.
- 하지만 방송을 하는 중에 보육교사가 박치기를 시켜 아이들에게 박치기로 인한 상처가 났다고 방송을 하였지만 문제가 되는 사건 전에 해당 아이의 어머니가 할머니네서 놀다가 이마에 상처가 나있다고 어린이집에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당일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치기를 시켜 이마에 상처가 난 것이 아닌 그 전부터 있던

상처를 마치 학대행위를 행해 상처가 난 것이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육교사는 훈육은 하되 체벌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방송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이며, 사건이 있기 거의 1년 전 문자를 이번 사건에 대해 보육교사의 해명 메시지인 척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치기를 시켜 이마에 상처가 난 사실 또한 그 전부터 있던 상처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제작한 외주제작사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아래 신청인 계좌로 2016. 5. 27.(금) 18:00까지 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 등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6. 5. 20.) 이후 <SBS-TV> 및 계열사를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제작에 참여한 외주제작사 주식회사 ○○○ 및 소속 임직원(PD, 작가 포함)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5.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사례17

병원에서 의료기록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경기조정31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식회사 (OBS경인TV)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6. 10. 2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실종된 가족을 추적하는 르포를 보도하면서 해당 실종자가 치료받았던 병원 관계자인 신청인에게 실종자의 의료기록을 문의하는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 없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촬영 및 녹화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보도에 동의한 바 없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동의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신청인이 동의의 존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이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OBS경인TV - 추적르포 프로그램 『사라진 가족 4』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31일자)

■ 내 용

- ▷ 나레이션 : 실종 당시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 ▷ 남 자 : 어떤 업무 보시려고 하세요?
- ▷ 기 자 : 어머니께서 실종되셔서가지고 찾으려고 진단서가 필요해서요.
- ▷ 신청인 : 진단서를 받으시려고요?
- ▷ 남 자 : 네
- ▷ 나레이션 : 이렇게 어머니의 실종을 확인할 때마다 막내아들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 ▷ 남 자 : (진단서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 ▷ 신청인 : 이거(실종자 상태)는 나온 그대로세요. 알츠하이머 치매 있으시고 고혈압 있으시고 내용 그대로예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도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또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한다.

2016. 11. 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제5장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제5장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 사례18

고등학생인 신청인이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72·97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닷컴)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7. 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역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줬고,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수차례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행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 특혜나 차별이 없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취재 없이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분량 및 횟수, 내용이 이례적이고, 미성년자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신청인이 특정되어 피해가 인정되나, 피해구제방법으로서 보도문 게재보다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권유 하였고, 신청인은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과 함께 향후 보도에 신청인을 특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신원 특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아시아경제닷컴 -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 입시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5일자 사회면)

- 내 용

전남 ○○고등학교가 수행평가시험에서 교사의 입맛대로 특정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줘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돼 대학입시 비리 논란에 휘말렸다.

더욱이 이 학교는 지난해 2학기 특기자 선발전에서 8등 S여학생을 특기자로 선정하기 위해 1~2등을 기록한 K, J학생을 1학기 징계사유로 탈락시켜 이중 처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에도 교사의 입맛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당사자는 8등 특기생 S여학생이다.

5일 ○○고 6명의 여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2015년 12월 수행평가 당시 P감독이 내준 과제를 잘 수행했는데도 자신들보다 더 못한 S학생에게 부상투혼이라는 주장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며 “아이언 평가에서 S학생은 드라이버로, 나머지 학생은 7번 아이언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다”면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교육부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없이 졸속으로 행정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대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권침해, 징계조작, 특기생 바뀌치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번 수행평가 특혜주장은 징계조작, 특기생 바뀌치기와 연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낼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의 피해주장은 모두가 한 결 같이 동일했다.

2015년 12월 2학기 경기과 16명의 학생이 전체 참가한 가운데 이 학교연습장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됐다.

P감독이 진행한 아이언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에 50점은 기본 점수이고 공 하나에 10점씩 5개를 친다. P감독은 우측 탑과 가운데 철타사이로 공을 쳐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지시했다. 거리까지 평가했다.

B학생은 “분명 우측 탑과 가운데 철타사이의 방향성과 거리까지 본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5개 모두 잘 친 저와 C친구는 75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이어 “이 때까지 수행평가 점수가 90점 밑으로 내려가 본적이 없었는데 공 5개가

모두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완벽히 들어맞았는데 생각보다 낮은 점수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으로 수행평가를 시작한 S학생이 문제였다. B학생은 “S학생이 손 깍스를 하고 있던 것을 병원에서 풀고 왔다”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S학생은 사방팔방 방향성이 없는 데다 거리도 짧아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지만 부상투혼이라는 특혜를 받아 80점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는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P감독에게 따져 물었지만 P감독은 ‘자꾸 그러면 태도점수를 깎는다’고 말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감독이 S학생의 수행평가점수를 더 많이 주기 위해 B양을 압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B학생은 애초에 우리 학교는 다쳐서 점수를 더 준 사실도 없고 못 치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준적도 없었다”며 “K프로도 P프로도 비정상적으로 S학생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고 밝혔다. K프로는 계약직으로 3년 간 근무해왔고 현재는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P프로(P감독 제자)도 수행평가 때 S학생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P프로는 7번 아이언 10개 중 5개가 앞 망에 올라가야 100점이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뒷 망을 맞으면 100점을 준다는 것.

J학생에 따르면 “S학생과 나에게는 초보자라는 이유로 7번 아이언 대신 드라이버를 치게 했다”며 “그래서 1학년 P프로의 과목 수행평가를 잘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또한 J학생이 2학년 P감독 과목 수행평가 때 일이다.

P감독은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쳐서 방향과 거리 임팩트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B학생이 S학생보다 잘 쳤는데 S학생 수행평가 점수가 더 높았다”며 “그 이유는 부상투혼 때문에 태도가 좋아 점수를 더 줬다”고 J학생은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J학생은 “K프로가 진행하는 수행평가 때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학생들이 점수를 주면 K프로는 몇 명의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줬고, C프로는 기회를 더 준 학생들도 있었고 가산점을 더 준 학생들도 있어 수행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행평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B학생을 포함, 5명에 이르고 피해

자체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 전 감독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학생들이 하나 둘 이 같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는 학교의 수행평가 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수행평가 조작은 대학입시 비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P감독은 “똑같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점수를 기재했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며 “S학생한테 그런(특혜를 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P감독은 이어 “(그 당시)남학생들이 다 봤었기 때문에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라”며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 것도 없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감독은 또 “‘태도점수 깎아 버린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면서 “없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여학생들 말만 듣고 ... 남학생들도 같이 봤는데 남학생들한테도 들어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장한 학생하고 대질해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며 “절대 한 적이 없고 공평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보도 2

■ 아시아경제닷컴 -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사회면) 외 9건

■ 내 용

전남 ○○고등학교 내 기숙사에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전남도교육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K학생과 J학생은 “S학생(현 학생회장)은 같은 반 한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며 “이 사실은 골프감독이자 기숙사 사감인 P감독이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피해학생을 보호조치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기숙사 같은 방을 배정해 줬다”고 말했다.

학교의 이 같은 조치로 피해학생은 S학생회장에게 2년여 간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3월 31일 학교에서 가해자 S학생회장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만나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S학생회장은 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피해학생이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문제도 학교 측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증거가 없어 학폭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학폭위는 개최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학교 측은 피·가해자 간 합의가 있었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해 학교 사안으로 종결했다.

이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은 최근 사감교사를 맡았던 P감독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물어 봤지만 P감독은 “그런 피해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면담했더니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P감독에게 했었던 것 같다”며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학교장은 이어 “P감독과 면담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일이고 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듯 보였다.

이에 대해 피해학부모는 “P감독에게 피해사실을 분명히 알렸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의 홈페이지 뉴스면의 초기화면에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1>

- 가. 제목 :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5일자 사회면에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5일 ○○고 6명의 여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2015년 12월

수행평가 당시 P감독이 내준 과제를 잘 수행했는데도 자신들보다 더 못한 S학생에게 부상 투혼이라는 주장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며 “아이언 평가에서 S학생은 드라이버로, 나머지 학생은 7번 아이언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다”면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의 전수조사 끝에 기사에서 언급된 2015년 12월경 수행평가에서 ‘S학생’에게 다른 학생에 비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많이 준 사실이 없고 올바르게 채점하였으며, 2014년 6월경 ‘아이언 평가’에서는 ‘S학생’ 외에 추가로 2명의 학생까지도 다른 모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드라이버채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는 바, 각 수행평가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2〉

가. 제목 :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25일자 사회면에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3일 전남도교육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K학생과 J학생은 “S학생(현 학생회장)은 같은 반 한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이 사실은 골프감독이자 기숙사 사감인 P감독이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이 피해학생을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기숙사 같은 방을 배정해 줬다”고 말했다. 학교의 이 같은 조치로 피해학생은 S학생회장에게 2년여 간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3월31일 학교에서 가해자 S학생회장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만나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S학생회장은 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피해학생이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S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학생을 2년여 간 괴롭힌 사실이 없고, ‘S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원만한 합의를 한 이후에 ‘S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3〉

가. 제목 :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0일자 사회면에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숨기고 2년여 간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이 기숙사에서 강요에 못이겨 온갖 잡일을 해오며 피해를 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가해학생 B는 피해학생 A와 은행에 가는 도중 “C학생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만약에 C학생과 말하면 “기숙사 방문을 잠근다고 협박했다”는 것. B학생과 C학생은 서로 다툼 뒤였다. A학생은 다른 친구에게 이 같은 말을 전했다. B학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학생 앞에서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XXX이 진짜”라며 욕을 했다. (-중략-) 또한 B학생은 A학생이 집에 가는 날 학교버스 자리를 무조건 앞쪽으로 맡아 달라고 했다. A학생은 앞쪽 자리는 이미 친구들이 앉아 있어 중간 쯤 자리를 잡았으나 B학생은 “앞에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에 앉아 있어 XXX아”라고 욕했다. 특히 B학생은 기숙사 방을 같이 사용할 당시 주로 방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라면 끓이기 등 모든 일들을 시켰다. B학생은 A학생이 보이지 않으면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찾아 나섰고 방으로 데려와 온갖 잡일을 시켜댔다. 하루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 치료를 받느라 일요일에 기숙사 입실을 못했던 때도 있었다. 치료를 받고 며칠 뒤 기숙사에 갔을 때도 평소와 같이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B학생은 A학생을 보자마자 빨래하라고 시켰다. (-중략-) 청소시간이라는 방송이 나오면 B학생은 A학생을 소리쳐 부르며 찾아다녔고 A학생을 데려가 청소를 시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B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A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에게 2년여 간 욕을 하거나 폭행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4〉

가. 제목 :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종용’ ... 학교 규정도 ‘손봐’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0일자 사회면에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종용’ ... 학교 규정도 ‘손봐’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나 최근 B학생이 A학생을 괴롭히고 욕설을 해왔던 사실과 B학생의 음주, 흡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의 사실을 들어 학부모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잇따라 요구됐고 본보가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학교 측이 B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B학생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체험학습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잦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학교의 경우 2학기 동안 체험학습은 7일로 알려져 있으며, ○○고는 19일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B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흡연한 사실은 없고, ‘B학생’의 체험학습이 다른 학생들보다 잦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9. 2.(금) 18:00까지 아래의 기사들을 전부 삭제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삭제 대상 기사

- 1) <아시아경제닷컴> 2016. 4. 5.자, 뉴스>사회면,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0510020705755>

- 2)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17.자, 뉴스>사회면, 「상습적으로 학우 괴롭힌 학생회장에게 ‘교육감 표창’이라니」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718180781808>

- 3)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5.자, 뉴스>사회면, 「“수행평가 특혜” 주장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417135122145>

- 4)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5.자, 뉴스>사회면,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509380345736>

- 5)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6.자, 뉴스>사회면, 「전남도교육청 “○○고에 학폭위원회 개최” 명령」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615105679951>

- 6)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①]무조건 이해하고
인내하라...“딸에게 미안하다” 눈물」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5681710>
- 7)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3576761>
- 8)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③]○○고, 학교폭력
수수방관 ... 전남교육청은 ‘뒷집」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1563853>
- 9)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종용’ ... 학교 규정도 ‘손봐」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0445108840>
- 10)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2.자, 뉴스>사회면, 「“학교폭력 방치에 절규하는 부모의
‘한’ 풀어주세요”」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215215294048>
- 11) <아시아경제닷컴> 2016. 7. 6.자, 뉴스>사회면, 「학교폭력은 통상적인 것 ... ‘죄는
있어도 처벌 없다?’」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0610022359432>
2.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보도를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2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례19

신청인이 지하철에 앉아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254 손배청구
신 청 인	장 ○
피 신 청 인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9. 2.
처 리 결 과	취하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셔틀형 급행열차가 투입된 첫날의 상황을 보도한 조정대상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매개하였고, 기사제공언론사는 조정대상 기사에서 신청인 및 객차 내부에 앉아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조정대상 기사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많이 본 기사로 뜨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인을 비난하는 모욕적인 댓글이 수 백개 달려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내규에 따라 일부 댓글은 자체 조치를 취했고, 그 외 댓글에 대해서는 신청인 요청에 따라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신청인이 명예 훼손적인 댓글을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였다. 중재부는 삭제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시조치 기간(30일) 이후로 심리를 속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요청한 댓글들 중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종국적으로 노출 및 검색차단 조치되었으며, 이를 확인한 신청인이 2차 기일 전에 사건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네이버 - 『“앉아서 출근하다니” ... ‘천국鐵’된 9호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뉴스면)

■ 내 용



× “앉아서 출근하... :: 네이버 뉴스
m.news.naver.com

사진 가운데 정장입고 찍벌. 저런것들이 사라져야 더 쾌적한 지하철이된다.

2시간 전 | 신고

답글 156 3038 274

L [redacted]
남자가 봐도 너무하다 옆사람이 찍벌남때문에 움츠리잖아...

2시간 전 | 신고

L [redacted]
대박 일부러 옆에 여자들하고 밀착하려고 벌린듯 진짜 극혐

2시간 전 | 신고

L [redacted]
얼마벌린거같지도않구만..

2시간 전 | 신고

L [redacted]
진짜 개극혐 개공감 ㅋㅋㅋ

2시간 전 | 신고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취하

취하 후 이행결과

모욕성 댓글 임시조치 후 검색 및 노출 차단

▶ 사례20

탈북여성 중매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사진 및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08 손배청구
신 청 인	최○○
피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8. 3.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탈북여성 중매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신청인과 교제했던 남성의 인터뷰를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진과 사적인 남녀 관계가 동의 없이 공개됐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 보도에 동의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제보자의 의견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현재 해당 업체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였다며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근무했던 결혼정보업체에 사실조회를 통해 조정대상보도 이후 회사 이미지 실추 및 회원들의 항의로 사직을 권고한 점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진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남남북녀는 없다, 탈북여성 중매업체』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 내 용
 - ▷ 김창희(가명) : 네 번째 만날 때 (여자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북결혼 중매업체에서 일한다. 다른 회사 커플매니저한테 요청이 온대요. (자기업체 남성회원을) 만나달라고요. 그것은 남자회원의 만남횟수가 빨리 지나가야 하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3번이건 6번이건 남자회원의 만남 횟수가 빨리 지나야 한 회원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회원이 들어오니까 횟수 없애려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진 공개)

저를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회원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만나지마라’ 이야기했죠.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일(남자 만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여자도) 제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안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는 하는데 끝까지 회사를 다녔고 저한테는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 ▷ M C : 그 여인은 왜 김 씨와의 교제 중에도 다른 남성과의 맞선 자리에 나갔을까.
- ▷ 취재진 : 혹시 ○○○ 매니저님 계시나요? ○○○씨요.
- ▷ 결혼중개업체 대표 : 솔직히 그 여성분은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름다운 만남을 했으면 아름답게 끝나는 게 인간이 아니겠냐.
- ▷ 결혼중개업체 직원 : 아니 근데 회사 직원들도 다 미혼인데 괜찮은 분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왜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 ▷ M C : 취재결과 관계 업체 직원끼리 서로 돌아가며 맞선자리를 채워나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VOD) 서비스 및 피신청인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종합유선방송(CATV)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VOD 서비스에서 신청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 관련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1항 ~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미디어 - 다시보기(VOD) 서비스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하여 수정
-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사례21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음식점 내부가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8, 2016서울조정9(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임○○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1. 7.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음식점의 CCTV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입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을 선의로 제공하면서 음식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미흡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피신청인이 유감표명과 함께 조정대상보도 노출 및 검색 차단을 수용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액 2,000,000원을 권유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굿모닝A 프로그램 『술 마시다 흥기 난동 ... 2명 부상』 제하의 각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인터넷 채널A 10월 26일자 뉴스면)
- 내 용
 - ▷ 진행자 : 어제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도주했지만 곧 경찰에 붙잡혔고, 흉기에 찔린 남성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 ▷ 기 자 : 밤 늦은 시각, 길거리에서 마주보고 선 두 남성.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한 명이 옷을 벗는가 싶더니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마주보고 있던 A씨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인근 상인 : “둘 다 술에 취했었나봐. ‘그래 찔러봐, 찔러봐’ 하니까 진짜로 찔렸대”
- ▷ 기 자 : 그런데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이 쓰러진 사이 피해 남성의 일행인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 ▷ 인근 상인 : “흉기로 그 사람이 찌르고 도망을 갔는데, 한 사람이 흉기에 찔려서 (복부를) 쥐고 잡으러 갔고”
- ▷ 기 자 :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한 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뒤 달아났던 A씨도 사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2월 1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2016년 2월 5일 10:00까지 채널A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에 게시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6년 2월 12일 10:00까지 피신청인 대리인 임○○ 차장 명의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2. 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피신청인 유감표명

▶ 사례22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의 옹벽 디자인이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부산조정1·2, 2016부산조정3·4(병합) 각 조정·반론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국제신문사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중 재 부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6. 1. 12.
처 리 결 과	각 취하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논란이 있다고 보도 하면서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과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 도안을 각각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의 모 중학교 담장 공모 디자인은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공모에 제출한 신청인의 주간 시뮬레이션 도안으로서, 결국 보도의 도안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간 및 야간 시뮬레이션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마치 다른 업체가 다른 공모에 제출했던 도안인 것처럼 비교함으로써 신청인이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오인하도록 보도하였다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이에 피신청인이 사진을 잘못 게재한 점을 인정하고, 심리 전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국제신문 -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제하의 각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위)과 경북 모 중학교 담장 공보에 제출된 디자인.

부산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이 ‘저작권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최근 사업을 맡았던 업체에서 사업 포기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지만, 앞으로 관 주도 사업에서 표절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한 설계업체 A사는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 사업을 따낸 B사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B사가 지난 5월 부산진구의 공무를 통해 따낸 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은 A사가 2012년 경북의 한 중·고등학교 담장 디자인 사업에 공모했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회사의 디자인을 본 사람들은 표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DNA 구조를 형상화해 원이 휘감겨 있는 타일의 형태와 ‘예술적 가치’, ‘환경 친화력’ 등의 문구 등 B사의 옹벽 디자인은 A사가 2012년 제작한 디자인과 유사점이 많다.

A사 관계자는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절’”이라며 “남의 디자인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B사는 일체의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작품을 본 디자인 전문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사는 원래 A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퇴하 이후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부산진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작품은 공모에 함께 나온 작품도 아니고, 다른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절 여부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사업은 애초 예상했던 9월 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업체에 공사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완공에는 120일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된 타일을 이용해 공사하는 데만 한 달이 넘을 것으로 부산진구는 추정하고 있다. 사업이 올해 안에 진행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받은 사업비 3억 3000만 원은 시로 환수당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발주를 넣으면 사업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국제신문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부산진구 새 업체에 연내 발주 제도적 검증장치 마련 지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 9월 15일자 10면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논란에 표류]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게재된 기사의 사진(위, 아래)은 진구청에 응모한 B사의 주간, 야간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위)과 경북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이라고 사진 설명을 달아 누가 봐도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A사 관계자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소 독자로부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취하 후 이행결과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제6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 후속보도 사례

▶ 사례23

강남에 소재한 한 여행사의 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강남 여행사”로 칭하여 동일 상호의 여행사에 피해를 입혔다.

사 건	2016서울조정189·19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여행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와이티엔 (YTN)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2.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PR·후속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강남에 소재한 한 여행사가 부도를 내 신혼부부 수십 쌍이 여행경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강남지역의 한 여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도난 여행사와 혼동하도록 하였고, 고객들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을 받는 등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며 정정보도 및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보도의 부도난 여행사와 신청인 회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는 후속보도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YTN - 종합뉴스 프로그램 『서울 강남 여행사 부도 ... 신혼부부 피해 속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 내 용

신혼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부도를 내고 신혼부부 수십 쌍의 여행비를 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여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웨딩 업체와 연계해 고객을 유치한 해당 여행사가 지난 4일 부도처리 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신혼부부 60여 쌍,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에도 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YTN-TV 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인 속도로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꼴의 크기로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해 주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여행사” 부도 또는 “서울 강남여행사의 부도”는 “○○여행사 부도”가 아니고 강남지역 소재의 “A”여행사로 밝혀져(또는 “오류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 12. 16.과 2016. 1. 12. 아침 종합뉴스방송에서 (서울) 강남여행사 부도 및 회사대표의 도피, 잠적 등의 “강남여행사 부도”라는 자막의 하단표기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부도 여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주)○○여행사” 명칭을 가진 여행 업체가 있었고 지난 보도는 강남지역에 소재한 A여행사로서, 더 이상 ○○여행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개월의 영업손실금, 신청인의 명예훼손과 신용추락,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신청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강남 여행사 부도’ 단독 기사 관련 안내문

나. 본문 : 지난 2015년 12월 16일자 「서울 강남 여행사 부도 ... 신혼부부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부도가 났다고 보도된 여행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회사로 동대문구에 있는 주식회사 ○○여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YTN(<http://www.ytn.co.kr>) 홈페이지에 제1항의 보도문을 2016년 3월 23일 09:00부터 팝업창으로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은 인터넷 YTN 홈페이지의 통상적인 기사 제목 및 내용과 같은 크기의 글씨체로 쓰며, 팝업창의 크기는 800×600으로 하고, 각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버에 아웃링크한 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3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YTN - 『‘강남 여행사 부도’ 단독 기사 관련 안내문』 제하의 공지
(2015년 1월 30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제6장 기타 - 기각결정 사례

▶ 사례24

구청의 시정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사 건	2016서울조정791·792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어○○
피 신 청 인	이데일리 주식회사 (인터넷 이데일리)
중 재 부	서울 제4중재부
접 수 일	2016. 5. 31.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강남구가 세곡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세곡동 주민단체인 ○○○○주민연합이 생색내기용 행사라고 비판한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주민연합의 의견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주민연합의 의견을 게재한 것만으로 지역주민인 신청인을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이데일리 - 『강남구 ‘현안 산적’ 세곡동 주민과 대화 ... 효과는 미지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사회면)
- 내 용
서울 강남구가 학교·교통·문화 등 기반시설 부족 등 산적한 세곡동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선다.

강남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세곡동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4회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곡동은 기존 8개 전원마을로 구성된 인구 약 5000명의 도심 속 농촌지역이었으나 지난해 보금자리 1, 2지구가 준공되면서 인구 5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탈바꿈됐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보고회에 주요부서 간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강남보금자리 지구내 도서관 건립 등이다.

특히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밤고개로 확장, 대모산터널 건설, 위례~신사선 지선 신설, 동서철도 노선 경유 등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안보고회의 실효성이다.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세곡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이다.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나 도서관 건립 등은 구가 갖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 가능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교통과 교육 문제는 강남구가 풀 수 있는 게 없다.

강남구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요구를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강남구 세곡동장이 세곡동 주민단체인 ○○○○주민연합이 배포한 전단지들 수거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여서 실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옥○○ 강남구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살기 좋은 세곡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주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강남구가 관련 단체 등을 동원해 개최하는 생색내기용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사실관계가 없는 내용을 삭제 후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주민연합의 실체를 밝히길 바란다.

나. 본문 : ○○○○주민연합이라는 단체명을 기재하였는데 ○○○○주민연합이 무슨 단체인지 알 수 없으며, 세곡 주민을 위한 활동보다는 “국민행복주택”을 반대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임. 세곡동 주민으로서 인정한 적도 없고 어느 직능단체도 인정한 적이 없고 관공서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는 단체의 주장을 쓰고 그 단체의 주장과 사건이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게재하여 세곡동 주민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기각결정서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남구청이 세곡동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세곡동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보도하였다.

나.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남구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주민연합이라는 유명 단체의 의견을 보도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해당 보도에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말한다.

나.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신청인을 직접 지명하여 언급한 바가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당 보도 중 신청인을 지목한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피해를 입은 자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13.

제6장 기타 – 조정불성립결정 사례

▶ 사례25

사드(THAAD) 도입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배치 지역은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246 정정청구
신 청 인	국방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통일뉴스 (통일뉴스)
중 재 부	서울 제7중재부
접 수 일	2016. 9. 1.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만평을 통해 사드 도입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효용성이 낮고 세계 최초로 민가를 앞에 두고 배치해 전자파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드 배치비용 및 운영·유지비는 모두 미국에서 부담하고, 우리 정부가 구입할 계획이 없으며, 미군은 미 육군 교범에 있는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 도식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이미 타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풍자와 은유’를 통한 만화 비평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정정보도할 의향은 없으나, 반론보도는 게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당사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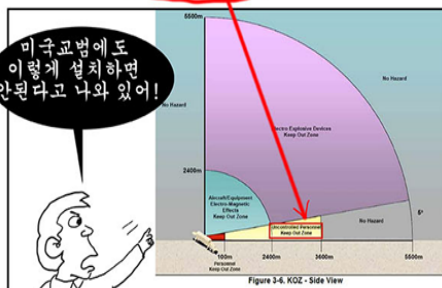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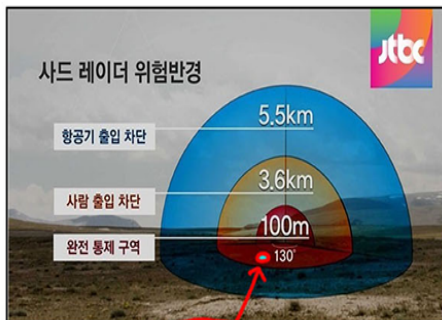
- 통일뉴스 - 『사드 배치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일자 그림만평면)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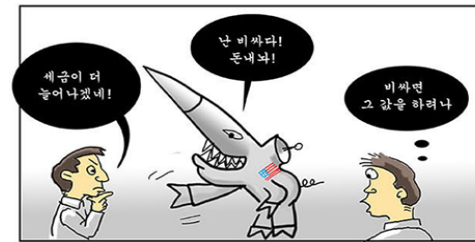
미 육군은 사드레이더 부지를 최소 3만3천 평으로 규정하고 이 중 약 1만 평은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게다가 포대까지 배치되어 무려 11만평을 필요로 한다.



미국교범에도 이렇게 설치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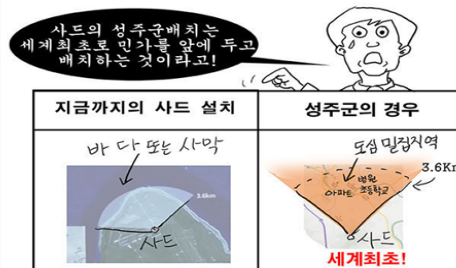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 미국은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무려 4~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 한국은 설치비용, 부지, 전기, 수도 등을 제공해야 하고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운영 유지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 (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

(중략)



행으로 죽기 전에 전자파로 말하는 구나!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기사 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사드 배치의 진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6년 8월 2일 그림 만평에 ‘사드 배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포대 배치 및 운영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아닌 중·러 감시용이며, 포대 배치 지역의 거주민에게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THAAD)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통일뉴스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주한미군과 국방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조정불성립 결정서**주문**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8.



제 3 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주요 시정권고 사례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 사례1

의결번호	제2016-33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월 12일 사회12면
기사제목	초등 5학년 딸, 우울증 엄마와 ‘쓰레기집’서 1년

1. 보도내용

초등 5학년 딸, 우울증 엄마와 ‘쓰레기 집’서 1년 ... 다가구주택 지하방에서 6t 쓰레기 제하의 사진

「40대 초반의 엄마와 초등학교 5학년 딸(11)이 다가구주택 지하방에서 6t이나 되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1년 가까이 살아오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사글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은 도시가스조차 오랜 기간 끊겨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또는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주소가 드러난 주택 외관 사진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40대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사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다가구주택 지하방에 쌓여 있던 쓰레기가 수거돼 화물차에 실려 있다. 조그만 집에서 1t 트럭 6대분인 6t의 쓰레기가 나왔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모녀의 방을 치우기 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 부천시 제공

초등 5학년 딸, 우울증 엄마와 ‘쓰레기 집’서 1년

생활실태조사 중 복지사가 발견
이혼 후 공공근로로 근무이 생계
가스도 끊겨 냉골-집에선 잠만
주민센터서 집안 소독·긴급생계비

40대 초반의 엄마와 초등학교 5학년 딸(11)이 다가구주택 지하방에서 6t이 나 되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1년 가까이 살아오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사글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은 도시가스조차 오랜 기간 끊겨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모든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던 중 모녀만 사는 집이 의심스러웠다. 주

부 A씨가 유독 가정 방문을 꺼리고 밖에서만 만나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사는 설득 끝에 지난해 12월 7일 집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방과 부엌은 페트병과 종이 박스, 비닐 등 온갖 생활 쓰레기로 꽉 차 있었다. 발견 당시 A씨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해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했으나 1주일도 지나도 그대로 있었다.

결국 지난 6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치운 쓰레기는 봉고 트럭 6대분인 약 6t에 달했다. 이 중에는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 폐전자제품도 있었다.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한 덕분에 악취가 나지 않아 아동센터나 이웃들도 모

녀의 생활을 모르고 있었다.

조사결과 이 주부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공공근로를 하며 근무이 생계를 이어왔고, 딸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녁을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녀는 저녁 때마다 도서관이나 대형서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후 10시쯤 귀가해 방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잠만 잤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는 집안을 소독하고 체납 가스요금을 포함해 긴급생계비로 69만 원을 지원해줬다. 부천시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우울증에 빠져 쓰레기를 방치해 온 것으로 보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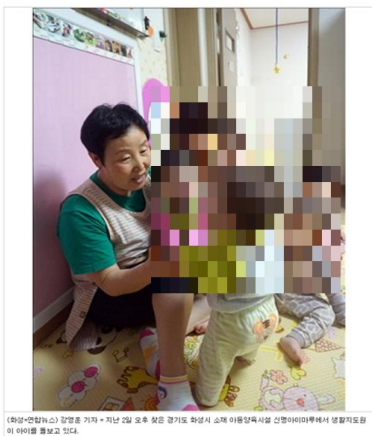
▶ 사례2

의결번호	제2016-214호
매 체 명	인터넷 스포츠조선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5월 4일자 라이프면
기사제목	‘엄마 없는 어린이 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1. 보도내용

「‘엄마 없는 어린이 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제하의 사진

‘엄마 없는 어린이 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기사입력 2016-05-04 08:17:53



(화성·연남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3일 오후 3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신명아카데미에서 생활지도원 위 아이를 돌보고 있다.



(화성·연남뉴스) 강영훈 기자 • 한 생활지도원이 아이들을 수건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진 아동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3

의결번호	제2016-296호
매 체 명	우먼센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호 218~224면
기사제목	“톱스타 김민희 유부남 홍상수 감독과 충격 열애”

1. 보도내용

- 1) 「홍상수 아내·김민희 어머니 카톡 대화의 재구성」 제하의 카톡 대화창
 - 2) 「(전략)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뒤에 김민희가 잔뜩 성난 표정을 하고 제게 다가오더군요. 팔을 잡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녀가 제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죠!’라고 했어요. 그 순간 화는커녕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진부한 대사를 하니?’ 저도 쏘아붙였죠. 실랑이가 길어지자 그녀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정신 나간 여자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김민희가 소리치더군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중략)
- 늦은 밤, 남편이 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어요. 느낌이 이상해 몇 분 뒤 저도 따라 나갔죠. 그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 산책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남편은 그길로 집을 나갔다.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다. (중략)
-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 “구구절절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힘든 게 사라지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그 일기장을 집에 두고 간 게 맘에 걸렸는지 딸에게 일기장을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 “안되겠다 싶어 김민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어요. 그녀에게 ‘급한 일이니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하라고 전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못 참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30초 만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나간 뒤 처음으로 남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후에도 남편과 통화할 일이 있으면 그녀를 통해 하곤 했어요.” (중략)
- “남편은 딸을 끔찍하게 아꼈지요. 그런 남편이 딸에게 ‘더 이상 유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업계에 파다해지자 김민희에게 광고 제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녀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중략)
- 최근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상수 씨, 내가 꼭 이혼을 해줘야지 되겠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주면 우린 좋지…, 30년이면 충분히 같이 잘 살았잖아.”

‘우리’래요. 30년을 같이 산 세계...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스쳐지나가는 것이겠죠.”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있었다. (이하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내 유명 영화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불륜 사실을 밝히면서 감독 부인과 여배우 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 내용 및 감독의 일기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4

의결번호	제2016-881호
매 체 명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1월 28일자 A1면
기사제목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1. 보도내용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제하의 사진

「(전략)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에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7시 22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부인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전(前) 대통령비서실장이 자택에서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의 중심에 놓여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국정농단 개입 의혹’ 김기춘 前실장은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에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7시 22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부인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차은택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차 씨가 최 씨의 지시로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간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로 차 씨를 만났지만 최 씨를 모르는 건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제2장 피의자 신원공개

▶ 사례5

의결번호	제2016-46호
매 체 명	인터넷 일요시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월 27일 사회면
기사제목	6만 6000명 성매매 리스트 대해부

1. 보도내용

「6만 6000명 성매매 리스트 대해부」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매수자 의심명단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성매수 혐의자들로 의심되는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홈 > 사회 > 사건/사고

6만6000명 성매매 리스트 대해부

난교파티 벌인 교수님 기구 좋아하는 사장님

양동주 기자 | djyang@ilyosisa.co.kr



승인 2016.01.27 10:42:33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무려 6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밀스러운 문건 하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서 곳곳에 이해하기 힘든 각종 은어와 숫자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사회 교위층을 암시하는 신원 정보를 비롯해 석연찮은 구석이 넘쳐난다. 아니나 다를까 성매매 리스트로 짐작되는 이 문건을 두고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로 치부될 지 두고 볼 일이다.



▶ 사례6

의결번호	제2016-594호
매 체 명	뉴스1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특별감찰팀, ‘스폰서 부장검사’ 고교 동창 사흘째 고강도 조사

1. 보도내용

「김형준 부장검사 특별감찰팀은 8일에도 그의 고교 동창 김○○(○○·구속)씨 등을 사흘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하 생략)」



부팀장에 수원지검 형사2부장 이선봉 부장검사 투입...수
사 전환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김형준 무장검사 특별감찰팀은 8일에도 그의 고교 동창 김OO(구속)씨 등을 사흘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씨 등 관련자들을 이날에도 대검으로 불러 집중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뒤적거리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 사례7

의결번호	제2016-50호
매 체 명	뉴스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③‘친권’의 덫 ... 학대아동에겐 ‘공포의 집’

1. 보도내용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최초 용의자는 피해아동 ○○(당시 ○세)양의 친언니 A(○○)양이었다. (중략)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던 그는 계모 임모(38)씨와 친부 김모(40)씨로부터 격리되자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의 성명과 사망 당시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외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고소고발 보도

▶ 사례8

의결번호	제2016-362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6월 14일자 13면 2016년 7월 16일자 8면 2016년 8월 24일자 12면
기사제목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소 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 피소 ... 李측 "사실 아니다" 배우 엄태웅, 마사지업소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피소

1. 보도내용

- (1) 「(전략)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중략)
박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2)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사진)씨가 3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이씨의 소속사는 “성폭행 사실이 없지만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소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3)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영화배우 엄태웅(사진)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략)
엄씨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실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충분한 증거 없이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명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의 보도는 그것이 중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에 관해 최소한 피고소인의 입장을 듣고, 그 비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며, 피고소인이 비난된 행위를 이미 행했다고 부당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연예인이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소장 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범죄 혐의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로 인해 독자들은 피고소인이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후에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피고소인이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사실 및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소

20대 여성, 직접 증거물 제출
소속사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 타협 안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3일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이모(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직접 경



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등을 분석해 수사를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 소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이진욱 성폭행 혐의 피소-李측 “사실 아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진욱(35·사진)씨가 3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로 안내해 증거물을 채취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마친 상태다. 조만



간 이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의 소속사는 “성폭행 사실이 없지만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소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임태웅, 마사지업소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피소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영화배우 임태웅(사진)씨에 대해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정남지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날 “남자 연예인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지난 22일 이첩했다. 사건 당일 임씨는 혼자 이 업소

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됐으며, 수감 상태에서 임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은 수사 초기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고소 사실에 대해 사건 관계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소속사 카이스트는 이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5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 사례9

의결번호	제2016-227호
매 체 명	아시아투데이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6월 10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카드뉴스] 법도 경찰도 없다, '신안' 지옥의 섬? - 염전 노예부터 여교사 성폭행까지

1. 보도내용

「(전략) 지난달 신안군 ○○도 섬에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여교사 A씨가 섬 주민 3명을 상대로 윤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전 국민이 공노,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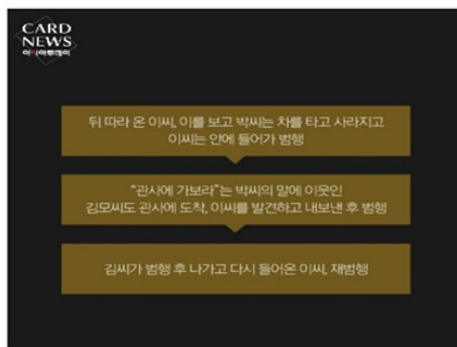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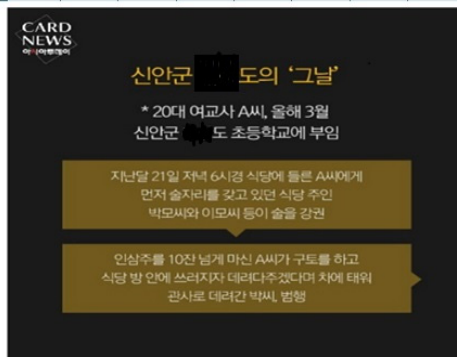
위 기사는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도 소재 초등학교의 여교사임을 밝히고 연령대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카드뉴스] 법도 경찰도 없다, '신안' 지옥의 섬? - 염전 노예부터 여교사 성폭행까지

김경희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 05. 10. 00:00



제6장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 사례10

의결번호	제2016-2호
매 체 명	포천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2월 15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파출소, 집 나간 치매노인 가족에 인계

1. 보도내용

「○○ 파출소, 집 나간 치매노인 가족에 인계」 제하의 사진

「포천경찰서 ○○ 파출소는 지난 11일 15시경 ○○면 ○○리 거주 김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처가 ○○세인 치매노인인데, 신발도 신지 않고 집에서 나갔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집 주위 산지 등을 수색, 2시간 만에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파출소의 수색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치매환자인 피구조자의 성, 나이, 초상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 사례11

의결번호	제2016-238호
매 체 명	자주시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5월 19일자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의혹의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사건

1. 보도내용

「의혹의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사건」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탈북여종업원들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혹의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사건

기사입력: 2016/05/19 [03: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6년 5월 18일

총선을 5일 앞둔 4월 8일,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긴급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이 중국을 나와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대북독자제재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단체 귀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례12

의결번호	제2016-355호
매 체 명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8월 19일자 정치면
기사제목	태영호 공사, 아들의 게임 ID는 “○○○○?” 가족들 누군가보니 ‘귀족혈통!’

1. 보도내용

「태영호 공사, 아들의 게임 ID는 “○○○○?” 가족들 누군가보니 ‘귀족혈통!’」 제하의 사진 「(전략) 18일 방송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태영호 공사의 차남은 세계 랭킹 ○위를 기록한 영국 명문대에 곧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런던의 부촌에 위치한 ○○○○칼리지. (중략)

태영호 공사의 차남 태○ 군은 올 가을 이 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올해 ○○살로 런던 서부의 한 고등학교에 다닌 태 군은 ○○과 ○○○과에서 A학점을 받았던 수재.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망명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차남의 초상과 함께 성명, 나이 및 입학 예정 학교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태영호 공사, 아들의 게임 ID는 〇〇〇 〇〇 가족 들 누군가보니 '귀족혈통!'

이준형 기자 | 승인 2016.08.19 08:50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사회적 법의 침해



제1장 범죄수법 상세모사

▶ 사례13

의결번호	제2016-861호
매 체 명	인터넷 일요시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0월 26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충격〉 아무나 만드는 사제총 제조법

1. 보도내용

「(전략) 실제로 유튜브브서 ‘○○○○’ ‘○○○○○○○’ 등으로 검색하면 3,640만건의 결과가 나열된다. 흔히 생각하는 총에서부터 일반적인 볼펜으로 만드는 총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재료도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검색어에 ‘○○○○’ 등을 추가하면 폭죽이나 화약 제조법도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철제 탄환을 사용하는 엽총 제작법까지 등장한다.

‘○○○○○○○’이라는 제작자가 올린 동영상은 약 20분 동안 쇠파이프와 쇠막대, 스프링 등의 재료를 사용해 똑딱 총기를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 총기를 통해 발사된 구슬은 나무 합판을 부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제 총기 제작법이 상세히 묘사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검색 방법 및 동영상 제작자를 적시하면서, 사제 총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사제 총기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성관련 보도

▶ 사례14

의결번호	제2016-260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 ... 학부형이 집단 강간

1. 보도내용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 ... 학부형이 집단 강간」의 제목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제목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자살 관련 보도

▶ 사례15

의결번호	제2016-326호
매 체 명	경기매일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 25일자 15면
기사제목	○○시청 공무원, 옥상서 목 매 숨져

1. 보도내용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청 옥상서 자살 충격

○○시청이 ○급 이하 직원에 대해 전보발령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 인사에 불만을 품은 시 공무원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시청 ○○출장소 직원 K 모(○○세)씨가 시청 본관 3층 옥상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중략)

○○○○관리 ○급인 K씨는 동네 ○○시설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이번 전보인사에서 ○○출장소로 발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일단 K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 나이, 직급, 근무지,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16

의결번호	제2016-783호
매 체 명	아주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9월 6일자 23면
기사제목	“서울로 직장 구하러 간다던 딸아...” 안산 사무실서 남자 3명과 숨진채 발견

1. 보도내용

「(전략) 발견 당시 A씨 등은 사무실 안에 놓아둔 ○○가스 용기에 호스를 연결한 뒤 비닐 봉지를 뒤집어쓴 상태였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스를 호스에 연결하고 비닐을 뒤집어쓰는 자살 방법 및 자살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마약 관련 보도

▶ 사례17

의결번호	제2016-170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4월 21일 10면
기사제목	신종 마약 ‘○○○○’ 밀반입 수 억원 어치 유통

1. 보도내용

「담배에 몇 방울 뿌려 피우는 신종마약 ‘○○○○’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H씨는 손세정제로 위장한 ‘○○○○’을 국제우편으로 이 씨에게 부쳤다. 이 씨는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이를 ○ml씩 안약통에 나눠 담은 뒤 ○○만 ~ ○○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팔았다. 이 씨 일당은 유학생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을 권하고 SNS에 판매 게시물을 올렸다. 구매자를 섭외하면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다단계식 영업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판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에 유통된 ‘○○○○’은 ○○○ 성분 합성 대마 계열 마약이다. 2014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담배에 ○○ 방울쯤 떨어뜨려 간단하게 피울 수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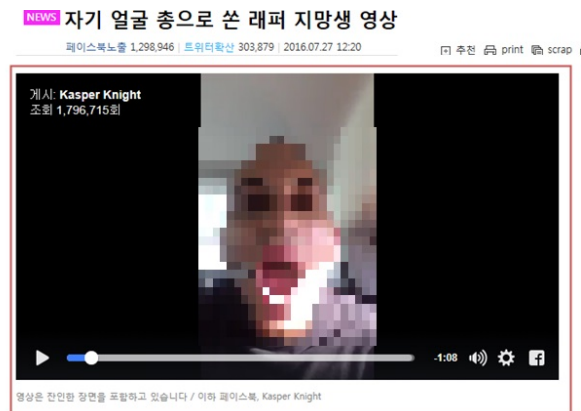
제5장 충격, 혐오 보도

▶ 사례18

의결번호	제2016-336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 27일자 세상에 이런 일이면
기사제목	자기 얼굴 총으로 쏜 래퍼 지망생 영상

1. 보도내용

「자기 얼굴 총으로 쏜 래퍼 지망생 영상」 제하의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학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 한다.

제6장 기사형 광고

▶ 사례19

의결번호	제2016-203호
매 체 명	뉴스엠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4월 5일 헬스면
기사제목	성형 한류에서 안티 에이징까지 세계로

1. 보도내용

「김○○ 기자」

「(전략) 강남구 신사동에 단독빌딩으로 위치한 ○○○성형외과병원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21개층 빌딩 전체 규모의 의료시설과 고객중심의 호텔급 인테리어로 명성이 자자하다. (중략)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성형외과에서는 ‘V라인 사각턱수술’과 3차원 광대회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V라인 사각턱수술은 기존 U라인 사각턱수술에 턱 끝의 넓이를 축소시켜 주는 수술을 추가함으로써, 양 옆의 각진 턱을 깎아 내는 동시에 턱 끝을 V자 모양으로 날렵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이다. V라인의 핵심인 턱 끝도 동시에 가름하게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안면윤곽수술의 하나인 광대뼈 축소술 중 ‘3차원 광대회전술(3D malar rotation)’은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깎아 내기만 하거나 단순히 옆 광대만 넣어주는 방식의 수술법이 아니라 광대가 내측으로 회전하면서 이동하여 광대뼈의 실제 볼륨 축소와 구조 개선이 가능한 수술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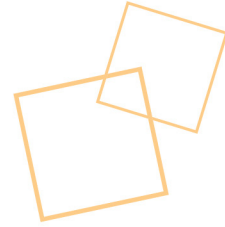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4 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

-
- 제4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 목록은 각 중재부별 접수·처리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 및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내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금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조항 :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이하 '결정'으로 표기함)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행강제금 조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결정(쌍방 동의)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
-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서울중재부

2016서울조정 1, 2	(각 정정청구) 문화재청 對 한겨레 ⁽¹⁾ , 인터넷 한겨레 ⁽²⁾
조 정 대 상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 ... 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월 4일자 26면, 인터넷 한겨레 1월 4일자 문화일반면)
신청인 주장	문화재청이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가 신라 연못터임을 확인하고도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월 27일자 24면, 인터넷 한겨레 1월 26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	(정정청구) ○○○○코리아 (유)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 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 적출을 해?』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자궁근종을 일으키는 여성 호르몬제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1월 25일자 홈페이지)

2016서울조정 4·5	(정정·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한인협
조 정 대 상	『○○○ 성추행 피해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엉엉!”』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정치&외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 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 7	(각 손해청구) 임○○ 對 KBS-1TV ⁽⁶⁾ , KBS미디어 ⁽⁷⁾
조 정 대 상	뉴스12 프로그램 『중부 일부 첫 한파주의보 ... 낮에도 영하권』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2월 27일자, KBS미디어 12월 27일자 날씨면)
신청인 주장	날씨를 보도하면서 출근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8, 9	(각 손해청구) 임○○ 對 채널A ⁽⁸⁾ , 인터넷 채널A ⁽⁹⁾
조 정 대 상	굿모닝A 프로그램 『술 마시다 흥기 난동 ... 2명 부상』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10월 26일자, 인터넷 채널A 10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식당 내부와 신청인의 모습을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0	(정정청구) ○○○○ (주) 對 뉴스핌
조 정 대 상	『○○○○ 떠나는 ‘최○○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생활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경영진 교체 이후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 12	(각 정정청구) 김기식 對 문화일보 ⁽¹¹⁾ , 인터넷 문화일보 ⁽¹²⁾
조 정 대 상	『‘사상 초유’ 입법 비상 사태 ... 민생 법안은 김기식에 발목 잡혀』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6년 1월 1일자 4면, 인터넷 문화일보 2015년 12월 3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법안 연계 전략을 피해 이견이 없거나 일몰이 적용되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3·14	(정정·손배청구) ○○○○○교회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 효잔치 내세운 학교내 포교 활동 시도 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0일자 지역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개최한 행사가 포교를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한 기사여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5, 16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MBC-TV ⁽¹⁵⁾ , iMBC ⁽¹⁶⁾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잠수함 잡는 와일드캣, 작전 시간 24분』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2월 23일자, iMBC 12월 23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1차 도입 예정인 해상작전 헬기의 작전능력을 실제보다 축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	(정정청구) 은평구 對 인터넷 국토일보
조 정 대 상	『은평구청과 ○○건설 건축심의 화해 물꼬 트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은평구와 모 건설사 사이의 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은평구청 행정소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뉴스/업계면)

2016서울조정 18	(정정청구) ○○○○○○협의회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카카오의 O2O 전략, ‘종사자’에 집중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IT면)
신청인 주장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신청인 단체와 카카오와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방송 날짜도 안 잡은 채 이것 빼라 저것 빼라 내부 검열』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데스크킹하고 방송을 연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 21, 22~25	(각 정정청구) 양천구 對 매일일보 ⁽²⁰⁾ , 인터넷 매일일보 ⁽²¹⁾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매일일보 ^(22·23) , 인터넷 매일일보 ^(24·25)
조 정 대 상	(1) 『양천구 준예산 사태 ... 예산 삭감시켜 타결』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6년 1월 5일자 서울면, 인터넷 매일일보 1월 4일자 서울면) (2) 『양천구, 홍보라인 전원 교체 등 대규모 인사 단행』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6년 1월 7일자 서울면, 인터넷 매일일보 1월 6일자 서울면) (3) 『양천구 준예산 사태 극적 해결』 제하의 기사 (인터넷 매일일보 1월 4일자 서울면)
신청인 주장	양천구청장이 준예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상반기 인사가 총선과 친청 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양천구 준예산 사태 유감표명 및 정기인사’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6년 2월 16일자 서울면, 인터넷 매일일보 2월 15일자 서울면)

2016서울조정 26, 27	(각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축산경제 ⁽²⁶⁾ , 인터넷 축산경제 ⁽²⁷⁾
조 정 대 상	『일선 농협서 축협 성과 도용』 제하의 기사 (축산경제 2015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축산경제 12월 11일자 관련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이 축협의 성과를 신청인의 성과라고 거짓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농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축산경제 2016년 2월 8일자 1면, 인터넷 축산경제 2월 5일자 관련산업면)

2016서울조정 28	(추후청구) 이○○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팝콘 국산화 하겠습니다” … 국가보조금 횡령한 40대 男』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팝콘 국산화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9·30, 127·128	(각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1) 『“○○○ 임시이사 선임, 장애계 추천 인사로”』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뉴스면) (2) 『광주시, 매년 복지시설 행정·회계감사 진행』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뉴스면) (3) 『○○○비대위, 광주시 로비 점거농성 들어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뉴스면) (4) 『○○○비대위, 광주시 점거농성 ‘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섹션면)

2016서울조정 31~33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安 신당 “인사 파동” 계속 … “스폰서 검사” 가 끝 아냐』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전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부패전력자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安 신당 “인사 파동” 계속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34, 35	(각 정정청구) 김현 對 MBC-TV ⁽³⁴⁾ , iMBC ⁽³⁵⁾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탄국회’ 부르는 국회의원 불체포』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월 3일자, iMBC 1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사실과 달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36	(정정청구) 김○○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위기 맞은 40년 전통 이대 앞 웨딩드레스 거리, 해법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이화여대 앞 웨딩거리의 경기가 불황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6서울조정 37·38	(정정·반론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이혼 후 남편 몰래 혼인 신고 ... 무효? 유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전 부인의 이혼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이혼 후 남편 몰래 혼인 신고 ... 무효? 유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39~41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수상한 땡처리』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통업자들에게 자사 신발 제품을 반값으로 제공해 땡처리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42~9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문○○ 외 1인 對 YTN ^(42~44) , 인터넷 YTN ^(45~47) , 연합뉴스TV ^(48~50) , 연합뉴스TV 인터넷 ^(51~53) , 인터넷 국민일보 ^(54~56) , 쿠키뉴스 ^(57~59) , 매경닷컴 ^(60~62) , 세계닷컴 ^(63~65) , 온라인 중앙일보 ^(66~68) , 인터넷 헤럴드경제 ^(69~71) , 노컷뉴스 ^(72~74) , 미디어펜 ^(75~77) , 인사이드 ^(78~80) , 디오데오 ^(81~83) , 뉴스1코리아 ^(84~86) , 연합뉴스 ^(87~89) , SBS 콘텐츠허브 ^(90~92) , 인터넷 BBS불교방송 ^(95~97) (정정·반론청구) iMBC ^(93·94)
조 정 대 상	• YTN : YTN24 프로그램 『고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 교사 부인 운영 교습소에 서』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인터넷 YTN 10월 2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뉴스20 프로그램 『부산 사립고사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0월 29일자 전국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부산 사립고사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진상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부산 모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교육청 진상 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 매경닷컴 : 『부산 사립고사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교사 아내가 운영하는 교습소 학생들 성적 대폭 향상 ... 문제 유출 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교사 아내가 운영하는 교습소 학생들 성적 대폭 향상 ... 문제 유출 의혹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사회면) 외 10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시험 문제를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98, 99	(각 손해청구) 김○○ 對 SBS-TV ⁽⁹⁸⁾ , SBS 콘텐츠허브 ⁽⁹⁹⁾
조 정 대 상	(1) 마을 드라마 프로그램 『아치아라의 비밀 3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0월 14일자, SBS 콘텐츠허브 10월 14일자 다시보기면) (2) 리멤버 드라마 프로그램 『아들의 전쟁 5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2월 23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23일자 다시보기면) (3) 리멤버 드라마 프로그램 『아들의 전쟁 6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2월 24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24일자 다시보기면) (4) 리멤버 드라마 프로그램 『아들의 전쟁 7화』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월 6일자, SBS 콘텐츠허브 1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드라마의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00~101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국민의당 창단 발기인 1978명 완전해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리와 막말 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국민의당 창단 발기인 1978명 완전해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월 20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03·104	(정정·손배청구) 최○○ 對 미디어펜
조 정 대 상	『신영복 띄우기 ... 대한민국은 ‘좌파 동물농장’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교수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2016서울조정 105~108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신문 ^(105·106) , 인터넷 법보신문 ^(107·108)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서울신문 : 『어느 남자의 환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기획연재면) • 인터넷 법보신문 : 『○○스님의 씩씩한 환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승려 시절 대처승, 은처승을 비난했으며, 승려 시절 자식을 낳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서울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법보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정정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어느 남자의 환속』 제하의 기사 중 “납의는 아무나 입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일부 내용을 삭제 (인터넷 서울신문 2016년 2월 12일자 기획연재면)
2016서울조정 109~111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카드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 정 대 상	『○○○○○카드 티머니, ○○ ○○○의 코인 뱅크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하지 않은 금액이 수 조원 대이며 모 대기업의 자회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2	(정정청구) (사)○○○○○○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특집다큐 프로그램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5일자)
신청인 주장	국내 이슬람 관련 관광 산업에 대해 과장되게 보도한 것은 종교 편향이며 이로 인해 기독교 단체가 피해를 당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6서울조정 113, 114	(각 정정청구) 김○○ 對 시사저널 ⁽¹¹³⁾ , 인터넷 시사저널 ⁽¹¹⁴⁾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 (1) 『김진태 총장, 스폰서 소송 사건들에 개입한 의혹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20면~26면) (2) 『정권 최고 실세들과 호형호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16면~18면) • 인터넷 시사저널 : (1) 『경찰, 김진태 검찰총장 뒷조사 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4일자 사회면) (2) 『경찰청 범죄정보과, 김진태 검찰총장 뒷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 검찰총장의 스폰서이며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 스폰서 소송 사건 개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3월 15일자 21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5	(정정청구) 장○○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스님, 불교방송 관련 횡령·배임 누명 벗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 이사장의 횡령혐의 고소건이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신청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6, 117	(각 정정청구) (재)○○○○교향악단 對 동아일보 ⁽¹¹⁶⁾ , 동아닷컴 ⁽¹¹⁷⁾
조 정 대 상	『정○○ 부인 “시나리오 잘짜라”... 박○○ 음해 직접 지시 정황』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2월 28일자 A12면, 동아닷컴 12월 2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예술감독 재계약에 관한 기밀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2월 19일자 A25면, 동아닷컴 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8·119	(정정·손배청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對 인터넷 뉴스포스트
조 정 대 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취임식 비용 “평평”... 직원 복리비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신청인 연구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7일자 정부공사면)

2016서울조정 120	(반론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 의사는 왜 분만을 늦췄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산부인과 의사인 신청인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고, 간호기록 일지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6년 2월 18일자 홈페이지)

2016서울조정 121~124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MBC-TV ^(121·122) , iMBC ^(123·124)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OST의 비밀』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25일자, iMBC 10월 25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작곡가와 방송사와의 접촉을 중간에서 차단해 이익을 취하고, 작곡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5·126	(반론·손배청구) (주)○○○○○코리아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코리아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연기획사 대표인 신청인이 취소된 공연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만원,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9	(추후청구) 이○○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도가니〉 ... 그 끝나지 않은 악몽,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자 사회면) (2) 『“하루 빨리 나가고 싶다” 외친 장애인 시설, 어쩔건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사회면) (3) 『“광주 ○○○, 제2의 ○○복지원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5일자 사회면) (4) 『절차 강조하던 ○○○, 특별 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사회면) (5)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7일자 사회면) (6) 『○○○ 사태에 교사들도 ... “우린 자존감없는 교사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0	(추후청구) 박○○ 對 로이슈
조 정 대 상	『고소인 주장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도했으나, 1심 재판결과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추후보도 청구 요건 미비)

2016서울조정 131	(반론청구) ○○○○○○○○조합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남아도는 중고기계 10조원 ... 혼탁한 유통구조 문제』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판매를 위해 전시중인 기계를 길거리에 방치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보도)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남아도는 중고기계, 협업으로 수출길 개척』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19일자)

2016서울조정 132	(정정청구) 정동영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정동영, ‘더민주 복당 조건’ ... 전주 덕진 공천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조건으로 지역구 전락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동영 전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33	(반론청구) 김○ 對 씨앤비뉴스
조 정 대 상	『증권사 전직 임원 주가 조작 피소 사건 그 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증권회사 임원 재직 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끌어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증권사 전 임원 주가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34	(정정청구) (주)○○○코리아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비공식 유통경로 반입되는 수입 맥주, 믿고 마셔도 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수입하는 맥주에 소독제인 가성소다가 첨가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비공식 유통경로 반입되는 수입맥주, 믿고 마셔도 되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2월 5일자 유통면)

2016서울조정 135·136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산삼 대표 中부동산 사기전력 ... 법원 배상 강제집행 허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동산 관련 카페를 개설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삼 대표 中부동산 사기전력 ... 법원 배상 강제집행 허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6년 2월 18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37·138	(정정·손배청구) ○○상선 (주) 對 EBN
조 정 대 상	『○○상선, ○○중공업 그룹에 자동차 운반선 대거 발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기업의 자동차 운반선을 발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상선 자동차 운반선 대거 발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139~144, 219	(각 정정청구) 남○○ 對 불교닷컴 ⁽¹³⁹⁾ , 네이버 ⁽¹⁴⁰⁾ , 다음 ⁽¹⁴¹⁾ , 네이트 ⁽¹⁴²⁾ , 구글 ⁽¹⁴³⁾ , Bing ⁽¹⁴⁴⁾ , 인터넷 BBS불교방송 ⁽²¹⁹⁾
조 정 대 상	- 불교닷컴 : 『남○○ ○○사 신도회장 구속 …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종합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Bing 11월 19일자 종합면) - 인터넷 BBS불교방송 : 『남○○ ○○사 신도회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사찰 신도회장인 신청인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 다른 혐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불교닷컴 : 『○○사 신도회장 구속 … 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삭제 및 혐의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6년 2월 18일자 종합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Bing 2월 18일자 종합면) - 인터넷 BBS불교방송 : 『남○○ ○○사 신도회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혐의 부분 기사 수정 (2016년 3월 2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45~150, 160, 161	(각 손배청구) 안○○ 對 뉴스1코리아 ⁽¹⁴⁵⁾ , e머니투데이 ⁽¹⁴⁶⁾ , 인터넷 한국일보 ⁽¹⁴⁷⁾ , 세계닷컴 ⁽¹⁴⁸⁾ , 조선닷컴 ⁽¹⁴⁹⁾ , 조선비즈닷컴 ⁽¹⁵⁰⁾ , 네이버 ⁽¹⁶⁰⁾ , 다음 ⁽¹⁶¹⁾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유품 내다팔아”…‘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유포한 3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사회면, 네이버, 다음 11월 4일자 뉴스면) - e머니투데이 : 『“유품 내다팔아”…‘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유포한 3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뉴스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루머 퍼뜨린 30대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뉴스면)

조 정 대 상	• 세계닷컴 : 『‘사법연수원 불륜 커플이 고인의 유품 내다 팔았다’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고인 유품 중고나라에” ...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벌금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사회면) • 조선비즈닷컴 :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줄소송 ... ‘불륜남’ 연수원 파면되고, ‘불륜녀’ 간통은 무죄, 변호사 거부당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 사실보도로 피신청인 주의의무 이행)

2016서울조정 151·152	(정정·손배청구) 김○○ 對 동대문포스트
조 정 대 상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 ‘폐관’ 누구의 책임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구청 공무원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3, 154	(각 정정청구) 심윤조 對 중앙Sunday ⁽¹⁵³⁾ , 인터넷 중앙Sunday ⁽¹⁵⁴⁾
조 정 대 상	『“1번 찍었는데 이름 몰라” 묻지마 투표가 부른 ‘강남 3구의 역설’』 제하의 기사 (중앙Sunday 2016년 1월 31일자 3면, 인터넷 중앙Sunday 1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국회 의정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55	(반론청구) 우윤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우윤근? 지역에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출세에만 신경』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지역구 활동은 소홀한 채 중앙정치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더민주당 우윤근 의원, 중앙과 지역 평가 엇갈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반론 추가 (2016년 2월 4일자 지역면)

2016서울조정 156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방사청 차장 내달 교체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8일자 A8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 차장의 교체 이유가 내부갈등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57	(정정청구) 하태경 對 월드투데이
조 정 대 상	『하태경, 조경태 새누리당 입당 이어 더불어민주당 입당설 ‘모락모락’』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이 행 결 과	『더불어민주당 일방적인 구매 하태경 “난 죽어도 새누리당 사람”』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58·159	(정정·손배청구) ○○○○○○○○ ○○○○회장단회 對 기독교신보
조 정 대 상	『○○총회장단 치리권 행사, ‘가소롭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원로 모임인 신청인 단체를 불법단체인 것처럼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2~164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로펌까지 동원해 내부 비판 재갈 물리는 경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청 고위 공무원인 신청인이 경찰 내부를 비판한 직원의 징계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5	(정정청구) 장○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서울 도봉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대결 성사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도봉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청인의 직책을 잘못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진실 보도에 해당)
2016서울조정 166~169	(각 정정·손배청구) ○○○○○○ (주) 對 에너지신문 ^(166·167) , 일간에너지 ^(168·169)
조 정 대 상	『○○○○ 소형 탱크 비파괴검사 원자력법 ‘위반’』 제하의 기사 (에너지신문 2016년 1월 18일자 1면, 7면, 일간에너지 1월 17일자 가스면)
신청인 주장	LPG 소형저장탱크를 생산하는 신청인 업체가 비파괴검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0	(정정청구) 유대운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국회의원 ‘갑질’ 백태』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에서 갑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국회의원 ‘갑질’ 백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2월 12일자 정치종합면)
2016서울조정 171~174	(각 정정·손배청구) 가○○ 對 인사이트 ^(171·172) , postshare ^(173·174)
조 정 대 상	- 인사이트 : 『제자들에게 “XX, 꼴값하네” 욕설 퍼부은 ○○대 교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헤드라인면) - postshare : 『“욕설 파문” ○○대 女교수, 7시간 27분간 문자폭탄 날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뉴스앤 이슈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5·176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화호 아내 토막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살인』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인 신청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토막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시화호 토막살인범 중국서도 토막살인”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6일자)

2016서울조정 177	(손배청구) 김○○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공부 안 한다고 ... 엄마의 ‘잔혹한 훈육법’』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친엄마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방송해 피해를 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원보도 동영상 삭제 및 해당 보도문 중 45살 “김모 씨”는 “40대 A씨”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은 초등학교 학생 아들”로 “인천 남동서 관계자”는 “○○경찰서 관계자”로 각 수정 (2016년 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8~188	(각 정정청구) 김상민 對 KBS-1TV ⁽¹⁷⁸⁾ , TV조선 ⁽¹⁷⁹⁾ , 연합뉴스 ⁽¹⁸⁰⁾ , 세계닷컴 ⁽¹⁸¹⁾ , 아시아경제닷컴 ⁽¹⁸²⁾ , 이투데이 ⁽¹⁸³⁾ , 인터넷 국민일보 ⁽¹⁸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⁸⁵⁾ , 조선닷컴 ⁽¹⁸⁶⁾ , 쿠키뉴스 ⁽¹⁸⁷⁾ , 국민일보 ⁽¹⁸⁸⁾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월급 상납·열정 페이”... 국회의원 또 갑질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5일자) 외 2개 프로그램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비서관 월급은 봉? ...‘뺏고 덜 주고’』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5일자) • 연합뉴스 : 『김상민 의원 보좌진 열정 페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포토면) 외 1건 • 세계닷컴 : 『野 이목희·與 김상민 의원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특혜 채용·열정 페이 논란 끊이지 않는 국회』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정치면) • 이투데이 : 『새누리 김상민 의원도 보좌진 특혜 채용·열정 페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정치면) • 인터넷 국민일보 : 『與 김상민 의원도 보좌진 특혜 채용·열정 페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시사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비서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KBS-1TV, TV조선,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세계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이투데이, 인터넷 헤럴드경제/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조선닷컴, 국민일보/사유 : 보도약속, 쿠키뉴스/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 채용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쿠키뉴스 2016년 2월 1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89~192, 220~223	(각 정정·손배청구) (주) ○○여행사 對 YTN ^(189·190) , 네이트 ^(191·192) , 네이버 ^(220·221) , 다음 ^(222·223)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서울 ○○ 여행사 부도 ... 신혼부부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2월 16일자, 네이트, 네이버, 다음 12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부도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YTN/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트, 네이버, 다음/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 여행사 부도』 관련 안내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6년 3월 23일자 사회면, 네이트, 네이버, 다음 3월 2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3~198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경향신문 ^(193·194) , 인터넷 경향신문 ^(195·196) , 인터넷 미디어오늘 ^(197·198)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5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2월 5일자 사회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김종인 “총선 승리, 109석 이상이 목표”』 제하의 기사 중 ‘방석호 전 아리랑TV사장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도’ 제목의 카드뉴스 (2016년 2월 5일자 뉴스면) (2) 『조선일보마저 ‘진박’ 마케팅, 당에는 ‘짐박’』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아리랑TV 외주사 선정 입찰 관련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2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삽입 경향신문 기사 중 특정 프로그램명 익명처리 및 기사 일부 삭제 (2016년 3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9·200	(반론·손배청구) ○○○○○○○○○협회 對 인터넷 국토경제신문
조 정 대 상	『○○○○○○○○협회, 국토부 등에 업고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국토교통부를 등에 업고 비행을 일삼고 있다는 비방성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2면)

2016서울조정 201·202	(정정·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1인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이달의 판결] “밀실협상서 명퇴 합의”... 노조위원장 법적 책임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위원장이 사측과 밀실 협상을 벌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련 잘못된 사진 게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03~218	(각 정정청구) 장○○ 對 뉴시스 ⁽²⁰³⁾ , 연합뉴스 ⁽²⁰⁴⁾ , 동아일보 ⁽²⁰⁵⁾ , 동아닷컴 ⁽²⁰⁶⁾ , 중앙일보 ⁽²⁰⁷⁾ , 온라인 중앙일보 ⁽²⁰⁸⁾ , SBS-TV ⁽²⁰⁹⁾ , SBS 콘텐츠허브 ⁽²¹⁰⁾ , KBS-1TV ^(211,212) , KBS미디어 ⁽²¹³⁾ , YTN ^(214,215) , 인터넷 YTN ⁽²¹⁶⁾ , 채널A ⁽²¹⁷⁾ , 인터넷 채널A ⁽²¹⁸⁾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이○○ 화백 작품의 위조된 감정서』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문화면) • 연합뉴스 : 『경매서 5억여 원에 거래된 이○○ 작품 위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뉴스면) • 동아일보 : 『허술한 경매 시스템, 시장 신뢰 흔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1일자 A22면, 동아닷컴 1월 11일자 미술면) • 중앙일보 : 『감정 의뢰 3점 중 1점은 가짜 ... 100만원 대 생계형 위조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1일자 종합 21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11일자 문화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5억원에 낙찰됐는데 ...』 이○○ 작품 위작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8일자, SBS 콘텐츠허브 1월 8일자 생활문화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5억대 이○○ 화백 작품 감정서 위조 ‘들통’』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8일자, KBS미디어 1월 8일자 문화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유명 화백 작품 관련 위조 감정서 자료사진에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뉴시스, 연합뉴스, 동아일보, 동아닷컴,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SBS-TV, SBS 콘텐츠허브, KBS-1TV, KBS 미디어, YTN ⁽²¹⁴⁾ , 인터넷 YTN, 채널 A, 인터넷 채널A/사유 : 기사수정, YTN ⁽²¹⁵⁾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기사 내용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뉴시스, 동아일보, 동아닷컴, SBS,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YTN) - 기사 중 위조 감정서 사진 삭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 다시 보기 삭제 (SBS, SBS 콘텐츠허브, KBS-1TV, KBS 미디어, 인터넷 YTN, 채널A, 인터넷 채널A)
2016서울조정 224, 225	(각 추후청구) 문○○ 對 에이블뉴스 ⁽²²⁴⁾ , 비마이너 ⁽²²⁵⁾
조 정 대 상	- 에이블뉴스 : 『광주시, 폭행 정황 시설 장애인 분리조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전국넷면) - 비마이너 : (1) 『비리로 얼룩진 ○○○, 그러나 이사회는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뉴스면) (2) 『“저는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시설 재활 교사인 신청인이 장애인들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26~229	(각 정정청구) 설○○ 對 JTBC ⁽²²⁶⁾ , 인터넷 JTBC ⁽²²⁷⁾ , 인터넷 국민일보 ⁽²²⁸⁾ , 인터넷 헤럴드경제 ⁽²²⁹⁾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어린이집서 ‘바늘학대’ 의혹 ... 11명 피해 호소』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11일자, 인터넷 JTBC 2월 11일자 사회면) 외 1개 프로그램 - 인터넷 국민일보 : 『“선생님이 바늘로 콧코 찔렸어요”... 어린이집, 아동 11명 바늘 학대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부산 어린이집서 아이 11명 바늘로 ‘콧코’... 학대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교사인 신청인이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JTBC, 인터넷 JTBC/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헤럴드경제/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3월 18일자, 인터넷 JTBC 3월 1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30, 232~234	(각 반론청구) 박○○ 對 뉴시스 ⁽²³⁰⁾ , 세계닷컴 ⁽²³²⁾ , 인터넷 헤럴드경제 ⁽²³³⁾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²³⁴⁾
조 정 대 상	• 뉴시스 : 『가시오가피 등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가시오가피 등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에게 판매한 ‘떴다방’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건강기능식품 가격 ‘40배’ 뺑뺑이해 노인 울린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노인 상대로 ‘원가 40배’ 건강식품 판매한 5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광고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뉴시스, 세계닷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자진취하)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6서울조정 231	(반론청구) 성남시 對 한경플러스
조 정 대 상	『이재명 상품권 문제점 해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뉴스 인사이드면)

2016서울조정 235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비마이너
조 정 대 상	『“저는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복지법인인 신청인이 급식비를 횡령하고 소속 재활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36~241	(각 정정·손배청구) 박○○ 외 2인 對 TV조선 ^(236·237) , 인터넷 TV조선 ^(238·239) , 조선닷컴 ^(240·241)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내 아들 어딜 만져 ... 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원 씩 요구』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일자, 인터넷 TV조선 12월 1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내 아들 어딜 만져 ... 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원씩 요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교육시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측에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닷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왜 내 아들 성기를”... 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씩 요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닷컴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42~245	(각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 외 1인 對 일요시사 ^(242·243) , 인터넷 일요시사 ^(244·245)
조 정 대 상	(1) 『○○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1탄』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1월 31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시사 1월 22일자 사회면) (2) 『○○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2탄』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1월 31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시사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장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246~249	(각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246·247) , 기독교복음침례회 ^(248·249)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시그널 9화 - 조진웅이 남긴 4개의 사건과 풀리지 않은 오대양 사건 그리고 세월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블로그와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고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블로그와면)

2016서울조정 250·251	(정정·손배청구) 백○○ 외 3인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1) 『문재인 천문학적 비자금 20조, 비밀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정치면) (2) 『문재인 비자금 20조 비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부산 금괴사건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신청인들을 비방하는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52~257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프레시안 ^(252~255) , 인터넷 경향신문 ^(256·257)
조 정 대 상	• 프레시안 : (1) 『세월호 특위, 해경 시찰 핑계 여수-순천 ‘관광’ 워크숍』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사회면) (2) 『세월호 특위 “내부자들” 워크숍, 징계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해경 시설에 ‘관광성 워크숍’간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관광성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워크숍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프레시안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워크숍”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워크숍”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사회일반면)

2016서울조정 258, 259	(각 정정청구) ○○○○ (주) 對 일요시사 ⁽²⁵⁸⁾ , 인터넷 일요시사 ⁽²⁵⁹⁾
조 정 대 상	(1)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①수상한 금융거래』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9일자 10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3일자 사건/사고면) (2)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②열쇠 쥔 키맨들』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9일자 12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3일자 사건/사고면) (3)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③폐석회 부지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9일자 12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3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부당대출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①수상한 금융거래』,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②열쇠 쥔 사람들』 및 『○○○○그룹 세금 게이트 의혹 ③폐석회 부지 미스터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5월 30일자 20면, 인터넷 일요시사 5월 3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60·261	(반론·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방석호 재임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방송사의 외주제작사 선정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62·263, 298·299	(각 반론·손배청구) ○○○○○○○○총회 對 크리스천포커스 ^(262·263) , 시포커스 ^(298·299)
조 정 대 상	• 크리스천포커스 : (1) 『박○○ 총회장, 비리세력 다시 옹호하고 나서서 물의 일어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2면) (2) 『비리를 행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해 총회인가? 비리와 헌법 위반을 지적한 언론이 해 총회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3면) (3) 『허○○ 목사 조사처리 긴급동의안 제99회 총회 때도 접수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6면) (4) 『전·현직 총회장, 법치정신 훼손 심각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10면) 외 7건 • 시포커스 : (1) 『○○대 개방이사 추천위원 허목사 추천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3일자 교단뉴스면) (2)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 前 비리세력 척결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교단뉴스면) (3) 『논평/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9일자 교단뉴스면) (4) 『“시포커스가 총회 대변하는 기관지처럼 행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교단뉴스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총회장 때문에 총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포커스 : 『합동 총회장 권옥 남용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포커스 2016년 3월 26일자 교단뉴스면)

2016서울조정 264~271	(각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한국일보 ^(264·265) , 인터넷 한국일보 ^(266·267) , 네이버 ^(268·269) , 다음 ^(270·271)
조 정 대 상	(1) 『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 ... 불신 안 견뎌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21일자 A01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다음 12월 21일자 종합면) (2) 『기부단체 효율성 겉으로 번 듯 ... 뒤죽박죽 공시 탓 착시 효과』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21일자 A04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다음 12월 21일자 기획면) (3) 『기부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깜깜 ... 뭘 믿고 기부하나요』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22일자 A08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다음 12월 21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공익법인 결산 실적을 부풀려 공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조정대상 보도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며,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보도 일부가 이미 반영되어 목적이 달성됨)

2016서울조정 272~274	(정정·반론·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920만원짜리 해외출장 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1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고위 간부의 해외출장 보고서 대필을 위해 용역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75, 278, 279, 355	(각 반론청구) 이○○ 對 뉴데일리 ⁽²⁷⁵⁾ , YTN ⁽²⁷⁸⁾ , 인터넷 YTN ⁽²⁷⁹⁾ (정정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³⁵⁵⁾
조 정 대 상	• 뉴데일리 : 『선거철 철새 논란 ... 대선 때는 안철수 돕다가 총선은 새누리당으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일자 정치면) • YTN : TV저널 프로그램 『경선 벌써 '흔탁'... 막말에 정체성 논란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일자, 인터넷 YTN 3월 2일자 정치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수상한 친박 있다" 새누리 곳곳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신청인의 정체성이 소속 정당과 다르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데일리, YTN, 인터넷 YTN)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76·277	(정정·손배청구) 옥○○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요도파열’ 배우 윤○○, 동명이인 축구선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시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운동선수인 신청인의 아들이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故 ○○선수 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80~283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종로신문 ^(280·281) , 인터넷 종로신문 ^(282·283)
조 정 대 상	(1) 『2013년 종로구청의 언론탄압과 난도질의 시작』 제하의 기사 (종로신문 2016년 2월 19일자 1면, 인터넷 종로신문 2월 24일자 발언대면) (2) 『구청은 종로신문과 상생하라』 제하의 기사 (종로신문 2016년 3월 3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 통반장들에게 특정 지역신문을 구독하도록 유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폭언 등은 사실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284~287	(각 반론·손배청구) (재)○○○○연구소 對 일요시사 ^(284·285) , 인터넷 일요시사 ^(286·287)
조 정 대 상	『○○○○ 직원 폭행 파문 “이사장이 마구 때렸다”』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2월 29일자 6~7면, 인터넷 일요시사 2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이사장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타)

2016서울조정 288~295	(각 추후·손배청구) 박○○ 외 3인 對 채널A ^(288·289) , 인터넷 채널A ^(290·291) , YTN ^(292·293) , 인터넷 YTN ^(294·295)
조 정 대 상	- 채널A : (1) 뉴스특보 프로그램 『이번엔 감감한 ‘도깨비방’에서 공포감 체벌』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16일자 사회면) (2) 채널A종합뉴스 프로그램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 주장 나와』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16일자 사회면) 외 3건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또 어린이집 폭행 논란 ...“도깨비방”에선 무슨 일 이?』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6일자, 인터넷 YTN 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치원 교사인 신청인들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채널A, 인터넷 채널A/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850만원, 부제소) - 각 조정성립 (YTN, 인터넷 YTN/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인터넷 채널A : 『경기 ○○ ○○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도깨비방’ ○○ 유치원 폭행 의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5일자, 인터넷 YTN 3월 2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96·297, 305·306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YTN ^(296·297) , 인터넷 SBS sports ^(305·306)
조 정 대 상	- 인터넷 YTN : 『‘배임·횡령 물의’ 박○○ 대한○○협회장 사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SBS sports : 『대한○○협회 박○○ 회장, 사퇴 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6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스포츠 협회 기금을 횡령, 배임해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300~304	(각 손배청구) (사) ○○○○○○운동본부 對 인터넷 매일일보 ⁽³⁰⁰⁾ , HBC한북방송 ⁽³⁰¹⁾ , 굿모닝뉴스 ⁽³⁰²⁾ , 뉴시스 ⁽³⁰³⁾ , 국제뉴스 ⁽³⁰⁴⁾
조 정 대 상	- 인터넷 매일일보 : 『○○시 ○○면 이장단 협의회 NGO인허가 취득 조사 청원서 의회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전국면) - HBC한북방송 : 『○○시 ○○면 이장단 협의회, 산업 폐기물 처리장 허가 조사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종합면) - 굿모닝뉴스 : 『NGO인허가 취득 조사 청원서 의회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뉴스면)

조 정 대 상	• 뉴시스 : 『“NGO 대표가 …” 포천 폐기물처리장 허가 조사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전국면) • 국제뉴스 : 『○○시민, ○○○○에너지 인, 허가 과정 조사 특위 시의회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잔극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에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허위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매일일보/내용 : 손해배상 1만원) • 조정성립 (뉴시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HBC 한복방송, 굿모닝뉴스, 국제뉴스)
이 행 결 과	『사단법인 ○○○○○○운동본부 최○○ 대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6년 4월 6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307~35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307·308) , 인터넷 BBS불교방송 ^(309·310) , KBS미디어 ^(311·312) , SBS 콘텐츠허브 ^(313·314) , 인터넷 TBS ^(315·316) , 인터넷 YTN ^(317·318) , 인터넷 경향신문 ^(319·320) , 뉴시스 ^(321·322) , 데일리인 ^(323·324) , 동아닷컴 ^(325·326) , 로이슈 ^(327·328) , 법률신문 ^(329·330) , 세계닷컴 ^(331·332) , 아시아경제닷컴 ^(333·334) , 아시아투데이닷컴 ^(335·336) , 아주뉴스 ^(337·338) , 조선닷컴 ^(339·340) , 쿠키뉴스 ^(341·342)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43·344) , 인터넷 한겨레 ^(345·346) , wow한국경제TV ^(347·348) , 인터넷 헤럴드경제 ^(349·350) , 비주얼다이브 ^(351·352)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BBS불교방송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TBS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외 16개 매체
신청인 주장	법원에서 원아 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청인을 ‘원아의 팔꿈치를 탈구시킨 보육교사’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인터넷 YTN, 법률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SBS 콘텐츠허브, 뉴시스, 로이슈/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BBS불교방송, KBS미디어, 인터넷 TBS, 인터넷 경향신문, 데일리안, 동아닷컴, 세계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아주뉴스, 조선닷컴, 쿠키뉴스,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한겨레, wow한국경제TV, 인터넷 헤럴드경제, 비주얼다이브/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 혐의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중 ‘혐의’ 표현 추가 (2016년 3월 17일자 뉴스면) • 인터넷 YTN : 『아이 진정시키려다 탈골 혐의 ...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중 ‘혐의’ 표현 추가 (2016년 3월 24일자 사회면) • 법률신문 : 『고성 지르는 아이 진정시키려 교사가 양팔 잡았다가』 제하의 기사 중 ‘혐의’ 표현 추가 (2016년 3월 16일자 법원면)

2016서울조정 353, 354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국일보 ⁽³⁵³⁾ , 인터넷 한국일보 ⁽³⁵⁴⁾
조 정 대 상	『마지못해 ‘훈장’ 내보낸 ‘KBS’』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2월 3일자 A2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KBS가 특정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못하도록 제작 실무진에 대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KBS 다큐 ‘훈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3월 23일자 A22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3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56, 357	(각 정정청구) 심○○ 對 중앙일보 ⁽³⁵⁶⁾ , 온라인 중앙일보 ⁽³⁵⁷⁾
조 정 대 상	『여당 텃밭 강남 3곳, 모두 현역 vs 예비군 대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3월 9일자 8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선거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358~361	(각 정정·손배청구) (주) ○○○○컴퍼니 對 한겨레21 ^(358·359) , 인터넷 한겨레21 ^(360·361)
조 정 대 상	『사라져버릴지 모를 성수동의 장인들』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6년 2월 22일자 64면~67면, 인터넷 한겨레21 2월 15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라져버릴지 모를 성수동의 장인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관련 반론 삽입 (인터넷 한겨레21 4월 1일자 사회일반면)

2016서울조정 362	(정정청구) ○○○○○○○○○○회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파이 짜우 짝 니엠』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5일자 1면) (2) 『올해 중부 곳곳 50주년 위령제, 한국인 사회의 첫 걸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5일자 3면, 4면)
신청인 주장	파월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63	(정정청구) (주) ○○○○○○○○○○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상표권 없이 영업 ‘○○○’... 가맹점 모집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상표 미등록’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4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364~366	(정정·손배청구) 이○ 對 CBS-R ^(364·365) (정정청구) 노컷뉴스 ⁽³⁶⁶⁾
조 정 대 상	• CBS-R :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세월호 특조위,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29일자) • 노컷뉴스 : 『세월호 특조위,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재직 당시 직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세월호 특조위 내부 고위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6년 3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367·368	(반론·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법보신문
조 정 대 상	『언론탄압 대책위, 불자들이 공감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언론사 편집장인 신청인이 언론을 탄압하고 사주의 편에 서는 등 정의롭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369~372	(각 정정·손배청구) 선○○ 對 뉴스앤조이 ^(369·370) , 인터넷 일요신문 ^(371·372)
조 정 대 상	• 뉴스앤조이 : 『‘성매매 리스트’에 목사님이?』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7일자 교계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상습 성매매’ 목사 엄중한 교회법으로 징벌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목회자인 신청인이 성매매를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73·374	(반론·손배청구) (사) ○○○○회 對 수산신문
조 정 대 상	(1) 『○○회장 선출, 참을 수 없는 불쾌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1면) (2) 『○○회장 뽑는 건지 기업체 사장 뽑는 건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회장 선출에 임박해 부당한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출 규정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375·376	(정정·손배청구) 김○○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험난한 ‘치매 정복’, ○○제약 치료제 개발 손 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투자하고 있는 치매 치료 신약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6서울조정 377·378	(추후·손배청구) 백○○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검찰, 안티○○카페 백○○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2010년 6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79, 380, 400	(각 정정청구) 환경부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1) 『면세점법 등 4개法 연8조 손실 ... 경제성장률 0.7%p 까먹어』 (2016년 3월 5일자 8면) (2) 『온실가스 덜 배출한 발전소 제재하는 환경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14면) (3) 『환경부 허술한 검사, 폭스바겐 ‘숨방망이 처벌’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2면)
신청인 주장	환경부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량 회수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81·382	(정정·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프로그램 『도로 위의 승강이』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통 단속과 관련해 경찰과 실랑이 중 쓰러진 것이 ‘쇼’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피신청인이 모자이크 처리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으며,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법하지 않은 보도임)
2016서울조정 383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조 정 대 상	『공허한 현대인의 정곡을 찌르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차○○ 초대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1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예술 비평가인 신청인의 전시평을 표절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동탄복합문화센터 차○○ 초대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9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84, 385, 404, 412	(각 정정청구) 조원진 對 한국일보 ⁽³⁸⁴⁾ , 인터넷 한국일보 ⁽³⁸⁵⁾ , 인터넷 경향신문 ⁽⁴⁰⁴⁾ , 브레이크뉴스 ⁽⁴¹²⁾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막말·갑질 땡땡거리더니 ... 공천 앞두고 덜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세월호 막말’ 새누리 조원진·이완영 의원 ‘공천 관문’ 통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0일자 사회일반면) • 브레이크 뉴스 :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중 유가족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국일보 : 『막말·갑질 땡땡거리더니 ... 공천 앞두고 덜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4월 18일자 정치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정정보도] 새누리 조원진 의원 세월호 막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1일자 사회일반면) • 브레이크 뉴스 :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5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386, 387	(각 반론청구) 김○○ 對 중앙일보 ⁽³⁸⁶⁾ , 온라인 중앙일보 ⁽³⁸⁷⁾
조 정 대 상	(1)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2월 24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2) 『“한 달 알바 뛰면 100만원, 실·팀장은 200~300만원”... 대학로 뼈끼의 증언』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공연장에서 표를 강매하는 호객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4월 14일자 23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15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88~391	(각 반론·손배청구) 윤○○ 對 중앙일보 ^(388·389) , 온라인 중앙일보 ^(390·391)
조 정 대 상	(1) 『해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2월 24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2) 『“한 달 알바 뛰면 100만원, 실·팀장은 200~300만원”... 대학로 빼끼의 증언』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공연 호객행위를 보도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4월 14일자 23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15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392·393	(반론·손배청구) 포천시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김○○ 후보 불법 자금 의혹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포천시가 모 기업에게 거액의 불법보증을 서주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석탄 발전소 불법 자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394, 410	(각 반론청구) 안○○ 외 1인 對 채널A ⁽³⁹⁴⁾ , 인터넷 채널A ⁽⁴¹⁰⁾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급식비 빼돌리고 ‘못 나가’ 버티기』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3월 15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급식업체인 신청인이 질 낮은 식자재를 쓰고 식자재 가격을 부풀려 거액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395·396	(정정·손배청구) 변○○ 對 SBS-TV
조 정 대 상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조기교육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조기 외국어 교육의 폐해를 알리는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을 부정적으로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750만원,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6서울조정 397~399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JTBC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지역 카페도 ‘노골적 홍보’… 두 달 만에 수 천만원 수익』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3일자) (2) 뉴스룸 프로그램 『지역 카페 ‘홍보 빌미’ 상업화 … 포털 “규제 근거 없다”』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상업화하여 고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 프로그램 『‘지역카페 노골적 홍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일자)
2016서울조정 401·402	(정정·손배청구) ○○○○총연합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다리는 왜 만져” 교통사고 女환자, 성추행 의혹 의사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의사들이 여성 환자 진료 시 성추행을 일삼는 것 같은 삽화를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403	(정정청구) 홍일표 對 JTBC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차명계좌” 내역서 입수』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7일자) (2) 뉴스룸 프로그램 『전 직원 “홍 의원 지시로 개설”... 홍일표 입금 기록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홍일표 의원 차명계좌 의혹’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일자)
2016서울조정 405, 406	(각 정정청구) 류○○ 對 SBS-TV ⁽⁴⁰⁵⁾ , JTBC ⁽⁴⁰⁶⁾
조 정 대 상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이 모범수? ... 석연찮은 이유』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 이번엔 ‘최신식 교도소 수감’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가해자인 신청인의 아내가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407	(손배청구) 함진규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현역 의원 논문 표절 의혹 “자료 부족” 해명』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석사 논문이 관련 도서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함진규 의원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6년 5월 1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408	(손배청구) 정○○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가족인 척 했다가 ... 사진 한 장에 딱 걸렸다』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축의금 절도 관련 보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결혼식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6서울조정 409	(정정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7 프로그램 『특허기계로 ‘포인트 환전’, 사행성 오락실 적발』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발한 성인 오락실 환불기를 불법 사행성 기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결정 내용이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어서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411	(정정청구) ○○○○노동조합 ○○○○지부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영업通’ ○○○ 김 한국○○ 사장의 뚝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 집행부가 사장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영업通’ ○○○ 김 한국○○ 사장의 뚝심』 제하의 기사 중 “소주 폭탄주를 함께 한다” 등의 표현 삭제 (2016년 3월 11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413~416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KBS-1TV ^(413·414) , KBS미디어 ^(415·416)
조 정 대 상	(1) 뉴스라인 프로그램 『교육 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6일자, KBS미디어 3월 16일자 사회면) (2) 뉴스9 프로그램 『‘교육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6일자, KBS미디어 3월 16일자 사회면) (3) 뉴스광장 프로그램 『‘교육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7일자, KBS미디어 3월 17일자 사회면) (4) 뉴스12 프로그램 『편의점 교육기간은 무급? ... ‘서러운 알바생’』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3월 17일자, KBS미디어 3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편의점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서 편의점에 근무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교육 기간은 무급? ... 편의점 알바생 ‘눈물’』 제하의 보도 중 신청인 관련 동영상 삭제 (KBS미디어 2016년 4월 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417·418	(정정·손배청구) (재) ○○병원 유지재단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병원 사유화 논쟁]〈상〉 120년만의 일탈 ... 병원장 ‘3선’』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전국면) (2) 『[○○○○병원 사유화 논란]〈중〉 제2기 전대학 사태 닳아가는 ○○○○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전국면) (3) 『[○○○○병원 사유화 논란]〈하〉 부조리한 병원 운영 ... ‘수사 요청’ 탄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모 병원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반대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419~42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419·420) , 온라인 중앙일보 ^(421·422) , 인터넷 불교저널 ^(423·424)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문화/생활면) (2)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2』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문화/생활면) • 온라인 중앙일보 : (1)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문화면) (2)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2』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문화면) • 불교저널 : (1)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메인면) (2) 『주한 ○○문화원장? 아시나요2』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해외 문화원장인 신청인이 외교관 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425	(정정청구) 염동열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사회종합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땅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사회종합면)

2016서울조정 426	(손배청구) 구○○ 對 월드투데이
조 정 대 상	『구○○ “입냄새 난다 ...”, 석○○ 해설의 돌직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여성 아나운서인 신청인이 입냄새가 난다는 타매체 진행자의 모욕적인 농담을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427·428	(정정·반론청구) 염동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염동열 의원 보좌관 급여 일부 처조카에게 지급 강요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입법 보조원이던 처조카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6서울조정 429·430	(정정·손배청구) 최○○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지적장애 여성도 ‘학대’... 경찰 수사 ‘허술’』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지적장애 여성 피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431~435	(각 정정청구) 이부형 對 연합뉴스 ⁽⁴³¹⁾ , SBS 콘텐츠허브 ⁽⁴³²⁾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⁴³³⁾ , 뉴스1코리아 ⁽⁴³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⁴³⁵⁾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정치면) • SBS 콘텐츠허브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비례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선거면) • 뉴스1 코리아 : 『비례 후보 재산 평균 21억 4000만원 ... 26%가 전과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1) 『여야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4천만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7일자 정치면) (2) 『4월 총선 비례 대표 후보자 평균 재산 21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인 신청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 SBS 콘텐츠허브 :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비례 후보 평균 재산 21억 ... 김종인 대표 88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선거면) • 뉴스1코리아 : 『비례후보 재산평균 21억4000만원 ... 26%가 전과자』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4월 총선 비례 대표 후보자 평균 재산 21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3월 30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436·437	(정정·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잠 못 드는 밤, 소리로 복수하는 여자』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과도하게 중간소음 피해를 주장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2016서울조정 438~44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 (주)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438~440) , KBS미디어 ^(441~443)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닷컴 : 『○○○○○○, ‘7번 엑셀 오작동’ 항의 ‘1인 시위’ 고객 형사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1) 『환불 요구에 ‘고소’ ... 폭스바겐 ‘배짱 영업』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사회면) (2) 『항의 고객을 고소? ... “고객이 블랙컨슈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차량의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블랙컨슈머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아시아투데이닷컴) • 취하 (KBS미디어/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444, 445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세계일보 ⁽⁴⁴⁴⁾ , 세계닷컴 ⁽⁴⁴⁵⁾
조 정 대 상	『KF-X 사업 관여 전직 고위인사 “AESA 레이더 개발 인력 태부족”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2월 22일자 종합2면, 세계닷컴 2월 22일자 정치국방면)
신청인 주장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핵심장비 연구개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KF-X의 눈” AESA 레이더 개발은 지상 과제』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4월 26일자 29면, 세계닷컴 4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446~448	(각 손해청구) 김○○ 對 KBS미디어 ⁽⁴⁴⁶⁾ , 연합뉴스 ⁽⁴⁴⁷⁾ , 이투데이 ⁽⁴⁴⁸⁾
조 정 대 상	• KBS미디어 : (1) 『초등생 아들 때린 엄마,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2) 『“공부 안해서” 초등생 아들 무차별 폭행』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왜 공부 안해” 초등생 아들 무차별 폭행한 엄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 이투데이 : 『“왜 공부 안해” 머리 흔들고 발로 걷어차고 ... 초등생 아들 폭행한 엄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뉴스광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449~460	(각 정정청구) ○○○○○ (주) 對 KBS-1TV ⁽⁴⁴⁹⁾ , KBS미디어 ⁽⁴⁵⁰⁾ , MBC-TV ⁽⁴⁵¹⁾ , iMBC ⁽⁴⁵²⁾ , SBS-TV ⁽⁴⁵³⁾ , SBS 콘텐츠허브 ⁽⁴⁵⁴⁾ , 연합뉴스TV ⁽⁴⁵⁵⁾ , 연합뉴스TV 인터넷 ⁽⁴⁵⁶⁾ , TV조선 ⁽⁴⁵⁷⁾ , 인터넷 TV조선 ⁽⁴⁵⁸⁾ , JTBC ⁽⁴⁵⁹⁾ , 인터넷 JTBC ⁽⁴⁶⁰⁾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실버타운 보증금, 사망·중병에도 “반환 안 돼”』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KBS미디어 3월 16일자 경제면) 외 4건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뽀뽀한 실버타운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iMBC 3월 16일자 경제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니 ... 실버타운 황당 횡포』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SBS 콘텐츠허브 3월 16일자 경제면) 외 1건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TV : 뉴스20 프로그램 『“사망 후에도 관리비 내라고?”... 실버타운 부당 계약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7일자, 연합뉴스TV 인터넷 3월 17일자 경제면)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사망해도 환불이 안 돼』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인터넷 TV조선 3월 16일자 경제면) 외 1건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일부 실버타운, 과도한 위약금 등 ‘배짱’... 관련법 미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6일자, 인터넷 JTBC 3월 16일자 다시보기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계약기간 중 사망한 입주자와 관련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위약금을 물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인터넷,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C-TV, iMBC/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SBS-TV, SBS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KBS-1TV, KBS미디어, JTBC, 인터넷 JTBC/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8일자, iMBC 4월 29일자 경제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3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3일자 경제면) • 연합뉴스TV : 뉴스20 프로그램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3일자, 연합뉴스TV 인터넷 5월 4일자 사회면) • TV조선 : 프로그램 『실버타운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9일자, 인터넷 TV조선 4월 29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461	(정정청구) 정○○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학교서 일본원숭이 외에도 줄줄이 폐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2일자 문화면) (2) 『○○○학교 원숭이들의 잇따른 죽음 ... 고양이에게 끓는 물 부은 남성』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동물 공연을 기획하는 신청인 회사가 원숭이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학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462, 463, 486	(각 손해청구) ○○○○대학교 병원 對 세계닷컴 ⁽⁴⁶²⁾ , 포커스뉴스 ^(463,486)
조 정 대 상	• 세계닷컴 : (1) 『○○○○대 병원 ‘슈퍼 갑’의 횡포 넘어 특허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의료면) (2) 『○○○○대 병원, 도 넘는 갑질 의혹(?) ... 공익성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사회면) • 포커스뉴스 : (1) 『잇단 특허 침해 의혹 ... 중기·벤처 다 죽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사회면) (2) 『이○○ ○○○○대 병원장 ‘영리 자회사’ 설립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벤처기업의 기술 특허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세계닷컴 : 『○○○○대 병원, 도 넘는 갑질 의혹(?) ... 공익성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측 반론 삽입 (2016년 4월 8일자 의료면) • 포커스뉴스 : 『S대학 병원 ‘영리 자회사’ 설립 의혹』 제하의 기사 중 제목 및 신청인 관련 내용 대폭 수정 (2016년 4월 18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464~46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현대종교 ^(464~466) ,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467~469)
조 정 대 상	(1)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이단』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1월 1일자 미혹면,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1월 1일자 이단면) (2)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의 주장과 성경적 반증』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3월 1일자 예방과 대처면,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3월 1일자 구원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구원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가르치는 등 성경 교리를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470~478, 487~495	(각 정정청구) (재) ○○○○○○재단 ^(470~478) , 김○○ ^(487~495) 對 경향신문 ^(470,472,474,476,487,489,491,493) , 인터넷 경향신문 ^(471,473,475,477,478,488,490,492,494)
조 정 대 상	(1)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2월 5일자 A2면, 인터넷 경향신문 2월 5일자 사회 일반면) (2) 『방석호 재임 시절 입찰 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3월 11일자 A8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0일자 미디어면) (3) 『아리랑TV 12억들인 프로, 하루 참여 10명꼴 뿐』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3월 14일자 A12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3일자 오피니언면) (4)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2월 5일자 미디어면) (5) 『방통위·금융위, 아리랑TV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3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리랑TV의 외주제작사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들은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사실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479, 480	(각 정정청구) 대한적십자사 對 교통신문 ⁽⁴⁷⁹⁾ , 인터넷 교통신문 ⁽⁴⁸⁰⁾
조 정 대 상	『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上,)(下)』 제하의 기사 (교통신문 2016년 3월 7일자 및 3월 14일자 11면, 인터넷 교통신문 3월 4일자 및 3월 11일자 육운면)
신청인 주장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등 무연고 사망자 무료 장의차 사업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교통신문 2016년 4월 28일자 11면, 인터넷 교통신문 4월 28일자 육운면)

2016서울조정 481·482	(정정·손배청구) 홍○○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병원 사유화 논란]〈하〉 부조리한 병원 운영 ... ‘수사 요청’ 탄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 낸 것이 해당 병원장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483·484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조 정 대 상	(1) 『‘○○○’ 불법 유령단체 음모로 2년째 고통』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인권면) (2) 『○○○ 학부모회, 불법유령단체 비대위 규탄 집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인권면) (3) 『○○○ 학부모회, 인권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4일자 인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대표로 있는 모 장애인 시설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 유령단체이며, 해당 시설 찬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485, 587	(반론, 손배청구) 최○○ 對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조 정 대 상	『국선 변호사 최○○ “기분 나빠서 사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커뮤니티면)
신청인 주장	국선변호사인 신청인이 의뢰인과 동석한 피신청인 소속 기자를 위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496~585	(각 추후·손배청구) 최○○ 對 연합뉴스^(496·497), 뉴스1코리아^(498·499), TV조선^(500·501), 동아일보^(502·503), 서울신문^(504·505), 세계일보^(506·507), 중앙일보^(508·509), 인터넷 YTN^(510·511), SBS 콘텐츠허브^(512·513), KBS미디어^(514·515), 인터넷 MBN^(516·517), 인터넷 TBS^(518·519), 인터넷 JTBC^(520·521), 매경닷컴^(522·523), 아시아경제닷컴^(524·525), 인터넷 서울경제^(526·527), 인터넷 일요신문^(528·529), 한경닷컴^(530·531), 세계닷컴^(532·533), 동아닷컴^(534·535), 인터넷 서울신문^(536·537), 이투데이^(538·539), 아주뉴스^(540·54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542·543), 티브이데일리^(544·545), 인터넷 메트로^(546·547), 인터넷 내일신문^(548·549), 인터넷 경향신문^(550·551), 인터넷 헤럴드경제^(552·553), 전자신문 인터넷^(554·555), 아이티투데이^(556·557), 프레시인^(558·559), 아시아투데이닷컴^(560·561),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562·563),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564·565), 인터넷 신아일보^(566·567), 국회뉴스^(568·569), 아이뉴스24^(570·571), e중앙뉴스^(572·573), 폴리뉴스^(574·575), 더리뷰^(576·577), NBS국민방송^(578·579), 인터넷 주간현대^(580·581), 인터넷 스포츠조선^(582·583), 위키트리^(584·585)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檢, ‘학점은행 비리 의혹’ ○○○○진흥원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사회면) 외 8건 • 뉴스1코리아 : 『‘교비 횡령’ 혐의 김○○ ○○○○직업학교 이사장 3차 소환』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사회면) 외 1건 • 동아일보 : 『학점은행 기관 지정 ‘교피아’ 뒷돈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A12면, 동아닷컴 6월 20일자 사회면) • 서울신문 : 『檢, ○○○○진흥원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20일자 11면) • TV조선 : 뉴스9 프로그램 『‘비리 의혹’ ○○진흥원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일자) 외 40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동아일보, 동아닷컴/내용 : 기사수정, 부채소) • 각 취하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⁵⁰⁶⁾, 인터넷 YTN⁽⁵¹⁰⁾, SBS 콘텐츠허브⁽⁵¹²⁾, 인터넷 MBN⁽⁵¹⁶⁾, 매경닷컴⁽⁵²²⁾, 한경닷컴⁽⁵³⁰⁾, 세계닷컴⁽⁵³²⁾,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⁵⁶⁴⁾, 인터넷 신아일보⁽⁵⁶⁴⁾, 폴리뉴스⁽⁵⁷⁴⁾/사유 : 추후보도)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인터넷 JTBC⁽⁵²⁰⁾, 아시아경제닷컴⁽⁵²⁴⁾, 티브이데일리⁽⁵⁴⁴⁾, 인터넷 메트로⁽⁵⁴⁶⁾, 인터넷 경향신문⁽⁵⁵⁰⁾, 인터넷 헤럴드경제⁽⁵⁵²⁾, 프레시인⁽⁵⁵⁸⁾, 아시아투데이닷컴⁽⁵⁶⁰⁾, 아이뉴스24⁽⁵⁷⁰⁾/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KBS미디어⁽⁵¹⁴⁾, 인터넷 TBS⁽⁵¹⁸⁾, 인터넷 서울경제⁽⁵²⁶⁾, 인터넷 일요신문⁽⁵²⁸⁾, 이투데이⁽⁵³⁸⁾, 아주뉴스⁽⁵⁴⁰⁾, 인터넷 파이낸셜뉴스⁽⁵⁴²⁾, 인터넷 내일신문⁽⁵⁴⁸⁾, 전자신문 인터넷⁽⁵⁵⁴⁾, 아이티투데이⁽⁵⁵⁶⁾,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⁵⁶²⁾, 국회뉴스⁽⁵⁶⁸⁾, e중앙뉴스⁽⁵⁷²⁾, 더리뷰⁽⁵⁷⁶⁾, NBS국민방송⁽⁵⁷⁸⁾, 인터넷 주간현대⁽⁵⁸⁰⁾, 인터넷 스포츠조선⁽⁵⁸²⁾, 위키트리⁽⁵⁸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TV조선, 세계일보⁽⁵⁰⁷⁾, 중앙일보, 인터넷 YTN⁽⁵¹¹⁾, SBS 콘텐츠허브⁽⁵¹³⁾, KBS미디어⁽⁵¹⁵⁾, 인터넷 MBN⁽⁵¹⁷⁾, 인터넷 TBS⁽⁵¹⁹⁾, 인터넷 JTBC⁽⁵²¹⁾, 매경닷컴⁽⁵²³⁾, 아시아경제닷컴⁽⁵²⁵⁾, 인터넷 서울경제⁽⁵²⁷⁾, 인터넷 일요신문⁽⁵²⁹⁾, 한경닷컴⁽⁵³¹⁾, 세계닷컴⁽⁵³³⁾, 이투데이⁽⁵³⁹⁾, 아주뉴스⁽⁵⁴¹⁾, 인터넷 파이낸셜뉴스⁽⁵⁴³⁾,

처 리 결 과	티브이데일리 ⁽⁵⁴⁵⁾ , 인터넷 메트로 ⁽⁵⁴⁷⁾ , 인터넷 내일신문 ⁽⁵⁴⁹⁾ , 인터넷 경향신문 ⁽⁵⁵¹⁾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⁵⁵³⁾ , 전자신문 인터넷 ⁽⁵⁵⁵⁾ , 아이티투데이 ⁽⁵⁵⁷⁾ , 프레시안 ⁽⁵⁵⁹⁾ , 아시아투데이닷컴 ⁽⁵⁶¹⁾ ,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⁵⁶³⁾ ,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 ⁽⁵⁶⁵⁾ , 인터넷 신아일보 ⁽⁵⁶⁷⁾ , 국회뉴스 ⁽⁵⁶⁹⁾ , 아이뉴스24 ⁽⁵⁷¹⁾ , e중앙뉴스 ⁽⁵⁷³⁾ , 폴리뉴스 ⁽⁵⁷⁵⁾ , 더리뷰 ⁽⁵⁷⁷⁾ , NBS국민방송 ⁽⁵⁷⁹⁾ , 인터넷 주간현대 ⁽⁵⁸¹⁾ , 인터넷 스포츠조선 ⁽⁵⁸³⁾ , 위키트리 ⁽⁵⁸⁵⁾ /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학점은행 기관 지정 ‘교피아’ 뒤통 의혹』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4월 15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전직 ○○○○진흥원장, 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외 12개 매체 보도 • 뉴스1코리아 : 『‘교비횡령’ 혐의 김○○ ○○○○직업학교 이사장 3차 소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외 9개 매체 수정

2016서울조정 586	(정정청구) 이○○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동작갑의 이○○·김○○ 대결이 흥미로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후보인 신청인이 2004년 모 회사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동작갑 이○○ 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588·589	(정정·손배청구) (주) ○○○○ 對 포스트코리아신문
조 정 대 상	『○○○○ 골프장 자본금 한푼 없이 무작정 회원 모집?』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골프장 운영자인 신청인과 회원들간 입회금 반환 및 회생 계획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회원측 입장만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골프장 본지 3/30일자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9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590~592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방석호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 『방석호 재임 시절 입찰 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3) 『아리랑TV 12억 투입한 양방향 방송 실제 참여자 수 심명』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방송사 외주 제작사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2016서울조정 593~600, 612~614	(각 추후청구) 백○○ 對 인터넷 MBN ⁽⁵⁹³⁾ , 노컷뉴스 ⁽⁵⁹⁴⁾ , 연합뉴스 ⁽⁶¹²⁾ (각 추후·손배청구) 동아닷컴 ^(595·596) , 인터넷 문화일보 ^(597·598) , 온라인 중앙일보 ^(599·600) , 인터넷 헤럴드경제 ^(613·614)
조 정 대 상	- 인터넷 MBN : 『시민 기부금 횡령 ... 생활·유흥비로 써』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경찰, 안티MB 카페 운영진 횡령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술값에 쓴 쇠고기 집회 기부금』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좌파 성향 시민운동 일각의 파렴치』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칼럼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네티즌 성금, 술값·생활비로 쓴 “안티MB” 카페지기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美 쇠고기 반대 안티MB’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6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동아닷컴, 인터넷 문화일보, 인터넷 헤럴드경제/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중재부의 결정 내용을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 (인터넷 MBN, 노컷뉴스, 연합뉴스/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온라인 중앙일보 : 『알려드립니다』 ‘안티MB’카페 대표 관련 기사, 무죄 판결』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안티MB’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안티MB’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안티MB’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601, 602	(각 정정청구) (주) ○○○○○○ 對 경향신문 ⁽⁶⁰¹⁾ , 인터넷 경향신문 ⁽⁶⁰²⁾
조 정 대 상	(1) 『방석호 재임 시절 입찰 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3월 11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0일자 사회면) (2) 『방석호 시절 아리랑TV 입찰 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나』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모 방송사 전 사장과의 친분으로 외주제작사에 선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 보도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603~606	(각 정정·손배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서울매일 ^(603·604) , 크리스찬월드모니터 ^(605·606)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서울매일 : 『○○○단협, 대표회장 선거 “사전 모의와 부정 있었다” 양심 고백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4일자 종교문화면) • 크리스찬월드모니터 : 『○○○단협 대표회장 선거, “사전 모의와 부정 있었다”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6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회장 선거 당시, 사전 모의와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서울매일 : 『‘○○○단협, 대표회장 선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종교문화면) • 크리스찬월드모니터 : 『‘○○○단협, 대표회장 선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종교면)

2016서울조정 607~609	(정정·손배청구) 이○○ 對 중앙일보 ^(607·608) (정정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⁶⁰⁹⁾
조 정 대 상	(1) 『전 고법원장, 고리로 돈 빌려준 뒤 성공 보수 미리 댄 의혹』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2월 25일자 사회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5일자 사회면) (2) 『변협, 고금리 대출 의혹 이○○ 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의뢰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성공 보수를 미리 댄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10	(반론청구) 김○○ 對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조 정 대 상	『선거 앞두고 또 ‘박원순 명예훼손’ 차량 등장』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5일자 정치외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재산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선거철에만 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박원순 명예훼손차량’이라고? 절대 아니다! 강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정치외교면)

2016서울조정 611	(손배청구) 김○○ 對 SBS CNBC-TV
조 정 대 상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프로그램 『오래간만의 출장이었는데』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3년 전 교통사고 영상 제보자로서 인터뷰한 것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15	(정정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슈퍼푸드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에서 살균제와 살충제가 검출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경제매거진M 프로그램 『슈퍼푸드, 그 후』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5일자)

2016서울조정 616, 617	(각 정정청구) 윤○○ 對 SBS-TV ⁽⁶¹⁶⁾ , JTBC ⁽⁶¹⁷⁾
조 정 대 상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이 모범수? ... 석연찮은 이유』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5일자)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 이번엔 ‘최신식 교도소 수감’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청부살인 사건 가해자인 신청인이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JTBC/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SBS-TV)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청부살인 사모님, 최신식 교도소 수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4월 29일자)

2016서울조정 618~621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일요시사 ^(618·619) , 인터넷 일요시사 ^(620·621)
조 정 대 상	『조○○ 목사님 땅값 주세요』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1월 24일자 29면, 인터넷 일요시사 1월 2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토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폭에게 매도인을 폭행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조○○ 목사님 땅값 주세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6년 5월 11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시사 4월 27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622·623	(정정·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80세대 신축빌라 2세대만 거주 ... 인천 운영도 ‘유령 마을’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분양 중인 빌라 단지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24·625	(정정·손배청구) 김○○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캐도난마 프로그램 『北 지령받은 목사, 왜』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북한에 포섭되어 지하조직 구축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5백만원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캐도난마 프로그램 『北 지령받은 목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9일자)
2016서울조정 626~629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시사주간 ^(626·627) , 이코노믹포스트 ^(628·629)
조 정 대 상	• 인터넷 시사주간 : 『웅진씽크빅 북클럽 위약금, 불완전판매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7일자 사회면) • 이코노믹포스트 : 『웅진씽크빅 북클럽 위약금, 불완전판매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회원 멤버십 계약시 가입자에게 상품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서상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630, 631	(각 정정청구) (사) 대한한의사협회 對 의협신문 ⁽⁶³⁰⁾ , 닥터스뉴스 ⁽⁶³¹⁾
조 정 대 상	『한의협 ‘짜통’ 영문명칭 “끝까지 소송”』(의협신문 2016년 4월 11일자 6면, 닥터스뉴스 4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영문 명칭을 짜통이라고 비하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의협 ‘짜통’ 영문명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의협신문 2016년 5월 9일자 6면, 닥터스뉴스 5월 2일자 의사협회면)
2016서울조정 632·633	(정정·손배청구) ○○○○○○○○ 사회복지재단 ○○○○○○ 對 미디어시티 앤방송
조 정 대 상	『노숙자들의 천국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 그들은 왜 떠나려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뉴스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기관이 봉사단체에 갑질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역 ○○○○○터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뉴스종합면)
2016서울조정 634	(정정청구) 조원진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막말” 새누리 의원들, 모두 총선 출마』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새누리 조원진 의원 ‘세월호 막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635·636	(정정·손배청구) 정○○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동을 학대해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637·638	(정정·손배청구) 마○○ 對 SBS-TV
조 정 대 상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세상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린다-꼬마 작곡가 10세 한○○』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도한 학생이 피아노 영재로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2016년 1월 27일자 <세상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린다> 방송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6일자)

2016서울조정 639·640	(정정·손배청구) 윤○○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1) 『목사 집 들어간 여자 권사, 하룻밤 새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사회면) (2) 『은혜롭게 덮고 넘어가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사회면) (3) 『13억 예산 중 담임목사 연봉만 3억』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6일자 사회면) (4) 『인천 C교회 A 목사, 이번엔 유부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여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일부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41, 642	(각 정정청구) ○○○○○○○○협동조합 사업연합회 對 시사저널 ⁽⁶⁴¹⁾ , 인터넷 시사저널 ⁽⁶⁴²⁾
조 정 대 상	『○○○생협, 유사 수신행위 해당』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2016년 4월 5일자 66면, 인터넷 시사저널 3월 3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의 차입금 모집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2016년 5월 10일자 52면, 인터넷 시사저널 5월 1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643	(손배청구) 우○○ 對 쿠키뉴스
조 정 대 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수행자 성매매 들통에도 제식구 감싸기 급급』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2) 『성범죄에 관대한 참 나쁜 대구시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사회면) (3) 『시민단체, 약령시 사업단장 논란에 적절한 조치 취하라 요구』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과거 성매매 입건 사실을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44, 707, 708	(각 정정청구) 허현준 對 시사저널 ⁽⁷⁰⁷⁾ , 인터넷 시사저널 ^(644,708)
조 정 대 상	(1)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지했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4월 23일자 11면~18면, 인터넷 시사저널 4월 20일자 정치면) (2)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6년 4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청와대 행정관인 신청인이 보수단체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을 지지하는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45	(반론청구) ○○○○○○○대학교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장학금 많이, 입학금은 더 많이’... ○○○○○○○대학의 민낯』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장학혜택을 줄이면서 가장 비싼 입학금을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 제목을 『대학원대학 입학금 논란 “비싸거나 없거나”』로 수정 (2016년 5월 4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646	(손배청구) 윤○○ 對 더벨
조 정 대 상	『기업사냥꾼에 골병드는 ○○○○』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상장 폐지시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양산한 기업사냥꾼이라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47	(손배청구) (주) ○○○○○○ 對 위키트리
조 정 대 상	『“도우미가 씻긴 뒤 얼굴 살 벗겨진 아들” 공방』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파견한 산후도우미의 과실로 신생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잘못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648~655	(각 정정·반론청구) 성남시 외 1인 對 동아일보 ^(648·649) , 동아닷컴 ^(650·651) , 채널 A ^(652·653) , 인터넷 채널A ^(654·655)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북핵이 한국 탓이라는 이재명 시장』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A08면, 동아닷컴 3월 23일자 정치면)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이재명 “박 정부 탓 북핵 개발”』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3월 22일자 뉴스정치면)
신청인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워싱턴 토론회에서 발언한 대북 정책 관련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56~659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SBS-TV ^(656·657) , SBS 콘텐츠허브 ^(658·659)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이동 목조 주택 하자·보수’ 따져봐야』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4월 23일자, SBS 콘텐츠허브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이동식 목조주택의 불량 시공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 사업장과 간판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660	(정정청구) ○○○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오남용 되는 여성홍분제 ‘○○’... 마약류로 지정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성 홍분제로 사용되는 모 제품에 마약류 지정에 필수적인 의존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661·662	(정정·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법보신문
조 정 대 상	(1) 『한○○ ○○대 교수회장 폭행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교계면) (2) 『○○대, 폭행혐의 한○○ 교수 중징계 요청』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663	(손배청구) 문○○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소비자 기만하는 자동차사』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664~667, 932~943	(각 정정·손배청구) 염○○ 對 인터넷 경향신문 ^(664·665) , 동두천연천신문 ^(666·667) (각 추후·손배청구) 연합뉴스 ^(932·933) , 동두천연천신문 ^(934·935) , 인터넷 신아일보 ^(936·937) , 아시아경제닷컴 ^(938·939) , 인터넷 경향신문 ^(940·941) , 인터넷 한겨레 ^(942·943)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연천 지역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등 20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동두천연천신문 : 『연천서, 연천 지역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등 20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신아일보 : 『‘현무암’ 6천톤 불법 채취 일당 검거 ... 공무원까지 ‘한통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강남 집짓겠다고 ... 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채석을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동두천연천신문^(934·935), 인터넷 신아일보,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경향신문^(940·941)/내용 : 추후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한겨레/내용 : 추후보도,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664·665)/사유 : 자진취하) • 조정불성립결정 (동두천연천신문^(666·667))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불법 채석 묵인 연천 공무원 적발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신아일보 : 『[추후보도문] “현무암” 6천톤 불법 채취 일당 검거 ... 공무원까지 ‘한통속’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추후보도문] ‘6억원 상당 연천 현무암 불법 채취 일당 검거’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보도

2016서울조정 668·669	(정정·손배청구) (유) ○○○○○○○○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담양 메타프로방스 국제 PJ파 개입 전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670~685, 711~716	(각 정정·손배청구) ○○○○○○ 對 경향신문 ^(670·671) , 인터넷 경향신문 ^(672·673) , 인터넷 미디어오늘 ^(674·675) , 뉴스앤뉴스 ^(676·677) , 인터넷 위클리서울 ^(678·679) , 통일뉴스 ^(680·681) , 한강타임즈 ^(682·683)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684·685) , JTBC ^(711·712) , 인터넷 JTBC ^(713·714) , 시사인 Live ^(715·716)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정부, 허 행정관 몸담았던 ‘시대정신’에 4년간 2억 국고보조금』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5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청와대가 허현준 행정관 조사 못하는 사정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아침신문속아보기면) • 뉴스앤뉴스 : 『정부, 허현준 靑행정관 몸담았던 단체에 2억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뉴스면) • 인터넷 위클리서울 : 『‘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정치면) • 통일뉴스 :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청와대는 ‘종북 딱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현장소식면)

조 정 대 상	• 한강타임즈 : 『어버이연합 청와대 지시설 듣고 놀람기보다 ‘과연 그랬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6일자 정치국회면)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 『어버이연합 사태, 정대협 “중북 재갈 물리려던 청와대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정치외교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극우·보수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며 청와대 지시로 모 인권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뉴스앤뉴스, 인터넷 위클리서울, 통일뉴스, 한강타임즈,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JTBC, 인터넷 JTBC, 시사인 Live)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초기화면) • 뉴스앤뉴스 : 『〈바로잡습니다〉 허현준 靑행정관 몸담았던 단체에 2억 지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위클리서울 : 『‘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정치면) • 통일뉴스 :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청와대는 ‘중북 딱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현장소식면) • 한강타임즈 : 『어버이연합 청와대 지시설 듣고 놀람기보다 ‘과연 그랬구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정치국회면)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 『어버이연합 사태, 정대협 “중북 재갈 물리려던 청와대 자충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정치외교면)

2016서울조정 686	(반론청구) (주) ○○○○○○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이동 목조 주택 하자·보수’ 따져봐야』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이동식 목조주택 제조회사인 신청인과 고객의 분쟁과 관련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687·688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불륜녀의 죽음』 제하의 보도 예고편 (2016년 4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수사한 살인 사건 관련 내용을 왜곡하고,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689~692	(각 반론·손배청구) 백○○ 對 JTBC ^(689·690) , 채널A ^(691·692)
조 정 대 상	• JTBC : 사건반장 프로그램 『“변호사 남편 없애달라” 막장 부부의 결말』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4일자)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변호사 남편 죽여달라” 막장극]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남편을 살인교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JTBC/사유 : 반론보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채널A/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 동의 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 JTBC : 사건반장 프로그램 『〈변호사 남편 없애달라〉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5월 27일자) • 인터넷 채널 A : 『[“변호사 남편 죽여달라” 막장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8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693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1) 『도공, 요금 수납원 인권침해 문제 해결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오피니언면) (2) 『서산C 영업소, 요금 수납원에 ‘화장실 甲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톨게이트에서 여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산C 영업소, 요금 수납원에 ‘화장실 甲질’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4면)

2016서울조정 694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주간동아
조 정 대 상	『“어버이게이트”로 드러난 “2013년 국정원 문건”의 실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가정보원이 4·13 총선 직전 선거 판세를 분석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정원에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695, 696	(각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일간투데이 ⁽⁶⁹⁵⁾ , 인터넷 일간투데이 ⁽⁶⁹⁶⁾
조 정 대 상	『탐욕스런 ‘기업형 수퍼마켓’』 제하의 기사 (일간투데이 2016년 4월 28일자 8면, 인터넷 일간투데이 4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푸드 직매장이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변질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광양 ○○○○ 직매장 관련』 제하의 기사 (일간투데이 2016년 5월 13일자 8면, 인터넷 일간투데이 5월 1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697~705	(각 반론청구) 이○○ 對 연합뉴스 ⁽⁶⁹⁷⁾ , 인터넷 서울신문 ⁽⁶⁹⁸⁾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⁶⁹⁹⁾ , 매경닷컴 ⁽⁷⁰⁰⁾ , 아시아투데이닷컴 ⁽⁷⁰¹⁾ , e머니투데이 ⁽⁷⁰²⁾ , KBS미디어 ⁽⁷⁰³⁾ , 인터넷 YTN ⁽⁷⁰⁴⁾ , 인터넷 BBS불교방송 ⁽⁷⁰⁵⁾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檢 고발돼』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매경닷컴 : 『김태환 새누리의원 등 전·현직 ○○○협회장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개입’ 이○○ 대한○○○협회장 검찰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법원검찰면)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 : 『전·현직 ○○○협회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대한○○○협회장, 대표 선발에 개입한 혐의로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뉴스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천아시안게임 ○○○ 국가대표의 특정팀 소속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연합뉴스, 매경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BBS 불교방송 / 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헤럴드경제, e머니투데이, KBS미디어, 인터넷 YTN/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로 고발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이○○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 檢 고발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3일자 최신기사면) • 매경닷컴 : 『‘AG ○○○ 출전 선수 선발’ 보도에 관해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6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협회장, AG대표 선발 개입 혐의로 고발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전·현직 ○○○협회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3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이○○ 대한○○○협회장 “대표 선발 개입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5월 18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2016서울조정 706	(반론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새집 ‘독성물질’ 없애달라 불렀더니 눈은 따끔, 코는 비릿 ... 독성물질에 또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오존을 이용한 유해물질 제거 기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새집증후군 해결 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709·710	(정정·손배청구) 김성곤 對 채널A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총선 불출마하고 세금 외유 평평』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17, 718	(각 손배청구) 박○○ 對 채널A ⁽⁷¹⁷⁾ , 인터넷 채널A ⁽⁷¹⁸⁾
조 정 대 상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긴급 점검 어린이집 급식 실태』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8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급식 문제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719·720, 770~77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스핍 ^(719·720) , MBC-TV ^(770·771) , iMBC ^(772·773)
조 정 대 상	- 뉴스핍 : 『명품 옷가게 여사장, 왜 단골들만 속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4일자 대중문화면) - MBC-TV :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단골 이웃들 속여 명품 판 옷가게 언니, 빚진 돈에 밀린 갯돈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4일자, iMBC 4월 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현옷을 명품이라 속여 이웃들에게 팔고, 빚이 70억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핍/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C-TV, iMBC/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현 옷을 명품 옷으로 판 옷가게 언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핍 2016년 6월 29일자 대중문화면) -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다시보기 중 기사일부 삭제 (iMBC 2016년 6월 17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721~726	(각 정정청구) 명○○ 對 조선닷컴 ⁽⁷²¹⁾ , 미디어펜 ⁽⁷²²⁾ , 연합뉴스 ⁽⁷²³⁾ , 인터넷 MBN ⁽⁷²⁴⁾ , KBS미디어 ⁽⁷²⁵⁾ , SBS 콘텐츠허브 ⁽⁷²⁶⁾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탈북 팜페라 가수 명○○씨가 전하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실상』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북한면) - 미디어펜 :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국 드라마 보고 귀순 결심』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정치면) - 연합뉴스 : 『WSJ, 북 해외 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 ...“며칠마다 자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北 해외 식당 종업원 “파견 전 집중 사상 교육, 남한 드라마 탈북에 영향”』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사회면) - KBS미디어 : 『WSJ, 북 해외 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 ...“며칠마다 자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국제면) - SBS 콘텐츠허브 : 『WSJ, 북 해외 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 ...“며칠마다 자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6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한국 TV드라마에 묘사된 풍족한 남한의 생활상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KBS미디어, SBS 콘텐츠허브/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조선닷컴/내용 : 기사수정) - 각 취하 (미디어펜, 인터넷 MBN/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탈북 팜페라 가수 명○○씨가 전하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실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 (2016년 5월 25일자 북한면) - 미디어펜 :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국 드라마 보고 귀순 결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정치면)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北 해외식당 종업원 “파견 전 집중 사상 교육, 남한 드라마 탈북에 영향”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727, 728	(각 정정청구) 김경협 對 MBN ⁽⁷²⁷⁾ , 인터넷 MBN ⁽⁷²⁸⁾
조 정 대 상	굿모닝MBN 프로그램 『더민주 김경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5월 3일자, 인터넷 MBN 5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보좌진의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상납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729~73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채널A ^(729·730) , 인터넷 채널A ^(731·732)
조 정 대 상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긴급점검! 어린이집 급식 실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5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8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733~735	(각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경향신문 ⁽⁷³³⁾ , 인터넷 경향신문 ⁽⁷³⁴⁾ , 미디어스 ⁽⁷³⁵⁾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KBS서 횡령 혐의 해임된 김○○ 아리랑TV 신임 사장으로 내정』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3일자 미디어면) - 미디어스 : 『아리랑TV, 방석호 가고 ‘횡령’ 김○○ 오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인을 아리랑TV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미디어스 /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아리랑TV 신임 사장 내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31일자 사회면) - 미디어스 : 『‘아리랑TV 신임 사장 낙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736	(정정청구) (주) ○○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전남 무안 운남산단 농지 불법 매립 “뒷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 매립 농지에 대한 관할 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전남 무안 ○○산단 농지 불법 매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737~74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 ^(737·738) , 조선닷컴 ^(739·740)
조 정 대 상	『난방비 갈등? 아파트 소장 급소 잡은 김○○』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6년 3월 3일자 A12면, 조선닷컴 3월 3일자 법원검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급소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합의에 따라 이미 정정보도 된 사안으로 청구 실익이 없음)

2016서울조정 741~746, 921, 922, 1001	(각 정정청구) 장○○ 對 SBS-TV ^(741~743,921) , SBS 콘텐츠허브 ^(744~746,922) , 프리미엄 조선 ⁽¹⁰⁰¹⁾
조 정 대 상	• SBS-TV : (1) 뉴스8 프로그램 『이○○ 작품 위조 용의자, 일본서 검거』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2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2일자 사회면) (2) 나이트라인 프로그램 『‘이○○ 작품 위조’ 용의자 체포 ... 구속영장 발부』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3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3일자 사회면) (3)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현대미술 거장’ 이○○ 작품 위조 용의자, 日서 검거』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3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3일자 사회면) (4)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위작 논란’ 이○○ 화백, 오늘 경찰 출석』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7일자, SBS 콘텐츠허브 6월 27일자 사회면) • 프리미엄 조선 : 『이○○은 돈보기로 첫 날엔 두 시간, 그 다음엔 네 시간을 꿈꿈히 살펴봤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4일자 와이드인터뷰면)
신청인 주장	모 유명 화백의 작품 위조 감정서 자료사진에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SBS 콘텐츠허브 : 『이○○ 작품 위조 용의자, 일본서 검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5월 16일자 사회면) • 프리미엄 조선 : 『이○○은 돈보기로 첫 날엔 두 시간, 그 다음엔 네 시간을 꿈꿈히 살펴봤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성명 게재된 감정서 그림 삭제 (2016년 7월 15일자 와이드인터뷰면)

2016서울조정 747	(정정청구) 한국국방연구원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당나라로 갔나 ... ‘사라진 軍 침대’ 이유 아직 못 밝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재부에 제출한 병영생활 현대화사업 중간보고서 내용이 부실해 추가 조사 요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당나라로 갔나 ... ‘사라진 軍 침대’ 이유 아직 못 밝혔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5월 27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748·749	(정정·손배청구) 반○○ 외 5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세명의 상전, 시엄마의 시집살이는 언제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5일자)
신청인 주장	4대가 모여 사는 신청인 가족에 관한 내용이 동의 사항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편집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50	(추후청구) 김○○ 외 2인 對 미디어인뉴스
조 정 대 상	『(주) ○○○○○○○○, (주) ○○○ 사업권 가로챈 전 직원 3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퇴직한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주) ○○○ 사업권 관련 고소 전 직원 모두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751, 752	(각 정정청구) 국방부 對 JTBC ⁽⁷⁵¹⁾ , 인터넷 JTBC ⁽⁷⁵²⁾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서울 복판 기지서 ‘지카 실험 추진’』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5월 11일자, 인터넷 JTBC 5월 11일자 정치면) (2) 뉴스룸 프로그램 『하루 수십 개 ‘생화학 실험’』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5월 11일자, 인터넷 JTBC 5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주한미군이 용산 미군 기지에서 생화학 실험을 했고, 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주한미군, ‘지카 실험’ 추진 및 생물학 실험”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8일자, 인터넷 JTBC 7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753	(정정청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對 코리아패션+텍스뉴스
조 정 대 상	(1) 『산업통상자원부, 韓패션산업研 원장 선임 거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패션면) (2) 『산패션研, 신임 원장 공모』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패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원장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754, 755, 763, 764	(각 정정청구) 강남경찰서 對 한겨레 ⁽⁷⁵⁴⁾ , 인터넷 한겨레 ⁽⁷⁵⁵⁾ , 네이버 ⁽⁷⁵⁶⁾ , 다음 ⁽⁷⁵⁷⁾
조 정 대 상	『‘100억 수입’ 변호사-강남경찰서 ‘수상쩍은 관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5월 13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네이버, 다음 5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경찰서가 과다 수입료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모 변호사 관련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56, 757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증권지부 對 한국경제 ⁽⁷⁵⁶⁾ , 한경닷컴 ⁽⁷⁵⁷⁾
조 정 대 상	『모회사 ○○중공업 구조조정 여파 … ○○○○증권 ‘나 떨고 있니?’』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5월 11일자 A21면, 한경닷컴 5월 10일자 증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사측과 영업점 통폐합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증권 노사 점포폐쇄 합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6월 8일자 24면, 한경닷컴 6월 8일자 증권면)

2016서울조정 758, 784, 785	(각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조 정 대 상	(1) 『전○○ 표절건, 자유총연맹 거짓음모론 유폐하는 박원순 피고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7일자 정치면) (2) 『애국시민련 김○○, 전○○ 표절 - 김○○ 음모론 관련 논란 2라운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정치면) (3) 『전○○ 표절 옹호 위해, 거짓 음해 인신공격 위험선 넘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정치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대해 허위사실을 유폐하는 등 음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59·760	(정정·손배청구) 강○○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맞춤형 해외경제 정보 프로젝트 오보로 좌초 … 허위 제보 확인 않고 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허위제보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761·762, 775·776	(각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미디어스 ^(761·762) , 인터넷 국민일보 ^(775·776)
조 정 대 상	• 미디어스 : (1)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16회 - 마지막 김○○의 환한 웃음이 던지는 의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블로그와면) (2) 『세월호, 그날의 기록 ... 사실의 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3일자 오피니언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박근혜씨 “지난해 6월 형님 대통령 방미 연기는 메르스 아닌 유승민 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이 청해진 해운의 실 소유주이고, 유회장 일가의 요구로 세월호가 개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미디어스 :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알림]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미션라이프면)
2016서울조정 765·766	(정정·손배청구) 박○○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 건물 세입자 불구속기소 “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모 가수 소유 건물 세입자인 신청인이 허위고소를 일삼아왔고,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서울조정 767, 768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대기원시보 ⁽⁷⁶⁷⁾ , 인터넷 대기원시보 ⁽⁷⁶⁸⁾
조 정 대 상	『선원 ‘2016 월드투어’ 수원서 막 내리다』 제하의 기사 (대기원시보 2016년 5월 16일자 3면, 인터넷 대기원시보 5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특정 공연의 KBS홀 대관 취소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모 프로그램 예술 총감독이 신청인 방송사 소속 직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KBS 예술 총감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4일자 2면)

2016서울조정 769	(손배청구) 오○○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카드뉴스] 혹시 이 뉴스, 불편하신가요?』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불편하다는 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트위터 화면을 삽입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774	(손배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12 프로그램 『“지점장 시켜줄게”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적발』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다단계 사기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77·778	(정정·손배청구) (사) ○○○○교회 ○○○○연합회 외 2인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1) 『[단독] ○○○○교회·○○○○연합회 정관 취소』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교계선교면) (2) 『[단독] “최순영 장로가 ○○○의 실제적 주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9일자 교계선교면) (3) 『[단독] “○○○ 재정권 사실상 최○○ 손 안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교계선교면) (4) 『“○○○ 법인허가 취소사유 …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교계선교면) (5) 『“○○○ 유령 분사무소”… 최○○ 측 재산 은닉?』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교계선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를 특정인이 사유화 하고 있고, 재정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정관, 2003년부터 ‘소급무효’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3일자 교계선교면)

2016서울조정 779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여성장애인 동침 사회복지사 학대 판결 환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0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장난으로 치부해 가볍게 여겼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80, 781	(각 정정청구) 박○○ 對 e머니투데이 ⁽⁷⁸⁰⁾ , 전자신문 인터넷 ⁽⁷⁸¹⁾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 : 『양키캔들 취급점 캔들나무 “대세는 천연캔들”』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중기면) • 전자신문 인터넷 : 『‘프리미엄+멀티’ 양키캔들 취급점 ‘캔들나무’... 높은 성장세 ‘눈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12일자 라이프면)
신청인 주장	매장에서 근무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6서울조정 782·783	(반론·손배청구) ○○○교회 對 뉴스미션
조 정 대 상	『“가족들, ○○○교회에 수억 바치고 피지로 떠났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종말론을 펼치며 신도들의 재산을 편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786	(손배청구) 손○○ 對 인터넷 주간한국증권신문
조 정 대 상	(1) 『○○○○○○ 20억 주식판매, 다단계·유사 수신 ‘투자 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6일자 국내증시면) (2) 『몽골 금광 사장 K씨 “납치 살해될 뻔”』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국내증시면) (3) 『납치 사건 배후 의혹 ‘○○○○○○○○○○’ 어떤 회사』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국내증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금광 투자사가 광업권도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787·788	(정정·손배청구) (주) ○○○○○○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남남북녀 결혼? 사기 주의보』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탈북여성 전문 결혼 중매업체인 신청인이 아르바이트 여성을 고용해 만남을 주선하는 등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789·790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조 정 대 상	『서울교육청 직무연수서 강사들 일부 발언 내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사직무 연수 중 교사는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존재로 인권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서울교육청 직무연수서 강사들 일부 발언 내용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6월 10일자 현장면)

2016서울조정 791·792	(정정·반론청구) 어○○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강남구 ‘현안 산적’ 세곡동 주민과 대화 … 효과는 미지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세곡지역 주민연합이라는 유명단체의 의견을 보도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793~796	(각 추후·손배청구) 정○○ 對 연합뉴스TV ^(793·794) , 연합뉴스TV 인터넷 ^(795·796)
조 정 대 상	뉴스Y 프로그램 『잠실 아파트 입찰 비리 “의혹”… 구청 수사 의뢰』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6년 11월 12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1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공사 입찰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797	(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
조 정 대 상	『‘2016 ○○ 스파르탄 레이스’ 오늘날만큼 ‘생얼’도 괜찮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9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모 스포츠 브랜드의 장애물 레이스에 참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798·799, 944·945	(각 정정·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798·799) , 노컷뉴스 ^(944·945)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민일보 : (1) 『○○○○교회, 미국서도 시한부 종말론 주장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0일자 시사면) (2) 『기독자유당 “국회 입성 땀 사이비 종교 금지법 제정”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시사면) • 노컷뉴스 : 『한국교회와 이단, 사이비 그리고 ○○○』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이 있고,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하는 반사회적 교리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국민일보/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취하 (노컷뉴스/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한국교회와 이단, 사이비 그리고 ○○○』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노컷뉴스 2016년 5월 2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800·801, 804·805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800·801) , 미디어오늘 ^(804·805)
조 정 대 상	『KBS 신입사원 연수 중 사망, 그때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6년 6월 1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5월 27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연수 중 사고로 사망한 신입사원의 유족과 보상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KBS 신입사원 연수 중 사망” 관련』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6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6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02	(정정청구) ○○○○○○마을 (주)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무등록·거짓 광고’ ○○○○○○마을 운영자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업명, 신청인의 성(姓), 나이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03	(반론청구) 권○○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알바 시위·공금 유용 의혹 ‘사시존치모임’ 내홍 앞과 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한변협으로부터 부적절한 금전 지원을 받아 사시 존치 집회 참가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806~815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JTBC ^(806·807) , 인터넷 JTBC ^(808·809) , MBN ^(810·811) , 인터넷 MBN ^(812·813) , 노컷뉴스 ^(814·815)
조 정 대 상	• JTBC : 8시뉴스 프로그램 『13km를 따라가며 ... 이번엔 버스가 버스에게 보복 운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8일자, 인터넷 JTBC 3월 18일자 사회면) • MBN : 8시종합뉴스 프로그램 『출근길 만원 상대로 보복 운전』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8일자, 인터넷 MBN 3월 18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1) 『‘칼치기’ 관광 버스의 아찔한 보복 운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8일자 사건사고면) (2) 『고속도로 위 ‘칼치기’ 관광버스의 아찔한 보복운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8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출근길 만원버스를 상대로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16~819, 822~825	(각 정정·손배청구) 임○○ ^(816~819) , 구○○ ^(822~825) 對 서울경제 ^(816·817,822·823) , 인터넷 서울경제 ^(818·819,824·825)
조 정 대 상	『○○대 병원, 중소기업 도용 사적 이익 ... 부끄러운 지성의 요람』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6년 5월 27일자 28면, 인터넷 서울경제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학병원 연구교수인 신청인들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병원 중소기업 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6년 6월 21일자 29면, 인터넷 서울경제 6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20·821	(정정·손배청구) 윤○○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 불법 다단계로 회원 모집』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다단계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826	(반론청구) (주) ○○○ 對 중기이코노미
조 정 대 상	『‘○○○’과 사업자 대립 첨예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찾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스크린골프 업주들에게 과도한 기기 업그레이드 비용과 코스사용 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현장이슈면)

2016서울조정 827	(정정청구) 대한체육회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취재파일]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에 분쟁해결 조항을 신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스포츠면)
2016서울조정 828·829, 850·851, 1095~1098	(각 정정·손배청구) 임○○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828·829) , 미디어스 ^(850·851) , 미디어오늘 ^(1095·1096) , 미오켓 ^(1097·1098)
조 정 대 상	• 미디어오늘 : 『MBN 기자가 소개비 받아 “전달만 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일자 종합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미오켓 5월 30일자 미디어면) • 미디어스 : 『거액 받고 다시 돌려주는 기자의 “선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미디어오늘, 미오켓/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초기화면) • 미디어오늘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종합면) • 미디어스 : 『[정정 및 반론보도] MBN기자, 소개비 받은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미디어뉴스면)
2016서울조정 830·831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동·식물로 만든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기 왜 안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2일자 중소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완제 의약품의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3일자 중소기업면)

2016서울조정 832·833	(정정·손배청구) 송○○ 對 뮤지컬
조 정 대 상	『오롯이 본질에 가까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일자 35면~38면)
신청인 주장	특정 뮤지컬 배우를 과장되게 부각하는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834, 835	(각 정정청구) 김○○ 對 채널A ⁽⁸³⁴⁾ , 인터넷 채널A ⁽⁸³⁵⁾
조 정 대 상	7시 종합뉴스 프로그램 『유명 건설사 사장 사기꾼 전락』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6월 2일자, 인터넷 채널A 6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형 건설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속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미이행)
2016서울조정 836	(정정청구) (주) ○○○ 對 뉴스핌
조 정 대 상	(1) 『[단독] 3D프린터 ○○○, 국책 과제 무더기 수주 … 특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산업면) (2) 『‘국책과제 무더기 수주 ○○○, 기술력 놓고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산업면) (3) 『○○○ 수주 독식 논란의 중심, 주○○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 국책 과제를 독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국책과제 수주 특허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837, 838	(각 손해청구) 김○○ 對 TV조선 ⁽⁸³⁷⁾ , 인터넷 TV조선 ⁽⁸³⁸⁾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너는 종놈이다”...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자의 갑질』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5월 27일자, 인터넷 TV조선 5월 27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고급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갑질을 보도하면서, 파트타임 노무자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너는 종놈이다”...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자의 갑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삭제 (TV조선 2016년 월 일자, 인터넷 TV조선 6월 13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839·840	(정정·손배청구) (주) ○○ 외 1인 對 인터넷 한국마케팅신문
조 정 대 상	『윤○○의 세 번째 도전 성공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과거 문제를 일으킨 다단계 판매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윤○○의 세 번째 도전 성공할까?』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삭제 (2016년 7월 6일자 메인면)
2016서울조정 841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뉴스플러스
조 정 대 상	『○○ ○○대병원 경영 악화, 존폐 기로에 위기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경영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대병원 경영 악화, 존폐 기로에 ‘위기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42·843	(정정·손배청구) 송○○ 외 1인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적당한 합의금 받고 나가라』 건물주 ‘횡포’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물주인 신청인들이 세입자인 카페 주인을 내쫓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주 애월 더 ○○”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44·845	(반론·손배청구) 정성호 對 수도권의원신문
조 정 대 상	(1) 『더민주 정성호 국회의원 사법기관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정치의회면) (2) 『정성호 의원 국감장 증인 업체 아파트로 이사』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1일자 정치의회면) (3) 『양주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성호 의원 재산이 어떻게 늘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6일자 정치의회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846, 847	(각 정정청구) 대통령경호실 對 세계일보 ⁽⁸⁴⁶⁾ , 세계닷컴 ⁽⁸⁴⁷⁾
조 정 대 상	『일 못하는 경호실·혁신처 ... 부처 성과 평가서 ‘꼴찌’』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6월 6일자 1면, 세계닷컴 6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2015년 재정 투자 성과 평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통령경호실 성과평가’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6년 7월 4일자 6면, 세계닷컴 7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48, 849	(각 정정청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對 온라인 중앙일보 ⁽⁸⁴⁸⁾ , 중앙일보 ⁽⁸⁴⁹⁾
조 정 대 상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6월 3일자 종합1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와의 합의 때문에 서울지하철공사가 안전업무 외주사와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6월 3일자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7월 5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5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852-853	(정정·손배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덴탈포커스
조 정 대 상	『‘우리동네 좋은치과’의 굴욕』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9일자 치과계는지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추진한 상표 등록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

2016서울조정 854·855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1) 『○○○○대 “센” 총장이 온다 … 설립자·부인, 이사장-총장 “대물림”』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홈면) (2) 『4년제 보다 등록금 비싼 ○○○○대, 성적 장학금 일방 폐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 소유 빌딩이 경매처분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856	(정정청구) (재) ○○병원 ○○○○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1) 『1.총회 산하기관 재산들 안녕하신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6일자 뉴스와보도면) (2) 『2.전주 ○○병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뉴스와보도면) (3) 『3. 총회 회의록을 통해 본 산하기관의 사유화 과정』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뉴스와보도면) (4) 『4. ○○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6일자 뉴스와보도면) (5) 『5. 절차법 위반하면 그 법은 무효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뉴스와보도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관개정을 하면서 총회가 아닌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신청인 병원이 총회 재산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57·858	(정정·손배청구) 노○○ 외 17인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이○○ 목사 설교 및 저서 … 보이스 표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교계선교면)
신청인 주장	교회 장로인 신청인들이 교회 담임 목사의 해임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이○○ 목사 설교 및 저서 … 보이스 표절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교계선교면)

2016서울조정 859·860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 정 대 상	『○○○ 저가 휴대폰 판매 A/S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급하는 해외 저가 휴대폰에 대해 A/S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861	(반론청구) (주) ○○○ 對 프레스맨
조 정 대 상	『[○○○의 실체와 허상 ③] “누구를 위한 프랜차이즈 전환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엔터프라이즈리포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프랜차이즈 전환과 관련해 반대측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의 실체와 허상 ③] “누구를 위한 프랜차이즈 전환인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부분 반론 삽입 (2016년 6월 20일자 엔터프라이즈리포트면)
2016서울조정 862	(정정청구) ○○○○○○ (주)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1)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조선 출혈 경쟁불러 조선업계 독 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종합3면) (2) 『血稅 땀질처방으로 한계 ... ‘과감한 수술’』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종합3면) (3) 『건조 진행률 조작 의혹 ... ○○조선 ‘깜깜이 회계’가 화 키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경제4면) (4) 『○○조선 - 산은 ‘비리 은폐’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종합1면) (5) 『부실에 눈감은 ‘낙하산 감사위원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종합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저가수주 경쟁을 주도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63	(반론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제2 실손 보험 될라 ... 한방보험 인기에 보험사 울상』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방보험 관련 진료비 체계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제2 실손 보험 될라 ... 한방보험 인기에 보험사 울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6년 6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64, 865	(각 정정청구) (재) ○○○○재단 對 한국일보 ⁽⁸⁶⁴⁾ , 인터넷 한국일보 ⁽⁸⁶⁵⁾
조 정 대 상	『청년희망 펀드 9개월 ... 희망이 시들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6월 8일자 1면, 3면, 인터넷 한국일보 6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보도의 진실성 인정)

2016서울조정 866, 867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문화일보 ⁽⁸⁶⁶⁾ , 인터넷 문화일보 ⁽⁸⁶⁷⁾
조 정 대 상	(1) 『조선업 防産인력 구조조정 신중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6년 5월 19일자 종합1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19일자 경제면) (2) 『‘防産’ 변수 ... 인력 감축 반대 구실될 수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경제7면, 인터넷 문화일보 5월 1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사의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868	(정정청구) 허○○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보험금을 노린 ‘검은 공생’ ... “진료도 없이 가짜 환자 유치”』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실손보험을 노린 가짜 환자를 유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서울조정 869·870	(정정·손배청구) 황○○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나경원 딸 대입특혜 기자, “일부 잘못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이라며 무죄주장』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법정에서 나경원 의원 딸의 대입 특혜 의혹 보도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나경원 딸 대입특혜 보도 기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71~876	(각 정정·손배청구) 황○○ 對 경향신문 ^(871·872) , 인터넷 경향신문 ^(873·874) , 민중의소리 ^(875·876)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도둑 출근 황○○ 특조위원, 세월호 유가족들에 쫓겨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6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도둑 출근 황○○ 특조위 ○○○장, 사무실서 쫓겨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인 신청인이 도둑 출근 후 세월호 유족의 항의로 쫓겨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중의소리/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황○○ 특조위원, 세월호 유가족들에 쫓겨나』 제하의 기사 중 기사 제목 ‘도둑 출근’ 을 삭제 (2016년 6월 29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황○○ 특조위 부위원장, 사무실서 쫓겨나』 제하의 기사 중 기사 제목 ‘도둑 출근’ 을 삭제 (2016년 7월 1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77	(정정청구) (재) 국제방송교류재단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정리뉴스] ‘민폐 사장’ 방석호·아리랑TV 사건 총정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4일자 향이네면)
신청인 주장	아리랑TV가 외주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중의소리/내용 : 정정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리뉴스] ‘민폐 사장’ 방석호·아리랑TV 사건 총정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향이네면)

2016서울조정 878·879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당신의 반려견, 어떻게 분양받으셨습니까?』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애견샵 주인인 신청인이 농장견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880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 ○○구 장애인협회 부당이득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모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신청인에게 불법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는 협회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구 장애인협회 부당이득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881·882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2년이나 수장된 세월호 진실 ... 아직도 찻값은 치러지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7일자 사회면) (2) 『책임지지 않은 ‘책임자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사회면) (3) 『참사는 오래 지속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4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실 소유주로 증축을 지시하고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83	(정정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배○○ 신부” 세월호, 천민 자본주의에 찔린 물고기』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를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배○○ 신부” 세월호, 천민 자본주의에 찔린 물고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6년 6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84~887	(각 정정·손배청구) 서울지하철노동조합 對 한경닷컴 ^(884·885) , 아시아경제닷컴 ^(886·887)
조 정 대 상	• 한경닷컴 :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4일자 사설면) • 아시아경제닷컴 : (1) 『서울 지하철 ‘메피아’ 탄생의 기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사회면) (2) 『서울메트로 ‘메피아’ 관련 노사 합의 ‘증거’ 나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사회면) (3) 『[실감현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지하철노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사측과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 알선 및 처우 보장에 대해 합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한경닷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아시아경제닷컴)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6월 3일자 ‘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노조의 재취업 특권이라니!’』 제하의 기사 (한경닷컴 2016년 7월 7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888~891	(각 정정·손배청구) 국기원 對 인터넷 태권도신문 ^(888·889) , 무카스뉴스 ^(890·891)
조 정 대 상	• 인터넷 태권도신문 : (1) 『○○○ 이사장, 임기 만료 하루 앞두고 토사구팽?』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이슈면) (2) 『악취 찌는 저질 코미디에 점령된 국기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기자수첩면) • 무카스뉴스 : 『“똥물”로 얼룩진 국기원 ... 임시 이사장 아수라장 ‘파행’』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태권도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의 임시 이사회 개최가 파행으로 끝난 것이 신임 원장 측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892	(손배청구) 임○○ 외 5인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퀴어문화축제 속 기독교인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퀴어문화 축제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퀴어문화축제 속 기독교인들’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893~896	(각 정정·손배청구) (주) ○○○ 외 1인 對 중앙일보 ^(893·894) , 온라인 중앙일보 ^(895·896)
조 정 대 상	『경남교육감 측근, 교육청과 17건 무더기 계약 논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5월 27일자 21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2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경남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 동의 후 이행)
2016서울조정 897·898	(정정·손배청구) 오○○ 對 무카스뉴스
조 정 대 상	『태권도 성지 국기원에서 펼쳐진 ‘동물 이사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긴급호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임시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899·900, 930·931	(각 정정·손배청구) ○○○교회 對 노컷뉴스 ^(899·900) , 현대종교 ^(930·931)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교회”는 ○○○와 같은 이단』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문화면) • 현대종교 : 『○○○교회 피해자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호 39면~4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이단이고, 가정 파괴를 조장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노컷뉴스/사유 : 기사수정) • 조정불성립결정 (현대종교)
이 행 결 과	『“○○○교회”는 ○○○와 같은 이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반론보도 삽입 (노컷뉴스 2016년 7월 19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901, 1043	(손배, 정정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풍문으로들었소 프로그램 『오○○님의 사회활동』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머니의 결혼 생활에 대한 방송으로 가족사가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50만원 - 동의 후 금액지급)

2016서울조정 902	(정정청구) ○○○○ ○○○○○○○○연대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퀴어축제에서 성찬 집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퀴어문화 축제에서 성찬 집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퀴어축제에서 성찬 집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03·904, 905	(정정·손배청구) 최○○ ^(903·904) 對 KBS-1TV (손배청구) 최○○ ⁽⁹⁰⁵⁾
조 정 대 상	KBS스페셜 프로그램 『저성장의 뒷』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손해배상 75만원 지급)
2016서울조정 906	(정정청구) ○○○○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현관 담벼락 ... ‘감옥’ 만든 건설사』 제하의 보도 (2016년 월 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토지분쟁 관련 사건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907·908	(정정·손배청구) 이○○ 對 현대종교
조 정 대 상	『○○○교회 피해자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호 39면~44면)
신청인 주장	기독교 신자인 신청인의 이혼 소송 등 가정사와 관련해 남편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09~916	(각 정정청구) 이○○ ⁽⁹⁰⁹⁾ , 오○○ ⁽⁹¹⁰⁾ , 김○○ ^(911~913) , 정○○ ⁽⁹¹⁴⁾ , 박○○ ^(915,916) 對 연합뉴스 ^(909~911,914,916) , 조선닷컴 ⁽⁹¹²⁾ , SBS 콘텐츠허브 ^(913,915)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스타벅스 ‘군인 무료 커피’ 뒤늦게 성차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군인에 공짜로 줬더니 ... 너무 뜨거운 커피 한 잔』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스타벅스 ‘군인 무료 커피’, 뒤늦게 성차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스타벅스가 진행중인 군인무료커피 증정행사를 두고 여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기각 (연합뉴스, 조선닷컴/사유 : 당사자 부적격) • 취하 (SBS 콘텐츠허브/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917~92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TV ^(917·918) , iMBC ^(919·920)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제철 고사리 도둑들 고사리밭에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5월 19일자, iMBC 5월 1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귀농한 신청인이 고소 남발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23	(정정청구) 이태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리베이트 계약’ 당시 회계 책임자는 박선숙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국민의당 광고계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삽입 및 원 기사 제목 및 부제목 수정 (2016년 7월 4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924, 925	(각 정정청구) 임○○ 외 2인 對 인터넷 MBN ⁽⁹²⁴⁾ , MBN ⁽⁹²⁵⁾
조 정 대 상	• MBN : 8시뉴스 프로그램 『빚나간 의리 동료 식당에서만 회식』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의장님의 빚나간 의리”... 의정운영비 ‘쌈짓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및 6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관악구 의회가 전체회식을 할 때마다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빚나간 의리, 동료 식당에서만 회식’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7월 2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26, 927	(각 정정청구) 이○○ 對 아시아경제 ⁽⁹²⁶⁾ , 아시아경제닷컴 ⁽⁹²⁷⁾
조 정 대 상	(1) 『정부 연구센터장이 “천황폐하 만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6년 6월 23일자 1면, 아시아경제닷컴 6월 23일자 정치면) (2) 『이○○ 센터장 “천황폐하 만세” 삼창에 순간 얼어붙은 워크숍』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6년 6월 24일자 1면, 아시아경제닷컴 6월 24일자 정치면) (3) 『은폐·내부입단속 … ○○의 황당 “오리발”』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6년 6월 24일자 2면, 아시아경제닷컴 6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서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수정, 후속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 이외에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928, 969	(각 반론청구) (의) ○○병원 유지재단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⁹²⁸⁾ , 민중의소리 ⁽⁹⁶⁹⁾
조 정 대 상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돈 안 되는 환자 내쫓고 항의하는 간호사는 해고 - ○○정신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5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환자복부터 반찬·온수까지 … 돈 안되는 환자 차별하는 ○○정신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병동에서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929	(정정청구) 백○○ 對 LPG로컬파워뉴스
조 정 대 상	『경찰이 고소 취하 증용 … 사법 독립 걸림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지인의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게 취하를 증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경찰이 고소 취하 증용 … 사법독립 걸림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46	(정정청구) (사) ○○○○○○○○○○ 對 MBC-TV
조 정 대 상	무한도전 프로그램 『여름 휴가 무계획』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수돗물을 음용할 수 없는 것처럼 방송해 수돗물에 관한 불신을 조장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947	(정정청구) ○○○○○○○○○○○○○○○교회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세습 반대하자 출교로 응답한 교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8일자 교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을 아무런 절차 없이 출교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2016서울조정 948~951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경향신문 ^(948·949) , 일요시사 ^(950·951)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MB 동서’ 신○○ ○○산업 회장 검찰 ‘300억원 횡령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8일자 8면) - 일요시사 : 『잘도 피했던 대어 드디어 낚였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지위를 이용해 3백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신○○ ○○산업 회장,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사회면) - 일요시사 : 『신○○ ○○산업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1일자 종합면)

2016서울조정 952·953	(정정·손배청구) ○○○○식품 (주)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1) 『○○○○ 상장에 전국이 들썩 “뭔 일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경제/IT면) (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 상장』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5일자 경제/IT면) (3) 『영업권만 가진 회사(?)의 단독상장은 안 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경제/IT면) (4) 『“○○○○ 식품(주)은 ○○○○(주) 자체이자 본질”』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경제/IT면) (5) 『“○○○○ 식품이 ○○○○냐? 아니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5일자 경제/IT면) 외 2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업체 상호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 추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천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법적 분쟁중이어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954·955, 995	(정정·손배청구 ^(954·955) , 정정청구 ⁽⁹⁹⁵⁾ (주) ○○○○○○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中“○○버터칩” 인기에 짝퉁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8일자 월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에서 제조판매하는 과자가 짝퉁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⁹⁹⁵⁾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취하^(954·955) (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中 판매 짝퉁 “○○버터칩”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월드면)
2016서울조정 956~959	(각 정정·손배청구) 고○○ 對 주간침례신문 ^(956·957) ,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958·959)
조 정 대 상	(1) 『총회 규약대로 집행하며』 제하의 기사 (주간침례신문 2016년 6월 4일자 1면,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6월 2일자 총회면) (2) 『각 기관 이사회도 총회 규약을 지켜야 된다』 제하의 기사 (주간침례신문 2016년 6월 18일자 1면,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6월 15일자 총회면)
신청인 주장	신학대학 교수인 신청인의 비위 및 전횡으로 인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60, 961	(정정, 손해청구) 평택경찰서 ⁽⁹⁶⁰⁾ , 박○○ 외 6인 ⁽⁹⁶¹⁾ 對 인터넷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평택경찰서, 수사관 교체 의혹에 이어 ‘불공정한 수사 논란’ 불거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9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평택에서 발생한 납치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경찰서가 수사관을 교체 하고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962~964	(정정·반론·손배청구) (학) ○○학원 對 인터넷 시사타임즈
조 정 대 상	『시민단체 사청련, “○○여대 김모 이사장, 교육부 감사” 강력 촉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의 이사장이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965~968	(각 정정·손배청구) 팽○○ 對 MBC-TV ^(965·966) , iMBC ^(967·968)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조강지처의 반격 내연녀 위자료 소송』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5월 29일자, iMBC 5월 2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보도와 관련 없는 신청인의 미용실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970·971, 975·976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국민일보 ^(970·971) , 국민일보 ^(975·976)
조 정 대 상	『軍 형법이 동성애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 신분 노출하며 동성 파트너 찾는 군인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6년 7월 1일자 29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3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현역 군인들이 이용하는 게이 전용 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미 전역한 신청인을 사례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972·973	(정정·손배청구) 송○○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5일자 사회면) (2)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사회면) (3) 『학교 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사회면) (4) 『학부모에게 동의서 ‘종용’... 학교 규정도 ‘손 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학생회장인 신청인이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사과,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974	(정정청구) (주) ○○○○○○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대형 외식업체서 일하던 청년 “자살” ...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장시간 근로 및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형 외식업체 청년직원 자살 관련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3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977·978, 1021·1022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라포리시안
조 정 대 상	(1) 『[기고] 지난주 약제급여 평가위 회의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오피니언면) (2) 『[기고] 심평원, 문제를 방치하다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오피니언면) (3) 『[기고]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심평원은 모든 위원회를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오피니언면) (4) 『[기고] 심평원과 식약처는 ‘갑질’하는 위원회 모두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7일자 오피니언면) (5) 『[기고] 정말 이게 전문가들의 수준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약가산정 및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박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979, 980	(각 반론청구) ○○○○○○고등학교 對 KBS-1TV ⁽⁹⁷⁹⁾ , KBS미디어 ⁽⁹⁸⁰⁾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비리고발교사” 파면 ... “이사진 자격박탈”』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6월 28일자, KBS미디어 6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내부비리 고발 교사를 파면하고, 교육청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진 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뉴스7 프로그램 『교육청 고강도 제재에 학교법인 “법적 대응”』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7월 21일자)

2016서울조정 981, 982	(각 정정청구) (사) ○○ 對 동아일보 ⁽⁹⁸¹⁾ , 동아닷컴 ⁽⁹⁸²⁾
조 정 대 상	『청년수당 위탁 기관에 박원순 측근 업체 선정』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7월 5일자 A14면, 동아닷컴 7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7월 21일자 A32면, 동아닷컴 7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83~986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시사IN ^(983·984) , 시사IN Live ^(985·986)
조 정 대 상	『‘유혹할까요 고백할까요’』 제하의 기사 (시사IN 2016년 6월 13일자 문화면, 시사IN Live 6월 24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결혼생활이나 자녀 양육기간에 자신이 무기력했다고 고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시사IN 2016년 7월 23일자 9면)
2016서울조정 987·988	(정정·손배청구) 배○○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이런 몸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대중음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발표한 곡이 질 낮고 성의 없는 음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런 몸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8일자 대중음악면)

2016서울조정 989	(손배청구) 오○○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원격 진료하는 오○○ 공중보건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9일자 포토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 및 성명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990, 998	(각 반론청구) 교육부 對 매일경제 ⁽⁹⁹⁰⁾ , 매경닷컴 ⁽⁹⁹⁸⁾
조 정 대 상	『진로체험 선택을 가위바위보로? ... 이런 황당한 자유학기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6년 7월 2일자 A2면, 매경닷컴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자유학기제가 일선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행복한 수업 ... 교실에 활력』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6년 8월 10일자 A25면, 매경닷컴 8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991, 992	(각 정정청구) ○○○○○○ ○○○○○회 對 MBC-TV ⁽⁹⁹¹⁾ , iMBC ⁽⁹⁹²⁾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천주교 재단 운영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6월 10일자, iMBC 6월 10일자 사회면) (2) 뉴스24,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천주교 재단 운영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6월 11일자, iMBC 6월 11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종종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993·994	(추후·손배청구) 정○○ 對 MBN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전국 최대 규모 아파트 입찰 비리』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공사 입찰과 관련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고, 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국 최대」아파트 입찰 비리 잡음』 관련 반론 및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8월 24일자)

2016서울조정 996	(반론청구) 박○○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조교 선생님들이 아프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4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보도만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2면)

2016서울조정 997	(정정청구) (사) ○○○○○협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프로그램 『속 모르는 한약 속타는 소비자』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일자)
신청인 주장	급성 독성간염 원인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한약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999	(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조 정 대 상	『알리시아 비칸데르, 팬들과 첫 인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해외 유명 연예인의 내한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000	(정정청구) ○○○○식품 (주)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제과 신○○ 대표 vs ○○○호텔 김○○, ‘○○버터칩’ 이름 누가 지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대표 제품이 제품명 선정 시 후보작에 없던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002·1003	(정정·손배청구) ○○산업 (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중앙분리대 단부시설 사고나면 흥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4일자)
신청인 주장	국도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단부시설이 오히려 사고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5시뉴스 프로그램 『‘단부시설’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5일자)

2016서울조정 1004·1005	(정정·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1) 『‘한방 음악치료’ 정부 지원 논란 ... 복지부는 “홍보비 지원일 뿐”』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의료면) (2) 『정부가 권장한 한방 음악치료, 알고 보니 신 의료기술로 불인정』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정책면) (3) 『근거 없는 한방 음악치료에 정부 지원 왜 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일자 오피니언면) (4) 『외국인 대상 ‘한방 음악치료’ 지원 사업 결국 철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7일자 정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발한 한방 음악치료를 다른 사람이 개발했으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의료면)
2016서울조정 1006	(정정청구) ○○○○아파트대표회의 對 KBS-2TV
조 정 대 상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아파트, 갑질의 횡포』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경비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아파트, 갑질의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6년 8월 10일자 아침이좋다 홈페이지 게시판)
2016서울조정 1007·1008	(정정·손배청구) 신○○ 對 뉴스21
조 정 대 상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화물운수법 67조1호)에 관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지역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 불법 증차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불법화물 증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8일자 지역뉴스면)

2016서울조정 1009, 1010	(각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전국아파트신문 ⁽¹⁰⁰⁹⁾ , 인터넷 전국아파트신문 ⁽¹⁰¹⁰⁾
조 정 대 상	『사라진 변전소 보상금, 동네 발각』 제하의 기사 (전국아파트신문 2016년 6월 1일자 1면, 인터넷 전국아파트신문 5월 3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변전소 설치에 대한 보상금 확인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11~101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현대원 對 경향신문 ^(1011~1013) , 인터넷 경향신문 ^(1014~1016)
조 정 대 상	(1) 『현대원 박근혜 후보 홍보영상 지시 ... 학부생 동원, 제작비로 5만원 지급』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13일자 사회면) (2) 『현대원 수석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방창수업 불참 사유 써내라고 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15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15일자 사회면) (3) 『현대원의 학교기업, 아내 제자들 채용』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20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수 재직 시절 박근혜 대선후보 동영상 제작을 학생들에게 지시하거나 동원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자 6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1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17·1018	(정정·손배청구) 나○○ 對 인터넷 종교와진리
조 정 대 상	『전주 ○○○○○○○교회 나○○, 영매(靈媒) 주장! - 천국 지옥 간증 문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5일자 이단사건실화면)
신청인 주장	담임 목사인 신청인이 영매, 강신술 등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장하였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전주 ○○○○○○○교회 나○○, 영매(靈媒) 주장! - 천국 지옥 간증 문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2일자 이단사건실화면)

2016서울조정 1019	(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병원 청소 노동자 휴게실 보안 요원이 막아선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병원에서 보안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6서울조정 1020	(손배청구) 오○○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물총 축제에 참가한 사진 (2016년 7월 1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물총 축제에 참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23	(정정청구) 외교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외교장관 반대에도 사드 결정 강행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조기 결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외교부 사드반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024, 1025	(각 정정청구) ○○○○가스 (주) 對 가스신문 ⁽¹⁰²⁴⁾ , 인터넷 가스신문 ⁽¹⁰²⁵⁾
조 정 대 상	『대학 실험실 무허가 독성가스 판매 ‘물의를’』 제하의 기사 (가스신문 2016년 6월 22일자 9면, 인터넷 가스신문 6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 실험실 등에 무허가 독성가스를 납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026·1027	(정정·손배청구) (재) 자유경제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개 돼지”... 자유경제원 “귀족 엘리트주의”와 상통』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최한 토론회의 내용을 귀족 엘리트주의와 상통한다고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자유경제원 귀족 엘리트주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1028, 1029	(각 정정청구) (주) ○○○○○○ 對 한겨레 ⁽¹⁰²⁸⁾ , 인터넷 한겨레 ⁽¹⁰²⁹⁾
조 정 대 상	(1) 『하루 11시간 이상 ‘실습’ ... 또 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6월 16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5일자 사회면) (2) 『또 다른 19살 김군의 죽음』 제하의 사설 (한겨레 2016년 6월 16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5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장시간 근로 및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및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2면) - 인터넷 한겨레 : 『또 다른 19살 김군의 죽음』 제하의 사설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2일자 사설면)
2016서울조정 1030	(정정청구) 기상청 對 레드카펫코리아
조 정 대 상	(1) 『기상청, 550억원짜리 슈퍼컴 4호기, 스위스는 20억원에 구입, 혈세 낭비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홈페이지) (2) 『기상청, “스위스가 20억에 구입한 슈퍼컴 550억원 구매 사실 철저히 은폐하라” 거짓 자료 배포,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기상청이 기상 관측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비슷한 성능의 다른 기종보다 수십배 비싸게 구입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상청 슈퍼컴 도입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1031	(정정청구) ○○○○○○○○○ ○○○○협의회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1) 『‘성폭력’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2)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들, 보호시설 기피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성폭력’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시설 관련 내용 수정 (2016년 8월 1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32	(손배청구) 최○○ 對 티브이데일리
조 정 대 상	(1) 『도 넘은 엑소 팬들, ‘차도 위에서 광란의 질주’』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5일자 연예면) (2) 『‘최악의 팬심’ 엑소 팬들, 무질서로 공항 점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5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아이돌 그룹의 공항출국과 관련한 팬들의 무질서한 행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33·1034, 1039·1040	(각 정정·손배청구) 우병우 對 조선일보 ^(1033·1034) , 경향신문 ^(1039·1040)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1면) 외 2건 - 경향신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 ‘몰래 변론’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1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청인이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고, 현직 검사장의 거액 주식 보유를 눈감아줬으며, 변호사 시절 법조 브로커와 어울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035·1036	(정정·손배청구) 반○○ 對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조 정 대 상	『[단독] 백종원 식당 식사 후 배탈 미모의 여자 톱스타 6백만원 요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배우인 신청인이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백종원 식당 여배우 합의금 요구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37·1038	(정정·손배청구) 진○○ 對 KBS-2TV
조 정 대 상	여유만만 프로그램 『김밥 하나로 연매출 10억원?』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처음 개발한 달걀말이 김밥을 다른 사람이 원조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여유만만 프로그램 『옆집 부자들 비법의 모든 것! 4탄』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1일자)
2016서울조정 1041, 1042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서울신문 ⁽¹⁰⁴¹⁾ , 인터넷 서울신문 ⁽¹⁰⁴²⁾
조 정 대 상	『메피아 부추긴 매킨지 용역 보고서 서울시, 안전 눈 감고 비용절감 지시』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6년 6월 9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6월 8일자 정책행정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 보낸 외주 업무 효율화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안전강화보다는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6년 8월 10일자 8면, 인터넷 서울신문 8월 9일자 정책행정면)

2016서울조정 1044~1047	(각 조정·손배청구) 김한표 對 KBS-1TV ^(1044·1045) , KBS미디어 ^(1046·1047)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호통·막말·고압 질의 ... 20대 국회 ‘구태’ 여전』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7월 3일자, KBS미디어 7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호통·막말·고압 질의 ... 20대 국회 ‘구태’ 여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KBS-1TV 2016년 월 일자, KBS미디어 8월 24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048~1050	(각 정정청구) ○○○ (주) 對 SBS-TV ⁽¹⁰⁴⁸⁾ , SBS 콘텐츠허브 ⁽¹⁰⁴⁹⁾ , 다음 ⁽¹⁰⁵⁰⁾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왕자 출신 스님 등신불이라더니 ... 기막힌 사기극』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7월 9일자, SBS 콘텐츠허브, 다음 7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기획하여 전시한 모 스님의 등신불이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SBS-TV, SBS 콘텐츠허브) • 취하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051, 1052	(각 반론청구) 신○○ 對 중앙일보 ⁽¹⁰⁵¹⁾ , 온라인 중앙일보 ⁽¹⁰⁵²⁾
조 정 대 상	『산은, 대우조선에 낙하산 인사 감사원 지적 뭉개고 강행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6월 20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2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해임사유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8월 16일자 종합면, 온라인 중앙일보 8월 16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1053	(정정청구) 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정부보조금 부당 집행 경찰 부실 수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4일자 국제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학 교수의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 담당수사관인 신청인이 보조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정부보조금 부당집행 경찰 부실 수사 의혹 관련 후속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4일자 단독면)

2016서울조정 1054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유명 돌침대 상표 도용 업자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유명 돌침대 상표 도용 업자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수정 (2016년 7월 22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055·1056	(정정·손배청구) 권 ○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황제 노역’ 분노 확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황제 노역을 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057·1058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청담동 백만장자 둘러싼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사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059~1061	(정정청구) (학) ○○학원 對 인터넷 한겨레 ⁽¹⁰⁵⁹⁾ (정정·반론청구) 인터넷 일요서울 ^(1060·1061)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겨레 : 『법인지금 맘대로 쓴 ○○여대 상임이사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서울 : 『법원장 출신 ○○여대 이사장이 자꾸 구설에 오르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이 인사전횡과 재정적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인터넷 한겨레/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일요서울/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법인지금 맘대로 쓴 ○○여대 상임이사 수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인터넷 한겨레 2016년 8월 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62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모순에 빠진 방사청, 불평등하지만 변경 못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산 K2 전차의 변속기 내구도 검사 기준이 부품마다 제각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K2 전차 변속기 내구도 검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63	(정정청구) ○○○○○의사회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성형·미용 의약품 중국인들에 불법 유통한 성형외과 원장 등 검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형·미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으로 검거된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064~1073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조선닷컴 ^(1064·1065) , 동아닷컴 ^(1066·1067) , 인터넷 한국일보 ^(1068·1069) , 연합뉴스 ^(1070·1071) , KBS미디어 ^(1072·1073)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개그맨 유○○가 세운 빙수 브랜드 ‘○○○’, 매출액 부풀렸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뉴스면) - 동아닷컴 : 『개그맨 유○○가 설립한 빙수 회사 ‘○○’ 불공정 행위로 과태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경제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개그맨 유○○ 설립 빙수 프랜차이즈, 공정위 제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뉴스면) - 연합뉴스 : 『매출 뺑튀기 허위 광고 ‘○○○’에 과태료 500만원』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최신기사면) - KBS미디어 : 『매출 뺑튀기 허위 광고 ‘○○○’에 과태료 500만원』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사업자를 유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조선닷컴, 인터넷 한국일보, 연합뉴스, KBS미디어/사유 : 자진취하) - 취하 (동아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74, 1075	(각 손배청구) 김○○ 對 채널A ⁽¹⁰⁷⁴⁾ , 인터넷 채널A ⁽¹⁰⁷⁵⁾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 버거’ 發 ... 햄버거 전쟁 승자는?』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4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햄버거 가게에 있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버거’ 發, 햄버거 전쟁 승자는?』 제하의 기사 중 동영상 삭제 (2016년 7월 2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76, 1077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 정 대 상	『한빛자산관리대부 등 강제집행 남발로 궁핍한 채무자 피 빨아 먹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0일자 단독/탐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강제집행을 남발하고 횡포를 부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078, 1079	(각 정정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처 對 MBC-TV ⁽¹⁰⁷⁸⁾ , iMBC ⁽¹⁰⁷⁹⁾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식약처 국민 건강은 뒷전, ‘비리·부패’ 몸살』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5월 31일자, iMBC 5월 31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식약처가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고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식약처 국민 건강은 뒷전, ‘비리·부패’ 몸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iMBC 8월 26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080~1085	(각 정정·손배청구) 장○○ 외 1인 對 조세금융신문 ⁽¹⁰⁸⁰⁻¹⁰⁸¹⁾ , 인터넷 비즈한국 ⁽¹⁰⁸²⁻¹⁰⁸³⁾ , 인터넷 MBN ⁽¹⁰⁸⁴⁻¹⁰⁸⁵⁾
조 정 대 상	- 조세금융신문 : 『신○○ 딸들과 롯데 마트 갑질에 회사 부도나고 도망자 신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산업기업면) - 인터넷 비즈한국 : 『신○○ 딸들 횡포에 100억 원대 손실 도산』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7일자 기업면) - 인터넷 MBN : 『신○○ 자녀기업 ‘○○○’ 100억 떼먹고 외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횡포로 업체가 1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도산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86~1089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오마이뉴스 ^(1086·1087) , 한겨레 ^(1088·1089)
조 정 대 상	• 오마이뉴스 : 『‘성주 외부세력 부각’ KBS 보도지침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미디어면) • 한겨레 : 『“성주 외부세력 개입 키워라” 사드 ‘내부지침’에 들끓는 KBS』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시위 보도시 KBS내에 외부세력 개입을 부각시키라는 보도 지침과 부당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미디어면) • 한겨레 : 『“성주 외부세력 개입” 관련 KBS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090	(정정청구) 신○○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대학교 학생징계 해제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뉴스와보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는데도 무죄라고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신○○ 교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학원/신학대학면)
2016서울조정 1091	(반론청구) ○○축산업협동조합 외 1인 對 시사1
조 정 대 상	『○○ 축협 상무 전모씨 자살 사건의 의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장의 비리 묵인 스트레스로 직원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축협 상무 전모씨 자살 사건의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092·1093	(정정·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폭행 시비 어디까지 정당방위인가?』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폭행사건에서 신청인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양주 주차장 폭행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23일자)

2016서울조정 1094	(정정청구) (주) ○○○ 對 Kitimes.com
조 정 대 상	『○○○, 노골적 ‘찍어내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특정 부서장에게 강요와 협박으로 사직을 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099	(손배청구) 송○○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음란동영상 때문에 일가족 자살(?)”... 군산괴담(怪談), 실제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음란 동영상 유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음란동영상 때문에 일가족 자살(?)” ... 군산괴담(怪談), 실제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8월 4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100, 1101	(각 반론청구) (주) ○○○○○○ 對 중앙일보 ⁽¹¹⁰⁰⁾ , 온라인 중앙일보 ⁽¹¹⁰¹⁾
조 정 대 상	『보청기 10배 비싸도 성능은 비슷』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7월 25일자 B5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2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보청기가 가장 고가임에도 성능은 다른 제품과 차이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보청기 10배 비싸도 성능은 비슷』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6년 8월 16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102, 1155, 1156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전자신문 ⁽¹¹⁰²⁾ (각 반론청구) 전자신문 ⁽¹¹⁵⁵⁾ , 전자신문 인터넷 ⁽¹¹⁵⁶⁾
조 정 대 상	(1) 『監査 소나기만 피하려는 ‘不法 불감증’ 출연연』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6년 7월 19일자 6면) (2) 『노는 연구원, 시간 때우는 연구자』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6년 7월 18일자 종합면, 전자신문 인터넷 7월 1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정부출연 연구기관 징계 규정 통일이 신청인 조합의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기각 (반론청구/ 사유 : 당사자 부적격)
이 행 결 과	『“출연연 징계 규정 가이드라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자신문 2016년 8월 26일자 종합면)
2016서울조정 1103	(손배청구) 홍○○ 對 MBC-TV
조 정 대 상	(1)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창원 모텔서 태아 시신 발견, 유기 후 옆 방에 숨은 생모』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버려지는 갓난 아이들, 어디로 가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태아 유기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6서울조정 1104, 1105	(각 정정청구)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對 아시아타임즈 ⁽¹¹⁰⁴⁾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¹¹⁰⁵⁾
조 정 대 상	『광주시 남한산성 음식점소 ‘편파 단속’ 논란』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6년 7월 21일자 16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7월 2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역 유지가 운영하는 음식점소를 제외하는 등 편파 단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06	(정정청구) 원○○ 외 2인 對 메디컬투데이
조 정 대 상	『‘3년간 105억원 탈세’ ○○○ 성형외과 원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8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의사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병원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00억 대 탈세 J성형외과 원장 구속 ... 진료 차트 삭제에 이중 장부까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익명처리 (2016년 8월 8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1107	(정정청구) 정청래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의 낯뜨거운 ‘봉하마을 순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당대표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6일자 A2면)

2016서울조정 1108	(손배청구) 최○○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탈북 여성 중매업체' 남남북녀는 없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탈북여성 중매업체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해당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모습 및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다시보기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9월 9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109	(반론청구) ○○○○ 마을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는 프로그램 『가야산 까막눈 엄마집』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한 노인의 주택을 무단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유 : 보도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반론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110	(손배청구) 백○○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부당 이득 월 800만원 ... 주유소 '정량 미달' 사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9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주유소들의 정량 미달 주유 사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주유소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111~1114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JTBC ^(1111·1112) , 인터넷 JTBC ^(1113·1114)
조 정 대 상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하의 보도 (JTBC 2016년 7월 22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정치부회의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사드 보도와 관련하여 KBS 내에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6년 9월 27일자)

2016서울조정 1115	(정정청구) 박○○ 對 데일리메디
조 정 대 상	『얼굴 주름 개선용 허가된 필러가 생식기에』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얼굴 주름개선용 필러를 생식기 주사용으로 허가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16	(손배청구) 강○○ 對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梨大 게시판에 지방대·전문대 비하 일부 글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학교내 게시판 아이디가 보도의 캡처화면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17, 1118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아리랑TV, 허위 제안서 받고 외주제작사에 12억원 줬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사회일반면) (2) 『아리랑TV 12억 투입한 양방향 방송 실제 참여자 수십명』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3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방송사에 허위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19	(정정청구) 강남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강남구청 ‘닷컴부대’ 공무원, ‘징계 대신 승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가 서울시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20·1121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21 프로그램 『친환경 인증 속여 학교 등에 콩나물 공급』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입산 콩을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합의사항 미이행

2016서울조정 1122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세종시, 민간 전원주택 진입로에 혈세 40억원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최신기사면) (2) 『민간 전원주택 진입로에 세종시 혈세 40억원 ‘평평’』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추진중인 장군면 내 도로사업이 민간업체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1123	(정정청구) (사) ○○○○○○○협회 對 트래블데일리
조 정 대 상	『○○○협, 안 보여주나 못 보여주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출금 및 위탁금 사용 등 자금 흐름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 안 보여주나 못 보여주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124	(정정청구) (주) ○○○○○○○○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 ‘김영삼 전대통령 국가장 치렀다’고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을 치른 업체인 듯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25	(손배청구) (주) ○○○○○○○○○○ 對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돈벌이 전략한 자가혈 주사 ‘경고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자가혈 주사 시술 관련 기사에 신청인 회사가 만든 제품의 삽화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돈벌이 전략한 자가혈 주사 ‘경고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18일자 IT·과학면)

2016서울조정 1126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스페셜 프로그램 『헬조선과 게임의 법칙 - 개천에서 용이 날까용?』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의한 기획 의도와 다르게 방송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SBS스페셜 프로그램 『헬조선과 게임의 법칙 - 개천에서 용이 날까용?』 제하의 다시보기 영상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9월 8일자)

2016서울조정 1127·1128	(정정·손배청구) 서○○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는 프로그램 『엄마의 동거인 누가 장독대 밑에 묻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살해된 신청인의 부친이 생전에 농작물과 가축을 편취했다는 등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129	(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구 장애인 협회 내부 갈등 폭로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모 기관장에 임명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30, 1131	(각 정정청구) 최○○ 對 tvN ⁽¹¹³⁰⁾ , 인터넷 tvN ⁽¹¹³¹⁾
조 정 대 상	수요미식회 프로그램 『77회 아이스크림』 제하의 보도 (tvN 2016년 8월 3일자, 인터넷 tvN 8월 4일자 수요미식회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조하는 아이스크림의 주성분이 함량 미달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안녕하세요. 수요미식회 제작진입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N 8월 24일자 시청자 게시판) 및 해당 동영상 중 관련 멘트 및 자막 삭제

2016서울조정 1132~1147	(손배청구) 우○○ 외 1인 對 MBN ⁽¹¹³²⁾ , 인터넷 MBN ⁽¹¹³³⁾ , SBS-TV ⁽¹¹³⁴⁾ , SBS 콘텐츠허브 ⁽¹¹³⁵⁾ , TV조선 ⁽¹¹³⁶⁾ , 인터넷 TV조선 ⁽¹¹³⁷⁾ , YTN ⁽¹¹³⁸⁾ , 인터넷 YTN ⁽¹¹³⁹⁾ , 채널A ⁽¹¹⁴⁰⁾ , 인터넷 채널A ⁽¹¹⁴¹⁾ , 연합뉴스TV ⁽¹¹⁴²⁾ , 연합뉴스TV 인터넷 ⁽¹¹⁴³⁾ , 뉴스1 코리아 ⁽¹¹⁴⁴⁾ , 뉴시스 ⁽¹¹⁴⁵⁾ , e머니투데이 ⁽¹¹⁴⁶⁾ , 민중의소리 ⁽¹¹⁴⁷⁾
조 정 대 상	• MBN : 프로그램 『모텔 화장실서 신생아 시신 발견 ... 산모 긴급체포』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MBN 8월 8일자 사회면)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모텔서 출산 후 방치 ... 옆방서 식사하던 산모 체포』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8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7 프로그램 『호텔서 아기 사체 ... 30대 女 영장 검토』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8일자 사건사고면)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서울 모텔서 갓난아기 숨진 채 발견 ... 30대 산모 영장 검토』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YTN 8월 8일자 사회면) • 채널A : 굿모닝A 프로그램 『호텔에 영아 시신 버린 엄마 ... 긴급 체포』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뉴스14 프로그램 『호텔서 갓난아기 시신 발견 ... 경찰, 엄마 구속영장 방침』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8월 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도심 모텔서 아기 숨진채 발견 ... 산모 구속영장 검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7일자 사건사고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신청인의 호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N, 인터넷 MBN,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금액 지급) • 각 조정성립 (채널A, 인터넷 채널A,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인터넷/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SBS-TV, SBS 콘텐츠허브, YTN, 인터넷 YTN/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뉴시스, e머니투데이, 민중의소리/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도심 호텔에서 아기 숨진채 발견 ... 산모 구속영장 검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사건사고면) • 뉴시스 : 『서울 종로구 호텔에서 생후 4시간된 아이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사건사고면) • e머니투데이 : 『호텔서 숨진 갓난아이 ... 엄마, 출산 후 지인들과 식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호텔서 생후 4시간된 아이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48, 1149	(각 정정청구) 육군 제○○○○부대 對 일요신문 ⁽¹¹⁴⁸⁾ , 인터넷 일요신문 ⁽¹¹⁴⁹⁾
조 정 대 상	『육군 군수사령부 홍부 패드·지혈 거즈 군납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8월 7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신문 8월 1일자 특종/단독면)
신청인 주장	육군 군수사령부가 구입한 홍부 패드와 지혈 거즈의 성능과 조달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군수사령부 홍부 패드·지혈 거즈 도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10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일요신문 9월 26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150~1153	(각 정정·손배청구) 홍○○ 對 SBS-TV ^(1150·1151) , SBS 콘텐츠허브 ^(1152·1153)
조 정 대 상	TV동물농장 프로그램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5월 15일자, SBS 콘텐츠허브 5월 15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강아지 번식장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애견 경매장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TV동물농장 프로그램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9월 25일자)

2016서울조정 1154	(정정청구) 민○○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대우조선 자금 민○○ 측에 유입 정황 檢, 계좌추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의 불법 자금이 신청인에게 유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대우조선 자금 민○○측에 유입 정황 檢, 계좌추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10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157~1166	(각 정정·손배청구) 설○○ 對 세계닷컴 ^(1157·1158) , 금융소비자뉴스 ^(1159·1160) , 인터넷 팝콘뉴스 ^(1161·1162)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1163·1164) , 시사위크 ^(1165·1166)
조 정 대 상	• 세계닷컴 : 『○○○○○ 20대 알바생, 70대 노인에게 막말 영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사회면) • 금융소비자뉴스 : 『○○○○○ 20대 알바생이 노인에게 막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팝콘뉴스 : 『○○○○○ 20대 직원 - 70대 노인 욕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 『○○○편의점 직영점, 여직원 막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 시사위크 : 『○○○○○ 여직원 - 노인 욕설 다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신청인이 노인 고객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금융소비자뉴스, 인터넷 팝콘뉴스,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시사위크/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취하 (세계닷컴/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진상 고객 VS 짜증내는 알바생 ... 누구 잘못이 더 큰가』 제하의 기사 중 기사제목 및 내용 일부 수정 (세계닷컴 2016년 8월 17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67	(손배청구) 주○○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물총 축제에 참가한 사진 (2016년 7월 1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물총축제에 참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50만원)

2016서울조정 1168	(정정청구) (주) ○○○○○○○○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상조뉴스, ○○○○○○○○ 광고덧가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상조/장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상조회사가 광고 발주를 대가로 신청인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169~1186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뉴스1코리아 ^(1169·1170) , YTN ^(1171·1172) , 인터넷 YTN ^(1173·1174) , 로이슈 ^(1175·1176) , e머니위크 ^(1177·1178)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1179·1180) , 월드투데이 ^(1181·1182) , 이슈타임 ^(1183·1184) , 티브이데일리 ^(1185·1186)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제자 학대 인분 교수,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 YTN : 신율의 시사탕탕 프로그램 『인분 교수, 감형됐는데 구속 집행정지 신청 왜?』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3일자) • 인터넷 YTN : 『인분 교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사유는?』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 로이슈 : 『인분 교수, 심신 미약·우울증 고통호소 ... ‘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 e머니에스 : 『“인분 교수” 수감 1년만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 우울증·심신미약 호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 『“인분 교수,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심신미약·우울증 고통 호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제자 학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신청인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유가 심신미약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1코리아/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 동의, YTN/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4백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인터넷 YTN, 티브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로이슈, e머니위크,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월드투데이/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이슈타임⁽¹¹⁸³⁾/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 동의) • 취하 (이슈타임⁽¹¹⁸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정정보도문] 제자 학대 인분 교수, 대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사회면) • 로이슈 : 『“인분 교수, 심신미약·우울증 고통호소 ... ‘구속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 e머니에스 : 『“인분 교수”수감 1년만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 우울증·심신미약 호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생활문화면)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 『“인분 교수,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심신미약·우울증 고통 호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 월드투데이 : 『“인분 교수, 평소 사람에게 잔인한 짓 해보고 싶어해 ... 충격 일화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87, 1209	(각 정정청구) 대한변호사협회 對 더엘 ⁽¹¹⁸⁷⁾ , e머니투데이 ⁽¹²⁰⁹⁾
조 정 대 상	• 더엘 : 『“전관예우 근절’ 시늉만 하는 법조 3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일자 법뉴스면) • e머니투데이 : 『“전관예우 근절’ 시늉만 하는 법조 3륜 ... 국감 자료 제출조차 모두 반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88~1191	(각 정정·손배청구) ○○○○법인 외 1인 對 한겨레 ^(1188·1189) , 인터넷 한겨레 ^(1190·1191)
조 정 대 상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8월 13일자 커버스토리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건설업계를 장악해 노조 파괴 및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법인 및 전○○ 노무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10일자 4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192	(정정청구) (주) ○○○○○○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1) 『‘정부 보증’ 기적의 화상 치료제, ‘물약’이라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칼럼면) (2) 『한 방에 70만원 세포 치료제, ‘뽕약’이라면 ...』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약가산정 및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193·1194	(정정·손배청구) 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강적들 프로그램 『넥슨의 라스트판, 위너는?』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신청인 주장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5백만원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조정 금액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이 행 결 과	강적들 프로그램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5일자)

2016서울조정 1195	(정정청구) ○○○○○○ 對 데일리 비즈온
조 정 대 상	『불에 녹는 고무발포 단열재가 소방 난연 제품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생산하는 단열재의 난연 성능이 기준 미달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96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브레이크 안 걸리고 멈추고 ... 째라인 사고 속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레포츠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197~1200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1억짜리 쓰레기통, 열어보니 ...』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하자 덩어리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01	(정정청구) 시청자미디어재단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채용, 특혜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IT/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의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진실한 사실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02	(정정청구) 신○○ 외 1인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無성과에 검찰 수사까지 ... 고민 깊어지는 ‘민유성 사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최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고문이 뚜렷한 업무성과도 없고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無성과에 검찰 수사까지 ... 고민 깊어지는 ‘민유성 사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16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203~1206, 1228·1229, 1290·1291	(각 반론·손배청구) 한○○ 對 한겨레21 ^(1203·1204) , 인터넷 한겨레21 ^(1205·1206) (각 정정·손배청구) 뉴스앤조이 ^(1228·1229,1290·1291)
조 정 대 상	• 한겨레21 : 『평화 없는 ○○박물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34면~37면, 인터넷 한겨레21 5월 16일자 사회면) • 뉴스앤조이 : (1) 『○○박물관에 지금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8일자 사회면) (2) 『모두가 한○○ 교수 문제라고 하는데 ...』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일자 사회면) (3) 『○○박물관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조직을 사유화하고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뉴스앤조이)
이 행 결 과	『〈평화없는 ○○박물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21 2016년 10월 3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07, 1208	(각 정정청구) 심○○ 對 한겨레 ⁽¹²⁰⁷⁾ , 인터넷 한겨레 ⁽¹²⁰⁸⁾
조 정 대 상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8월 13일자 커버스토리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무사인 신청인이 과거 모 컨설팅 회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노조 파고를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심○○ 노무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3일자 4면, 인터넷 한겨레 8월 3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10	(손배청구) 강남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강남구청 ‘댓글부대’ 공무원, ‘징계 대신 승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가 서울시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11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일간투데이
조 정 대 상	『또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자 속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 금융 다단계업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12	(정정청구) (주) 문화방송 對 더팩트
조 정 대 상	(1) 『[단독포착] “외압 하차 논란” 최양락, 술과 주차관리 “인고의 세월”』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단독특종면) (2) 『[TF 이슈추적] “주차관리” 최양락, 14년 진행 라디오 하차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연예가화제면) (3) 『[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외압논란” 최양락, 배신에 우는 속사정』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연예가화제면)
신청인 주장	개그맨 최양락이 MBC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에서 하차한 것이 외압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최양락 하차 외압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213, 1214, 1271, 1272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1213,1214) , 김○○ ^(1271,1272) , 對 일요신문 ^(1213,1271) , 인터넷 일요신문 ^(1214,1272)
조 정 대 상	『서울시 공사 수주 방수 전문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7월 17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신문 7월 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건설업체 취업이 대가성 채용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서울시 공사 수주 방수 전문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10월 24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신문 10월 17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215·1216	(정정·손배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발작하는 장애인에 성수만 뿌려” 천주교 신부 ‘장애인 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17	(정정청구) (의) ○○의료재단 對 인터넷 아시아글로벌
조 정 대 상	『파주 요양병원서 간병인 의료행위 재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8일자 사회/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파주 요양병원서 간병인 의료행위 재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문화면)
2016서울조정 1218·1219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 對 인터넷 에너지경제
조 정 대 상	『[귀족노조 下] 고용 강요에 활동비 강제 징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간부가 공사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귀족노조 下] 고용 강요에 활동비 강제 징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일부 삭제 (2016년 9월 7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220	(정정청구) 반○○ 對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조 정 대 상	(1)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9일자 사회면) (2) 『백종원 식당 여배우, 근거자료(?) 내세워 이종으로 목돈 챙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연예면) (3)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미모의 메인 여배우 ‘만행사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배우인 신청인이 복통치료를 이유로 식당과 병원에서 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백종원 식당 여배우 합의금 요구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221	(정정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열 네개 유리병의 증언』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국가배상소송의 정부 측 변호사인 신청인이 인권유린 상황을 옹호한 것처럼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협의)
2016서울조정 1222·1223	(정정·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굿모닝A 프로그램 『‘집에서 애나 봐’ 고위 공무원의 갑질』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고위 공무원인 신청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24, 1225	(각 정정청구) ○○○○병원 對 TV조선 ⁽¹²²⁴⁾ , 인터넷 TV조선 ⁽¹²²⁵⁾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 슈퍼박테리아 보균 환자 발생 및 환자 관리』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8월 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8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전염병 환자의 격리나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26	(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對 인터넷 한의신문
조 정 대 상	『의료 바우처카드 소지자 대상 본인 부담금 대납은 ‘환자 유인행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홈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재단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27	(반론청구) 오○○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이야기Y 프로그램 『치매환자 명자씨의 수상한 9개의 고액보험』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치매환자를 속여 고액 보험에 불법가입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궁금한이야기Y 프로그램 『“치매환자 명자씨의 수상한 9개의 고액보험”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3일자)

2016서울조정 1230	(정정청구) 강○○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6개월만에 누명 벗은 방석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0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취재보도한 모 방송 사장 횡령 의혹 기사가 사실확인도 않은 무책임한 보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31	(정정청구) (재) ○○○기념재단 외 3인 對 투데이코리아
조 정 대 상	『북한 제○○ 광수 박○○ 상장 귀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시민군으로 위장 침투하였다는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북한 제○○ 광수 박○○ 상장 귀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32~1234	(정정·손배청구) 나○○ 對 경향신문 ^(1232·1233) (정정청구) 인터넷 경향신문 ⁽¹²³⁴⁾
조 정 대 상	『교육부 고위 간부 “민중은 개·돼지 ... 신분제 공고화해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자 종합면, 인터넷 경향신문 7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신분제 공고화를 주장했다는 등 발언 취지를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자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35~124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 대한불교○○○ 외 2인 對 MBC ^(1235~1237) , 인터넷 MBN ^(1238~1240)
조 정 대 상	(1) 뉴스8 프로그램 『주지 연임 대가 금품 수수 의혹 총무원장 수사』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2월 29일자, 인터넷 MBN 2월 29일자 사회면) (2) 굿모닝 프로그램 『주지 연임 대가 금품수수 의혹 총무원장 수사』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3월 1일자, 인터넷 MBN 2월 29일자 사회면) (3) 뉴스8 프로그램 『스님이 택시기사? ... “경력” 문제로 소송 중인 ○○○ 총무원장』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8월 5일자, 인터넷 MBN 8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단 총무원장이 모 주지스님의 연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대한불교 ○○○ 총무원장 금품 수수 및 경력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10월 2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41, 1242	(각 반론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현대종교 ⁽¹²⁴¹⁾ ,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¹²⁴²⁾
조 정 대 상	『이단의 또 다른 방법 ‘시위’』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6월 1일자 108면~112면,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6월 1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교단과는 관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현대종교 2016년 10월 24일자 103면)

2016서울조정 1243	(손배청구) 신○○ 외 2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저수지로 간 부부 - 아내는 왜 용의자가 되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부부 사망사건의 의문을 다루면서 자녀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244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 오○○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 진행』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 출시한 화장품을 다른 회사가 개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오○○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 진행』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245	(반론청구) ○○○ (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다단계 업계 2위인 ‘○○○’ 대표, 檢에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사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자격을 박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46	(정정청구) 국방부 對 통일뉴스
조 정 대 상	『사드배치의 진실』 제하의 만평 (2016년 8월 2일자 통일뉴스면)
신청인 주장	사드(THAAD) 도입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배치 지역은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등의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47~125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의사회 외 19인 對 한국일보 ^(1247~1249) , 인터넷 한국일보 ^(1250~1252)
조 정 대 상	『산모 줄자 ...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8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산부인과 의사들이 돈벌이에 급급하여 과잉진료, 비급여진료 등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산부인과 진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53, 1254	(각 손배청구) 장 ○ 對 인터넷 문화일보 ⁽¹²⁵³⁾ , 네이버 ⁽¹²⁵⁴⁾
조 정 대 상	『“앉아서 출근하다니” ... ‘천국鐵’ 된 9호선』 제하의 기사 (인터넷 문화일보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네이버 8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문화일보/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후 보도) • 취하 (네이버/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55·1256	(정정·손배청구) 지○○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이야기Y 프로그램 『납치된 딸 찾으러 한국 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가정사에 대해 이혼한 전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57	(정정청구) 윤장현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관사 처분후 자택서 살던 윤장현 광주시장 별도 사저 생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밀실 정치를 위하여 사저에서 생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윤장현 광주시장, 별도 사저 생활 의혹’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광주면)
2016서울조정 1258, 1259	(각 반론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¹²⁵⁸⁾ , 인터넷 한국일보 ⁽¹²⁵⁹⁾
조 정 대 상	『○○대 부총장, 셀프 추천으로 재연임 가능성』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8월 29일자 사1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 부총장이 본인을 부총장으로 추천하여 연임할 것이라고 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진실한 사실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260, 1261	(각 반론청구) (주) ○○○ 對 프레스맨 ⁽¹²⁶⁰⁾ , 중기이코노미 ⁽¹²⁶¹⁾
조 정 대 상	• 프레스맨 : 『○○○은 “불통존?”... 가맹사업 막무가내 질주에 업주 시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엔터프라이즈 리포트면) • 중기이코노미 : 『중기청 “검찰 고발, 사업자와 갈등”... 조치없으면 선정 취소 가능성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산업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업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프레스맨/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중기이코노미)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프레스맨 2016년 10월 4일자 엔터프라이즈 리포트면)

2016서울조정 1262·1263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교회와신앙
조 정 대 상	『○○○○ 박○○씨는 “목사” 아닌 “거짓 선지자”!』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이단&이슈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가 엉터리 교리를 주장하고 부정축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이단&이슈면)

2016서울조정 1264~1266	(정정·반론·손배청구) ○○○○○○○○○○협동조합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 생협 부당하고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내용을 보도하는 대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 생협 부당하고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을 수정 (2016년 10월 2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67·1268	(정정·반론청구) 조희연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조희연 서울교육감, 대규모 출판기념회 “시골”』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교육관계자의 참석을 강요하고 책을 강매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조희연 교육감 출판기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10월 7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69·1270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4명으로 늘어』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모 연예인 성폭행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뒷모습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73, 1274	(각 정정청구) 국가보훈처 對 아주경제 ⁽¹²⁷³⁾ , 아주뉴스 ⁽¹²⁷⁴⁾
조 정 대 상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수강료 5만원 없어 못준다는 보훈처』 제하의 기사 (아주경제 2016년 7월 1일자 4면, 아주뉴스 7월 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국가보훈처의 취업수강료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가유공자 취업수강료, 1인당 300만원까지 올려 지원』 제하의 기사 (아주경제 2016년 11월 9일자 종합면, 아주뉴스 11월 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275~1278	(각 정정청구) (주) 아이엠비씨 對 YTN ⁽¹²⁷⁵⁾ , 인터넷 YTN ⁽¹²⁷⁶⁾ , 채널A ⁽¹²⁷⁷⁾ , 인터넷 채널A ⁽¹²⁷⁸⁾
조 정 대 상	• YTN : 국민신문고21 프로그램 『이제는 아빠 육아 휴직 전성시대』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인터넷 YTN 8월 4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외 5건 • 채널A : 7시뉴스 프로그램 『The 깊은 뉴스, 남성 육아 휴직의 실태』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4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79	(정정청구) (주) ○○○○○○○○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 홍보관 영업? 후불제 상조회사?』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상조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280~1283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시사저널 ^(1280·1281) , 인터넷 시사저널 ^(1282·1283)
조 정 대 상	(1) 『검찰, 스포츠토토 수탁업체 ○○○○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7월 19일자 28면~29면, 인터넷 시사저널 7월 21일자 사회면) (2) 『‘제2의 스포츠토토 사태’ 터지나』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7월 19일자 28면~29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외유성 해외 출장, 향응 수수 등 비리와 부정 투성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11월 22일자 인사이드뉴스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284~128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협회 對 MBC-TV ^(1284~1286) , iMBC ^(1287~1289)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어르신들 가족같이 돌봐줍니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6월 19일자, iMBC 6월 1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노인 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292, 1293	(각 손해청구) 주○○ 對 SBS-TV ⁽¹²⁹²⁾ , SBS 콘텐츠허브 ⁽¹²⁹³⁾
조 정 대 상	SBS생활경제 프로그램 『내 혈관 수치는? 레드 서울 캠페인』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9월 6일자, SBS 콘텐츠허브 9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혈압 측정 등 뇌혈관 질환 예방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294·1295	(정정·손배청구) 김○○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평균 연봉 1.6억 ... 의사 급여 오를수록 뛰는 비급여 비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의사의 급여가 증가할수록 비급여 비용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296	(정정청구) 김○○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봄비는 공원에서, 다섯살 꼬마가 숨졌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원에서 벌어진 아동 실종사건이 근처 공연장 관람객의 무관심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297~1302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對 주간동아 ^(1297·1298) , 인터넷 주간동아 ^(1299·1300) , 동아닷컴 ^(1301·1302)
조 정 대 상	- 주간동아 : 『2조원 삼킨 액체 로켓 개발 안 하나, 못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28면, 29면, 인터넷 주간동아 7월 25일자 사회면) 외 1건 - 동아닷컴 : 『지지 부진 한국형 발사체 ... 눈치만 보다 일본 따라잡을 기회 놓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4일자 주간동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액체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의도적으로 연기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03~1306	(각 정정·손배청구) (주) ○○○○○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저널 ^(1303·1304) , 인터넷 서울경제 ^(1305·1306)
조 정 대 상	- 인터넷 시사저널 : 『‘청담동 주식부자’에 속은 투자자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청담동 주식부자’ 대주주로 있는 ‘○○○○○’도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경제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307~1310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경향신문 ⁽¹³⁰⁷⁾ , 인터넷 경향신문 ⁽¹³⁰⁸⁾ , 쿠키뉴스 ⁽¹³⁰⁹⁾ , 데일리안 ⁽¹³¹⁰⁾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KBS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 기자 징계 나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3일자 미디어면) - 쿠키뉴스 : 『KBS, 30억 투자한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한 기자들에 징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영화면) - 데일리안 : 『KBS ‘인천상륙작전’ 홍보 지시 거부하자 징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소속 기자들에게 특정 영화를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쿠키뉴스, 데일리안/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낮은 평점 준 평론가 비판 지시’ KBS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7일자 미디어면) - 쿠키뉴스 : 『KBS 인천상륙작전 보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영화면) - 데일리안 : 『KBS 인천상륙작전 보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311~1314	(각 정정·손배청구) 박○○ 외 4인 對 조선닷컴 ^(1311·1312) , 인터넷 채널A ^(1313·1314)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 男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 女 탈의실에 몰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채널A : 『수영 女탈의실 몰카 ... 코치진 ‘쉬쉬’』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선수촌 여자 탈의실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315, 1316	(각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¹³¹⁵⁾ , 인터넷 한겨레 ⁽¹³¹⁶⁾
조 정 대 상	- 한겨레 : 『국정원, “양우회” 펀드 불법 운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1면) 외 10건 - 인터넷 한겨레 : 『“영리업무 금지” 어기고 국정원 직원이 양우회서 펀드 투자』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6년 9월 5일자 정치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국가정보원이 직원 상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4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4일자 연재면)

2016서울조정 1317·1318	(정정·반론청구) ○○○○○○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조희연 서울교육감, 대구모 출판기념회에 시끌』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일선 교사와 교육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서울시 교육감 출판기념회 행사 참석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319	(반론청구) 이○○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엠비엔 집중 진단 -닭은 듯 다른 위작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친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전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9일자)
2016서울조정 1320~132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TV조선 ^(1320~1322) , 인터넷 TV조선 ^(1323~1325) , 조선닷컴 ^(1326~1328)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미르재단 이사장 문화 행사에 특혜 용역?』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16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16일자 탐사기획면) 외 2건 - 조선닷컴 : 『미르 이사장 김○○ 부부에 국가 예산 50억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8일자 정치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부가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배후에 정권실세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타)
2016서울조정 1329~133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 ^(1329·1330) , 조선닷컴 ^(1331·1332)
조 정 대 상	『‘저축은 비리’ 그는 왜 옥중 자살 시도했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6년 9월 2일자 A12면, 조선닷컴 9월 2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구치소에 수감중인 신청인이 옥중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33·1334	(정정·손배청구) 황○○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유물을 보나요? ... ‘장애 유모차’ 못 들어간다는 박물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박물관장인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장애인의 박물관 입장을 제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35	(정정청구) 경기도 광주시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경기 광주 오폐 난개발 현장 “탈세·공무원 비리”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메인화면)
신청인 주장	경기 광주시가 지역 난개발,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으로 명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경기 광주 오폐 난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36, 1337	(각 반론청구) 여성가족부 對 경향신문 ⁽¹³³⁶⁾ , 인터넷 경향신문 ⁽¹³³⁷⁾
조 정 대 상	『‘나눔의집’ 몰래 방문한 여가부 장관』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자 11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를 비밀리에 방문하고 대화도 없는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38, 1339	(각 반론청구) 김○○ 對 MBC-TV ⁽¹³³⁸⁾ , iMBC ⁽¹³³⁹⁾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장모 사위 친권 다툼 누가 손녀딸을 키우나』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8월 2일자, iMBC 8월 2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병든 아내와 딸을 두고 가출하고 아내 사망 후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딸의 친권을 주장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40	(반론청구) ○○○ (주)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 (주)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으로 피부과 치료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피부질환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제품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341~1362	(각 정정청구) 신○○ 對 인터넷 국민일보 ^(1341,1342) , 온라인 중앙일보 ⁽¹³⁴³⁾ , 인터넷 이데일리 ⁽¹³⁴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³⁴⁵⁾ , 인터넷 시민일보 ⁽¹³⁴⁶⁾ , 연합뉴스 ⁽¹³⁴⁷⁾ , 국제뉴스 ⁽¹³⁴⁸⁾ , KBS미디어 ⁽¹³⁴⁹⁾ , 인터넷 MBN ⁽¹³⁵⁰⁾ , 인터넷 YTN ⁽¹³⁵¹⁾ , 인터넷 평화방송 ⁽¹³⁵²⁾ , 뉴데일리 ^(1353,1354) , 더팩트 ⁽¹³⁵⁵⁾ , 데일리인 ^(1356,1357) , 미디어펜 ^(1358,1359) , 미려한국 Daily ⁽¹³⁶⁰⁾ , 브레이크뉴스 ⁽¹³⁶¹⁾ , 아이뉴스24 ⁽¹³⁶²⁾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민일보 : 『더민주 중국 방문단, 한중 관계 불만 더 지르고 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중혈맹 복원” 발언의 진위 ... 중국 측 “바로 잡아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국제면) - 인터넷 이데일리 : 『하태경 “北·中혈맹 회귀발언 사실무근 ... 더민주,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더민주 방중단의 ‘사드로 인한 북중 혈맹 복원’ 언급은 거짓』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정당면) - 인터넷 시민일보 : 『하태경, “정부차원에서 특사 보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정치면) - 연합뉴스 : 『與, 더민주 초선 ‘사드 방중’에 연일 ‘십자포화’』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최신기사면) - 국제뉴스 : 『與 “더민주, 방중 녹취록 확인해야 ... 미이행시 징계 요구안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정치면) 외 11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드 관련 방중 당시 중국측 인사의 발언을 날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데일리, 미래한국 Daily/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이데일리,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시민일보, 연합뉴스, 국제뉴스, 인터넷 MBN, 인터넷 평화방송, 더팩트, 데일리안, 미디어펜, 아이뉴스24/사유 : 정정보도) • 각 취하 (KBS미디어, 데일리안, 브레이크뉴스/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취하 (인터넷 YTN/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인터넷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중혈맹 복원”발언의 진위 … 중국 측 “바로 잡아달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국제면) • 인터넷 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하태경 “北·中혈맹 회귀발언 사실무근 … 더민주,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정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보도문] “더민주 방중단의 ‘사드로 인한 북중 혈맹 복원’ 언급은 거짓’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정당면) • 인터넷 시민일보 : 『하태경, “정부차원에서 특사 보내야”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정당/국회면) • 연합뉴스 : 『與, 더민주 초선 ‘사드 방중’에 연일 ‘십자포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7일자 최신기사면) • 뉴데일리 : 『[정정보도] 與 “더민주, 방중 녹취록 확인해야 … 미이행시 징계요 구안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정치면) 외 7개 매체

2016서울조정 1363~136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현대원 對 경향신문 ^(1363~1365) , 인터넷 경향신문 ^(1366~1368)
조 정 대 상	(1) 『현대원, 연구용역 능력 없으면서 자신의 학교기업 통해 사업 수주』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29일자 5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8일자 사회면) (2) 『현대원 제자들 우리 인건비, 현 수석 측이 가져갔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30일자 사회면) (3) 『현 수석 측 ‘돌려받은 인건비’ 입출금 내역 확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30일자 사회면) (4) 『현대원 청 미래수석, 중국 게임쇼 출장에 초등생 아들 데려갔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수 재직 시절 연구능력도 없이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0월 27일자 6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3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69, 1370	(각 손해청구) 손○○ 對 뉴데일리경제 ⁽¹³⁶⁹⁾ , 메디컬투데이 ⁽¹³⁷⁰⁾
조 정 대 상	• 뉴데일리경제 : 『체형 교정센터 ‘유사 의료행위’ 주의보 ... 카이로프랙틱 치료 ‘불법’』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홈면) • 메디컬투데이 : 『체형 교정센터에서 의료 행위? 알고도 행한 ‘불법행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체형 교정센터가 의료행위 홍보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데일리경제 : 『체형 교정센터 ‘유사 의료행위’ 주의보 ... 카이로프랙틱 치료 ‘불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2일자 홈면) • 메디컬투데이 : 『체형 교정센터에서 의료 행위? 알고도 행한 ‘불법행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8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1371~137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교회 對 주간경향 ^(1371~1373) , 인터넷 주간경향 ^(1374~1376)
조 정 대 상	『“[김진호의 ‘웰빙- 우파와 대형 교회’] (7)캐릭터 교회의 몰락과 보수대연합의 시대』 제하의 기사 (주간경향 2016년 8월 16일자 44면~46면, 인터넷 주간경향 8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옷로비 사건과 관계 있으며, 모 그룹의 비자금처로 이용되는 등 권력화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주간경향 2016년 10월 24일자 11면, 인터넷 주간경향 10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377	(정정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분당 아파트서 주민이 관리소장 폭행 ... “갈비뼈 3개 골절” 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2016서울조정 1378, 1379	(각 정정청구) 진○○ 對 TV조선 ⁽¹³⁷⁸⁾ , 인터넷 TV조선 ⁽¹³⁷⁹⁾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억울함에 목숨으로 대신합니다” 70대 경비원 투신사망』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8월 2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투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인 신청인의 폭언에 시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380·1381	(정정·손배청구) 한국공항공사 對 시사ON
조 정 대 상	『직원 옥죄는 한국공항공사, 군 출신 사장 문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한국공항공사가 군 출신 사장 부임후 수직적 군대 문화가 확산되어 직원을 옥죄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382~1415, 1573~1600, 1692~1705, 1733~1762	(각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국민일보 ^(1382-1383,1692-1693) , 인터넷 경향신문 ⁽¹³⁸⁴⁻¹³⁸⁵⁾ , 인터넷 서울신문 ^(1386-1387,1749-1750) , 시사N Live ⁽¹³⁸⁸⁻¹³⁸⁹⁾ , 인터넷 서울경제 ⁽¹³⁹⁰⁻¹³⁹¹⁾ , 인터넷 여성신문 ⁽¹³⁹²⁻¹³⁹³⁾ ,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¹³⁹⁴⁻¹³⁹⁵⁾ , 조선닷컴 ⁽¹³⁹⁶⁻¹³⁹⁷⁾ , 인터넷 한겨레 ⁽¹³⁹⁸⁻¹³⁹⁹⁾ , 프레시안 ⁽¹⁴⁰⁰⁻¹⁴⁰¹⁾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¹⁴⁰²⁻¹⁴⁰³⁾ , 고발뉴스닷컴 ⁽¹⁴⁰⁴⁻¹⁴⁰⁵⁾ , 월드투데이 ⁽¹⁴⁰⁶⁻¹⁴⁰⁷⁾ , 코리아뉴스타임즈 ⁽¹⁴⁰⁸⁻¹⁴⁰⁹⁾ , 한국NGO ⁽¹⁴¹⁰⁻¹⁴¹¹⁾ , 뉴시스 ^(1412-1413,1704-1705) , 뉴스1코리아 ⁽¹⁴¹⁴⁻¹⁴¹⁵⁾ , CBC뉴스 ⁽¹⁵⁷³⁻¹⁵⁷⁴⁾ , 더팩트 ⁽¹⁵⁷⁵⁻¹⁵⁷⁶⁾ , 뉴스한국닷컴 ⁽¹⁵⁷⁷⁻¹⁵⁷⁸⁾ , 뉴스엔뉴스 ⁽¹⁵⁷⁹⁻¹⁵⁸⁰⁾ , 아시아경제닷컴 ^(1581-1582,1751-1752) , 이뉴스투데이 ⁽¹⁵⁸³⁻¹⁵⁸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⁵⁸⁵⁻¹⁵⁸⁶⁾ , 국민일보 ⁽¹⁵⁸⁷⁻¹⁵⁸⁸⁾ , TV조선 ⁽¹⁵⁸⁹⁻¹⁵⁹⁰⁾ , 인터넷 TV조선 ⁽¹⁵⁹¹⁻¹⁵⁹²⁾ , 연합뉴스TV ⁽¹⁵⁹³⁻¹⁵⁹⁴⁾ , 인터넷 연합뉴스TV ⁽¹⁵⁹⁵⁻¹⁵⁹⁶⁾ , YTN ⁽¹⁵⁹⁷⁻¹⁵⁹⁸⁾ , 인터넷 YTN ⁽¹⁵⁹⁹⁻¹⁶⁰⁰⁾ , 인터넷 일요서울 ⁽¹⁶⁹⁴⁻¹⁶⁹⁵⁾ , e머니투데이 ⁽¹⁶⁹⁶⁻¹⁶⁹⁷⁾ , 씨앤비뉴스 ⁽¹⁶⁹⁸⁻¹⁶⁹⁹⁾ , 에스티브이 ⁽¹⁷⁰⁰⁻¹⁷⁰¹⁾ , 포커스뉴스 ⁽¹⁷⁰²⁻¹⁷⁰³⁾ , 연합뉴스 ⁽¹⁷³³⁻¹⁷³⁴⁾ , 내외뉴스통신 ⁽¹⁷³⁵⁻¹⁷³⁶⁾ , 국제타임스 ⁽¹⁷³⁷⁻¹⁷³⁸⁾ , 민중의소리 ⁽¹⁷³⁹⁻¹⁷⁴⁰⁾ , 시사포커스신문 ⁽¹⁷⁴¹⁻¹⁷⁴²⁾ , 인사이드 ⁽¹⁷⁴³⁻¹⁷⁴⁴⁾ , 프런티어타임스 ⁽¹⁷⁴⁵⁻¹⁷⁴⁶⁾ , 동아닷컴 ⁽¹⁷⁴⁷⁻¹⁷⁴⁸⁾ , 인터넷 이데일리 ⁽¹⁷⁵³⁻¹⁷⁵⁴⁾ , 온라인 중앙일보 ⁽¹⁷⁵⁵⁻¹⁷⁵⁶⁾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⁷⁵⁷⁻¹⁷⁵⁸⁾ , 애플경제 인터넷 ⁽¹⁷⁵⁹⁻¹⁷⁶⁰⁾ , 인터넷 채널A ⁽¹⁷⁶¹⁻¹⁷⁶²⁾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민일보 : 『“성희롱은 참는게 미덕” 국민의당 황당 교육』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외 2건 - 인터넷 경향신문 : 『“성희롱은 참는게 미덕”... 국민의당 ‘황당’ 성희롱 예방 교육』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국민의당 성교육 강사 “성희롱 참고 넘어가게 미덕”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3일자 사회면) - 시사N Live : 『성희롱 당하면 참는 게 미덕?』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성희롱 피해는 참는게 미덕”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정치면) 외 4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로 강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시사N Live, 프레시안, 허핑턴포스트코리아/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조선닷컴, 인터넷 한겨레, 뉴시스^(1412·1413), 뉴스1코리아/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서울신문^(1386·1387), 인터넷 여성신문, 한국 NGO, 더팩트, 뉴스한국닷컴, 뷰스앤뉴스, 아시아경제닷컴^(1581·1582), 이뉴스투데이,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연합뉴스TV, 인터넷 연합뉴스TV, YTN, 인터넷 YTN, 인터넷 일요서울, 예스티브이, 포커스뉴스, 뉴시스, 내외뉴스통신, 국제타임스, 인사이드, 프런티어타임스, 동아닷컴, 인터넷 이데일리,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채널A/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고발뉴스닷컴, 월드투데이, 코리아뉴스타임즈, CBC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e머니투데이, 씨앤비뉴스, 연합뉴스, 민중의소리, 시사포커스신문, 인터넷 서울신문^(1749·1750), 아시아경제닷컴^(1751·1752), 애플경제 인터넷/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국민일보, 국민일보)
이 행 결 과	• 시사N Live :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 프레시안 :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정치면)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초기화면) 외 15개 매체
2016서울조정 1416, 1417	(각 반론청구) 정○○ 對 한겨레 ⁽¹⁴¹⁶⁾ , 인터넷 한겨레 ⁽¹⁴¹⁷⁾
조 정 대 상	(1) 『김형준 부장검사, 수사대상 금융기업서도 항응 받았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19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9일자 사회면) (2) 『김형준, KB증권 수사 전후 5차례 접대받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19일자 13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일명 스폰서 검사에게 항응을 제공하고 기업 수사정보를 파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418~1421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채널A ^(1418·1419) , 인터넷 채널A ^(1420·1421)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판검사 회식에 의원 남편 ... 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6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6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2012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 법사위원과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 자리에 합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뉴스특보 프로그램 『「판검사 회식에 의원 남편 ... 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12월 11일자, 인터넷 채널A 12월 11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422~1424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2인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1) 『도돌이표 사학 비리 ...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뉴스면) (2) 『끝없는 사학분쟁의 주역 ... ‘사분위’와 사학법』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뉴스면) (3) 『○○대 전 이사의 고백 ... “김○○가 마구잡이 교수 징계 지시”』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 설립자가 사학 비리의 주역이며, 총장 복귀가 학교 내분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425~1440	(각 정정청구) (주) ○○○ 對 시크뉴스 ⁽¹⁴²⁵⁾ , 아이뉴스24 ⁽¹⁴²⁶⁾ , 조선비즈닷컴 ⁽¹⁴²⁷⁾ , 컨슈머타임스 ⁽¹⁴²⁸⁾ , 화이트페이퍼 ⁽¹⁴²⁹⁾ , 아시아경제닷컴 ⁽¹⁴³⁰⁾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⁴³¹⁾ , 한경닷컴 ⁽¹⁴³²⁾ , 인터넷 MBN ⁽¹⁴³³⁾ , 뉴스타운 ⁽¹⁴³⁴⁾ , 문화뉴스 ⁽¹⁴³⁵⁾ , 동아닷컴 ⁽¹⁴³⁶⁾ , 조선닷컴 ⁽¹⁴³⁷⁾ ,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¹⁴³⁸⁾ , 인터넷 한국스포츠통계 ⁽¹⁴³⁹⁾ , 한경닷컴 ⁽¹⁴⁴⁰⁾
조 정 대 상	• 시크뉴스 :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CMIT·MIT 혼합물 검출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뷰티면) • 아이뉴스24 : 『일부 물티슈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 조선비즈닷컴 : 『‘○○○○’ 유명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 ... 전량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기업면) • 컨슈머타임스 : 『‘○○○ 물티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기타면) • 화이트페이퍼 :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검출 ... 어느 제품이길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생활경제면)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유아용 물티슈에 살균제 성분 포함 ... 소비자 “불안·배신” 분통』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산업/IT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 또 구설, 이번엔 일부 제품 독성물질 - 세균 과다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뉴스속보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시크뉴스, 아이뉴스24, 조선비즈닷컴, 화이트페이퍼, 아시아경제닷컴, 한경닷컴/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컨슈머타임스, 인터넷 헤럴드경제/사유 : 후속보도) • 취하 (인터넷 MBN/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기각 (뉴스타운, 문화뉴스, 동아닷컴, 조선닷컴,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한경닷컴/사유 : 피신청인 주의의무 이행)
이 행 결 과	• 시크뉴스 :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CMIT·MIT 혼합물 검출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10월 6일자 뷰티면) • 아이뉴스24 : 『일부 물티슈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6일자 사회면) • 조선비즈닷컴 : 『‘○○○○’ 유명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 ... 전량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30일자 기업면) • 컨슈머타임스 : 『○○○○·○○○ 물티슈, CMIT·MIT 검출되고 세균 많아 ...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30일자 기타면) • 화이트페이퍼 : 『물티슈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검출 ... 어느 제품이길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회사 제품 사진 삭제 (2016년 9월 28일자 생활경제면) 외 3개 매체

2016서울조정 144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젊은이 기준’ 50년대 19세 ... 80년대 21.5세 ... 현재 41세 ... 2040년엔 52.6세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출처가 불명확한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조정 신청 기간 도과)

2016서울조정 1442	(손배청구) 김○○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1) 『신앙과 훈련 빌미로 노동력·돈 착취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0일자 사회면) (2) 『기독교 가치 내세우는 곳이라더니』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4일자 사회면) (3) 『문화 선교한다면서 톡하면 ‘가게 저주론’』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연습생들을 착취한다고 보도하고 초상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신앙과 훈련 빌미로 노동력·돈 착취당했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443~1446	(각 정정·손배청구) 국기원 對 한국일보 ^(1443·1444) , 인터넷 한국일보 ^(1445·1446)
조 정 대 상	『500억대 국기원 명소화 사업 잡음만』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9월 22일자 27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22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의 명소화 사업이 이사회 의 논의도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447~146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인KBS-1TV ^(1447·1448) , MBC-TV ^(1449·1450) , SBS-TV ^(1451·1452) , JTBC ^(1453·1454) , YTN ^(1455·1456) , 연합뉴스TV ^(1457·1458) , 인터넷 국민일보 ^(1459·1460)
조 정 대 상	• 경인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치킨집 주인 갑질 ... 아르바이트생 폭행』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왜 좋아!’ 주인이 알바생 폭행, “신고하면 보복” 협박까지』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근무 중 졸았다고 알바생 폭행 ... 잔혹한 사장님』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 JTBC : 아침& 프로그램 『“졸았다” 알바생 폭행한 치킨집 업주』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2일자) • YTN : 뉴스출발 프로그램 『“일하다 좋아?”... 알바생 폭행한 치킨집 업주』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2일자)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TV : 뉴스포커스 프로그램 『근무시간에 졸아? ... 알바생 무차별 폭행 치킨집 사장』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2일자) • 인터넷 국민일보 : 『“일하다 졸아? 물어버릴거야” 알바생 폭행한 치킨집 사장』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2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치킨집 사장인 신청인이 아르바이트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461~1464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KBS-1TV ^(1461·1462) , KBS미디어 ^(1463·1464)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사설 구급차 불법·탈법 운상 ... 범죄 악용까지』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9월 6일자, KBS미디어 9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으로 사설 구급차를 제작 및 유통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1465~1467	(각 정정청구) (주)○○○○○○○ 對 KBS-1TV ⁽¹⁴⁶⁵⁾ , KBS-2TV ⁽¹⁴⁶⁶⁾ , KBS미디어 ⁽¹⁴⁶⁷⁾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생명줄인데 ... 소방관 공기통, 잠수용으로 실험 ‘들통’』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11일자, KBS미디어 9월 11일자 다시보기면) • KBS-2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소방관’ 공기통 충전기, ‘잠수용’ 실험해 합격?』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12일자, KBS미디어 9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방관 공기통 충전 장치를 개발하면서 시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468, 1469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채널A ⁽¹⁴⁶⁸⁾ , 인터넷 채널A ⁽¹⁴⁶⁹⁾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승객이 떠 안은 ‘항공유 운반’ 적자』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9월 22일자, 인터넷 채널A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코레일의 항공유 운반비용 적자가 방위사업청의 낮은 운반비 책정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6서울조정 1470~1473, 1476, 1477	(각 정정·손배청구) ○○ (주) 對 MBN ^(1470·1471) , 인터넷 MBN ^(1472·1473) (각 정정청구) 네이버 ⁽¹⁴⁷⁶⁾ , 다음 ⁽¹⁴⁷⁷⁾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설탕 잔뜩 넣는 ○○』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9월 13일자, 인터넷 MBN, 네이버, 다음 9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생과일 주스가 과일 함량은 부족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474	(정정청구) ○○○○중학교 對 iMBC
조 정 대 상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학폭위,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PD수첩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의 학폭위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고, 상담 내용을 허위기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475	(정정청구) (사) ○○○○○○○연맹 對 아시아투어닷컴
조 정 대 상	『여가부, 무허가 청소년 체험 캠프 8곳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미인증 청소년 체험 캠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478~1490	(각 추후·손배청구) 윤석용 對 MBN ^(1478·1479) , 인터넷 일요서울 ^(1480·1481) (각 추후청구) 인터넷 국민일보 ⁽¹⁴⁸²⁾ , 노컷뉴스 ⁽¹⁴⁸³⁾ , 시사위크 ⁽¹⁴⁸⁴⁾ , 인터넷 이데일리 ⁽¹⁴⁸⁵⁾ , 매경닷컴 ⁽¹⁴⁸⁶⁾ , SBS 콘텐츠허브 ⁽¹⁴⁸⁷⁾ , 뉴스1코리아 ⁽¹⁴⁸⁸⁾ , 뉴시스 ⁽¹⁴⁸⁹⁾ , 연합뉴스 ⁽¹⁴⁹⁰⁾
조 정 대 상	• MBN : 아침뉴스 프로그램 『윤석용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중』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10일자) • 인터넷 일요서울 : 『서울 강동을, 경선 앞두고 ‘진정서’ 봇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정치면) 외 3건 • 인터넷 국민일보 : 『검찰, 윤석용 새누리당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 노컷뉴스 : 『검찰, 새누리당 윤석용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 시사위크 : 『[선거법 위반 현황표 입수] 선관위, 54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정치면) 외 1건 • 인터넷 이데일리 : 『檢, 윤석용 새누리당 강동을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 매경닷컴 : 『檢, 새누리당 강동을 윤석용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정치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고 보도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일요서울/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 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부제소 조항 및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노컷뉴스, 인터넷 이데일리, 매경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시사위크, 뉴스1코리아, 뉴시스, 연합뉴스/사유 : 기사수정) • 취하 (SBS 콘텐츠허브/사유 : 후속보도, MBN/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시사위크 : 『[선거법 위반 현황표 입수] 선관위, 54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5일자 정치면) • 뉴스1코리아 : 『檢, 새누리 서울지역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3일자 정치면) • 뉴시스 : 『與 강동을 이재영-윤석용, 경선 앞두고 신경전 가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7일자 정치면) • SBS 콘텐츠허브 : 『검찰, 윤석용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정치면) • 연합뉴스 : 『檢, 강동구 출마 새누리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491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달랑 5시간 ... 국정교과서 원고본 ‘졸속 심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2013년 한국사 교과서의 부실 검정이 신청인 출판사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달랑 5시간 ... 국정교과서 원고본 ‘졸속 심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법인명 삭제 (2016년 10월 6일자 사회교육면)

2016서울조정 1492·1493	(정정·손배청구) 광진경찰서 외 1인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광진경찰서’ 무슨 기준으로 교통 법규 위반 판단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494~1496	(정정·반론·손배청구) 고○○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은밀한 범죄 영유아 학대』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어린 자식을 학대하고 직업도 없이 무위 도식한다고 잘못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보도, 부제소)

2016서울조정 1497, 1509	(각 반론청구) (주) ○○○ 對 KBS-1TV ⁽¹⁴⁹⁷⁾ , KBS미디어 ⁽¹⁵⁰⁹⁾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140억’ 콜택시 사업 ... 시민·기사 모두 외면』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7월 3일자, KBS미디어 7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콜택시 통신 단말기가 오류가 잦고 입찰 기준에 못 미치는 CPU를 사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1498~1501	(각 정정·반론청구) ○○○○○○○○ ○○○교회 對 한겨레 ^(1498·1499) , 인터넷 한겨레 ^(1500·1501)
조 정 대 상	『○○○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7월 5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7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반대파 교인을 축출하려 고소를 남발하고 고위 판검사 신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관련 정정·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2월 6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502·150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문학상 수상 시인의 두 얼굴? 성폭행, 학대, 논문대필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처제를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논문 대필을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부제소, 기사 조건부 블라인드 처리)

2016서울조정 1504~150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1504·1505) , 뉴스1코리아 ^(1506·1507)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과장은 어디가고 네가 나와』 여성 공무원 넘어뜨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최신기사면) • 뉴스1코리아 : 『“과장 어디갔나”... ○○○○○○발전협의회 전 회장, 여성공무원 폭행』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기관장 재직 시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뉴스1코리아/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과장은 어디가고 네가 나와” 여성 공무원 넘어뜨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연합뉴스 2016년 10월 19일자 최신기사면)

2016서울조정 1508	(정정청구) 원○○ 對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법정싸움 ‘테디베어’... 한류스타, 전직 고위공무원 등 피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법적 분쟁에 있는 상대방과 오랜 동료였으며, 특정 캐릭터 상표의 디자인 및 상표권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단독] 법정 싸움 ‘테디 베어’... 한류스타·전직 고위공무원 등 피해”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510·1511	(반론·손배청구) 정○○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한밤에 바다로 돌진한 승용차! 왜 바다로 돌진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보도하고 동의 없이 병실을 무단 촬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6서울조정 1512	(정정청구) ○○회계법인 對 조세일보
조 정 대 상	『○○회계법인 대우조선 외부감사 덤핑수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계 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 용역을 덤핑으로 수주함으로써 분식회계를 확대한 원흉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회계법인 “공정경쟁 통해 대우조선 외감 수주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조세회계면)

2016서울조정 1513, 1514	(각 정정청구) 이○○ 對 한겨레 ⁽¹⁵¹³⁾ , 인터넷 한겨레 ⁽¹⁵¹⁴⁾
조 정 대 상	『학교 불량급식 뒤편 ‘17배나 비싼 시래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9월 2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학교 급식자재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0월 26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25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515	(정정청구) 새누리당 對 땀지일보
조 정 대 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단식 3일차 통화 내용 미래로부터 ... 입수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투쟁 중에 몰래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허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정치사회면)

2016서울조정 1516~1519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마사회 對 SBS-TV ^(1516·1517) , SBS 콘텐츠허브 ^(1518·1519)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마사회, A양 이용해 허위 홍보 ... 황당한 가족』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8월 27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마사회가 재활 승마사업 홍보를 위해 장애 아동의 재활 내용을 허위로 과장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20	(정정청구) 남○○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및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현직 경찰, 조폭과 수억원 거래 ... 돈 거래만?』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0일자 및 7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 간부인 신청인이 고리의 사채놀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21	(정정청구) 심○○ 對 인터넷 경기북부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선관위, 국민의당 심○○ 위원장 수사의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모 정당 지역위원장인 신청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후속보도 - 동의 후 보도)

2016서울조정 1522	(정정청구) 예금보험공사 對 프라이مج체
조 정 대 상	『예금보험공사 성추행 ... 너도나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오 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예금보험공사 성추행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1523~1526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2인 對 한겨레 ^(1523·1524) , 인터넷 한겨레 ^(1525·1526)
조 정 대 상	『‘레드오션’ 노무업계 ‘창조’를 믿는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8월 13일자 3면, 4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2일자 사회노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과거 모 컨설팅 회사의 행동대장으로 노조 파괴를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0월 29일자 4면)
2016서울조정 1527~1530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CBS-R ^(1527·1528) , 노컷뉴스 ^(1529·1530)
조 정 대 상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KBS는 정말 별나게 지진 보도를 했다』 제하의 보도 (CBS-R 2016년 9월 23일자, 노컷뉴스 9월 24일자 문화/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KBS가 지난 9월 지진 발생 당시 특보를 녹장 방송하는 등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6년 10월 21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531~153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구○○ 對 일요신문 ^(1531~1533) , 인터넷 일요신문 ^(1534~1536)
조 정 대 상	『불법 전매 않고 법 지켰더니 손해만』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6년 7월 10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신문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철거 상가의 공동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이 토지 매입을 제안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금전적 배상 없이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537	(반론청구) 김○○ 對 아이에스플러스닷컴
조 정 대 상	『○○○, 비리 직원에 거액 퇴직 위로금은 관행』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1일자 축구면)
신청인 주장	모 체육협회 직원인 신청인이 비리 때문에 퇴사하면서 거액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프로축구면)
2016서울조정 1538·1539	(정정·손배청구) (사) 한국음반산업협회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음산협, 집행부 둘러싼 내홍 절정』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자의 피선거권 문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음산협, 집행부 둘러싼 내홍 절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사건사고면)

2016서울조정 1540·1541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가평투데이
조 정 대 상	『누가, 80대 노인을 거리로 내몰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가평군이 신청인에게 불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누가, 80대 노인을 거리로 내몰았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4일자 기획면)
2016서울조정 1542~1552, 1640~1650	(각 손배청구) 강○○ 對 인터넷 국민일보 ⁽¹⁵⁴²⁾ , 동아닷컴 ⁽¹⁵⁴³⁾ , e머니투데이 ⁽¹⁵⁴⁴⁾ , 인터넷 서울경제 ⁽¹⁵⁴⁵⁾ , 세계닷컴 ⁽¹⁵⁴⁶⁾ , 스타뉴스 ⁽¹⁵⁴⁷⁾ , 인터넷 스포츠동아 ⁽¹⁵⁴⁸⁾ , 위키트리 ⁽¹⁵⁴⁹⁾ , 조선닷컴 ⁽¹⁵⁵⁰⁾ ,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¹⁵⁵¹⁾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⁵⁵²⁾ , CBC뉴스 ⁽¹⁶⁴⁰⁾ , 매경닷컴 ⁽¹⁶⁴¹⁾ , 민중의소리 ⁽¹⁶⁴²⁾ , 비즈엔터 ⁽¹⁶⁴³⁾ , 스타서울TV ⁽¹⁶⁴⁴⁾ , 스타투데이 ⁽¹⁶⁴⁵⁾ , 아시아경제닷컴 ⁽¹⁶⁴⁶⁾ , 스포츠한국미디어 ⁽¹⁶⁴⁷⁾ , 엑스포츠뉴스 ⁽¹⁶⁴⁸⁾ , 티브이데일리 ⁽¹⁶⁴⁹⁾ , 한경닷컴 ⁽¹⁶⁵⁰⁾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민일보 : 『배우 강○○, 영화 ‘○○’ 주○○ 감독 빚 보증 섰다가 파산 선고』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시사면) - 동아닷컴 : 『강○○, 주○○ 감독 빚 보증 섰다가 파산 절차』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연예면) - e머니투데이 : 『배우 강○○, 주○○ 감독 빚 보증 서다 파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뉴스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배우 강○○, 주○○ 감독에 명의 빌려줬다 파산 절차 …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방송연예면) - 세계닷컴 : 『배우 강○○, 주○○ 감독 빚 보증 섰다가 ‘파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스포츠면) - 스타뉴스 : 『‘파산’ 강○○ “바보 같았다 … 전화위복 되길” 무명 여배우의 고백』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영화면) 외 1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배우 강○○, 주○○ 감독 빚 보증 섰다 파산절차 밟는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홈면) 외 15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파산선고 받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e머니투데이, 인터넷 서울경제, 세계닷컴, 스타뉴스, 인터넷 스포츠동아, 조선닷컴,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인터넷 헤럴드경제, CBC뉴스, 매경닷컴, 민중의소리, 비즈엔터, 스타서울TV, 스타투데이, 스포츠한국미디어, 엑스포츠뉴스, 티브이데일리, 한경닷컴/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위키트리, 아시아경제닷컴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위키트리 : 『“이름 빌려 달라” 영화감독에 속아 파산한 배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2016년 10월 14일자 영화면) - 아시아경제닷컴 : 『A여배우, 주○○ 감독에 속아 파산 절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2016년 10월 25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1553, 1554, 1661, 1662	(각 정정청구) 전○○ 對 SBS-TV ⁽¹⁵⁵³⁾ , SBS 콘텐츠허브 ^(1554,1662) , SBS-R ⁽¹⁶⁶¹⁾
조 정 대 상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실명 아이 치료비 책거간 변호사 수임료 관련 의혹제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4일자, SBS 콘텐츠허브 7월 24일자 사회면) • SBS-R : 한수진의 시사전망대 프로그램 『아동 학대로 실명 ... 돈 가로챈 변호사 ‘파렴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5일자, SBS 콘텐츠허브 7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의뢰인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배상할 재산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555~1558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이데일리 ^(1555·1556) , 네이버 ^(1557·1558)
조 정 대 상	『‘警, ‘한술밥’식구들끼리 몸싸움 물의』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이데일리 2016년 7월 8일자 사회면, 네이버 7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동료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警, 몸싸움 물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이데일리 2016년 10월 28일자 사회면, 네이버 10월 28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559	(정정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법률구조공단, 만성 적자에도 수십 억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의 적법한 소송성과급 지급을 비난하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법률구조공단 “기준 바뀌 대상 늘어 ... 정부지원 확대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최신기사면)

2016서울조정 1560~1565	(각 정정·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1인 對 매일경제 ^(1560·1561) , 한국경제 ^(1562~1565)
조 정 대 상	• 매일경제 : 『연봉 8400만원 ○○○○○ ‘임금 올려달라’ 노조 파업』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1일자 18면) • 한국경제 : (1) 『생산직 직원, 하루 7시간 근무에 연봉 8400만원 받는다는데 ...』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17면) (2) 『○○○○○ 노조원 10%가 친인척 관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4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사측에 친인척 채용을 강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매일경제/사유 : 반론보도) • 조정불성립결정 (한국경제)
이 행 결 과	『○○○○○ 노조 “불법점거 아니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6년 11월 3일자 18면)
2016서울조정 1567~1570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채널A ^(1567·1568) , 인터넷 채널A ^(1569·1570)
조 정 대 상	(7시뉴스 및 아침뉴스 프로그램 『출동 여경 성희롱 ... 여경 성추행 늘어』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10월 4일자, 인터넷 채널A 10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여성 경찰인 신청인이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한 후 수치심에 출근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2016서울조정 1571, 1572, 1601, 1602, 1685, 1686	(각 정정·손배청구) 은평구 對 아시아투데이 ^(1571·1601) , 아시아투데이닷컴 ^(1572·1602) (각 정정청구) 아시아투데이 ⁽¹⁶⁸⁵⁾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⁶⁸⁶⁾
조 정 대 상	(1) 『건축물 등재 않고 불법 공연한 ‘숲속극장’』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불법 운영 의혹』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닷컴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3) 『불법 건물 짓고 공연장사한 서울 은평구 ... “파렴치한 행동, 즉각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닷컴 2016년 10월 7일자 사회면) (4) 『불법 건축물 판치는데 ... 손 놓고 있는 은평구』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아시아투데이닷컴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은평구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불법 공연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6년 11월 2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03	(정정청구) (사) ○○○○○○협회 對 인터넷 월간프리저던트
조 정 대 상	『핫이슈/○○○○○ 반칙과 뻔뻔함으로 막가는 ○○○○ 회장선거 파동 전말 “공산당 아래서도 20년 버틴 차○○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회장 선거에 불법과 반칙이 난무했고 당선이 무효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협회 반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메인면)
2016서울조정 1604~1606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경향신문 ⁽¹⁶⁰⁴⁾ , 주간경향 ⁽¹⁶⁰⁵⁾ , 인터넷 주간경향 ⁽¹⁶⁰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朴 “대통령직 사퇴” 실언에 뺨 터졌다던 차은택』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8일자 사회면) - 주간경향 : 『박근혜 비선실세 차은택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36면, 37면, 인터넷 주간경향 10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한 2013 한국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와 5·16 쿠데타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朴 “대통령직 사퇴” 실언에 뺨 터졌다던 차은택』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주간경향 : 『박근혜 비선실세 차은택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07~163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연합뉴스 ^(1607~1612) , 인터넷 경향신문 ^(1613~1615) , 인터넷 국민일보 ^(1616~1618) , 인터넷 한겨레 ^(1619~1621) , 인터넷 한국일보 ^(1622~1624) , SBS 콘텐츠허브 ^(1625~1627) , 인터넷 YTN ^(1628~1630) , EBS-TV ^(1631~1633)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1) 『“교육부, ○○대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전국면) (2) 『2017학년도는 새로운 민주 ○○대로 시작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전국면) - 인터넷 경향신문 : 『교육부, ○○대 이사 9명 전원 자격 박탈』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6년 끈 ‘○○대 사태’ 마무리되나 … 교육부, 이사 전원 임원

조 정 대 상	취임 승인 취소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교육부, 옛 재단 쪽 ○○학원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교육부 임원 취임 승인 통보, ○○대 사태 해결 전기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전국면) • SBS 콘텐츠허브 : 『교육부, ○○대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통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모 대학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연합뉴스,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한겨레/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충분히 취재한 후 보도한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성립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YTN, EBS-TV/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전국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전국면) • SBS 콘텐츠허브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전국면) 외 1건
2016서울조정 1634~1639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SBS 콘텐츠허브 ^(1634·1635) , 인터넷 일요신문 ^(1636·1637) , 인터넷 한겨레 ^(1638·1639)
조 정 대 상	• SBS 콘텐츠허브 : 『학생에 ‘갑질’ ○○대 교수, 이번엔 시간 강사 무더기로 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전북대 ‘갑질 교수’ 논란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대 무용과 교수, 이번엔 시간강사 일방해촉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강의 예정이던 시간강사들을 무더기로 교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한겨레/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일요신문/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대 무용과 교수, 이번엔 시간강사 일방 해촉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6년 11월 16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51~166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1651~1653) , 조선닷컴 ^(1654~1656) (각 정정·손배청구) 서울경제 ^(1657·1658) , 인터넷 서울경제 ^(1659·1660)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고임금 투톱만 남은 추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1면, 조선닷컴 10월 3일자 사회면) (2) 『착취와 쟁취 ...』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3면, 조선닷컴 10월 3일자 사회면) - 서울경제 :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해도 임금손실 '0'... 파업은 민노총 지원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2면, 인터넷 서울경제 9월 3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산하 노조들의 파업이 불법이고 기득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63·1664	(정정·손배청구) 이○○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천경자 위작논란 미인도 습작추정 스케치 발견』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2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친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습작본이 존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22면)
2016서울조정 1665	(정정청구) 백○○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디자인 ○○학교” 제멋대로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이 운영하는 디자인 학원이 현행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666	(손배청구) 권윤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네이밍, 사람 이름을 딴 법안 Top 5』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일명 ‘유병언법’을 소개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네이밍, 사람 이름을 딴 법안 Top 5』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삭제 (2016년 9월 2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67~1669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2인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비리 사학재단 배 불리다 퇴출위기 처한 대학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사학 비리의 온상이고 전 이사장이 학교를 망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및 김○○ 전 총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70, 1671	(각 정정청구) ○○○○○협회 서울특별시○○○○ 對 동아일보 ⁽¹⁶⁷⁰⁾ , 동아닷컴 ⁽¹⁶⁷¹⁾
조 정 대 상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 설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0월 4일자 1면, 동아닷컴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축사가 내진설계는 역량이 부족한 비전문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672~1675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 ^(1672·1673) , KBS미디어 ^(1674·1675)
조 정 대 상	(1) 9시뉴스 프로그램 『고교 女배구팀 코치, 학생들 수차례 성추행 ‘충격’』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9월 13일자, KBS미디어 9월 13일자 스포츠면) (2) 9시뉴스 프로그램 『배고 코치 성추문 사태 … 교육청 알고도 묵인』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9월 20일자, KBS미디어 9월 20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고교 여자 배구팀 코치의 성추행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9시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중 신청인 관련 영상 삭제 (KBS미디어 2016년 10월 28일자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676	(손배청구) 신○○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이렇게 나랏돈 타라”… 줄줄 새는 탈북자 지원금』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2일자)
신청인 주장	탈북자 취업지원금 악용 사례를 보도하면서 아르바이트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2016서울조정 1677·1678	(정정·손배청구) ○○○○○○○○○○○○○○○○○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1) 『언론 유명세 ‘조희팔 검거단’ 檢수사 연루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2) 『고소당한 ○○○의 ‘700억대 건물 부당취득 의혹사건’, 그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3)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희팔 검거단(○○○)’,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4) 『8000억대 사기에 남은건 ‘700억대 건물’… 개발업체 - ○○○○○○ ‘소유권 게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범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거액의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79·1680	(정정·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여자는 공대가면 공주” 교수발언 성차별 VS 학생들이 왜곡』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수업중 여성 비하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H대 A교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81, 1682	(각 정정청구) 이○○ 對 TV조선 ⁽¹⁶⁸¹⁾ , 인터넷 TV조선 ⁽¹⁶⁸²⁾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갤노트 교환 제품도 폭발 주장』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리콜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교환품도 폭발했다고 주장한 신청인이 삼성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683, 1684	(각 정정청구) ○○○○○협회 對 동아일보 ⁽¹⁶⁸³⁾ , 동아닷컴 ⁽¹⁶⁸⁴⁾
조 정 대 상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 설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0월 4일자 1면, 동아닷컴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축사가 내진설계는 역량이 부족한 비전문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보도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2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687	(정정청구) (주) ○○○ 對 문화뉴스
조 정 대 상	『○○○ 물티슈 설립자, 알고보니 ‘벤틀리 물고 졸피뎀 질주 男’』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688	(정정청구) (주) ○○○○○○○○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국내 크라우드펀딩·P2P 1세대의 몰락』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경제면) (2) 『국내 크라우드 펀딩·P2P 1세대의 몰락』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 대표가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내 크라우드펀딩·P2P 1세대의 몰락』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11월 7일자 금융증권면)

2016서울조정 1689	(정정청구) (학) ○○학원 對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또 오사카 ‘험한 논란’… 통학 증명서에 ‘조센진’ 표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이 한국 학생에게 통학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690, 1691	(각 정정청구) (재) 케이스포츠 對 인터넷 한겨레 ⁽¹⁶⁹⁰⁾ , 인터넷 경향신문 ⁽¹⁶⁹¹⁾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겨레 : 『K스포츠 박과장의 ‘수상한 독일 출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정치면) 외 1건 - 인터넷 경향신문 : 『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최순실 딸의 독일 전지훈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지원했으며 국내 대기업에 독일 현지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706·1707	(정정·손배청구) 고○○ 외 1인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웨딩 컨설팅협회 또 다른 갑질 자행?』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웨딩 컨설팅 소상공인들에게 담합을 요구하는 갑질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08~1729	(각 정정·손배청구) 군인권센터 對 뉴스1코리아 ^(1708·1709) , 인터넷 국민일보 ^(1710·1711) , 동아일보 ^(1712·1713) , 동아닷컴 ^(1714·1715) , 문화일보 ^(1716·1717) , 인터넷 문화일보 ^(1718·1719) , 세계일보 ^(1720·1721) , 세계닷컴 ^(1722·1723) , 조선닷컴 ^(1724·1725) , 아주뉴스 ^(1726·1727) , 뉴스천지 ^(1728·1729)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나라 위해 전사했지만 빈소는 쓸쓸”… 어느 제독의 애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5일자 극빙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인 헬기 추락사고 순직 가족』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9일자 시사면) - 동아일보 : 『순직 헬기 장병들의 爲國 헌신과 유족의 눈물겨운 절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8일자 27면, 동아닷컴 10월 8일자 오피니언면) - 문화일보 : 『순직·전사 장병 유족의 의견함 … 대한민국의 귀감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39면, 인터넷 문화일보 10월 7일자 오피니언면) - 세계일보 : 『순직·전사 장병 유족의 의견함 … 대한민국의 귀감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8일자 23면, 세계닷컴 10월 7일자 사설면) - 조선닷컴 : 『한 해군 제독의 애도 … “세월호·백남기 빈소는 북적, 순직 군인 빈소는 쓸쓸 … 눈물이 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군인권센터가 순직 장병 영결식을 거부하라고 유가족을 선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30	(정정청구) 방송통신위원회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안무치 태도 논란 … 국감 지각 두고 말 바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IT/과학면)
신청인 주장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지각 출석한 것을 두고 스스로 적절한 처신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31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여성경제신문
조 정 대 상	『“30만원이나 더 비싸다” ○○ 효사랑 휴가 프로그램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직원 복지 일환으로 시행한 여행 프로그램이 시중가보다 비싸고 업체와의 뒷거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효사랑 휴가 프로그램 뒷거래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산업면)

2016서울조정 1732	(정정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철도 파업 21일째 ‘콩나물 객차’… 무궁화호 22분 지연 운행』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철도파업 기간중 구미역 열차의 지연 출발이 기관사의 운전미숙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철도 파업 21일째 ‘콩나물 객차’… 무궁화호 22분 지연 운행』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11월 4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763, 1764	(각 정정청구) ○○대학교 ○○병원 對 MBC-TV ⁽¹⁷⁶³⁾ , iMBC ⁽¹⁷⁶⁴⁾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대 ○○병원 직원 돈으로 병원 신축?』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0월 16일자, iMBC 10월 1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직원들에게 병원신축기금을 강제로 모금하고 불응자에게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학교 ○○병원 신관신축 기부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12월 6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6서울조정 1765	(정정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對 연합뉴스TV
조 정 대 상	10시뉴스 프로그램 『30년 된 아파트 속 싹튼 불화 ... 첨예하게 갈린 주민들』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도제한이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66	(정정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대,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 사업 참여 압박”』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육부 ○○대에 평단 사업 참여 종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767, 1768	(각 반론청구) 박○○ 對 SBS-TV ⁽¹⁷⁶⁷⁾ , SBS 콘텐츠허브 ⁽¹⁷⁶⁸⁾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사용 중지 보형물 적극 추천 ... 위험한 가슴 성형』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0월 17일자, SBS 콘텐츠허브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가슴성형 보형물이 사용중지된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1769	(정정청구) 나경원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일베發 ‘빨간 우의 가격설’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의 타격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70	(정정청구) ○○○○○○○ 유한공사 對 스틸데일리
조 정 대 상	『수입 철근, 품질 경쟁력 강화로 ‘정면승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분석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철강 제품이 품질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강철, “철근 품질 지적 부당” 피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분석기획면)

2016서울조정 1771	(반론청구) 서울서초경찰서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 제식구 감싸기?』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여대생 성추행 혐의 경찰관을 수사한 신청인 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실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772, 1773	(각 정정청구) 광상도 對 TV조선 ⁽¹⁷⁷²⁾ , 인터넷 TV조선 ⁽¹⁷⁷³⁾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몰랐다 … 있을 수 없는 일』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25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직접 유출할 수도 있다고 신청인이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몰랐다 … 있을 수 없는 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인터넷 TV조선 2016년 11월 9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774	(손배청구) 한○○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남편의 20대 내연녀 머리카락 자르고 얼굴에 뜨거운 물 부은 주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보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75, 1797	(각 정정청구) ○○○○○○ 對 TV조선 ⁽¹⁷⁷⁵⁾ , 인터넷 TV조선 ⁽¹⁷⁹⁷⁾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의료보험 뺑튀기 ... 유학생 등친 대형 유학원』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2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학원에서 유학생 의료보험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76~1778	(각 정정청구) 국군○○○○○부대 對 JTBC ⁽¹⁷⁷⁶⁾ , 인터넷 JTBC ⁽¹⁷⁷⁷⁾ , 인터넷 일 요신문 ⁽¹⁷⁷⁸⁾
조 정 대 상	• JTBC : (1) 뉴스룸 프로그램 『최전방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 군 검찰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1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정치면) (2) 뉴스룸 프로그램 『대북 확성기까지 비리 의혹 ... 납품가 80억 뺑튀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정치면) • 인터넷 일요신문 : 『국방부 대북 확성기 '성능 미달' 사실상 시인? ... 은밀히 장비 교체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군의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에 업체선정 의혹 및 가격 부풀리기 비리가 포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779·1780	(각 반론청구) 전남개발공사 對 시사저널 ⁽¹⁷⁷⁹⁾ , 인터넷 시사저널 ⁽¹⁷⁸⁰⁾
조 정 대 상	『전남개발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사지 내몰렸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9월 9일자 24면~26면, 인터넷 시사저널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남개발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사지 내몰렸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11월 28일자 24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81·1782	(정정·손배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휴대전화 잃어버렸다”... 선수촌 몰카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여자탈의실 몰래 카메라 촬영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찍은 운동 선수에게 동영상을 폐기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6서울조정 1783~1788	(각 정정청구) ○○○○위원회 對 신아일보 ^(1783,1785,1786) , 인터넷 신아일보 ^(1784,1787,1788)
조 정 대 상	(1) 『‘남원○○○’ 염불보다 잣밥(?)』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9월 19일자 13면, 인터넷 신아일보 9월 18일자 지방네트워크면) (2) 『○○○ 부스 임대사업 위법 강행 이유는?』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9월 22일자 16면, 인터넷 신아일보 9월 21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주최하는 축제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관 주도의 축제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춘향제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12월 2일자 20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2일자 지방네트워크면)

2016서울조정 1789, 1790	(각 반론청구) 국가보훈처 외 1인 對 월간조선 ⁽¹⁷⁸⁹⁾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¹⁷⁹⁰⁾
조 정 대 상	『김일성 친척·좌익 인사에겐 ‘건국훈장’... 독립운동한 임정 고문·고승은 서훈 불가』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6년 8월호 62면~71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8월 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가보훈처가 김일성의 친척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한 것을 두고 북한 정권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2016서울조정 1791·1792	(정정·손배청구) 김○○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시흥시 특혜 의혹에 공무원 개입설 일파만파 파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가 모 지자체의 의류수거함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데 특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793, 1871	(반론청구) 해양수산부 對 슈핑데일리
조 정 대 상	(1) 『해양수산부도 비선 실세 측근 지원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해운면) (2) 『해양부 3억 5천만원 강제모금 이제 보니 ...』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조타실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가 소속 산하 재단이 차은택씨와 계약하는데 개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 『해수부 비선 실세 측근 지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해운면) (2) 『해수부 3억 5천만원 강제모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조타실면)

2016서울조정 1794	(정정청구) 류○○ 對 SBS 콘텐츠허브
조 정 대 상	『황우석 다시 보기 ... 줄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취재파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팀에서 제 1저자 및 특허 지분을 요구해 갈등을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우석 다시 보기 ... 줄기세포 특허의 의미와 미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취재파일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95, 1796	(각 반론청구) 배○○ 對 경향신문 ⁽¹⁷⁹⁵⁾ , 인터넷 경향신문 ⁽¹⁷⁹⁶⁾
조 정 대 상	『검찰 ‘특수부 검사’ 전원 투입』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0월 25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건설 사업 의혹의 당사자이거나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1월 16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1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798	(반론청구) 정○○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백남기 농성장의 한 대자보를 반박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故 백남기 씨 농성장의 흡연장에 대자보를 붙여 반말로 청소년의 흡연을 문제 삼으며 강압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799·1800, 1811~1818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 ^(1799·1800) , 뉴스엔 ^(1811·1812)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1813·1814) , 이슈타임 ^(1815·1816) , 헤럴드POP ^(1817·1818)
조 정 대 상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연예면) 외 1건 - 뉴스엔 : 『김○○, 3월 폭행 사건 이틀전 뺑소니 검거 감사패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방송면) 외 1건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 『김○○ 측 “폭행 사건 징역, 억울한 부분 항소 준비중”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연예가화제면) - 이슈타임 :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집행 유예 선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연예면) 외 1건 - 헤럴드POP : 『김○○ 측 “불미스러운 일 죄송, 억울한 부분 항소 준비 중”』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방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먼저 맥주를 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스포츠조선 : 『[김○○ 측 “폭행 사건 물의 죄송 … 억울한 부분 항소 고려중”(입장전문)],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연예면) - 뉴스엔 : 『(정정보도문)김○○ 측이 주장한 A양과 술자리 상해사건 전말 “의도 치않아, 항소준비”/김○○, 3월 폭행 사건 이틀전 뺑소니 검거 감사패 받았다 [이슈와치]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방송면)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 『[정정보도문] 김○○ 측 “폭행 사건 징역, 억울한 부분 항소 준비중”(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연예면) - 이슈타임 : 『[정정보도] 「배우 김○○, 2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집행 유예 선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연예스포츠면) - 헤럴드POP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방송면)
2016서울조정 1801·1802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인협
조 정 대 상	『국회 국정감사의 권위 땅바닥에 … “줄고 자고 하품은 예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정치&외교면)
신청인 주장	피감기관의 관계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 도중 잠이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회 국정감사의 권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8일자 정치&외교면)
2016서울조정 1803, 1824~1826	(각 정정청구) 원○○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⁸⁰³⁾ , 헤럴드경제 ⁽¹⁸²⁴⁾ , 한겨레 ⁽¹⁸²⁵⁾ , 인터넷 한겨레 ⁽¹⁸²⁶⁾
조 정 대 상	- 헤럴드경제 : 『감히 날 검문? 최순실, 靑 경호 책임자 경질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6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10월 28일자 사회면) - 한겨레 : 『최순실, 행장관 차 타고 청와대 수시로 드나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1일자 정치일반면)
신청인 주장	청와대를 출입하는 최순실 씨를 일선 경찰들이 검문검색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경질성 인사를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헤럴드경제, 한겨레/사유 : 정정보도) - 각 취하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한겨레/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8일자 2면) -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804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복지관장이 구의원 부인의 지역구에 물품을 살포했다가 적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의원인 부인의 지역구에 물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복지관장이 구의원 부인의 지역구에 물품을 살포했다가 적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805~1808	(각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¹⁸⁰⁵⁾ , 조선닷컴 ⁽¹⁸⁰⁶⁾ , 파이낸셜뉴스 ⁽¹⁸⁰⁷⁾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⁸⁰⁸⁾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코레일 파업 한 달, 시민이 참아줄테니 安全 우선』 제하의 사설 (2016년 10월 25일자 35면, 조선닷컴 10월 25일자 오피니언면) - 파이낸셜뉴스 : 『철도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4일자 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월 23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진행하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809·1810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재난방송 주관사’ KBS, 경주 지진때도 드라마 내보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진 재난방송을 요청받고도 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819, 1823	(각 반론청구) 황○○ ⁽¹⁸¹⁹⁾ , 박○○ ⁽¹⁸²³⁾ 對 엠스플뉴스
조 정 대 상	『김○○ 한화 2군 ‘인권 침해’ 지시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한 프로야구 구단의 감독이 2군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서울조정 1820, 1872~1874, 1976~1985, 1997,1998	(각 정정청구) ○○○○○○ 對 뉴스1코리아 ⁽¹⁸²⁰⁾ , 노컷뉴스 ⁽¹⁸⁷²⁾ , 아시아경제닷컴 ^(1873,1980) , 인터넷 경향신문 ⁽¹⁸⁷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¹⁹⁷⁶⁾ , 뉴시스 ⁽¹⁹⁷⁷⁾ , 연합뉴스 ⁽¹⁹⁷⁸⁾ , 브레이크뉴스 ⁽¹⁹⁷⁹⁾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⁹⁸¹⁾ , 일요신문 ⁽¹⁹⁸²⁾ , 온라인 중앙일보 ⁽¹⁹⁸³⁾ , 국제뉴스 ⁽¹⁹⁸⁴⁾ , 축체뉴스 ⁽¹⁹⁸⁵⁾ , 한국공보뉴스 ⁽¹⁹⁹⁷⁾ , 인터넷 CJ헬로비전 ⁽¹⁹⁹⁸⁾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하강시설 ‘○○○’ 안전 점검에서 18개 수리, 2개 이용 제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절반 가량 수리 필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전국 ○○○ 중 절반이 안전에 문제 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40곳 중 18곳 수리 필요, 2곳은 이용 제한 필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전국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하강 레포츠 시설, 절반은 위험 노출 … 국민안전처 점검 결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정보화면) • 뉴시스 : 『전남도, ○○○ 재난 관리 대상 신규 지정』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광주/전남면) • 연합뉴스 : 『전남도, ○○○ 안전 관리 제도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외 8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레포츠 시설에서 안전 사고가 속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노컷뉴스/내용 : 기사수정)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뉴시스, 연합뉴스, 브레이크뉴스, 아시아투데이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축체뉴스, 한국공보뉴스/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일요신문, 국제뉴스, 인터넷 CJ헬로비전/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기사 제목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점검에서 18개 수리·2개 이용제한』로 수정 (2016년 11월 7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절반가량 수리 필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삭제 (2016년 12월 5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기사 제목을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절반이 안전에 문제 있

이 행 결 과	다』로 수정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안전처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40곳 중 18곳 수리 필요, 2곳은 이용 제한 필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삭제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전국 하강 레포츠 시설 40곳 중 18곳 수리 필요, 2곳은 이용 제한 필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상호 삭제 (2016년 12월 5일자 정보화면) - 뉴스1 : 기사 제목을 『전남도, 하강 레포츠 시설 재난 관리 대상 신규 지정』로 수정 (2016년 12월 5일자 광주/전남면) - 연합뉴스 : 『전남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관리 제도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2016서울조정 1821·1822	(정정·손배청구) 울산광역시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1) 『울산 공동주택 비리 몸통 김기현 시장 거론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전국면) (2) 『김기현 울산시장이 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울산시장이 지역 공동주택 입찰 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울산 공동주택 관련 울산시장에 대한 보도를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부산/경남면)
2016서울조정 1827~1834, 1835~1842	(각 정정청구) 사광기 ^(1827~1834) , (주)세계일보 ^(1835~1842)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1827,1835) , 아시아경제닷컴 ^(1828,1838) , 인터넷 서울경제 ^(1829,1830,1836,1837) , 조선닷컴 ^(1831,1839) , 오마이뉴스 ^(1832,1840)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833,1841) , 스타서울TV ^(1834,1842)
조 정 대 상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정윤희 문건 터뜨렸던 세계일보, 수상쩍은 최순실 인터뷰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Red면) - 아시아경제닷컴 : 『최순실 인터뷰, 통일교 통해 성사說 ... 당사자는 부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경제 : (1) 『최순실, ‘통일교 재단 도움 받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2) 『최순실 ‘통일교 S씨’ 伊 대사로 추천했었다. 조응천 반대로 무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조선닷컴 : 『최순실 · 정윤희와 세계일보의 묘한 인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정치면)

조 정 대 상	• 오마이뉴스 : 『“특급 정보 7~8개 공개되면 대통령 하야” 통일교는 “국정농단” 알고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스타서울TV :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각종 의혹 쏟아져 ...“정유라,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인 듯”』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세계일보가 최순실 씨와 인터뷰를 한 것이 전(前) 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미디어오늘,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서울경제/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오마이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서울경제,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스타서울 TV/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조선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9일자 Red면) • 아시아경제닷컴 :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정치면) • 인터넷 서울경제 :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정치면) • 오마이뉴스 : 『[반론보도문] <통일교는 ‘국정농단’ 알고 있었나?>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843	(정정청구) ○○○○○○○○○○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가려진 죽음 - ○○시립○○○ 129명 사망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에서 인권유린 및 사망자 은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844	(정정청구) ○○○○○복지관 對 일다
조 정 대 상	『“가임기 여성은 팔라야” 상사의 발언이 농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노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가임기 여성은 팔라야” 상사의 발언이 농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노동면)
2016서울조정 1845·1846	(정정·손배청구) 흥○○ 對 종로저널
조 정 대 상	『유독가스와 악취로 못살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공소가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악취 풍겨 주민들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4면)
2016서울조정 1847~1863	(각 반론청구) 김경재 對 뉴시스 ⁽¹⁸⁴⁷⁾ , 인터넷 이데일리 ⁽¹⁸⁴⁸⁾ , 아주뉴스 ⁽¹⁸⁴⁹⁾ , 조선일보 ⁽¹⁸⁵⁰⁾ , 조선닷컴 ⁽¹⁸⁵¹⁾ , 연합뉴스 ⁽¹⁸⁵²⁾ , 한경닷컴 ⁽¹⁸⁵³⁾ , SBS 콘텐츠허브 ⁽¹⁸⁵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⁸⁵⁵⁾ , 쿠키뉴스 ⁽¹⁸⁵⁶⁾ , 인터넷 MBN ⁽¹⁸⁵⁷⁾ , 매경닷컴 ⁽¹⁸⁵⁸⁾ , 인터넷 연합뉴스TV ⁽¹⁸⁵⁹⁾ , 인터넷 시사저널 ⁽¹⁸⁶⁰⁾ , 인터넷 스포츠경향 ⁽¹⁸⁶¹⁾ , 인터넷 서울신문 ⁽¹⁸⁶²⁾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¹⁸⁶³⁾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 취업알선 사기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취업 알선’ 사기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 아주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혐의 피소 당해 ... 무고로 맞고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1일자 사회면) • 조선일보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고발했던 고소인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12면, 조선닷컴 10월 12일자 사회면) 외 1건 • 연합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 ... 김 “무고로 고소할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 한경닷컴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 ... 김 “무고로 고소할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2일자 사회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취업 알선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시스, 조선일보, 조선닷컴/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연합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이데일리, 아주뉴스, 한경닷컴,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인터넷 MBN, 매경닷컴,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시사저널, 인터넷 스포츠경향,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뉴시스 :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 사기 혐의 고소인, 고소 취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4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당해'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고발했던 고소인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추가 (2016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 한경닷컴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사회면) 외 9개 매체

2016서울조정 1864·1865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 딸 ○○이』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분만 과정을 소홀히 해 신생아를 가사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 딸 ○○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7년 1월 16일자 뉴스면)

2016서울조정 1866·1867, 1877·1878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한국일보 ^(1866·1867) , 조선일보 ^(1877·1878)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마사회 사업에도 崔 입김 미쳤다 ... 차은택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5면) - 조선일보 : 『62억→100억, 89억→110억 ... 차은택이 수주하면 예산 꺾중』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5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차은택 커넥션의 영향으로 마사회 사업을 수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A02면)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A2면)
2016서울조정 1868	(정정청구)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울원자력본부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한울원전 온배수 사용한 수영장 피부병 속출 - 뒤늦게 알려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소포제를 사용했고 이를 수 십년간 무단 방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한울원전 온배수 사용한 수영장 피부병 속출 - 뒤늦게 알려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전국면)
2016서울조정 1869·1870	(정정·손배청구) (사) ○○○○○중앙회 외 2인 對 JTBC
조 정 대 상	저녁뉴스820 프로그램 『불참자에게도 위생교육 유료증』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속 모 지회가 유흥업소 위생교육을 하면서 돈을 받고 불참자를 이수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아침& 프로그램 『‘돈 받고 유료증 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3일자)

2016서울조정 1875·1876	(정정·손배청구) 정○○ 對 비아이코리아
조 정 대 상	『산업은행, 차세대 PMO 선정과정 ‘불공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금융IT면)
신청인 주장	모 은행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관리감독할 업체 선정 과정에 신청인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업은행, 차세대 PMO 선정과정 ‘불공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금융IT면)

2016서울조정 1879	(반론청구) ○○○○○○○○○노동조합 ○○지부 ○○○○지회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회사 상장 폐지 몰아가는 ○○페인트 폭력 노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파이낸셜컨슈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페인트 상장 폐지는 사측 불법 행위 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증권면)

2016서울조정 1880~188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N ^(1880·1881) , 인터넷 MBN ^(1882·1883)
조 정 대 상	리얼다큐쇼 프로그램 『이천년의 신비, 혼을 불러넣는 사람들』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5월 12일자, 인터넷 MBN 5월 12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작한 불상을 다른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강경 부처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6년 11월 23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2016서울조정 1884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디스패치뉴스
조 정 대 상	『특혜가 아니라 인연? ... YG, 수상한 복합 문화단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5일자 TODAY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모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특혜가 아니라 인연? ... YG, 수상한 복합 문화단지’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5일자 TODAY면)

2016서울조정 1885, 1886, 1891~1898 1901~1908, 1914~1917,	(각 정정청구) 나○○ ^(1885,1886) , ○○○○○○○○○○○ (주) ^(1895,1896) , ○○○○○○○○○○○ (주) ^(1901,1902) , 조○○ ^(1903,1904) , 방○○ ^(1914,1915) , 이○○ ^(1916,1917) 對 시사브리핑 ^(1885,1895,1902,1904,1915,1917) , 프라임경제 ^(1886,1896,1901,1903,1914,1916) (각 정정·반론청구) 김○○ ^(1891~1894) , ○○○○○○○○○○○ (주) ^(1897~1898) , 의왕도시공사 ^(1905~1908) 對 시사브리핑 ^(1891~1892,1897~1898,1907~1908) , 프라임경제 ^(1893~1894,1905~1906)
조 정 대 상	- 시사브리핑 : 『잡음 끊이지 않는 ‘○○시 도시개발 사업’, 김○○ ○○시장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문제의 핵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정치면) - 프라임경제 : 『김○○ ○○시장 둘러싼 ‘특혜의혹’... 대체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모 지자체 산하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 해당 지자체장의 특혜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프라임경제/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시사브리핑)

2016서울조정 1887, 1888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중앙일보 ⁽¹⁸⁸⁷⁾ , 온라인 중앙일보 ⁽¹⁸⁸⁸⁾
조 정 대 상	『방사청, 한국형 헬기 수리온 엔진 결빙문제 숨겨』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9월 24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6서울조정 1889, 1890	(각 정정청구) 대통령경호실 對 KBS-1TV ⁽¹⁸⁸⁹⁾ , KBS미디어 ⁽¹⁸⁹⁰⁾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최순실 집에서 100m ... 靑경호원 숙소 “의문”』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11월 6일자, KBS미디어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경호실이 최순실 씨 거처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경호원 숙소를 정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靑경호원 숙소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6년 12월 15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899·1900	(정정·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1) 『최태민씨, 박 대통령·교회 앞세워 이권 챙겼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시사면) (2) 『최태민, 朴대통령 지렛대 삼아 한국교회 이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을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09·1910	(반론·손배청구) 박○○ 對 KBS-1TV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공무집행 방해? 경찰 “과잉 대응” 달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남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방해 누명까지 씌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11~1913	(각 반론청구) ○○회계법인 對 뉴스1코리아 ⁽¹⁹¹¹⁾ , 서울신문 ⁽¹⁹¹²⁾ , 인터넷 서울신문 ⁽¹⁹¹³⁾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 제2의 ○○회계법인 되나 ... 대우조선 사태로 최대 위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경제면) • 서울신문 : 『○○, 대우조선 ‘분식’ 유탄 ... 회계법인 ‘빅4 체제’ 깨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22면, 인터넷 서울신문 11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모 기업의 분식회계를 공모 혹은 방조했으며, 내부 인력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 제2의 ○○회계법인 되나 ... 대우조선 사태로 최대 위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2일자 금융증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 대우조선 ‘분식’ 유탄 ... 회계법인 ‘빅4 체제’ 깨지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1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1918, 1919	(각 정정청구) 조윤선 외 1인 對 한겨레 ⁽¹⁹¹⁸⁾ , 인터넷 한겨레 ⁽¹⁹¹⁹⁾
조 정 대 상	(1) 『조윤선의 정무수석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8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7일자 정치면) (2) 『문체부 장차관이 ‘예술인 블랙리스트’ 주역이었다니』 제하의 사설 (한겨레 2016년 11월 8일자 27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7일자 오피니언면) (3) 『문 “블랙리스트 청와대 공식문서 아닌 메일 팩스로 ... 기록 감추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8일자 6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

2016서울조정 1920	(손배청구) 김○○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국정원 직원 사칭 16년간 여성 역대 돈 뜯은 ‘진드기男’』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4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국정원 직원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 관련 사건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21	(정정청구) (주) ○○○○○○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1) 『경기 포천, ○○○○ 주배관 공사 “한국가스공사 표준시방서” 무시, 부실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사회면) (2) 『포천 ○○○○ 주배관 공사, 표준시방서 무시한 “괴” 문건 나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표준 매뉴얼과 다르게 부실 공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기포천 L.N.G 주배관 공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22·1923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KBS 뉴스9 시청률과 박근혜 지지율은 연동?』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KBS 뉴스9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KBS 뉴스 시청률과 박근혜 지지율 연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8일자 오피니언면)
2016서울조정 1924·1925, 1942~1945	(각 정정·손배청구) 나○○ 對 TV조선 ^(1924·1925, 1942·1943) , 인터넷 TV조선 ^(1944·1945)
조 정 대 상	(1) 뉴스쇼판 프로그램 『군 장성의 황당 성교육 “성희롱 피하려면 빨리 결혼해라”』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3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3일자 뉴스면) (2) 뉴스7 프로그램 『군 장성의 황당 성교육 “성희롱 피하려면 빨리 결혼해라”』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0월 14일자, 인터넷 TV조선 10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단장 재직 시 소속 여군 대상 교육에서 여성을 상품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軍 장성의 황당 성교육”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조선 2016년 1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26~1929	(각 정정·손배청구) 류○○ 對 경향신문 ^(1926·1927) , 인터넷 경향신문 ^(1928·1929)
조 정 대 상	『‘박정희 미화’ 소설 쓴 류○○, 박 대통령이 만든 재단 이사였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1월 8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이 차은택과의 인연 때문이고 최순실의 딸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6년 12월 14일자 2면)
2016서울조정 1930~193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1930·1931) , 한국경제 ^(1932·1933)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안봉근, 장차관의 대면보고 가로막고, 이재만, 청 인사위 들어와 간섭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4면) - 한국경제 : 『이○○ 전 인사처장 직격 인터뷰 ‘박근혜 정부 실패는 측근들 인사전횡 탓’』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정부 실패는 청와대 특정 인사들의 인사전횡 탓이라고 인터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34·1935	(정정·손배청구) 전○○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누가 서른살 먹은 여자와 결혼하겠나”... 한자 수업에 여성 혐오 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 강의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누가 서른살 먹은 여자와 결혼하겠나? ...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36~1939	(각 정정·반론청구) (사) ○○○○선교회 외 1인 對 인터넷 CTS기독교TV
조 정 대 상	『최태민 관련 (1)』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전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교 단체가 최태민씨와 유사한 이단 사이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선교회 및 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전체면)
2016서울조정 1940, 1941	(각 정정청구) 레이어소시에이트 對 동아일보 ⁽¹⁹⁴⁰⁾ , 동아닷컴 ⁽¹⁹⁴¹⁾
조 정 대 상	『한식 세계화 사업 곳곳에 ‘최순실 그림자’』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1월 14일자 8면, 동아닷컴 11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잡지사가 주관한 해외 한식 홍보 행사에 미르재단이 지원하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2월 1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946·1947	(정정·손배청구) 김○○ 對 월간큐스포츠
조 정 대 상	『김○○ 편집장은 대한○○연맹 전무이사를 꿈 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1면, 5면)
신청인 주장	모 스포츠연맹 임원인 신청인이 전무이사 자리 욕심에 연맹 수석부회장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48	(정정청구) 구○○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육남매의 상속 다툼, 누가 노모를 모시나』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막내 아들인 신청인이 부모님 집을 두고 큰 형님과 상속 다툼을 벌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49·1950	(정정·손배청구) 김○○ 對 JTBC
조 정 대 상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추적 2탄! 최순실 게이트』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최순실씨가 스포츠 스타들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및 금액지급)
이 행 결 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추적 2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2일자)
2016서울조정 1951~1954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SBS-TV ^(1951·1952) , SBS 콘텐츠허브 ^(1953·1954)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수술 마친 중환자 누워있는데 ... 난동부린 간호사』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1월 7일자, SBS 콘텐츠허브 11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간호사인 신청인이 수술을 마친 중환자의 침대를 흔들고 환자와 보호자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수술 마친 중환자 누워있는데 ... 난동부린 간호사』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55~1958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마사회 對 중앙일보 ^(1955·1956) , 온라인 중앙일보 ^(1957·1958)
조 정 대 상	『청와대, 마사회장 연임 불가 통보』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6년 11월 15일자 사회면, 온라인 중앙일보 1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마사회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 관련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59·1960	(정정·손배청구) ○○○○ (주) 對 일요신문
조 정 대 상	『김기현 울산시장이 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관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모 지자체와 유착하여 급성장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61	(정정청구) (주) ○○○○○○○○○ 對 더벨
조 정 대 상	『○○○○ 생명과학, 줄줄 샌 투자금』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아티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신약 개발 사업의 뚜렷한 성과도 없이 투자금을 허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962, 1963	(각 정정청구) 정동영 對 한국경제 ⁽¹⁹⁶²⁾ , 한경닷컴 ⁽¹⁹⁶³⁾
조 정 대 상	『‘트럼프 외교’ 나선 정동영 박 대통령 하야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11월 18일자 1면, 2면, 한경닷컴 11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드너 미국 상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박 대통령이 조속히 하야하도록 미국이 역할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6년 12월 9일자 2면, 한경닷컴 12월 8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1964·1965	(정정·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노조는 무조건 타도? 위험한 코레일 사장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오피니언면) (2) 『‘할인 폐지’로 떼돈 번 코레일, SRT 뜨자 ‘울며 겨자 먹기’ 할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경제정책면) (3) 『코레일 인력유출 심각 ... 낙하산 사장 독단에 ‘엑소더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경제일반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독단적인 경영 때문에 핵심 인재들이 빠져 나간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1966, 1967	(각 손해청구) 송○○ 對 MBN ⁽¹⁹⁶⁶⁾ , 인터넷 MBN ⁽¹⁹⁶⁷⁾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뉴스초점 - ‘나’를 사랑합니다』 제하의 보도 (MBN 2016년 9월 9일자, 인터넷 MBN 9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만든 웹툰을 뉴스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MBN 100만원, 인터넷 MBN 150만원)

2016서울조정 1968, 1969	(각 정정청구) 대통령경호실 對 채널A ⁽¹⁹⁶⁸⁾ , 인터넷 채널A ⁽¹⁹⁶⁹⁾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崔, 대통령과 전용기 동승” 증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11월 15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여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1970, 1971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1) 『벤처에도 최순실 입김? 정유라에 “名馬” 판 벤처기업, 정부·대기업서 수 십억 특혜 지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사회면) (2) 『신생업체가 순식간에 “창조 경제 주역”... 성장 배경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명마를 헐값에 판 대가로 정부 및 대기업에서 수십억 특혜를 받고 급성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최순실 게이트] 신생 벤처기업 1사 특혜 지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72, 1973	(각 정정청구) (사) ○○○○○협회 對 옵티클리크 ⁽¹⁹⁷²⁾ , 인터넷 옵티클리크 ⁽¹⁹⁷³⁾
조 정 대 상	『무리한 정관 개정 ... 가까운 시간·회비만 ‘평평’』 제하의 기사 (옵티클리크 2016년 10월 15일자 1면, 인터넷 옵티클리크 10월 18일자 기관단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 없이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협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옵티클리크 2016년 12월 15일자 1면, 인터넷 옵티클리크 12월 16일자 기관단체면)
2016서울조정 1974	(손배청구) ○○○○교회 외 1인 對 kidok.com
조 정 대 상	『“순교적 삶과 순교 증거하는 일 매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가 타 지역 노회에 불법 가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보도로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016서울조정 1975, 2033, 2065, 2074	(정정청구) 임○○ 對 이투데이 ⁽¹⁹⁷⁵⁾ 임○○ 외 1인 對 소비라이프 ⁽²⁰³³⁾ , 한국금융 ⁽²⁰⁶⁵⁾ , 아시아경제닷컴 ⁽²⁰⁷⁴⁾
조 정 대 상	• 이투데이 :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증권/금융면) 외 2건 • 소비라이프 : 『금감원, 전 정무위 국회의원 아들 ‘특채’… 부원장보 전격 교체』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뉴스면) • 한국금융 : 『금감원,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3일자 경제면) • 아시아경제닷컴 : 『[기자수첩] 금감원 특채 채용 의혹은 ‘현재 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모 기관에 채용된 것이 해당 기관장과의 친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1986	(정정청구) (주)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1인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법원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1천여만원 배상”』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원인이 김미화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변희재 손해배상 판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87~1989	(정정·반론·손배청구) 권○○ 對 e글로벌이코노믹
조 정 대 상	『朴 대통령 지지율 사실은 38.4%, 최순실 사태 드디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데 ... 박근혜 지지 박사모의 긴급 성명』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고 유병언씨의 과적 지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6서울조정 1990~1993, 1996	(각 정정·손배청구) 광상도 對 TV조선 ^(1990·1991) , 인터넷 TV조선 ^(1992·1993) (정정청구) 네이버 ⁽¹⁹⁹⁶⁾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최태민 묘, 김○○ 전 회장 공동소유 땅에 ...』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2월 16일자, 인터넷 TV조선, 네이버 1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은 것이 최순실씨의 영향 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취하 (네이버/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최태민 묘, 김○○ 전 회장 공동소유 땅에 ...』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및 VOD 재편집 (인터넷 TV조선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네이버 12월 1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1994, 1995	(각 반론청구) 장정숙 對 국민일보 ⁽¹⁹⁹⁴⁾ , 인터넷 국민일보 ⁽¹⁹⁹⁵⁾
조 정 대 상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6년 11월 21 일자 27면, 인터넷 국민일보 11월 2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고 확 대 해석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동성애 옹호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국민일 보 2016년 12월 30일자 기독교뉴스면, 인터넷 국민일보 12월 30일자 시사면)

2016서울조정 1999~2016	(각 정정청구) 장○○ 對 동아일보 ⁽¹⁹⁹⁹⁾ , 동아닷컴 ⁽²⁰⁰⁰⁾ , 서울신문 ^(2001,2002) , 인터넷 서울신문 ^(2003,2004) , 세계일보 ⁽²⁰⁰⁵⁾ , 세계닷컴 ⁽²⁰⁰⁶⁾ , 파이낸셜뉴스 ⁽²⁰⁰⁷⁾ , 인터넷 파이 낸셜뉴스 ⁽²⁰⁰⁸⁾ , 한국일보 ^(2009,2010) , 인터넷 한국일보 ^(2011,2012) , 연합뉴스 ^(2013,2014) , 오 마이뉴스 ⁽²⁰¹⁵⁾ , KBS미디어 ⁽²⁰¹⁶⁾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정상회의까지 주무른 차은택 ... 용역업체 선장 대가 수억 행거』 제 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10면, 동아닷컴 11월 11일자 정치면) • 서울신문 : (1) 『정부 새 상징도 ‘최순실 라인’ 작품』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9일자 정치면) (2) 『애초부터 ‘최순실표 태극’ 정해 놓고 오방색도 넣으려 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2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9일자 정치면)

조 정 대 상	• 세계일보 : 『송성각도 사표 ... 문체부 제 궤도 오르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5면, 세계닷컴 10월 31일자 정치면) • 파이낸셜뉴스 : 『‘최·차 라인’ 정리한 문체부, 정상화 속도내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6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월 31일자 문화면) • 한국일보 : 『인사·사업·예산 주무른 ‘문화계 황제’ 차은택』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5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28일자 생활면) 외 1건 • 연합뉴스 : 『문체부 최순실·차은택 라인 정리 ... 정상화 이뤄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최신기사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차은택 씨의 은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KBS미디어/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동아일보, 동아닷컴,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파이낸셜뉴스/사유 : 기사 노출 및 검색차단) • 각 취하 (세계일보, 세계닷컴,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서울신문 : 『정부 새 상징도 ‘최순실 라인’ 작품』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9일자 정치면)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 ‘송성각도 사표 ... 문체부 제 궤도에 오르나’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9일자 사고/알림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뉴스면) • 연합뉴스 : 『문체부 최순실·차은택 라인 정리 ... 정상화 이뤄지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30일자 최신기사면) • 오마이뉴스 : 『통합된 정부 상징 체계 로고, 소름끼치는 이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9일자 정치면) • KBS미디어 : 『명쾌한 해명 없이...“의혹 다 털고 투명한 문체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2일자 문화면)

2016서울조정 2017	(손배청구) 권○○ 對 티비리포트
조 정 대 상	『정준영 사건, 결국 상처만 남기고 ‘무혐의 → 용서’ 종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모 연예인의 전 여자 친구인 신청인을 나쁜 여자로 매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2018	(반론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예장 ○○ 김○○ 총회장, 시국 관련 담화문 발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교계교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이 이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예장 ○○ 김○○ 총회장, 시국 관련 담화문 발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7일자 교계교단면)
2016서울조정 2019	(정정청구) 신○○ 對 영등포신문
조 정 대 상	(1) 『국토부, 주민의견서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로 볼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면) (2) 『‘문래○○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주 협의회 추진 급물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1면) (3) 『“조합 방식 주민의견서, 과반수 미달로 반려”/“토지 등소유자 방식, 사업 시행자 명칭 승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추진중인 재개발 추진 방식이 해당 지역 주민 동의 미달로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20·2021	(정정·손배청구) 정○○ 對 귀금속경제신문
조 정 대 상	『2016년 11월 둘째 주 업종브리핑』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8면)
신청인 주장	모 보석 감정원이 폐업하자 신청인이 동일 상호로 개업하고 상호 등록출원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2022~2029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경향신문 ^(2022·2023) , 인터넷 경향신문 ^(2024·2025) , TV조선 ^(2026·2027) , 인터넷 TV조선 ^(2028·2029)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단독]김종 전 차관 인맥 ... 태권도협회까지 뺏쳐』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16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김종, 측근 이용해 하위 체육단체 장악 정황』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1일자, 인터넷 TV조선 11월 21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인사 정황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단독]김종 전 차관 인맥 ... 태권도협회까지 뺏쳐』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12월 30일자 사회면) - TV조선 : 프로그램 『김종, 측근 이용해 하위 체육단체 장악 정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23일자, 인터넷 TV조선 23월 23일자 스포츠면)

2016서울조정 2030~2032	(정정·반론·손배청구) (의) ○○○의료재단 외 1인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요양병원 갈등①] 강남구, ○○병원 운영업체 배임 횡령으로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급여 횡령·문서 위조 ... 복마전된 ‘○○ ○○요양병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요양병원 갈등②] 불법·편법 병원 옹호하는 이상한(?) 강남구의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협의않고 왜 고발부터 하나”질책 ... 구의원님들 ‘수상한(?)’ 업체 옹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관할구청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2016서울조정 2034, 2035, 2081	(각 정정청구) 장○○ 對 월간중앙 ⁽²⁰³⁴⁾ , 온라인 중앙일보 ⁽²⁰³⁵⁾ , 동아닷컴 ⁽²⁰⁸¹⁾
조 정 대 상	• 월간중앙 : 『고유의 석채(石彩) 비밀 푸는 게 위작 가리는 핵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58면~164면, 온라인 중앙일보 11월 2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이○○ 한때 月30 ~ 40점 多作 ... 작품 관리 안돼 위조범들 “표적”』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화백 작품 관련 위조 감정서 자료 사진에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월간중앙,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피신청인 사과, 동아닷컴/사유 : 당사 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2036·2037	(정정·손배청구) 심재권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北 核 아닌 미국에 경고 날린 野 외교통일 위원장』 제하의 사설 (2016년 10월 14일자 3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론을 비난하는 등 반미 친북을 주장해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2월 27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038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조 정 대 상	(1) 『조윤선 장관 청문회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직원 ‘갑질’ 명드는 서희덕 비롯 한 국음반산업협회 회원들 청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정치면) (2) 『노태강 “난 억울한 희생양 ...”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인사 좌천에 최순실 개입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3일자 정치면) (3) 『최순실 ‘왜’ 문화체육관광부 시켜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당선자 회장 승 인 반려 지시?』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문화관광부가 최순실과 차은택의 지시로 한국음반산업협회장 당선자의 승인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39	(정정청구) 한국산업은행 외 1인 對 모바일한경
조 정 대 상	『최순실의 금융부역자들1- 임종룡과 이동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모바일한경)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순실의 지시로 모 기업의 퇴출에 앞장섰고 회장 임명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서울조정 2040~2043	(각 정정·손배청구) 염동열 對 동아일보 ^(2040·2041) , 동아닷컴 ^(2042·2043)
조 정 대 상	『‘올림픽 배후 도시’ 추진 염동열 의원, 평창에 24만㎡땅』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1월 23일자 8면, 동아닷컴 11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평창올림픽 배후 도시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 신청인과 최순실 소유의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올림픽 배후도시’ 추진 염동열 의원, 평창에 24만㎡땅」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6년 12월 30일자 투데이면, 동아닷컴 12월 29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044	(손배청구) 김○○ 외 3인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대구 찾은 김무성 전 대표에게 ‘쓴소리’ 쏟아진 이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항의 시위에 참여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45·2046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건강 검진 두려운 여성들 … 수면내시경 받다 성추행 당하면 어쩌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사의 성추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검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서울조정 2047	(정정청구) 구○○ 對 스포츠Q
조 정 대 상	『대표팀 총감독 ‘무자격 논란’, 둘로 쪼개진 ○○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4일자 아마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모 종목 국가대표 총감독인 신청인이 부정으로 단종을 발급받은 무자격 지도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구○○ ○○대표팀 총감독 논박, “국가기관 결정까지 났는데, 언제까지 자격 논란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1일자 아마스포츠면)
2016서울조정 2048·2049	(정정·손배청구) 김기춘 對 고발뉴스닷컴
조 정 대 상	(1) 『[카드뉴스] 최순실 재산추적 … 김기춘은 거기서 뭐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9일자 이상호의 사실은면) (2) 『“김기춘, 최순실 자택 비밀 사무실로 이용 … 무슨 관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이상호의 사실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서실장 취임 직전까지 최순실 소유 건물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최순실과 긴밀히 접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50~2052	(정정·반론·손배청구) (사) ○○○○○○○○○○○○○○○○○ ○○○○ 對 백세시대
조 정 대 상	『대한○○회를 흔드는 일을 당장 그만 두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추진하는 노인 건강 관련 사업이 노인들을 돈으로 현혹하는 황당한 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53, 2054, 2084	(각 정정청구) 목○○ 對 KBS-1TV ⁽²⁰⁵³⁾ , 인터넷 경향신문 ⁽²⁰⁵⁴⁾ , 오마이뉴스 ⁽²⁰⁸⁴⁾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차은택 사단, 국립아시아전당 인사도 개입?』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2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부패유성 부른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사회면) • 오마이뉴스 : 『최순실-차은택 일당, ‘광주’ 유린하고 ‘평창’으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공연장 전시 예술감독에 임명된 것이 차은택과 당시 김종덕 문체부장관의 영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오마이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KBS-1TV/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기사 수정)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부패유성 부른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2월 6일자 사회면) • 오마이뉴스 : 『목○○ 교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3일자 지역면)

2016서울조정 2055·2056	(정정·손배청구) 임○○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1) 『임○○ ○○시 문화원장 판소리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전국면) (2) 『임○○ ○○시 문화원장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전국면) (3) 『○○시, 꿀볼건 무형문화재 지정 행정 … 임○○ 문화원장 감싸기 급급』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판소리 완창 공연을 한 사실이 없고, 사사 이력이 불명확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57~2060, 2113~2116	(각 정정청구) (주) 세계일보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 ⁽²⁰⁵⁷⁾ , 인터넷 국민일보 ⁽²⁰⁵⁸⁾ , 인터넷 이데일리 ⁽²⁰⁵⁹⁾ , e머니에스 ⁽²⁰⁶⁰⁾ , 온라인 중앙일보 ⁽²¹¹³⁾ , 조선닷컴 ⁽²¹¹⁴⁾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²¹¹⁵⁾ , 인터넷 서울신문 ⁽²¹¹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네티즌, 최순실 사진 속 콘센트 이상, 독일이 아닌 덴마크에 있는 듯』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생활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네티즌 수사대 ‘최순실 추적’ 나섰다 …』 독일 아닌 덴마크서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시사면) - 인터넷 이데일리 : 『최순실 인터뷰 장소 독일 아니다,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정치면) - e머니에스 : 『최순실 인터뷰, 독일 아닌 덴마크 네티즌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뉴스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최순실 인터뷰 장소 독일 아니다, 네티즌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9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최순실 인터뷰가 독일이 아닌 덴마크에서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바로잡습니다>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생활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9일자 시사면) - 인터넷 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정치면) - e머니에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생활문화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외 3건

2016서울조정 2061	(정정청구) 송○○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최순실 공천 의혹 의원들 발끈』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된 것이 최순실 덕분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6서울조정 2062·2063	(정정·손배청구) ○○○○ (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아파트 전기료 절감 사업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시공하는 LED교체 공사의 전기료 절감 효과는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064	(정정청구) 박○○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정유라 지도 감독, 미성년 성폭행 피소 ... 최순실씨 측근 승마 협회 간부가 징계 막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8면)
신청인 주장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신청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최순실 씨 영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66~2071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미디어스 ^(2066·2067) , 인터넷 위클리옴 ^(2068·2069) , 노컷뉴스 ^(2070·2071)
조 정 대 상	• 미디어스 : 『진선미, KBS·MBC 경찰 수사 요청한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미디어뉴스면) • 인터넷 위클리옴 : 『“진선미, KBS·MBC경비원 동원해 노조에 물리력 행사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정치면) • 인터넷 노컷뉴스 : 『공영방송 KBS의 ‘공정방송’ 어디로 가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사 경비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노조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미디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노컷뉴스/기사수정,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위클리오늘/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미디어스 : 『“KBS시큐리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미디어뉴스면) • 인터넷 위클리오늘 : 『“KBS시큐리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노컷뉴스 : 『공영방송 KBS의 ‘공정방송’ 어디로 가고 있나』 제하의 기사 중 “9일 오전 ○○○ 청경들은”을 “○○○ 사측은”으로, 보도사진 하단의 자막 내용의 “9일 ○○○ 신관 천막 철거”를 “8일 ○○○ 신관 천막 설치”로 각 수정 (2017년 1월 3일자 문화/미디어면)

2016서울조정 2072·2073	(정정·손배청구) 민경욱 對 JTBC
조 정 대 상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5탄, 7시간, 또 다른 팩트!』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전 청와대 대변인인 신청인이 세월호 사고 브리핑 도중 웃는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75~2078	(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TV조선 ^(2075·2076) , 인터넷 TV조선 ^(2077·2078)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차은택 ‘KT 광고 모델’ 선정까지 관여』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1월 21일자, 인터넷 TV조선 11월 2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평창올림픽 모 기업 광고 모델로 선정된 것이 차은택씨의 영향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차은택 ‘KT 광고 모델’ 선정까지 관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TV조선 2017년 2월 16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079	(손배청구) 허○○ 對 SBS-TV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이렇게 돈 챙겨라 ... 줄줄 새는 탈북자 지원금』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탈북자 취업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탈북자 직원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080	(정정청구) 한○○ 對 인터넷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유료 방송 발전안 결합 상품 이슈 ... 또 학회 대리전?』 제하의 기사 (2016년 11 월 27일자 ICT/벤처면)
신청인 주장	세미나 사회자인 신청인이 특정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082, 2083	(각 반론청구) 한국공인노무사회 對 시사저널 ⁽²⁰⁸²⁾ , 인터넷 시사저널 ⁽²⁰⁸³⁾
조 정 대 상	『다시 드리워지는 ‘노조사냥꾼’의 그림자』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8월 23 일자 40면, 41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노무사의 90%가 회사 측을 대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다시 드리워지는 ‘노조사냥꾼’의 그림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 넷 시사저널 2016년 12월 14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085~2088	(각 정정·반론청구) 채○○ 對 한겨레 ^(2085·2086) , 인터넷 한겨레 ^(2087·2088)
조 정 대 상	『국민연금 회의록에서 드러난 삼성물산 합병 찬성 4대 의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1월 22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삼성물산의 합병건에 주도적으로 찬성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도 삼성의 발표를 그대로 옮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6년 12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6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2089·2090	(정정·손배청구) 강 ○ 외 8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이상한 장학사, 못 믿을 학폭위』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091·2092	(정정·손배청구) 오○○ 對 연합뉴스TV
조 정 대 상	연합뉴스20 프로그램 『발가벗기고 굶기고 정신병원 환자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학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093·2094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이지경제
조 정 대 상	『[단독] ○○○ “휴게소 수의 계약”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유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서울조정 2095~2102	(각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²⁰⁹⁵⁾ , 월드투데이 ⁽²⁰⁹⁶⁾ , 아시아뉴스통신 ⁽²⁰⁹⁷⁾ , 아시아경제닷컴 ⁽²⁰⁹⁸⁾ , 인터넷 스포츠동아 ⁽²⁰⁹⁹⁾ , 인터넷 YTN ⁽²¹⁰⁰⁾ , 쿠키뉴스 ⁽²¹⁰¹⁾ , 전자신문 인터넷 ⁽²¹⁰²⁾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경찰 ‘의경 동원’ 새누리당사 청소, 직권남용·인권침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사회면) • 월드투데이 : 『새누리당 당사, 청소는 경찰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경찰 ‘달걀 세레’ 與 당사 물청소 … 시민들 ‘지시자와 새누리까지 싸잡아 비판’』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경찰 ‘새누리당 청소’ 처음이 아니었나 … 지휘관 “그 동안 해오던 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경찰, 새누리당사 청소 논란 … 총괄 지휘관 “전혀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5일자 최신뉴스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연합뉴스, 월드투데이,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스포츠동아, 쿠키뉴스/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인터넷 YTN, 전자신문 인터넷/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경찰 ‘의경 동원’ 새누리당사 청소, 직권남용·인권침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 월드투데이 : 『새누리당 당사, 청소는 경찰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6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 : 『경찰 ‘달걀 세레’ 與 당사 물청소 … 시민들 ‘지시자와 새누리까지 싸잡아 비판’』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6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경찰 ‘새누리당 청소’ 처음이 아니었나 … 지휘관 “그 동안 해오던 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9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경찰, 새누리당사 청소 논란 … 총괄 지휘관 “전혀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6년 12월 16일자 정치면) 외 1개 매체

2016서울조정 2103·2104, 2107·2108, 2136, 2137, 2144·2145, 2253, 2263, 2266	(정정·손배청구) 권윤자 對 본헤럴드 ^(2103·2104) , 인터넷 국민일보 ^(2144·2145) (정정·반론청구) 시사NLive ^(2107·2108) (정정청구) MBC-TV ⁽²¹³⁶⁾ , iMBC ⁽²¹³⁷⁾ , 인터넷 경향신문 ⁽²²⁵³⁾ , 연합뉴스 ⁽²²⁶³⁾ , 인터넷 스포츠서울 ⁽²²⁶⁶⁾
조 정 대 상	• 본헤럴드 :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단·사이비, 영향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사회면) • 시사NLive : 『식물정부 수사에 눈치 볼 이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8일자 사회면)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그들은 왜 대포폰을 사용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6일자, iMBC 12월 6일자 다시보기면) • 국민일보 : 『예정합동, “대통령의 리더십, 국민에게 ‘희망’ 아닌 ‘짐’이 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시사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 ‘BBK 사건’ 무혐의 처분 이끈 ‘특수통’』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秋 “무서운 신정정치 ...朴대통령, 최순실과 심령 대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7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서울 : 『소름끼치는 평행이론 셋 조희팔 X 유병언 X 이영복 = 마스터』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가 정윤희, 최태민과 함께 활동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본헤럴드/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시사NLive/사유 : 반론보도, 인터넷 경향신문, 연합뉴스, 인터넷 스포츠서울/사유 : 기사수정) • 각 조정불성립결정 (MBC-TV, iMBC) • 조정성립 (국민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시사NLive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인터뷰 오피니언면) • 국민일보 : 『예정합동, “대통령의 리더십, 국민에게 ‘희망’ 아닌 ‘짐’이 됐다”』 제하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 삽입 (2017년 1월 31일자 시사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 ‘BBK 사건’ 무혐의 처분 이끈 ‘특수통’』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秋 “무서운 신정정치 ...朴대통령, 최순실과 심령 대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10일자 정치면) • 인터넷 스포츠서울 : 『소름끼치는 평행이론 셋 조희팔 X 유병언 X 이영복 = 마스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11일자 연예면)

2016서울조정 2105, 2106	(각 정정청구) 김○○ 對 법보신문 ⁽²¹⁰⁵⁾ , 인터넷 법보신문 ⁽²¹⁰⁶⁾
조 정 대 상	『성희롱 피해 호소한 여직원 징계하려는 ○○사』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6년 10월 29일자 교계면, 인터넷 법보신문 10월 28일자 교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성 종무원을 성희롱하고 피해 당사자가 문제제기하자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09~2112, 2227~2231	(각 정정·반론청구) ○○○○ (주) 對 뉴시스 ^(2109·2110) , 쿠키뉴스 ^(2111·2112) (각 반론청구) 아주뉴스 ⁽²²²⁷⁾ , 메디컬투데이 ⁽²²²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²²²⁹⁾ , 인터넷 베이비뉴스 ⁽²²³⁰⁾ , 컨슈머타임스 ⁽²²³¹⁾
조 정 대 상	• 뉴시스 : 『식약처, 무허가 ‘홍삼농축액’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무허가 ‘○○인삼 ○○○ 홍삼은 홍삼 농축액’ 회수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식약처, ‘○○인삼 ○○○ 홍삼 농축액’ 무허가분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사회면) • 메디컬투데이 : 『‘무허가’ 홍삼 농축액 판매 중단·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산업면)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식약처,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회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 인터넷 베이비뉴스 : 『식약처,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 컨슈머타임스 : 『식약처, 무허가 홍삼 농축액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한 건강 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117	(정정청구) (사) ○○○○○○ 외 1인 對 아이굿뉴스
조 정 대 상	『이단 사이비 심각한 사회적 폐해 양산 ... “바른 신학 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문화/기획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교 단체가 구원파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교회 박○○ 목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30일자 문화/기획면)
2016서울조정 2118·2119	(정정·손배청구) 박○○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는 프로그램 『프랑스로 입양간 딸, 왜 제주도로 돌아왔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해외입양 보낸 딸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20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스쿨 정○○ 교장, 사기 혐의 법정 구속 돼』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임에도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1심 내용을 실명과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교육면)

2016서울조정 2121·2122	(정정·손배청구) 양기대 對 인터넷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사문제를 스님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의혹 파문’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경기면)
2016서울조정 2123, 2124	(각 정정청구) ○○○○○○○○○○○○○○○○○사업연합회 對 KBS-1TV ⁽²¹²³⁾ , KBS미 디어 ⁽²¹²⁴⁾
조 정 대 상	뉴스7 프로그램 『100% 무항생제 ... 알고 보니 폐기용 소뼈』 제하의 보도 (KBS-1TV 2016년 11월 30일자, KBS미디어 11월 3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사골 곰탕이 폐기용 소뼈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25, 2126	(각 정정청구) 민○○ 對 시사저널 ⁽²¹²⁵⁾ , 인터넷 시사저널 ⁽²¹²⁶⁾
조 정 대 상	『‘금호-산업은행 커넥션’ 감추려 박○○이 희생양 됐나』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6년 11월 29일자 75면~77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은행장 재직 시 한 기업과 이면합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등 부정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금호-産銀 커넥션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7년 2월 21일자 시사경제면, 인터넷 시사저널 2월 13일자 경제면)

2016서울조정 2127, 2128	(각 정정청구) (주) ○○○○○○건설 對 이뉴스투데이 ⁽²¹²⁷⁾ , 부자동네타임즈 ⁽²¹²⁸⁾
조 정 대 상	- 이뉴스투데이 : 『코스닥 퇴출 ‘○○○○○○○○’ 경영권 분쟁 몸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사회면) - 부자동네타임즈 : 『〈단독〉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 경영권 분쟁에 몸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매출도 없는 유명회사이고 코넥스 상장도 허위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이뉴스투데이 : 『○○○○○○건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일자 전국면) - 부자동네타임즈 : 『“○○○○○○건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7일자 종합면)

2016서울조정 2129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근무시간에도 관사에 ... ‘대통령 뺨치는’ 공중 보건의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2) 『이 현수막이 내걸린 사연 ‘병역보건 군정 농단 위도 주민 다 죽는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부안군 ○○면 공중 보건의원 신청인들이 근무 위치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 내과 공중 보건, “보건복지부에 이의제기 중”』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0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130·2131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경기도의회 교육청 행정감사, 민원인 소란에 한때 중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의회 감사장에서 방청객인 신청인이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32·2133	(정정·손배청구) 황○○ 對 코람데오닷컴
조 정 대 상	『○○총회 인사위, 황당한 순환 보직 기습 시도 실패로 끝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고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업무에 무능하고 사생활이 부도덕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서울조정 2134·2135	(반론·손배청구) 전○○ 對 월간조선
조 정 대 상	『사노맹 관련 백태웅 교수, 납북자 문제 발제자로 나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일자 169면)
신청인 주장	1984년 서울대 교내에서 발생한 외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을 학원프락치 사건이라고 잘못 표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3월호)
2016서울조정 2138·2139	(정정·손배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최태민 파헤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 中情서 압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친정부 활동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6일자 시사면)

2016서울조정 2140	(정정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이석기·한상균 석방을” 도 넘은 광장 정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29면)
신청인 주장	광화문 촛불집회장에서 신청인 노조 관계자가 전 노조위원장의 석방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우선 순위에 올리자고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일자 27면)
2016서울조정 2141, 2142	(각 정정청구) 이○○ 對 SBS-TV ⁽²¹⁴¹⁾ , SBS 콘텐츠허브 ⁽²¹⁴²⁾
조 정 대 상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대통령의 시크릿』 제하의 보도 (SBS-TV 2016년 11월 19일자, SBS 콘텐츠허브 11월 1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줄기세포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인터뷰를 왜곡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줄기세포 배양 및 치료’ 관련 알림 보도』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7년 1월 3일자 그것이알고싶다 시청자게시판면)
2016서울조정 2143	(손배청구) 김○○ 對 SBS CNBC-TV
조 정 대 상	맨인블랙박스 프로그램 『포크레인 전복』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촬영하여 방송국에 제보한 포크레인 전복사고 장면을 무단으로 재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서울조정 2146·2147	(정정·손배청구) 정○○ 對 에픽미디어
조 정 대 상	『중편 방송사, ‘최순실 사건’과 ‘박대통령 탄핵 방송 보도지침’ 내려 ... 경악!!!』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핫이슈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을 ‘종북기자’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실명과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148~2150	(정정·손배청구) 광상도 對 인터넷 한겨레 ^(2148·2149) (정정청구) 네이버 ⁽²¹⁵⁰⁾
조 정 대 상	『박근혜의 ‘소모품들’ 민정수석 6인의 역사 총정리』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6년 12월 16일자 정치면, 네이버 12월 1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이유가 검찰을 장악하지 못한 무능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을 기획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상도 전 민정수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7년 1월 13일자 정치면, 네이버 1월 13일자 정치면)

2016서울조정 2151~2222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한겨레 ^(2151·2152) , KBS-1TV ^(2153·2154) , 경인KBS-1TV ^(2155·2156) , SBS-TV ^(2157·2158) , MBC-TV ^(2159·2160) , MBN ^(2161·2162) , TV조선 ^(2163·2164) , YTN ^(2165·2166) , 연합뉴스 ^(2167·2168) , 뉴스1코리아 ^(2169·2170) , 뉴시스 ^(2171·2172) , e머니에스 ^(2173·2174) , 인터넷 경기북부포커스 ^(2175·2176) , 경원일보 ^(2177·2178) , 인터넷 경향신문 ^(2179·2180) , 노컷뉴스 ^(2181·2182) , 데일리팝 ^(2183·2184) , 스타뉴스 ^(2185·2186) , 인터넷 신아일보 ^(2187·2188) , 아시아경제닷컴 ^(2189·2190) , 동두천연천신문 ^(2191·2192) , 인터넷 이데일리 ^(2193·2194) , 인터넷 일간투데이 ^(2195·2196) , 전자신문 인터넷 ^(2197·2198) , 조선닷컴 ^(2199·2200) , e중앙뉴스 ^(2201·2202) , 온라인 중앙일보 ^(2203·2204) , 티브이데일리 ^(2205·2206) , 티비리포트 ^(2207·2208) , HBC한복방송 ^(2209·2210) , 인터넷 TBS ^(2211·2212) , 인터넷 연합뉴스TV ^(2213·2214) , 인터넷 JTBC ^(2215·2216) , wow한국경제TV ^(2217·2218) , KBS미디어 ^(2219·2220) , SBS 콘텐츠허브 ^(2221·2222)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겨레 : 『강남 집짓겠다고 ... 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6일자 전국면) • KBS-1TV : 뉴스12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 단속 뒷집』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경인KBS-1TV 11월 6일자 및 KBS미디어 11월 6일자 사회면) 외 4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6,000톤 불법 채취 ... 눈 감아준 공무원』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SBS 콘텐츠허브 11월 6일자 사회면) 외 1건

조 정 대 상	•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5천톤 불법 채석 ... 군청 직원, 보고도 묵인』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외 3건 • MBN : 8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6일자) • TV조선 : 3488 프로그램 『조경용 현무암 불법 채석 ... 공무원은 모른 척』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7일자) 외 29개 매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KBS-1TV, 경인KBS-1TV, KBS미디어, SBS-TV, SBS 콘텐츠허브, MBC-TV, MBN /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한겨레, TV조선, YTN, 연합뉴스, 뉴스1코리아, 뉴시스, e머니에스, 인터넷 경기북부포커스, 경원일보, 인터넷 경향신문, 노컷뉴스, 데일리팝, 스타뉴스, 인터넷 신아일보, 아시아경제닷컴, 동두천연천신문, 인터넷 이데일리, 인터넷 일간투데이, 전자신문 인터넷, 조선닷컴, e중앙뉴스, 온라인 중앙일보, 티브이데일리, 티비리포트, HBC한북방송, 인터넷 TBS,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JTBC, wow한국경제TV/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한겨레 : 『「강남 집짓겠다고 ... 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 KBS-1TV : 7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6일자,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 1월 6일자, KBS미디어 1월 6일자 뉴스면) • SBS-TV : 12시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6일자) • MBC-TV :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6일자) • MBN : 프로그램 『현무암 무단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11일자) • TV조선 : 뉴스특급 프로그램 『불법 채석 ... 공무원 모른 척』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7일자)

2016서울조정 2223, 2224	(각 정정청구) 박○○ 對 MBC-TV ⁽²²²³⁾ , iMBC ⁽²²²⁴⁾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맘카페의 두 얼굴』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9월 25일자, iMBC 9월 25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맘카페의 상업화 권력화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맘카페 배너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225, 2226	(각 정정청구) (학) ○○○신학원 對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²²²⁵⁾ , 당당뉴스 ⁽²²²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 『○○대 김○○ 이사장 불신임』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교회면) - 당당뉴스 : 『○○교 신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최○○ 명의의 이사회 담화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에 이사장 직무대행이 선임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 『○○대 최○○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감리회종합면) - 당당뉴스 : 『이사장 담화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초기화면)
2016서울조정 2232·223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덴탈포커스
조 정 대 상	『박○○ 후보, 노골적 동창회 선거 드러내 빈축』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치과계는 지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 동창회를 동원하여 모 협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합의보도문] “박○○ 후보, 노골적 동창회 선거 드러내 빈축” 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1일자 치과계는 지금면)
2016서울조정 2234	(정정청구) 김○○ 對 채널A
조 정 대 상	(1) 7시뉴스 프로그램 『박태환 주사, 최순실 연관성 조사』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4일자) (2) 7시뉴스 프로그램 『병원 소개한 VIP 브로커가 열쇠』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명 선수에게 남성 호르몬제를 주사하면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침뉴스 프로그램 『「박태환 주사, 최순실 연관성 조사」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7년 2월 15일자)

2016서울조정 2235·2236	(정정·손배청구) 박○○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병든 새우가 팔린다 II』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병든 새우를 식용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병든 새우가 팔린다 II”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0일자 홈페이지 게시판)

2016서울조정 2237~2240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CBS-TV ^(2237·2238) , 노컷뉴스 ^(2239·2240)
조 정 대 상	교계뉴스 프로그램 『세월호 유병언 일가 계열사 ‘○○○○○’ 진 이유 ... “청와대 있다” 폭로』 제하의 보도 (CBS-TV 2016년 12월 22일자, 노컷뉴스 12월 22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핵폐기물처리 설비 사업을 따낸 것이 청와대의 영향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241·2242	(정정·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정부요청시 삭제’ 조항 확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5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전직 포털사 직원인 신청인이 포털 검색어 순위에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정부요청시 삭제’ 조항 확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7년 1월 13일자 최신기사면)

2016서울조정 2243~2252	(각 추후·손배청구) 나○○ 對 스포츠동아 ^(2243·2244) , 스포츠한국미디어 ^(2245·2246) , 인터넷 한겨레 ^(2247·2248) , 인터넷 한국일보 ^(2249·2250) , MBC-TV ^(2251·2252)
조 정 대 상	• 스포츠동아 : 『KBA 나○○ 국장·김○○ 차장 대기 발령』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1일자 야구면) • 스포츠 한국미디어 : 『연세대 압수 수색 ... 아마 야구 진학 비리 이번에는 밝혀질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4일자 스포츠야구면) • 인터넷 한겨레 : 『회장 선거마저 고성·몸싸움으로 얼룩 ... 야구협회 ‘진흙탕 내홍’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4일자 스포츠야구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입시비리 의혹 침묵하던 박상희 대한야구협회장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1일자 스포츠면)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누가 정유라를 승마공주로 만들었나』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교선수들의 경기실적 증명서 조작을 지시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스포츠동아, 스포츠 한국미디어,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MBC-TV/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미이행)
이 행 결 과	• 스포츠동아 : 『‘대한○○협회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2월 2일자 야구면) • 스포츠 한국미디어 : 『‘대한야구협회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1일자 야구면) • 인터넷 한겨레 : 『대한야구협회 나진균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0일자 스포츠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대한야구협회 전 사무국장 입시비리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1일자 스포츠면)
2016서울조정 2254	(정정청구) (주) ○○○○○○○○○○○○ 對 시사위크
조 정 대 상	『○○국내 홍보사 대표,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 재단’서 한술밥』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 관련 사업 홍보를 맡은 것이 회사 대표와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255·2256	(각 정정청구) 하태경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²²⁵⁵⁾ , 미디어펜 ⁽²²⁵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하태경 의원, 황교안과 격한 감정 싸움에 샷대질까지 ... “촛불에 타죽고 싶냐” vs “함부로 말하지 마”』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법&이슈면) - 미디어펜 : 『하태경의 협박 “촛불에 타 죽고 싶냐”』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샷대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보도문] “하태경 의원, 황교안 총리에게 샷대질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9일자 법&이슈면) - 미디어펜 : 『[정정보도문] “하태경 의원, 황교안 총리에게 샷대질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9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257·2258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석연찮은 ○○○○ 학원 분리 과정』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표가 이전 대표의 성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보습학원을 인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석연찮은 ○○○○ 학원 분리 과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26일자 교계면)

2016서울조정 2259	(반론청구) (주) ○○○○○○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저녁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의 밥상 급식!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량 식자재로 만든 식품을 학교에 공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서울조정 2260·2261	(정정·손배청구) 김미화 對 인터넷 미디어워치
조 정 대 상	『연합뉴스, 김미화 씨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본지 반론보도문 게재』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신청인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미화 씨 논문 표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4일자 메인면)
2016서울조정 2262	(정정청구) 대한변호사협회 對 인터넷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대한변협 사법부 견제 미온적 ... 국민 사법정책 참여 기회 잃어』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소액사건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대법원 규칙 개정 과정에서 신청인 협회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대한 변협 “소액사건 심판 개정 대응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6서울조정 2264, 2265	(각 정정청구) 안○○ 對 TV조선 ⁽²²⁶⁴⁾ , 인터넷 TV조선 ⁽²²⁶⁵⁾
조 정 대 상	3488오늘! 프로그램 『가짜를 진짜처럼 ... 고가 외제차, 폐차로 둔갑시켜 밀수출』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9월 30일자, 인터넷 TV조선 9월 3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도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로 입건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부산중재부

2016부산조정 1~4	(각 정정·반론청구) (주) ○○○○○ 對 국제신문 ^(1·2) , 인터넷 국제신문 ^(3·4)
조 정 대 상	『○○도서관 웅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5년 9월 15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부산 모 도서관 웅벽 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의 웅벽 디자인이 표절된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4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문○○ 외 1인 對 부산일보 ^(5~7) , 인터넷 부산일보 ^(8~10) , 국제신문 ^(11~13) , 인터넷 국제신문 ^(14~16) , KNN ^(21~23) , iKNN ^(24~26) , 부산MBC-TV ^(27~29)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34~36) , 부산KBS-1TV ^(37~39) , KBS미디어 ^(40~42) (각 정정·반론청구) 국제신문 ^(17·18) , 인터넷 국제신문 ^(19·20) , KNN ^(30·31) , iKNN ^(32·33)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아내 교습소에 시험지 유출 의혹 ‘간 큰 교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10월 28일자 사회면) • 국제신문 : (1) 『시험 출제하는 교사, 학원 하는 아내 ... 법은 양심에 맡기라 하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1면, 인터넷 국제신문 10월 28일자 사회면) (2) 『부산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의혹 강력 대응』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4일자 사회면) 외 2건 • KNN : (1) 뉴스아이 프로그램 『사립고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수사까지 의뢰』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iKNN 10월 29일자 사회면) 외 1건 (2) 뉴스와생활경제 프로그램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 재시험, “부산 교육청, 사립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수사 의뢰”』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일자, iKNN 11월 2일자 뉴스면) • 부산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시험문제 유출 의혹, 진상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뉴스 프로그램 『고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일자) • 부산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 ... 교육청 진상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9일자, KBS미디어 10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시험문제를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KNN, iKNN^(32·33), 부산MBC-TV,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iKNN^(21~23), KBS미디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43	(정정청구) 김상민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박대동·이목희 이어 김상민 의원도 비서관 월급 ‘갑질 논란 구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비서관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44	(정정청구) 이○○ 對 iKNN
조 정 대 상	(1) 『가짜 단백질 “몸짱 되려다 몸 망치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뉴스면) (2) 『가짜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근육 안 생기고 살만 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단백질 함량이 10%도 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다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부산조정 45·46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아이 진정시키려다 팔 탈골시킨 보육교사 무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원아의 팔꿈치를 탈구시켰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47~49	(각 반론청구) 안○○ 외 1인 對 KBS-1TV ⁽⁴⁷⁾ , 부산KBS-1TV ⁽⁴⁸⁾ , KNN ⁽⁴⁹⁾
조 정 대 상	• KBS-1TV, 부산KBS-1TV : 뉴스5 및 뉴스7 프로그램 『급식비 21억원 빼돌린 업체 대표 등 검거』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일자) • KNN : 경남투데이 프로그램 『급식비리, 업체와 이사장 짜고 급식비 빼돌려』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일자) 외 1건
신청인 주장	급식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학교와 짜고 거액의 급식비를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부산조정 50	(반론청구) (주) ○○○ ○○○○ 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폐선 부지 공원화시민추진단 출범』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일부 폐선 부지 구간의 개발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부산시 고위직과 결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6년 4월 5일자 2면, 인터넷 국제신문 4월 4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51·52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조 정 대 상	『주한 ○○ 문화원장?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9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모 국가 문화원장인 신청인이 해당 국가 공식 외교관 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3~56	(각 추후·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경상일보 ^(53·54) , K신문 ^(55·56)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상일보 : 『‘학점은행 뒷돈’ ○○○○진흥원 감사실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0일자 사회면) - K신문 : 『檢, ‘학점은행 비리의혹’ ○○○○진흥원 압수 수색』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9일자 사회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흥원장 재임 당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최○○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사고뭉치’ 일진이 ‘모범생’으로 변했어요』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59~66	(각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국제신문 ^(59·60) , 인터넷 국제신문 ^(61·62) , 부산일보 ^(63·64) , 인터넷 부산일보 ^(65·66)
조 정 대 상	- 국제신문 : 『○○ 장애인복지관 오늘부터 정상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1월 26일자 지역면) - 부산일보 : 『○○○ 장애인복지관 파행운영 ‘일단락’』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10면, 인터넷 부산일보 1월 26일자 서부경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탁 운영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리자 고용승계 문제를 해당 지자체와 새 수탁법인이 해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장애인복지관 오늘부터 정상 운영」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6년 5월 19일자 10면, 인터넷 국제신문 5월 18일자 지역면)

2016부산조정 67~70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국제신문 ^(67·68) , 인터넷 국제신문 ^(69·70)
조 정 대 상	(1) 『‘시민 자산’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하자』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1면) (2) 『해운대 철길은 돈벌이 수단 아닌 후대 유산이다』 제하의 사설 (2016년 3월 1일자 27면) (3) 『해운대 폐선부지 일대 벌써 투기 조짐』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1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해운대 폐선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6년 6월 8일자 2면, 인터넷 국제신문 6월 8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71~74	(각 정정·손배청구) (주) 울산저널 對 울산신문 ^(71·72) , 인터넷 울산신문 ^(73·74)
조 정 대 상	『現重노조, 유인물 발행업체 불공정 낙찰』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현대중공업 노조의 유인물 발행 업체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입찰서에 사업장 주소지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現重노조, 유인물 발행업체 불공정 낙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2면 인터넷 울산신문 6월 9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75·76	(반론·손배청구) 박○○ 對 UBC
조 정 대 상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불륜 의심해 아내와 주점 종업원 흥기로 찢러』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륜을 저지르다 흥기에 찢린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부산조정 77	(정정청구) 심○○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와글와글 ○○○○○○ - 분란에 ‘해피아’도 가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기관의 상임감사인 신청인이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원내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78, 79	(각 반론청구) (의) ○○의료재단 ○병원 對 KNN ⁽⁷⁸⁾ , iKNN ⁽⁷⁹⁾
조 정 대 상	7시뉴스 프로그램 『50대 여성 수면 마취 내시경 사고 조작 의혹 제기』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사망사고의 의료 기록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부산조정 80, 81, 85, 86	(각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국제신문 ⁽⁸⁰⁾ , 뉴스1코리아 ⁽⁸¹⁾ , iKNN ^(85,86)
조 정 대 상	• 인터넷 국제신문 : 『짚라인 등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장치 강화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짚라인 안전사고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 iKNN : 『짚라인 이용객 - 해수욕객 충돌 사고는 만조 탓?』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사고가 난 레포츠 시설을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국제신문, 뉴스1코리아/사유 : 기사수정) • 취하 (iKNN/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국제신문 : 『짚라인 등 유원지 놀이시설 안전장치 강화해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명칭 수정 (2016년 8월 11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짚라인 안전사고 잇따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명칭 수정 (2016년 8월 10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82·83	(반론·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 고용 반대하던 ○○노조 간부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었던 신청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 고용 반대 ○○노조 간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84	(손배청구) 이○○ 對 KNN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재활치료, 로봇이 도와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루마티스 환자인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금액지급)

2016부산조정 87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 오○○ 신임 대표이사 취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 출시한 화장품을 다른 회사가 개발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88~91	(각 정정·반론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사 對 부산일보 ^(88·89) , 인터넷 부산일보 ^(90·91)
조 정 대 상	『‘템플스테이 건립’ 의혹투성이』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6년 8월 25일자 9면, 인터넷 부산일보 8월 24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찰이 템플스테이 건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템플스테이 건립 의혹투성이’ 기사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3일자 2면)

2016부산조정 92·93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문○○, 성희롱 가해자 불쌍하다 ... 국민의당 성희롱 교육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강사인 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로 강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정치면)

2016부산조정 94, 95	(각 추후청구) 정○○ 對 KNN ⁽⁹⁴⁾ , iKNN ⁽⁹⁵⁾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태권도협회 유명선수 출전』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태권도 대회 허위 선수 등록을 이유로 사기 혐의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부산 ○○○구 태권도협회 회장 정모 씨 승부 조작 및 사기 혐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iKNN 2016년 10월 11일자 뉴스면)

2016부산조정 96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소비자원, 일반 세균 검출 ○○○ 물티슈 시정 권고』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제품 리콜 사고와 무관한 전직 대표의 마약복용 사실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소비자원, 일반 세균 검출 ○○○ 물티슈 시정 권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6년 9월 8일자 정치면)
2016부산조정 97, 98	(각 추후) 김○○ 對 울산MBC-TV ⁽⁹⁷⁾ , 인터넷 울산MBC-TV ⁽⁹⁸⁾
조 정 대 상	탐사기획 돌직구40 프로그램 『아파트 비리 연속기획 공동 구매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부산조정 99~10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권윤자 ^(99~101) , 기독교복음침례회 ^(102~104) 對 인터넷 한 국기독교신문
조 정 대 상	『구원파(救援派)는 왜 이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강연/특강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 회장이 구원파 교주이며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5일자 강연/특강면)

2016부산조정 105, 106	(각 반론청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對 경상일보 ⁽¹⁰⁵⁾ , 인터넷 경상일보 ⁽¹⁰⁶⁾
조 정 대 상	『“발전적 정의 지향” ○○○○○ 복수 노조 설립』 제하의 기사 (경상일보 2016년 9월 27일자 7면, 인터넷 경상일보 9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의 모 지부가 파업과 반정부 시위만을 일삼는 조직이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발전적 정의 지향” ○○○○○ 복수 노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일자 6면, 인터넷 경상일보 12월 1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107·108	(반론·손배청구) 김○○ 對 울산신문
조 정 대 상	『“전,현직 친환경 급식센터장 진흙탕 싸움』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6일자 5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친환경 급식센터의 전직 센터장이었던 신청인이 재직 당시 특정업체에 납품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전,현직 친환경 급식센터장 진흙탕 싸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인터넷 울산신문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6부산조정 109·110	(추후·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주상절리 현무암 불법채취 ... 담당 공무원까지 연루』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목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5일자 사회면)

대구중재부

2016대구조정 1·2	(정정·손배청구) 대구○○○○○협회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강○○ ○○건설 대표 대구역서 김장 나누기 ‘김치파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2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주최한 나눔 행사를 타인이 주최한 것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이 행 결 과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6일자 18면)
2016대구조정 3·4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나가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귀농한 신청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부농만을 꿈꾸고,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림] 의성군 ○○면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9면)
2016대구조정 5~8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매일신문 ^(5·6) , 인터넷 매일신문 ^(7·8)
조 정 대 상	『車와 부딪치면 車 VS 車 사고』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월 29일자 1면, 인터넷 매일신문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친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구조정 9·10	(정정·손배청구) (주) 대가야신문 對 경서신문
조 정 대 상	『문화원 관련 보도 대부분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신문의 모 문화원 관련 기사를 사실무근이라고 허위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구조정 11~14	(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경북일보 ^(11·12) , 인터넷 경북일보 ^(13·14)
조 정 대 상	『다세대 주택 편법 준공 논란』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6년 2월 25일자 10면, 인터넷 경북일보 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과 유착해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는 다세대 주택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양군 다세대 주택 편법 준공’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북일보 2016년 3월 18일자 10면, 인터넷 경북일보 3월 17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15	(정정청구) (의) ○○의료재단 對 경북매일
조 정 대 상	『매입액 등 서로 불만 ... 물거품 위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재단과 모 재단과의 인수합병 각서 체결이 잠정 연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대구조정 16·17	(정정·반론청구) 방○○ 對 뉴스물
조 정 대 상	『사립중학교 교장 여교사 성추행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8일자 초 기화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사과문까지 제출했다고 허위 보도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구조정 18, 19	(각 반론청구) 권○○ 對 경상매일신문 ⁽¹⁸⁾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¹⁹⁾
조 정 대 상	『소나무 불법 굴취 의혹 ... 수사 중』 제하의 기사 (경상매일신문 2016년 3월 25 일자 4면,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3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나무를 불법 굴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영양군 소나무 불법 굴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상매일신문 2016년 4월 8일자 4면,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4월 8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20·21	(추후·손배청구) 백○○ 對 올인코리아
조 정 대 상	『안티MB 광우 난동의 구조적 위선과 패륜』 제하의 기사 (2010년 5월 27일자 사 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 기부금 모금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안티 MB카페 백○○ 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6일자 초기화면)

2016대구조정 22, 23	(각 손해청구) 우○○ 對 인터넷 대구신문 ⁽²²⁾ , 뉴스웨이 대구경북취재본부 ⁽²³⁾
조 정 대 상	- 인터넷 대구신문 : (1) 『○○시 육성 사업단장 도덕성 구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사회면) (2) 『성매매 이력자 채용 왜 못 걸렀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사회면) - 뉴스웨이 대구경북취재본부 : 『○○시 사업단장 논란에 시민단체 가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과거 성매매 입건 사실을 공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대구조정 24~39	(각 정정·손배청구) (재) ○○○○○○○센터 對 경안일보 ^(24·25,28·29) , 인터넷 경안일보 ^(26·27,30·31) , 경상투데이 ^(32·33,36·37) , 인터넷 경상투데이 ^(34·35,38·39)
조 정 대 상	- 경안일보 : (1) 『○○○○○○○○센터 ○○○ 하다하다 갑질까지 '최악'』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4월 18일자 사회면) (2) 『경주 ○○○ '슈퍼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1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5월 10일자 사회면) - 경상투데이 : (1) 『경주 ○○○, 갑질 논란 시비 분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상투데이 4월 18일자 사회면) (2) 『경주 ○○○, 외부업체에 경비 요구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1일자 1면, 인터넷 경상투데이 5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센터가 입점업체에 대해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구조정 40	(정정청구) 영양고추유통공사 對 안동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고추유통공사 경영부실 심각』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대구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한국일보 ^(41·42) , 인터넷 한국일보 ^(43·44)
조 정 대 상	『안동 ○○학원, 학교장이 조카 교사 합격 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6년 5월 10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5월 9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조카를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경쟁자의 서류 제출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구조정 45	(손배청구) 최○○ 對 양파티브이뉴스
조 정 대 상	(1) 『대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지상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2) 『대구웨딩박람회, 대구○○○○○○협회의 실체를 지상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3) [대구소리] 예비 신혼부부는 ‘봉’... 웨딩박람회 개인정보 ‘줄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칼럼/기고면)
신청인 주장	웨딩컨설팅 업체들의 횡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과의 대화장면을 몰래 촬영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대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지상 고발』 제하의 기사 중 관련 영상 삭제 (2016년 8월 21일자 사회면) (2) 『대구웨딩박람회, 대구○○○○○○협회의 실체를 지상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중 관련 영상 삭제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3) [대구소리] 예비 신혼부부는 ‘봉’... 웨딩박람회 개인정보 ‘줄줄’ 제하의 기사 중 관련 영상 삭제 (2016년 8월 21일자 칼럼/기고면)

2016대구조정 46·47	(정정·손배청구) 이○○ 對 경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중학교 사제간 고소·고발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대구지역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을 체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중학교 사제간 고소·고발 ‘물의’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2일자 5면)

2016대구조정 48~51	(각 정정·반론청구) 예천군 ^(48·49) , 이현준 ^(50·51) 對 대경일보
조 정 대 상	(1) 『민심 거스르는 예천군 초대형 군청사 건립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6일자 1면) (2) 『예천군수 소유 땅 인접지 신청사 결정 의문투성』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1면) (3) 『곤충엑스포 갑질 판매 입장권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1면) (4) 『예천군 신청사 건립 인접지 이현준 군수 소유 땅 밀집』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1면) (5) 『이현준 예천군수 소유 땅 농지 전용 않고 무단사용』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일자 1면) (6) 『이현준 예천군수 관련 의혹 道 감사관실, 전면조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4일자 1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예천군이 호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곤충엑스포 입장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1) 『“예천군 신청사 및 곤충엑스포 입장권” 관련 예천군의 반론』 제하의 기사 (대경일보 2016년 9월 30일자 2면, 인터넷 대경일보 9월 29일자 사회면) (2) 『“예천 신청사 인근 군수 소유 땅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대경일보 2016년 10월 7일자 2면, 인터넷 대경일보 10월 6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52·53	(정정·손배청구) (주) 시사뉴스피플 對 로컬상주
조 정 대 상	『상주시 의회, 동료도 모르는 ‘의정부문 대상 수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혁신 인물대상이 공신력도 없고 검증도 안된 시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구조정 54	(정정청구) 최○○ 외 3인 對 양파티브이뉴스
조 정 대 상	(1) 『대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지상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3일자 사회면) (2) 『대구 웨딩박람회, 대구○○○○○○협회의 실체를 지상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0일자 사회면) (3) [대구소리] 예비 신혼부부는 ‘붕’... 웨딩박람회 개인정보 ‘줄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칼럼/기고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신혼부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구 ○○○○○○ 담합 및 갑질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4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55	(정정청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지역지부 ○○대병원 분회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술자리·골프, 공식사회 “NO”... 김영란법 시행 몸조심 분위기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1면, 2면)
신청인 주장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모 대학병원 병원 노조가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밀착 감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2면)

2016대구조정 56	(정정청구) 강○○ 對 주간고향신문
조 정 대 상	『기초의원 왜 이러나! ... 불·탈법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군의원인 신청인이 특정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을 게재해 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1면)

2016대구조정 57~62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서울일보닷컴 ^(57·58)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59·60) , 인터넷 경북연합일보 ^(61·62)
조 정 대 상	- 서울일보닷컴 : 『영주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해외여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 『영주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여행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북연합일보 : 『영주시 공무원들 ‘부적절한 외유’ 입방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금품을 요구하는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서울일보닷컴 : 『“영주시 공무원, 민원인과 해외여행” 관련 L씨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 『“영주시 공무원, 민원인과 해외 여행” 관련 L씨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사회면) - 경북연합일보 : 『“영주시 공무원, 민원인과 해외여행” L씨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4면)

2016대구조정 63~65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사전답사 뒀이 중헌디? ... 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수학여행 담당교사인 신청인이 사전 답사를 소홀히 하고 안전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여행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초등학교 수학여행” 관련 담당 교사의 반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일자 사회면)

2016대구조정 66·67	(정정·손배청구) 홍○○ 對 군위일보
조 정 대 상	(1) 『A도의원 등장으로 지방 선거 전초전 ‘소보 한마음 음악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5일자 1면) (2) 『군위 소방서 신설도 무산! 부계 ‘119지역대’ 이전 신축도 불허 당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1면) (3) 『군위 군민에게 고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개석상에서 군위군수를 인신공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구조정 68, 69	(각 정정청구) 김영춘 對 매일신문 ⁽⁶⁸⁾ , 인터넷 매일신문 ⁽⁶⁹⁾
조 정 대 상	(1) 『부산 국회의원, ‘포항~울릉 여객선 공모 편의 요구’ 의혹』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1월 3일자 14면, 인터넷 매일신문 11월 3일자 사회면) (2) 『김영춘 의원 “울릉 뱃길 면허 문제점 지적” 해운업계 “포항 해수청 반대에도 공모 강행”』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1월 25일자 12면, 인터넷 매일신문 11월 25일자 사회면) (3) 『포항 ~ 울릉 뱃길 공모 심사위원 7명 모두 사퇴』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1월 29일자 12면, 인터넷 매일신문 1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 위원장인 신청인이 특정 해운사의 면허 취득 편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포항·울릉 여객선 면허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김영춘 의원 밝혀와』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6년 12월 19일자 11면, 인터넷 매일신문 12월 19일자 경북면)

2016대구조정 70~73	(각 정정·손배청구) (주) 대구한국일보 對 경북도민일보 ^(70·71) , 영남타임즈 ^(72·73)
조 정 대 상	• 경북도민일보 : 『풍기 인삼축제 문제점 ‘쉬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9면) • 영남타임즈 : 『2016영주풍기 인삼축제 조직위 평가보고회 허무맹랑한 개선 방안 제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풍기인삼 아가씨 선발대회를 주관한 신청인 언론사에 대한 영주시의 지원이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경북도민일보 : 『“풍기인삼 아가씨 선발 대회 보조금 지원 사실과 다르다” 주최 측 해명』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9면,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12월 16일자 사회면) • 영남타임즈 :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보조금 지원, 사실과 다르다” 주최 측 해명』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초기화면)

광주중재부

2016광주조정 1~4	(각 조정·반론청구) (재) ○○○○기념재단 對 광주드림 ^(1·2) , 인터넷 광주드림 ^(3·4)
조 정 대 상	『○○○○재단 고위 관계자 자녀들 채용 뒷말』 제하의 기사 (광주드림 2015년 12월 18일자 2면, 인터넷 광주드림 1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단기 계약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재단 고위 관계자 자녀들 채용 뒷말’ 보도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광주드림 2016년 1월 18일자 2면, 인터넷 광주드림 1월 18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5~8	(각 조정·반론청구) 함평군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1) 『민선5·6기 군유 재산 251건(51억) 팔았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3면) (2) 『동함평 산단 결국 빚잔치로 끝낼 것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7면)
신청인 주장	함평군이 무분별하게 군유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평군, 군유재산 취급 소홀’ 및 ‘동함평 산단 빚잔치’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31일자 3면)

2016광주조정 9	(반론청구) 안○○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함평천지가 좁았나? 서울 관악구까지 뺀친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접견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관악구와 자매결연 중지로 직거래 장터 타격,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31일자 8면)

2016광주조정 10·11	(정정·반론청구) 김○○ 對 목포신문
조 정 대 상	『신안군, 인사 두고 전문성 무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6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안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인사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전문성 무시한 신안군 인사’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7면)
2016광주조정 12·13, 20~23	(각 정정·반론청구) 신안군 對 뉴스웨이 ^(12·13) , 전남저널 ^(20·21) , 인터넷 전남저널 ^(22·23)
조 정 대 상	• 뉴스웨이 : 『신안군, 기획홍보실 군수 직인 무단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0일자 사회면) • 전남저널 : 『방조제 개보수 공사 입찰 담합 우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1면, 인터넷 전남저널 2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안군 기획홍보실이 군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뉴스웨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전남저널, 인터넷 전남저널/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뉴스웨이 : 『신안군 군수 직인 무단사용,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3일자 사회면) • 전남저널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1면, 인터넷 전남저널 2월 23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4~17	(각 정정·반론청구) 한○○ 對 여수MBC-TV ^(14·15) , 인터넷 여수MBC ^(16·17)
조 정 대 상	(1) 8시뉴스 프로그램 『○○○○합창단 지휘자 자질 논란』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1월 3일자, 인터넷 여수MBC 11월 3일자 뉴스면) (2) 8시뉴스 프로그램 『○○○○합창단 지휘자 명확한 감사 요구』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11월 4일자, 인터넷 여수MBC 11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지휘자인 신청인이 합창단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여자 단원들에게는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8시뉴스 프로그램 『○○○○합창단 여성 단원 성추행, 사실과 달라』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2일자)

2016광주조정 18·19	(정정·반론청구) 문○○ 외 4인 對 상해신문
조 정 대 상	(1) 『강진군에는 이런 일도 ...』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2면) (2) 『상임이사 9년 조합장 10년 도합 19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농협의 대출금 결손처분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1면)

2016광주조정 24~2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고등학교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고 “학생 자해 소동 알고도 쉬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사회면) (2) 『○○○○고 자해 학생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자해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광주조정 30~3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정○○ ^(30~32) , 정○○ ^(33~35)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1) 『근무시간에 골프 친 철없는 ○○○○고등학교장』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9일자 사회면) (2) 『○○○○고 교장 ‘근무시간 골프 매주 2~3회 추가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5일자 사회면) (3) 『○○○○고 교장 ‘해외 전지훈련에서 향응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6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광주조정 36·37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對 순천투데이
조 정 대 상	『순천 덕월동 A아파트의 관리비 “관리 의혹” 투성』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덕월동 A아파트 관리비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5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38·39	(정정·반론청구) 함평군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나비축제 생각하면 ... ‘속이 까맣게 탄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민선5기가 들어선 이후부터 함평나비축제의 위상과 명성이 떨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함평군, “2013년 나비엑스포 취소는 불가피한 선택”』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5일자 1면)
2016광주조정 40~45	(각 정정·반론청구) 박○○ 對 인터넷 도민일보 ^(40·41) , 서울일보닷컴 ^(42·43) , KNS뉴스통신 ^(44·45)
조 정 대 상	- 인터넷 도민일보 : 『○○○○조합 이사장, 공무원 음해성 발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서울일보닷컴 : 『낙선시킬 목적의 음해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KNS뉴스통신 : 『○○○○조합 이사장 선거 앞두고 신안군청 공무원 음해성 발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광주/전남면)
신청인 주장	모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신청인이 현 이사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음해성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KNS뉴스통신/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도민일보, 서울일보닷컴/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신안군청 공무원, “○○○○조합 이사장 음해 발언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KNS뉴스통신 2016년 3월 14일자 광주/전남면)

2016광주조정 46~49	(각 정정·반론청구) (사) ○○○○장애인협회 ○○협회 ○○지부 對 여수MBC-TV ^(46·47) , 인터넷 여수MBC ^(48·49)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부정수급 알고도 봐주기』 제하의 보도 (여수MBC-TV 2016년 1월 8일자, 인터넷 여수MBC 1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 장애인협회 ○○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수급 '무혐의'』 제하의 보도 (여수MBC-TV 2016년 3월 21일자, 인터넷 여수MBC 3월 21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50	(정정청구) 함평신문 (유) 對 함평우리신문
조 정 대 상	『이○○ 의원 풀뿌리 의정 대상 수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함평신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적합하지 않음)

2016광주조정 51~57	(각 추후청구) (사) ○○○○장애인협회 ○○협회 ○○지부 對 인터넷 광주드림 ⁽⁵¹⁾ , 더한국타임즈 ⁽⁵²⁾ , 미디어전남 ⁽⁵³⁾ , 전라닷컴 ⁽⁵⁴⁾ , 데일리저널 ⁽⁵⁵⁾ , 인터넷 동부매일 ⁽⁵⁶⁾ , 호남타임즈 ⁽⁵⁷⁾
조 정 대 상	- 인터넷 광주드림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자치면) - 더한국타임즈 : 『전남도, '○○○○장애인협회 여수지부' 형사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사회면) - 미디어전남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전남동부면) - 전라닷컴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사회면) - 데일리저널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 엄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자치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더한국타임즈/내용 : 추후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호남타임즈/내용 : PR·후속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사유 : 중재결정,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6광주중재5~9 참조))
이 행 결 과	• 더한국타임즈 : 『○○○○장애인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수급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8일자 사회면) • 호남타임즈 : 『○○장애인협회 ○○지부, “소중한 후원자 모십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58~60	(정정·반론·손배청구) ○○ (주) 對 인터넷 진도투데이
조 정 대 상	『동의서에 서명 안했다. ○○면 ○○마을 어촌 계원의 분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집중취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양식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작된 서류를 행정당국에 제출하는 등 수산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면 ○○마을 어촌 계원 동의서 조작”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7일자 정치면)

2016광주조정 61·62, 80·81	(각 반론·손배청구) 맹○○ 對 뉴스투데이한국 ^(61·62) , 파인뉴스 ^(80·81)
조 정 대 상	• 뉴스투데이한국 : 『한약재 유통 간부 A씨 손배청구 기각』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사람사는세상면) • 파인뉴스 : 『A씨, 계속 언론사 기사를 트집, 메시지 행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탐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피신청인의 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기각 (뉴스투데이한국/사유 : 진실한 사실보도에 해당) • 각하 (파인뉴스/사유 : 송달 불능)

2016광주조정 63~6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공업 (주) 對 The대한일보 ^(63~65) , 인터넷 The대한일보 ^(66~68)
조 정 대 상	『광양제철소 ‘○○○○’ 환경 오염 수년째 방조』 제하의 기사 (The대한일보 2016년 3월 14일자 1면, 인터넷 The대한일보 3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이 분진과 소음 등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환경 오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The대한일보 2016년 4월 27일자 2면, 인터넷 The대한일보 4월 26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69~76, 78·79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광주BBS-R ^(69·70) , 인터넷 광주BBS불교방송 ^(71·72) , 연합뉴스 ^(73·74) , 호남매일 ^(75·76) , 인터넷 호남매일 ^(78·79)
조 정 대 상	- 광주BBS-R : 빛고을아침저널 프로그램 『○○산단내 승마장 내년부터 문 닫을 듯』 (2015년 11월 19일자, 인터넷 광주BBS불교방송 11월 19일자 홈페이지면) - 연합뉴스 : 『○○산단내 승마장 내년부터 문 닫을 듯』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사회면) - 호남매일 : 『○○산단내 승마장 개장 7년만에 문 닫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0일자 15면, 인터넷 호남매일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승마연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 광주BBS-R : 빛고을아침저널 프로그램 (2016년 5월 16일자, 인터넷 광주BBS 불교방송 5월 16일자 다시듣기면) - 연합뉴스 : 『○○산단내 승마장 12월까지 영업 계속』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8일자 사회면) - 호남매일 : 『○○승마장 올 말까지 영업 계속』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5면, 인터넷 호남매일 5월 20일자 뉴스면)
2016광주조정 77	(반론청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對 전남매일
조 정 대 상	『○○주택 재개발조합 내홍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5일자 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택 재개발조합 내홍’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8면)

2016광주조정 82·83	(정정·손배청구) 주○○ 對 뉴스깡
조 정 대 상	『○○구 장애인협회 부당 이득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신청인에게 불법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는 협회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협 회장, 부당이득 논란에 “몰랐다” 주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84~87	(각 반론·손배청구) 박○○ 對 무등일보 ^(84·85) , 인터넷 무등일보 ^(86·87)
조 정 대 상	『손님 휴대전화 되팔려 한 택시기사 ‘잡고보니 전과 35범’』 제하의 기사 (무등일보 2016년 5월 26일자 5면, 인터넷 무등일보 5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범죄 전력을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한 사실에 관한 보도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이행)
2016광주조정 88·89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對 NPS통신
조 정 대 상	『광주의 한 요양병원, 노약자 감염병 예방 ‘허술’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5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이 결핵환자를 노약자들과 함께 입원시키거나, 치매환자의 강제입원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약자 감염병 예방에 허술한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5일자 정치사회면)

2016광주조정 90~97	(각 정정·반론청구) 안○○ ^(90~93) , 정○○ ^(94~97) 對 전남희망신문 ^(90·91,94·95)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92·93,96·97)
조 정 대 상	『권력자와 그 측근들, 돈의 노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제하의 기사 (전남희망신문 2016년 6월 27일자 7면,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6월 2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함평군수인 신청인이 함평산업단지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권력자와 그 측근들 ...’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전남희망신문 2016년 7월 25일자 7면,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7월 14일자 오피니언면)

2016광주조정 98, 113	(각 반론청구) ○○○○○○ ○○축산물공판장 對 호남투데이뉴스
조 정 대 상	(1) 『○○축산물 공판장 판매 ‘갑질’ ... 매입 강요』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사회면) (2) 『○○축산물 공판장 중도매인 ‘생존권 위협’ 호소』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7일자 나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매업자에게 매출목표액 할당 등 부당한 밀어내기와 매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 『○○축산물 공판장 매입 강요 끼워팔기한 적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나주면) (2) 『〈○○축산물 공판장, 중도매인 생존권 위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나주면)

2016광주조정 99·100	(정정·반론청구) ○○노인복지관 對 예향진도신문
조 정 대 상	『○○노인복지관 부지 제공 어린이집 설치 ‘위법·부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인복지관 부지제공 어린이집 설치〉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1면)

2016광주조정 101	(반론청구) 장흥군 對 호남뉴스24
조 정 대 상	『장흥군 2016 상반기 44억 상당 산림사업, 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 물의』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장흥군이 지역 산림조합에 발주한 산림사업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송달 불능)
2016광주조정 102, 103	(각 정정청구) 박○○ 對 노컷뉴스 ⁽¹⁰²⁾ , 아시아경제닷컴 ⁽¹⁰³⁾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낭만포차” 고발한 ○○시민협 간부 공모 문의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지역면) • 아시아경제닷컴 : 『○○시민協 낭만포차 공익신고, 의도적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5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수시의 한 사업을 고발한 것이 해당사업에 지원했다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낭만포차 고발한 ○○시민협 간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여수시민협 낭만포차 공익신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04~11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임○○ 對 목포시민신문 ^(104~106)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107~109) , 와이드뉴스 ^(110~112)
조 정 대 상	• 목포시민신문 : 『의원님 가게앞 중앙선 끊어!』 제하의 기사 (목포시민신문 2016년 8월 24일자 3면,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8월 24일자 목포시면) • 와이드뉴스 : 『목포, 23년 존치된 중앙선 경찰서 前 교통 심의위원 상가 들어서자 사라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포시 의원인 신청인이 상가 앞 도로의 중앙선 절선 민원을 제기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목포시민신문 : 『〈삼향천로 중앙선 절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목포시민신문 2016년 9월 14일자 3면,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9월 19일자 목포시면) • 와이드뉴스 : 『“23년 존치된 중앙선 사라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14~116	(각 반론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무등일보 ⁽¹¹⁴⁾ , 인터넷 무등일보 ⁽¹¹⁵⁾ , 연합뉴스 ⁽¹¹⁶⁾
조 정 대 상	• 무등일보 : 『“아파트 방충망 160개 찢어졌어요” 주민신고 들어와 한바탕 소동』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7일자 6면, 인터넷 무등일보 9월 7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1) 『아파트 방충망 160개 구멍 ‘송송’ …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최신기사면) (2) 『“방충망 160개 훼손”… 아파트 입주민 허위 고소 판명』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최신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파트의 방충망 제거 작업을 두고 방충망이 고의로 훼손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무등일보 : 『“아파트 방충망 훼손, 주민신고”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6면, 10월 5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아파트 방충망 160개 훼손? … 알고 보니 주민 오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전국면)
2016광주조정 117~124	(각 반론·손배청구) 민○○ 對 남도일보 ^(117·118) , 인터넷 남도일보 ^(119·120) , 여수 MBC-TV ^(121·122) , 인터넷 여수MBC ^(123·124)
조 정 대 상	• 남도일보 : (1) 『전남 고흥군 중국도자기 전시 ‘우려의 시선’』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7일자 9면, 인터넷 남도일보 7월 26일자 사회면) (2) 『고흥 ‘중국 도자기 감정’ 논란 파장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1면, 인터넷 남도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외 2건 • 여수MBC-TV :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도자기 수백점, 황실용 진품?』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7일자, 인터넷 여수MBC 7월 27일자 뉴스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지자체에 기탁한 중국도자기 3천여 점이 진품이 아니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및 진실된 사실에 해당)

2016광주조정 125~128	(각 반론·손배청구) 광주광역시 對 시민의 소리 ^(125·126) , 인터넷 시민의 소리 ^(127·128)
조 정 대 상	『“윤 시장 최측근 녹취 청부 의혹” ○○빌딩 리모델링 관련 금품수수 감사 배후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3면)
신청인 주장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시장 최측근의 청부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장 측근 녹취 청부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7일자 3면)
2016광주조정 129~132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KBC-TV ^(129·130) , 인터넷 KBC-TV ^(131·132)
조 정 대 상	탐사in 프로그램 『표절 논문으로 ○○대교수 채용』 제하의 보도 (KBC-TV 2016년 4월 24일자, 인터넷 KBC-TV 4월 24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표절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저녁뉴스 프로그램 『‘표절논문으로 채용된 교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6년 11월 4일자, 인터넷 KBC-TV 11월 4일자 다시보기면)
2016광주조정 133, 134	(각 반론청구) 유○○ 對 우리군민신문 ⁽¹³³⁾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¹³⁴⁾
조 정 대 상	『공직자 등 적용 대상자 몸 사리며 긴장하나 - 한 식당서 여직원들 동행해 술판, 여흥 즐겨』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4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4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군수인 신청인이 지역 노인회 행사에 군청 여직원들과 동행해 술판을 벌이고 여흥을 즐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성군수 식당서 여직원들 동행해 술판·여흥 즐겨’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1월 7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1월 7일자 행정면)

2016광주조정 135~140	(각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對 뉴시스 ^(135·136) , 전남일보 ^(137·138) , 인터넷 전남일보 ^(139·140)
조 정 대 상	• 뉴시스 : 『광주 ○○○○ 재건축 전 조합장 해임 무효 내부 갈등 예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전국면) • 전남일보 : 『광주 ○○○○ 재건축 전 조합장 해임 무효 ‘갈등 예고’』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5면, 인터넷 전남일보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이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에 두 개의 집행부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뉴시스 : 『광주○○○○ 재건축조합 ‘전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항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전국면) • 전남일보 : 『전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판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5면, 인터넷 전남일보 11월 11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41~146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우리군민신문 ^(141~143)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44~146)
조 정 대 상	(1) 『○○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선임 말썽』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9월 26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9월 26일자 탐뉴스면) (2) 『장애인 복지관 관장, “군수 측근 보단 장애인 잘 아는 분이 돼야”』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4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4일자 탐뉴스면) (3) 『본인이 의사봉 잡고 관장 자격 ‘셀프 통과’』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10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10일자 사회면) (4) 『○○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선임 논란 … 정치권에서도 관심』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17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인 신청인이 복지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임명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장애인복지관장 자격 미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1월 28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1월 28일자 탐뉴스면)

2016광주조정 147~153	(각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광남일보 ⁽¹⁴⁷⁾ , 인터넷 남도일보 ⁽¹⁴⁸⁾ , NGTV ⁽¹⁴⁹⁾ , 인터넷 여수신문 ⁽¹⁵⁰⁾ , 통합뉴스 ⁽¹⁵¹⁾ , 호남타임즈 ⁽¹⁵²⁾ , 인터넷 KBC ⁽¹⁵³⁾
조 정 대 상	• 인터넷 광남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재난관리 시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도청면) • 인터넷 남도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정치행정면) • NGTV : 『전라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재난관리 시설로 신규 지정!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2일자 포토뉴스면) • 인터넷 여수신문 : 『전남도 내 하강레포츠시설 특별 안전관리도,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 관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정치자치면) • 통합뉴스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뉴스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레포츠 시설이 사고가 속출하여 안전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인터넷 광남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재난관리 시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3일자 도청면) • 인터넷 남도일보 : 『전남도,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3일자 정치행정면) • NGTV : 『전라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재난관리 시설로 신규 지정!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2일자 포토뉴스면) • 인터넷 여수신문 : 『전남도 내 하강 레포츠시설 특별 안전관리도,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 관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4일자 정치자치면) • 통합뉴스 :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여수·보성·강진·완도 등 5곳 삭도시설 수준으로 관리키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14일자 뉴스면) 외 2건

2016광주조정 154~15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목포투데이 ^(154~156) , 인터넷 목포투데이 ^(157~159)
조 정 대 상	(1) 『박홍률 시장 측, 시의원들에 상품권 조직적 배포』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0월 26일자 1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10월 27일자 사회면) (2) 『상품권 한달 전 배포, 치밀한 계획』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1월 2일자 3면) (3) 『<기자수첩>체육회 단복 사건과 꼬리자르기』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1월 9일자 4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1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목포시 체육회 사무처장인 신청인이 주도해 목포시의원 전원에게 상품권을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목포시체육회, 시의원들에 상품권 배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목포투데이 2016년 12월 28일자 3면, 인터넷 목포투데이 12월 28일자 사회면)

2016광주조정 160~163	(각 정정·반론청구) (주) ○○○○○ 對 우리군민신문 ^(160·161)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62·163)
조 정 대 상	『장성군 수의계약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31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인데도 장성군으로부터 많은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결정,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6광주중재10~13 참조))

대전중재부

2016대전조정 1~4	(정정·손배청구) 박○○ 對 디트news24 ^(1·2) (각 정정청구) 충청뉴스 ⁽³⁾ , 뉴시스 ⁽⁴⁾
조 정 대 상	• 디트news24 : 『충청권 광역 철도 숨은 주역 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메인면) • 충청뉴스 : 『여야 대전시당, 총선 앞두고 논공행상(論功行賞) 가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정치면) • 뉴시스 : 『여야,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 통과 공치사 ‘꿀불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최초 제안한 충청권 광역철도를 타인이 제안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디트news24/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충청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뉴시스/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디트news24 : 『충청권 광역 철도 “숨은 주역” 박○○』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메인면) • 충청뉴스 : 『여야 대전시당, 총선 앞두고 논공행상(論功行賞) 가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의 반론 게재 (2016년 1월 20일자 정치면)

2016대전조정 5	(정정청구) 제천시 對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총선 앞둔 제천, 전기車 유령회사 진실 공방』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충북면)
신청인 주장	제천시장이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6, 7	(각 정정청구) 김○○ 對 중도일보 ⁽⁶⁾ , 충청투데이 ⁽⁷⁾
조 정 대 상	• 중도일보 :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지역 지방일간지 K(52)기자가, “음주운전·폭행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0일자 14면) • 충청투데이 :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지역 지방일간지 K(52)기자가, “음주운전·폭행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0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일간지 기자인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폭행 혐의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전조정 8·9	(정정·손배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천안 ○○○고 교장, 교육감과 코드인사 구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천안 모 고교 이사진이 해임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된 이유가 전교조 출신 인사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천안 ○○○고 교장, 교육감과 코드인사 구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8일자 교육면)

2016대전조정 10~12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천안·아산 택시업계 끝없는 갈등』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천안과 아산 택시업계가 갈등 관계이며, 협박성 금품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13·14	(정정·손배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세종in뉴스
조 정 대 상	(1)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뉴스면) (2) 『세종시 이 시장·H 부시장 불법 상태 추진 … 막가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뉴스면) (3) 『행정 부시장 전격로 진행된 375억원대 입찰 강행, 세종시는 행정 부시장이 최종 결재권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1일자 뉴스면) (4) 『세종 이 시장·H 부시장 문제성 심사 “업체 반발”』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하수처리시설 위탁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세종시 하수처리시설 위탁 특혜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뉴스면)

2016대전조정 15·16	(정정·손배청구) ○○○○○ 對 뉴스스토리
조 정 대 상	『○○○ “어버이연합 동원, 종북 재갈 물리려던 청와대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모 시민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 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피력』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정치면)

2016대전조정 17	(손배청구) 진○○ 對 TJB-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부석사』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약탈문화재 관련 한일 스님들의 비공개 대화를 통역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 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18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1) 『천안○○○○○○○○문화재단, 교장 직무대행 선임 놓고 ‘합법 vs 무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5면) (2) 『천안○○○○고 ‘임시 이사회 파행 운영’ 절차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5면) (3) 『천안○○○○고 신입 교장 G씨 자격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5면) (4) 『천안○○○○고, 관선 이사 파견으로 학교 정상화 이뤄질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의 임시 이사들이 비교육전문가이며, 천안 모고고 신입 교장 인선과 관련해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기획 천안○○○○고 1, 2, 3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남일보 2016년 7월 5일자 정치면)

2016대전조정 19~22, 27~30	(각 정정·손배청구) 홍○○ 對 세종매일 ^(19·20) , TJB-TV ^(21·22) , 연합뉴스 ^(27·28) , 인터넷 충청투데이 ^(29·30)
조 정 대 상	• 세종매일 : 『조치원 J아파트 입주자 대표 홍 회장 ‘폭주’ 막아야 산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1면) 외 1건 •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경로당엔 자물쇠, 관리비는 수상’ 이상한 아파트』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0일자) • 연합뉴스 : 『35일간 쇠줄로 공공 세종시 아파트 경로당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4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관리비 조사해주오 ... 세종시에 첫 감사청구, 주민 500여명 7000만원 차이』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관리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박○○ 對 세종의소리
조 정 대 상	『박○○ 전 교장 원직 복귀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모 학교 교장 복직을 앞두고 있는 신청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대전조정 25·26	(정정·손배청구) 전○○ 對 대전뉴스
조 정 대 상	『○○○○○○ 대전지부, 자중지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현역 군인인 신청인이 모 단체 임원으로 선발된 과정에 불법과 하자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대전지부, 자중지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31~34	(각 정정·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인터넷 금강일보 ^(31·32) , 인터넷 충청투데이 ^(33·34)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금강일보 : 『농산물 원산지 속여 학교 납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수입산콩 제주산 친환경 콩나물로 둔갑시켜 대전지역 학교납품』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내산과 수입산 콩을 섞어 콩나물을 재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인터넷 금강일보 : 『‘농산물 원산지 속여 학교 납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수입산콩 제주산 친환경 콩나물로 둔갑시켜 대전지역 학교납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35	(정정청구) 최○○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초등 여교사 제자에 막말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교 여교사인 신청인이 제자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초등 여교사 막말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4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36	(반론청구) 장○○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 중양회 대전 간부 대규모 해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해임이 확정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대전조정 37	(정정청구) ○○종합식품 對 충남신문
조 정 대 상	『기업하기 힘든 도시 천안!』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유통대리점들이 불법을 일삼고 영양사와 유착 의혹도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기업하기 힘든 도시 천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30일자 1면)

2016대전조정 38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세종시 이상한 시영버스 선택 ... 청정도시 표방하며 매년 심한 경유버스 구입』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시영버스로 경유 차량을 구입한 것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청정도시 표방하며 매년 심한 경유버스 구입”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지역면)

2016대전조정 39, 40	(각 반론청구) 서○○ 對 대전뉴스
조 정 대 상	(1) 『저가 홍삼세트 고가구입 주장』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7일자 사회면) (2) 『○○○○○○, 감사 결과 뭉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단체 대전시지부 회장인 신청인이 저가의 선물세트를 터무니없는 고가에 매입하고 일부를 빼돌렸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⁴⁰⁾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³⁹⁾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1) 『서○○ 전 회장, 홍삼 구입 금액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사회면) (2) 『‘○○○○○○ 감사 결과 뭉개기 기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41, 42	(각 정정청구) (주) ○○○ 對 인터넷 금강일보 ⁽⁴¹⁾ , 인터넷 충청투데이 ⁽⁴²⁾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금강일보 : 『○○○ 오리지널 아기 물티슈 등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시중유통 물티슈 3개중 일부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43	(정정청구) 윤○○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1) 『천안시의회 도덕성 논란 ... 지탄받아 마땅』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5면) (2) 『직무유기 고위 공직자 덕분에 부의장에』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3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천안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기소사실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직무유기 고위 공직자 덕분에 부의장에’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15면)

2016대전조정 44·45	(정정·손배청구) ○○화학 (주)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화학 화재로 악행 들통 ... 사면초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폐수를 방류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화학 화재로 악행 들통 ... 사면초가’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4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46	(정정청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對 인터넷 굿모닝충청
조 정 대 상	『행복청 투자유치 왜 저조한가 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7일자 커버스토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산학 융합지구 사업 참여 자격에 미달하고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행복청 세종 산학 융합지구 및 세종 테크밸리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커버스토리면)

2016대전조정 47·48	(정정·손배청구) 문○○ 對 뉴스아이즈
조 정 대 상	『박지원, ‘성희롱은 참는게 미덕’ 논란 사과 “이유 여하 막론하고 심려 끼쳐 송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로 강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49	(정정청구) ○○○○○○○○학교 對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1) 『○○○○○학교 이번엔 부정 선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6일자 7면) (2) 『“○○○○○학교 女 비율 ‘경충’ 이유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의 2017년 신입생 선발에서 여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이 여학생 기숙사의 공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2016대전조정 50~53	(각 정정·손배청구) ○○○○○○○○협회 對 특급뉴스 ^(50·51) , 충청신문 ^(52·53)
조 정 대 상	• 특급뉴스 : 『베트남 체육국 공무원” 25일 공주시 방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5일자 사회면) • 충청신문 : 『공주경찰 - 베트남公安부, 양국 경찰 우의 다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7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대전조정 54	(정정청구) (주) ○○○○○의료기 對 대전KBS-1TV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황당 광고 의료기 17배 폭리』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20일자) (2) 뉴스7 프로그램 『황당 광고 의료기 17배 폭리』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로 노인들을 속여 의료기를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6대전조정 55	(정정청구) 충청북도 옥천군 對 뉴스피플아이
조 정 대 상	(1) 『옥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문제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사회면) (2) 『충북 옥천군 종합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옥천군수 등 고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옥천군이 상수도보호지역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했고, 장기간 불법폐기물을 매립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56	(정정청구) 충청남도 예산군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예산군 신청사 창호 설계 뒤늦게 변경 '빈축'』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9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예산군의 신청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57·58	(정정·반론청구) 충청남도 부여군 對 사비신문
조 정 대 상	(1) 『훼손당하는 세계유산 부소산성』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1면) (2) 『백제대종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1일자 6면, 7면)
신청인 주장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장 공사로 부여의 부소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59	(정정청구) ○○○○○○ (주) 對 코리아플러스
조 정 대 상	『전남도, 하강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사고가 속출하여 안전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한 레포츠시설을 짚라인이라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전남도, 하강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016대전조정 60, 61	(각 정정청구) ○○○○ 對 대전투데이 ⁽⁶⁰⁾ , 백제뉴스 ⁽⁶¹⁾
조 정 대 상	- 대전투데이 : 『충남 청양군 ‘S’ 광산, 골재 불법 반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7일자 종합뉴스면) - 백제뉴스 : 『청양군 ‘S’ 광산, 골재 불법 반출 의혹 사실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8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광산이 토목용 골재를 생산 반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대전투데이 : 『청양군 ○○리 불법 골재 반출, ㈜○골재산업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2일자 종합뉴스면) - 백제뉴스 : 『청양군 ○○리 불법 골재 반출, ㈜○골재산업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3일자 지역면)

2016대전조정 62·63	(정정·손배청구) 임○○ 對 뉴스세종
조 정 대 상	(1) 『임○○ ○○○문화원장 판소리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단순 실수 아닌 의도성 여부 둘러싸고 논란 확산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5일자 문화면) (2) 『임○○ ○○○문화원장 홍보가 완창 거짓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8일자 문화면) (3) 『세종시, 꿀불건 무형문화재 지정 행정 … 임○○ 문화원장 감싸기 급급』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판소리 명창인 신청인이 홍보가 공연에서 완창을 하지 않았고 사사 이력이 불명확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대전조정 64, 65	(각 정정청구) ○○○○○○○연구소 對 충청투데이 ⁽⁶⁴⁾ , 인터넷 충청투데이 ⁽⁶⁵⁾
조 정 대 상	『관피아 닷 내린 ○○○○○○○연구소』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6년 12월 13일자 1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2월 31일자 뉴스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정부 부처 출신의 관피아가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관피아 닷 내린 ○○○○○○○연구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7년 1월 13일자 2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월 13일자 뉴스종합면)

2016대전조정 66	(정정청구) 하태경 對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하태경, 황교안 대행과 ‘고성 샷대질’… 청문회 청와대 조사 무산 강력 항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샷대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하태경 의원, 황교안 총리에게 샷대질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4일자 21면)

경기중재부

2016경기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기일보 ^(1·2) , 인터넷 경기일보 ^(3·4)
조 정 대 상	『음주 운전도 모자라 협박까지 ... 나사 풀린 경찰관』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0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측정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음주운전도 모자라 협박까지 ... 나사풀린 경찰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6년 1월 22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일보 1월 22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5~7	(정정·반론·손배청구) (사) ○○○ 對 인터넷 한국복지뉴스
조 정 대 상	『사회적 물의 빛은 사회복지법인 ○○○ 정상화 위해 노력키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종합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8	(반론청구) 광명시 對 시사광명
조 정 대 상	『광명동굴 개발 사업비 약 1천 40억 + 알파?』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0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광명동굴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투입한 예산이 1천 41억 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광명시, 광명동굴 개발에 2011년부터 5년간 시 예산 198억원 사용 밝혀, 김○○ 시의원 1천 41억원 소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9	(추후청구) 광명시 외 1인 對 광명지역신문
조 정 대 상	『특혜 의혹 밝혀질까 ... 검찰 고발당한 광명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장이 모 서원 민간 위탁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고발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검찰, 양기대 시장 ○○서원 위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없음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1면)

2016경기조정 10~13	(각 정정·손배청구) 정○○ 외 1인 對 티브로드경기뉴스 ^(10·11) , 인터넷 티브로드 경기뉴스 ^(12·13)
조 정 대 상	(1) 『○○○○ 노점 상인회 ... ‘자릿세’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경기뉴스면) (2) 『노점 상인 간의 갈등 ... 합의점도 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4일자 경기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시장 상인회가 새로 들어온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장사를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4	(반론청구) 안덕수 對 강화섬소식
조 정 대 상	『안덕수 전 국회의원 ... 강화군 예비 후보 사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인적 욕심으로 강화군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 계양구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5, 16	(각 반론청구) 한국도로공사 對 경기일보 ⁽¹⁵⁾ , 인터넷 경기일보 ⁽¹⁶⁾
조 정 대 상	(1) 『100년 간다더니 ... 녹물 흐르고 균열 심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1면) (2) 『케이블과 상판 고정 댐퍼 104개 중 56개 기름 줄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서해대교 기초 구조물에 이격이 발생하고,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등 서해대교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일보 2016년 2월 1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7	(정정청구) 김상민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與 김상민 의원도 보좌진 특혜 채용·열정 폐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고, 다른 비서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8	(정정청구) 원○○ 외 10인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도의회 복지위 소속 의원 자율 예산 31억 나눠먹기』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도의회 자율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6일자 3면)

2016경기조정 19~22	(각 정정·손배청구) 가○○ 對 중부일보 ^(19·20) , 인터넷 중부일보 ^(21·22)
조 정 대 상	(1) 『‘XX꿀값 · 건방진 XX들 · XX하고 · ’○○대 여교수 욕설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1면) (2) 『욕설 女교수, 7시간 27분간 문자 폭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5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대 여교수 욕설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6년 3월 18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3월 1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23, 24	(각 정정청구) 김○○ 對 인천일보 ⁽²³⁾ , 인터넷 인천일보 ⁽²⁴⁾
조 정 대 상	『○○병원장, 승진 인사자 금품 요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2면)
신청인 주장	모 병원장인 신청인이 승진 대상자들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25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화성시 ○○출장소 공무원 - 용역사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도로시설 유지보수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지자체 입찰 및 집행기준을 어기고 수 천만원의 예산을 부당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26	(추후청구) 이○○ 외 1인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1) 『남양주 복지시설 제2의 ○○원』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사회면) (2) 『후원금 빼돌리고 ... 지적 장애인들 폭행 장애인 시설 원장 일가족 입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횡령의혹’ 남양주 S 장애인 시설 원장과 아내, 검찰서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27~30	(각 정정·추후청구) 김○○ 외 1인 對 기호일보 ^(27·28) , 인터넷 기호일보 ^(29·30)
조 정 대 상	(1) 『전무이사 인준 정관 각 주체별 해석 달라』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16일자 사회면) (2) 『고성난무 ○○시 개인택시조합 공청회 결국 파행』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17일자 사회면) (3) 『정관 개정안, 현 임원진 장기집권 위한 꼼수』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10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10월 16일자 사회면) (4) 『○○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대의원들에 금품 지급 혐의』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10월 23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 이사장이 현 임원진에게 유리한 정관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공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개인택시조합, 김○○ 이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3월 18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3월 1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31, 32	(각 정정청구) 홍일표 對 인천일보 ⁽³¹⁾ , 인터넷 인천일보 ⁽³²⁾
조 정 대 상	『인천 與 국회의원 차명계좌 의혹 ... 市선관위 신고 접수 사실 확인』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2월 19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 통장을 만들어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33, 34	(각 손해청구) (사) ○○○○환경운동본부 對 인터넷 기호일보 ⁽³³⁾ , 인터넷 일간경기 ⁽³⁴⁾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기호일보 : 『환경단체 대표에 행정 특혜 ‘○○ ○○면 이장단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지역면) - 인터넷 일간경기 : 『산업쓰레기 소각장 인·허가 무효 투쟁』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에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35, 36	(각 정정청구) 임○○ 對 김포저널 ⁽³⁵⁾ , 인터넷 김포저널 ⁽³⁶⁾
조 정 대 상	『○○○○○ 환경 역학조사 ‘오염 분석’ 일부 조작』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1월 18일자 1면, 인터넷 김포저널 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행한 모 지자체 환경 역학조사의 최종 보고서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 환경 역학조사 ‘오염분석’ 일부 조작』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김포저널 5월 16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37~40	(각 정정·손배청구)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對 안산신문 ^(37·38) , 우리안산넷 ^(39·40)
조 정 대 상	『○○○○○ 재건축 추진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안산신문 2016년 3월 16일자 1면, 안산우리넷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신청인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재건축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안산신문 2016년 4월 20일자 1면, 우리안산넷 4월 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41·42	(추후·손배청구) 최○○ 對 케이에스피뉴스
조 정 대 상	『배재정 의원, 비리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1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기관장 재임 당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43·44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對 등잔일보
조 정 대 상	『광명시, 민간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 노릇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기획취재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특정 기업의 아파트 분양 광고성 기사를 시정 홍보지에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광명시, 민간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 노릇’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4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45, 46	(각 정정청구) (사) ○○○○ 對 김포저널 ⁽⁴⁵⁾ , 인터넷 김포저널 ⁽⁴⁶⁾
조 정 대 상	(1) 『‘환경정의, 김포농민 몰살시키고 떠날 것인가’』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5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김포저널 12월 14일자 사회면) (2) 『‘거물대리 토양오염 우려기준 크게 밀돌아’』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1월 4일자 2면, 인터넷 김포저널 1월 4일자 사회면) (3) 『‘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에 조직적 개입’』 제하의 기사 (김포저널 2016년 1월 4일자 3면, 인터넷 김포저널 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김포시의 환경문제를 조작, 발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47~50	(각 정정·손배청구) 신○○ 외 1인 對 OBS경인TV ^(47·48) , 인터넷 OBS경인TV ^(49·50)
조 정 대 상	(1) OBS 뉴스740 프로그램 『인천시 설립 법인 운영 호텔 ‘갑질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1일자) (2) OBS 뉴스740 프로그램 『강제 추행·방뇨에 호텔 여직원 사직』 제하의 보도 (2016년 3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호텔 경영자인 신청인이 호텔 편의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직원들을 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51~54	(각 정정·손배청구) ○○병원 외 1인 對 경기일보 ^(51·52) , 인터넷 경기일보 ^(53·54)
조 정 대 상	『우리 아들 수술실에 원무과장이?』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6년 3월 31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3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 원무과장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신청인의 반론이 해당 기사에 보도되어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요구하는 정정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어서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음)

2016경기조정 55, 56	(각 정정청구) 김○○ 對 인천일보 ⁽⁵⁵⁾ , 인터넷 인천일보 ⁽⁵⁶⁾
조 정 대 상	(1) 『안양공고 ‘통유리 감옥’... 고3생 더위·악취 고통』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3월 18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18일자 사회면) (2) 『도교육청, 안양공고 무책임 행정 해결하라』 제하의 사설 (인천일보 2016년 3월 21일자 11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안양공고 학생들이 통유리 감옥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경기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불법단체 연계 ○○○ 이사 선임 사실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뉴스사람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법단체 소속이며, 불법적으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법단체 연계 향림원 이사 선임 사실 밝혀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59·60	(정정·손배청구) ○○○○○ 對 인터넷 수원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연합으로 ○○○에 재갈 물리려다 딱 걸린 청와대의 자충수』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모 시민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피력』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61, 62	(각 정정청구) 성남시 對 중부일보 ⁽⁶¹⁾ , 인터넷 중부일보 ⁽⁶²⁾
조 정 대 상	『성남시 GTX 분담금 버티기 … 道 ‘성남역 제외’ 강경 카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GTX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성남시 사이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63	(반론청구) 속초시 對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1) 『5천만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2)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사회면) (3)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5천만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64·65	(정정·손배청구) 심○○ 對 경기매일
조 정 대 상	『안양시 의원 한마디에 동장 보직 해임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순회 신년 인사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동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1면)

2016경기조정 66, 67	(각 정정청구) 정○○ 對 공나물신문 ⁽⁶⁶⁾ , 인터넷 공나물신문 ⁽⁶⁷⁾
조 정 대 상	『뒷걸음질 치는 부천시 체육 진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공나물신문 2015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공나물신문 1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천시청 전 수영부 감독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 기간 도과)

2016경기조정 68	(정정청구) 정○○ 對 부천미래신문
조 정 대 상	『○○시 의원, 지역 언론 폄하 ‘말썽’』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지역 신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의원, 지역 언론 폄하 ‘말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69, 70	(각 정정청구) 계양구 對 경기신문 ⁽⁶⁹⁾ , 인터넷 경기신문 ⁽⁷⁰⁾
조 정 대 상	『계양구 청렴도 1위라는데 주민 체감은 최하』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6년 4월 25일자 9면, 인터넷 경기신문 4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계양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막말을 하고 건축허가와 관련 특정 제품의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반론보도문] ‘계양구 청렴도 1위라는데 주민체감은 최하’ 관련』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6년 6월 6일자 6면, 인터넷 경기신문 6월 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71, 74, 75	(반론·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김포신문 ^(71,75) (손배청구) 김포신문 ⁽⁷⁴⁾
조 정 대 상	- 김포신문 : 『한○○ 로컬 마켓 8개월간 식품 불법 판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5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김포신문 : (1) 『오픈 마켓 지역 상권 침범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사회면) (2) 『지역 카페들, 순수로 돌아가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개최한 오픈 마켓 입점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오픈 마켓 지역 상권 침범 도 넘었다” 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김포신문 2016년 6월 15일자 1면, 인터넷 김포신문 6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72·73	(정정·손배청구) 지○○ 외 1인 對 기독교일보씨디엔
조 정 대 상	(1) 『○○○ 비대위 명칭과 역할 바꾸고 긴급조치 선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4일자 초기화면) (2) 『○○○ 개혁위, 사무처에 공개질의 및 제안』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초기화면) (3) 『○○○ 개혁위 “사태를 이전투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3일자 초기화면) (4) 『○○○ 개혁추진위 통해 드러나는 ○○○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초기화면) (5) 『○○○, 개혁위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9일자 초기화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날조되어 무효인 정관에 근거한 불법집단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주장)

2016경기조정 76	(정정청구) 어○○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통폐합 용역결과 인정 못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집단 반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예술단체 노조 부지부장인 신청인의 소속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통폐합 용역결과 인정 못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집단 반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의 소속 수정 (2016년 6월 14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77~80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23인 對 기호일보 ^(77·78) , 인터넷 기호일보 ^(79·80)
조 정 대 상	(1) 『인천 중구 ‘통장 vs 동장 마찰’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6월 7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6월 7일자 사회면) (2) 『통장들 돈 각출 명절마다 선물 상납 중구 ○○동 공무원 ‘비위 의혹’ 시끌』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6년 6월 8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6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소속 통장들인 신청인들이 동 직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관행처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 통장들 돈 각출 명절마다 선물 상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4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81~84	(각 정정·손배청구) ○○○합창단 對 평택시민신문 ^(81·82) , 인터넷 평택시민신문 ^(83·84)
조 정 대 상	『○○시 A합창단 ‘도덕적 해이’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3일자 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운영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85~87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對 CNN21방송
조 정 대 상	(1) 『연구용역 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6일자 정치면) (2) 『연구용역 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9일자 정치면) (3) 『연구용역 비리 누가 관리 감독 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집행 절차 및 용역자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88·89	(반론·손배청구) 국기원 對 세계태권도연합뉴스
조 정 대 상	『해외 146명의 태권도 지도자들의 고언 “국기원을 살려 주십시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3일자 태권도면)
신청인 주장	국기원 운영 및 신임 이사진 구성을 위한 임시 이사회 개최 무산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146명의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의 고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9일자 태권도면)

2016경기조정 90, 91	(각 반론청구) (재) 경기도문화의전당 對 중부일보 ⁽⁹⁰⁾ , 인터넷 중부일보 ⁽⁹¹⁾
조 정 대 상	『도 문화의 전당 등 4~5곳 우선 통폐합』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4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공공기관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92·93	(정정·손배청구) 김○○ 對 성결네트워크
조 정 대 상	『긴급뉴스 ○○○대 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일자 헤드라인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조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94~97	(각 추후·손배청구) 염○○ 對 인터넷 일간경기 ^(94·95) , 인터넷 중부일보 ^(96·97)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간경기 :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캠핑장 조성 속이고 현무암 6천t 불법거래 ... 공무원도 한통속』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일간경기⁽⁹⁴⁾, 인터넷 중부일보^(96·97)/내용 : 추후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일간경기⁽⁹⁵⁾/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간경기 : 『[추후보도문]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캠핑장 조성 속이고 현무암 6천t 불법거래 ... 공무원도 한통속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98·99	(정정·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화성저널
조 정 대 상	『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인터뷰면)
신청인 주장	음악가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신청인의 연주실력과 애국심을 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1일자 인터뷰면)
2016경기조정 100	(정정청구) (사) ○○복지회 對 인터넷 시흥저널
조 정 대 상	(1) 『○○복지관, 시흥시 시설장 교체 요구 목살』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사회면) (2) 『○○복지관 사태 제2국면 맞아』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노조탄압과 인사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복지관, 시흥시 시설장 교체 요구 목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01~103, 106~10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협동조합 對 인천일보 ^(101~103) , 인터넷 인천일보 ^(106~108)
조 정 대 상	(1) 『○○○○생협 ‘부당노동행위’ 파장 수면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5월 13일자 13면, 인터넷 인천일보 5월 13일자 경기면) (2) 『○○○○생협 부당노동행위 안타깝다』 제하의 사설 (인천일보 2016년 5월 16일자 11면, 인터넷 인천일보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생협의 ‘부당노동행위’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1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04, 105 115~118	(각 정정청구) 김○○ 對 시흥저널 ⁽¹⁰⁴⁾ , 인터넷 시흥저널 ⁽¹⁰⁵⁾ (각 정정·손배청구) 시흥저널 ^(115·116) , 인터넷 시흥저널 ^(117·118)
조 정 대 상	(1) 『시립어린이집 원장, 법규 어기고 대학원 다녀 논란』 제하의 기사 (시흥저널 2016년 7월 11일자 3면, 인터넷 시흥저널 7월 9일자 사회면) (2) 『시립 ○○○○ 어린이집, 건축법 위반 적발』 제하의 기사 (시흥저널 2016년 8월 8일자 3면, 인터넷 시흥저널 8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원 수업을 빙자해 조퇴와 휴가를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 『시립어린이집 원장, 법규 어기고 대학원 다녀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사회면) (2) 『○○○○ 시립어린이집 원장, 조퇴 및 반일 휴가 ‘임의 사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시흥저널 2016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인터넷 시흥저널 10월 14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09~111	(각 정정청구) 박○○ 외 2인 對 반월신문 ⁽¹⁰⁹⁾ , 인터넷 반월신문 ⁽¹¹⁰⁾ , 경인매일 ⁽¹¹¹⁾
조 정 대 상	- 반월신문 : 『공무원 비리 연루 의혹 ... 민원인이 알렸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7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8월 17일자 사회면) - 경인매일 : 『안산시 단원구 P공무원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4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불법 간판 과징금 부과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반월신문, 인터넷 반월신문) - 취하 (경인매일/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기조정 112, 113	(각 정정청구) (유) ○○○○○○ 對 경기일보 ⁽¹¹²⁾ , 인터넷 경기일보 ⁽¹¹³⁾
조 정 대 상	- 경기일보 : 『불에 탄 쌀 수십 만 명분, 우리 밥상에 올랐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1면, 인터넷 경기일보 8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기일보 : (1) 『불에 탄 쌀 수십톤, 경기미로 포장 전국 유통』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1일자 사회면) (2) 『경기미 둔갑한 불에 탄 쌀 손해사정법인 경매가 단초』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에 탄 쌀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14	(정정청구) 유○○ 對 경기도민뉴스
조 정 대 상	『○○자원봉사센터 직원, 후원 물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원인 신청인이 독지가로부터 받은 기탁물품을 유용,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후원 물품 유용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19, 120	(각 정정청구) 박○○ 외 2인 對 반월신문 ⁽¹¹⁹⁾ , 인터넷 반월신문 ⁽¹²⁰⁾
조 정 대 상	『안산시 ○○구청 A과/공무원 비리 연루 의혹 ... 민원인이 알렸다/P공무원, ○○ ○○○○협회 K국장과 함께 ... 불법 간판 과징금 협박 ‘일감 수주’』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9월 7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인터넷판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을 하여 의혹이 있 다고 보도하였으나, 신문지면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하였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P공무원·K국장 언론중재위원회에 반월신문 제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10월 12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21·122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1)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물티슈 전 대표 과거 ‘정직함’ 언급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경제면) (2)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물티슈 측, 2016년 6월 24일 제조 제품만 리콜?』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물티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관련 정정보도 및 사과문』 제하의 기 사 (2016년 10월 7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123·124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과장은 어디가고 네가 나와” 여성 공무원 넘어뜨려』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부천 지역 모 단체장 재직 시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125·126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가평 80대 노인 ‘철거 명령 부당’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가평군이 신청인에게 불법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후 지급)
이 행 결 과	『가평 80대 노인 ‘철거 명령 부당’ 1인 시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27~130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연수신문 ^(127·128) ,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129·130)
조 정 대 상	(1) 『전시장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재검토 필요』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6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8월 8일자 사회면) (2) 『원인재역 A음식점 경찰수사 시작』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6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9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음식점의 개업과정에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31	(손배청구) 김○○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추적르포 사라진가족4 프로그램 (2016년 7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병원에서 의료기록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경기조정 132·133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경기방송
조 정 대 상	『“참는 게 미덕·불쌍한 가해자”... 국민의당 성희롱 교육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강사인 신청인이 성희롱 피해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참는 게 미덕·불쌍한 가해자”... 국민의당 성희롱 교육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일자 정치면)

2016경기조정 134~141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도민일보 ^(134·135) , 인터넷 도민일보 ^(136·137) , 수도일보 ^(138·139) , 인터넷 수도일보 ^(140·141)
조 정 대 상	- 도민일보 : 『시흥시 특혜 의혹 후폭풍 ... 공무원 개입설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6면, 인터넷 도민일보 10월 19일자 사회면) - 수도일보 : 『시흥시, ‘의류수거함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0일자 10면, 인터넷 수도일보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조폭 출신이며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도민일보, 인터넷 도민일보/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수도일보, 인터넷 수도일보)
이 행 결 과	『시흥시 특혜 의혹 후폭풍 ... 공무원 개입설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도민일보 2016년 11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도민일보 11월 11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42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인덕원선(신수원선), 호계·흥덕·동탄 3개 역 결국 무산』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지하철 신수원선 역사 건설 사업 계획에서 호계, 흥덕, 동탄 등 3개 역사가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6경기조정 143~146	(각 정정·손배청구) ○○○○○○○○ 개원의사회 對 중부일보 ^(143·144) , 인터넷 중부일보 ^(145·146)
조 정 대 상	『병원들의 ‘결핵 상술’... 유료 예방 접종 권유』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6년 8월 16일자 23면, 인터넷 중부일보 8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기도내 병원들이 결핵예방 접종시 피내주사 대신 고가인 경피주사를 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병원들의 ‘결핵상술’... 유료 예방 접종 권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부일보 11월 1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47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일간경인
조 정 대 상	『광명 지역에 때아닌 중년 남녀의 섹스 동영상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2일자 동네방네면)
신청인 주장	음란 동영상 유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기조정 148, 149	(각 정정청구) 이○○ 對 인천일보 ⁽¹⁴⁸⁾ , 인터넷 인천일보 ⁽¹⁴⁹⁾
조 정 대 상	『여야 시당 집안 문제로 시끌』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0월 26일자 3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2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모 정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이 신청인이 내부 공론화 없이 정책위원을 위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1월 17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11월 17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50, 151	(각 정정청구) 안산시 외 1인 對 반월신문 ⁽¹⁵⁰⁾ , 인터넷 반월신문 ⁽¹⁵¹⁾
조 정 대 상	(1) 『안산시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8월 17일자 기사분석면, 인터넷 반월신문 8월 17일자 기사분석면) (2) 『실시협약서가 위조되었다』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10월 12일자 기획특집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12일자 기획특집면)
신청인 주장	안산시가 시행중인 지역 복합개발사업의 외국 투자사가 페이퍼 컴퍼니이며, 사업협약서도 위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6년 11월 23일자 사람과사람들면, 인터넷 반월신문 11월 22일자 사람과사람들면)

2016경기조정 152	(정정청구) 서○○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시 체육회 ○○선수단 경비 부정수급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6일자 7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소속 선수단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 경비를 이중 지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당사자 간 화해)

2016경기조정 153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사고가 속출하여 안전 모니터링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고 한 레포츠 시설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전남도, 하강 레포츠시설 안전 강화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9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54·155	(정정·손배청구) (주) 인천연수신문사 對 연수송도신문
조 정 대 상	『Y신문 K사주 “형사 고소” 또 당할 처지』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원들이 정정보도 의견을 개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56·157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광명
조 정 대 상	『본지 기자, 김○○ 시의원에게 폭행당해 고소장 제출』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 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58~163, 166~169	(각 정정·손배청구) 양기대 對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158·159) , 대한투데이 ^(160·161) , 인터넷 대한투데이 ^(162·163) , 미디어타임즈 ^(166·167) , 온나라타임즈 ^(168·169)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논란, 광명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외 3건 - 대한투데이 :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농단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8일자 1면, 인터넷 대한투데이 12월 7일자 사회면) 외 1건 - 미디어타임즈 :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양기대 광명시장, 박수무당 찾아 인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7일자 사회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광명시장인 신청인이 공무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사문제를 스님과 논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 『양기대 광명시장 박수무당 인사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초기화면) - 대한투데이 : 『‘광명시장 인사 논란 및 파문’ 등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6일자 1면, 인터넷 대한투데이 12월 26일자 사회면) - 미디어타임즈 : 『[정정보도] 양기대 광명시장 인사 관련 ... 공무원 명단 사전 외부 유출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25일자 사회면) - 온나라타임즈 : 『광명시장 인사 논란 및 파문 등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64·165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對 인터넷 경인종합뉴스
조 정 대 상	『이효선 전 광명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공무원 신상정보 유출’ 의혹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2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청탁에 의해 무속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양기대 광명시장 박수무당 인사 의혹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초기화면)

2016경기조정 170	(정정청구) 의왕시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악취 공장 바로 옆(50m 거리) 장애아 치료소?』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왕시가 장애인 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환경문제가 심각한 장소로 이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기조정 171~178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기일보 ^(171·172) , 인터넷 수도권일보 ^(173·174) , 인터넷 일간경기 ^(175·176) , 인터넷 중부일보 ^(177·178)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기일보 : 『연천 지역서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수도권일보 : 『산림 훼손 6억 상당 현무암 불법 채취 연천, 일당 무더기 적발 ... 주민 신고 목살 공무원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8일자 뉴스면) - 인터넷 일간경기 : 『지질 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목인 연천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8일자 정치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캠핑장 조성 속이고 현무암 6천 불법 거래 ... 공무원도 한 통속』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목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기일보 : 『‘연천 지역서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적발’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수도권일보 : 『“산림훼손 6억 상당 현무암 불법 채취 연천, 일당 무더기 적발 … 주민 신고 묵살 공무원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경기 : 『[추후보도문]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 채석 묵인 연천 공무원 적발’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3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79	(정정청구) 권윤자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국과수, ‘안산 동반 자살’ 부검 결과 도출 … 사망 시점 여전히 오리무중』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 유병언씨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국과수, ‘안산 동반 자살’ 부검 결과 도출 … 사망 시점 여전히 오리무중』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7년 1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기조정 180·181	(정정·반론청구) 부천시 對 인터넷 부천매일
조 정 대 상	『이럴려고 참여 예산 박수쳤나 … 자괴감이 든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1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부천시 참여예산 연구회 지원 예산이 담당부서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기조정 182·183	(정정·손배청구) 부○○ 외 1인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파주 ○○고 “비리 온상”』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들이 여교사 성희롱, 방학프로그램 부실운영 등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파주 ○○고 “비리 온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6일자 사회면)

강원중재부

2016강원조정 1·2	(반론·손배청구) 박○○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장모와 아내 폭행한 60대』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을 보도했으나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요구하는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함)
2016강원조정 3·4	(추후·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조 정 대 상	『檢, ‘학점은행 비리 의혹’ ○○○○진흥원 압수 수색』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9일자 속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학점은행 학사 학위 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강원조정 5·6	(정정·손배청구) ○○○○○건설개발 외 1건 對 MBC강원영동-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주택조합 갈등, 조합원 불만』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동해의 모 주택조합 아파트 자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주택조합 갈등, 조합원 불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4일자)

2016강원조정 7, 8	(각 정정청구) 안○○ 외 2인 對 시사강원신문 ⁽⁷⁾ , 인터넷 시사강원신문 ⁽⁸⁾
조 정 대 상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마을이 망가졌다』 제하의 기사 (시사강원신문 2016년 6월 27일자 4면, 인터넷 시사강원신문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횡포 때문에 아파트 진입 도로가 지역과 단절된 형태로 변경 설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마을이 망가졌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시사강원신문 2016년 7월 25일자 4면, 인터넷 시사강원신문 7월 25일자 사회면)
2016강원조정 9~11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2인 對 G1-TV
조 정 대 상	뉴스820 프로그램 『○○대 분규 2년 ... 정상화 안갯속』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모 대학교 학내 분규의 원인이 대학과 전 이사장 측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820 프로그램 『“○○대 분규 2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9일자)
2016강원조정 12	(정정청구) 이○○ 對 흥천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교회 목사, 불법 부동산 거래, 사기 편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3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담임목사인 신청인이 신자들로부터 모은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교회 목사, 불법 부동산 거래, 사기 편취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8일자 이슈면)

2016강원조정 13~15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교 외 1인 對 인터넷 강원신문
조 정 대 상	『교육부,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학내 분규 매듭』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3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모 대학교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8일자 교육면)

충북중재부

2016충북조정 1·2	(추후·손배청구) (사) ○○○ 對 인터넷 중부광역신문
조 정 대 상	『○○○○○○연대 “인권위, ○○학원 처벌·고발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비리를 저지르고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추후보도문] ○○○ 비리와 학대 혐의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6일자 정치면)

2016충북조정 3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충남 지방일간지 기자 음주대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방일간지 기자인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충북조정 4, 5	(각 정정청구) 홍성군 對 중부매일 ⁽⁴⁾ , 인터넷 중부매일 ⁽⁵⁾
조 정 대 상	『화물차 불법 행위 눈감은 지자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홍성군이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8일자 2면)

2016충북조정 6~9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충청타임즈 ^(6·7) , 인터넷 충청타임즈 ^(8·9)
조 정 대 상	『국가 재산 임차인이 주인 행세 ... 수 천만원 꿀꺽』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5년 11월 27일자 3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11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충북조정 10·11	(정정·손배청구) 권○○ 對 제천뉴스저널
조 정 대 상	(1) 『시민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는 여론조사 절실』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뉴스포커스면) (2) 『제천, 단양 총선, 선거법 위반 중대 변수 - 본보 여론조사 중단』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뉴스포커스면) (3) 『충북경찰청, K모 예비후보 2차 출석 요구 -“출석 시기 협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7일자 뉴스포커스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 후보인 신청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충북조정 12, 13	(각 정정청구) ○○○○○ (주) 對 CJB-TV
조 정 대 상	(1)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개통 석 달 만에 ... 부실 시공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0일자) (2)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부실 의혹 ○○로, 긴급 현장 점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2일자) (3)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이상한 품질 성적서 ... “알고도 공사 맡겨”』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7일자)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부실 시공으로 도로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충북조정 14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청주시 ‘전통 상업보존 구역 규정 적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회사에서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이 허가 기관인 청주시의 행정을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충북조정 15	(정정청구) 충북지방경찰청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청주 무예 마스터십 참가 외국인 무더기 잠적 ...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세종충북면)
신청인 주장	청주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의 무단 이탈에 대해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6충북조정 16~19	(각 정정·손배청구) (학) ○○학원 외 1인 對 충청리뷰 ^(16·17) , 충북인뉴스 ^(18·19)
조 정 대 상	- 충청리뷰 : (1) 『기숙사 맞나? 수용소 같은 시설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5면) (2) 『시험 땀 “크게 써라” “눈 크게 떠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5면) (3) 『학력 우수 축구학교의 허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1면) - 충북인뉴스 : (1) 『기숙사 맞나? 수용소 같은 시설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2) 『시험 땀 “크게 써라” “눈 크게 떠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3) 『학력 우수 축구학교의 허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중학교에서 불법개조된 기숙사를 운영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부정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총복조정 20	(추후청구) 윤석용 對 인터넷 총복일보
조 정 대 상	『20대 총선 불법 행위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고 보도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20대 총선 불법 행위 잇따라』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10월 11일자 정치면)

2016총복조정 21~24	(각 정정·손배청구) 남○○ 對 동양일보 ^(21·22) , 인터넷 동양일보 ^(23·24)
조 정 대 상	『한 지역 기사를 죽음으로 내몬 전공노의 악랄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2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살한 지역 일간지 기사를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 지역 기사를 죽음으로 내몬 …” 성명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1월 1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31일자 사회면)

2016총복조정 25~3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영농조합법인 對 동양일보 ^(25~27) , 인터넷 동양일보 ^(28~30)
조 정 대 상	(1) 『○○○○영농조합 ‘편가르기’ 운영』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5월 3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5월 2일자 사회면) (2) 『○○○○영농조합 잇단 내홍 ‘눈살’』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8월 9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8월 8일자 사회면) (3) 『“○○○○영농조합 대표 퇴진해야”』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9월 8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9월 7일자 사회면) (4) 『“○○○○조합 불·탈법 고발 … 철저 조사해달라”』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0월 4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3일자 사회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에 직원간 편가르기와 부당해고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영농조합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1월 2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11월 1일자 사회면)

2016충북조정 31, 32	(각 손해청구) 이○○ 對 현대HCN충북방송 ⁽³¹⁾ ,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³²⁾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학교 운동장이 돈벌이?』 제하의 보도 (현대HCN충북방송 2016년 10월 12일자,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10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충북조정 33~36	(각 정정·손배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對 동양일보 ^(33·34) , 인터넷 동양일보 ^(35·36)
조 정 대 상	『한 지역기자를 죽음으로 내몬 전공노의 악랄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2면, 인터넷 동양일보 10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해 뇌물 브로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해당 기사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충북조정 37, 38	(각 추후청구) 박○○ 對 옥천신문 ⁽³⁷⁾ , 인터넷 옥천신문 ⁽³⁸⁾
조 정 대 상	『어린이집 원장, 교사 성희롱-성추행 의혹』 제하의 기사 (옥천신문 2016년 2월 26일자 3면, 인터넷 옥천신문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교사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충북조정 39, 40	(각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옥천신문 ⁽³⁹⁾ , 인터넷 옥천신문 ⁽⁴⁰⁾
조 정 대 상	『1353호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옥천신문 2016년 9월 9일자 23면, 인터넷 옥천신문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농협의 휴일 근무수당이 10만원임에도 5만원 수준이라고 잘못 보도해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처럼 오도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1353호 알려왔습니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옥천신문 2016년 12월 16일자 19면, 인터넷 옥천신문 12월 16일자 사회면)

2016충북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임○○ 對 현대HCN충북방송 ^(41·42) ,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43·44)
조 정 대 상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장애인 지원센터, 부정 수급 사실 알고도 ‘쉬쉬’』 제하의 보도 (현대HCN충북방송 2016년 10월 26일자,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10월 2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보조 자격이 없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7시저녁뉴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현대HCN충북방송 2016년 12월 13일자,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12월 13일자 뉴스면)

2016충북조정 45·46	(정정·손배청구) ○○○○○보호센터 외 1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괴산군, 텃빈 건물을 노인 요양기관 지정 …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8일자 사회면) (2) 『괴산군, ‘텃빈 건물 요양시설 지정’ 관련 행정 지도 나서』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시설이 전기와 난방 등 기본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충북조정 47~50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동양일보 ^(47·48) , 인터넷 동양일보 ^(49·50)
조 정 대 상	『이○○씨, 범법 숨기고 11년 근무』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6년 8월 12일자 1면, 인터넷 동양일보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로 인한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7년 1월 12일자 2면, 인터넷 동양일보 1월 11일자 사회면)

전북중재부

2016전북조정 1~3	(각 정정청구) 최○○ 외 1인 對 전북매일신문 ⁽¹⁾ , 전주일보 ⁽²⁾ , 전라일보 ⁽²⁾
조 정 대 상	- 전북매일신문 : 『○○농협, 노조의 억지 주장 강력 대처할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7일자 6면) - 전주일보 : 『○○농협 ‘손배 청구 등 책임 묻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7일자 7면) - 전라일보 : 『○○농협 ‘노조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7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전주 모 농협 노조가 법외 노조이고 벌금형이 확정된 농협 인사를 구명하기 위해 조합장을 감금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 전북매일신문 : 『농협 노조, 사측 주장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6면) - 전주일보 : 『‘○○농협 손배 청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9일자 7면) - 전라일보 : 『○○농협 노조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6면)
2016전북조정 4·5	(정정·손배청구) 임○○ 외 1인 對 전북연합신문
조 정 대 상	(1)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총체적 부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1면) (2)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8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전주 모 시장의 도로 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전북조정 6·7	(정정·손배청구) 이○○ 對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주한 ○○ 문화원장을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시아 국가의 주한 문화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공식 외교관 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문화원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1일자 2면)

2016전북조정 8·9	(정정·손배청구) 익산시 對 익산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익산시 의회 언론 조례 무시하고 부당 혈세(광고비) 집행』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및 22일자 탐사면)
신청인 주장	익산시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뉴스통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언론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 행 결 과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초기 화면)

2016전북조정 10·11, 14·15	(각 정정·손배청구) ○○○○위원회 ^(10·11) , 남원시 ^(14·15) 對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제86회 춘향제 시작부터 삐걱』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1일자 16면)
신청인 주장	남원시가 춘향제 주관 방송사를 멋대로 선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남원 춘향제 방송사 선정’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17면)

2016전북조정 12·13	(정정·손배청구) (사) ○○○○선양회 對 남원뉴스PAPER
조 정 대 상	『춘향제 주관 방송사 선정두고 잡음』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3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상적인 춘향제 주관 방송사 선정을 방해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선양회 “전국적 홍보 예산 절감 위해 방송사 추천한 것”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6일자 2면)
2016전북조정 16·17	(정정·손배청구) ○○○산림조합 외 1인 對 전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산림조합장-이사진 ‘내홍 격화’』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7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산림조합장이 방만하고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18·19	(정정·손배청구) 부안군 對 부안저널
조 정 대 상	『부안군 민선 6기 공약 10건 중 9건 ‘완료’, ‘정상 추진’이라고 발표』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부안군수가 민선 6기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부안군 공약 이행평가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2일자 1면)

2016전북조정 20	(정정청구) 양○○ 對 전라일보
조 정 대 상	『환복위 ‘웃고’ 교육위 ‘울고’』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유력했던 후보가 패한 원인이 신청인의 리더십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21·22	(정정·손배청구) 정○○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복마전』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3일자 전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출전한 신청인 동생의 수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6일자 전국면)
2016전북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협동조합 외 1인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1) 『겉다르고 속다른 아울렛 반대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7면) (2) 『360만원 출자한 패션조합 300억 대 뒷거래 이해 못해』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20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모 매장 입점을 반대하면서 뒤로는 상인회관 건설을 요구하는 등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25·26	(정정·손배청구) (유) ○○○푸드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 자격 미달업체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6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전주 모 산업 단지 구내식당 위탁업체로 선정된 신청인 업체가 입찰자격 미달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27~3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전북중앙신문 ^(27·28) , 전북도민일보 ^(29·30) , 전북일보 ^(31·32) , 전라일보 ^(33·34)
조 정 대 상	• 전북중앙신문 : 『‘갑질’ ○○대 교수, 이번엔 강사 해촉』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4면) • 전북도민일보 : 『학생 폭언 등 갑질 해임 후 복직한 ○○대 교수 이번엔 통보없이 ‘시간 강사 교체’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5면) • 전북일보 : 『갑질 논란 ○○대 ○○과 교수 이번엔 시간 강사 무더기 교체』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5면) • 전라일보 : 『○○대 ○○학과 A 교수 ‘또 갈등’- 복직 후 시간 강사 4명 모두 해촉』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강의 예정이던 시간 강사들을 무더기로 교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전북조정 35	(정정청구) 질병관리본부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순창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질병관리본부가 순창에서 C형 간염이 집단 발병했다고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요구하는 보도문이 지엽말단적임)

2016전북조정 36	(정정청구) 익산시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익산시 인사 청탁 대가 돈거래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3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익산시에서 인사 청탁 대가로 돈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37·38	(정정·손배청구) 이○○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전북도 ○○ 자문관 업체 상대 압력 행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28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전북도 ○○ 자문관 업체 상대 압력 행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전북도청에 근무한 신청인이 기업체에 접대 및 일자리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보도)

2016전북조정 39·40	(정정·손배청구) 부안군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1) 『정당한 취재를 거부하는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일자 11면) (2) 『도 넘은 불법 토석채취 눈감은 부안군』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6면) (3) 『부안군 도 넘은 불법 석산개발 왜 눈감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6일자 10면) (4) 『부안군 불법논란 석산 철저한 조사를』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0면) (5) 『불법 석산개발 의혹에도 부안군은 미적 미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9일자 1면) 외 5건
신청인 주장	부안군이 석산의 불법 개발을 묵인하고 언론의 취재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전북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순창신문 ^(41·42) , 인터넷 순창신문 ^(43·44)
조 정 대 상	『군, “당나귀는 가족이 아니다?”며 또 신축 허가』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6년 8월 10일자 1면, 인터넷 순창신문 8월 10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순창군 모 축사 주인이 면장과 친인척 관계여서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사 허가를 받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 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아파트 옆 축사’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순창신문 2016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순창신문 11월 28일자 초기화면)

2016전북조정 45~48	(각 정정·손배청구) (주) ○○○○○ 對 전북도민일보 ^(45·46)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47·48)
조 정 대 상	『○○군 인재육성 스쿨 사업, 부실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2016년 11월 14일자 8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11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수탁 운영중인 ○○군 인재육성 스쿨이 학생의 참여 저조 및 수업의 질 문제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 인재육성 스쿨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북도민일보 2016년 12월 16일자 9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12월 16일자 초기화면)

2016전북조정 49~52	(각 정정·손배청구) 김 ○ 외 2인 對 새전북신문 ^(49·50) , 인터넷 새전북신문 ^(51·52)
조 정 대 상	(1) 『공중 보건의 제멋대로, ○○ 주민 화났다』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6년 12월 13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12월 12일자 지역면) (2) 『○○ ○○ 공중 보건의 근무 일탈 보건복지부 진상 파악 나서』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6년 12월 15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12월 1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공중 보건의인 신청인들이 근무 위치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 공중 보건의, “보건복지부에 이의제기중”』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7년 1월 6일자 2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1월 5일자 초기화면)

2016전북조정 53	(정정청구) 김관영 對 전주MBC-TV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2일자)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3일자)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새만금 카지노 청와대 개입의혹 수사촉구』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3일자) (4)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내국인 카지노 청와대만 믿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4일자) (5)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정의당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검찰 수사 촉구』 제하의 보도 (2016년 11월 24일자) 외 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정을 추진중인 새만금 개발특별법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없이 청와대의 주문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김관영 의원 ‘새만금 리조트 청와대와 관련없어’』 제하의 보도 (2017년 1월 9일자)

2016전북조정 54·55	(정정·손배청구) ○○○ 협동조합 對 전북중앙신문
조 정 대 상	『마을 기업 예산지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12월 19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에 대한 익산시의 정상적인 예산 지원을 유력 정치인의 영향에 의한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익산 마을기업 예산 지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3일자 14면)

경남중재부

2016경남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 (유) 對 창원KBS-1TV ^(1·2) , KBS미디어 ^(3·4)
조 정 대 상	뉴스인사이드 프로그램 『현장 -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인가』 제하의 보도 (창원 KBS-1TV 2016년 12월 13일자, KBS미디어 12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새누리당 양산시장 후보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일부 지역의 연령별 목표 할당을 채우지 못했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 요청 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5~8	(각 정정·손배청구) ○○○○ (주) 對 함양신문 ^(5·6) , 인터넷 함양신문 ^(7·8)
조 정 대 상	『함양읍 ‘G모텔’ 세입자의 억울한 사연 호소』 제하의 기사 (함양신문 2016년 1월 18일자 3면, 인터넷 함양신문 1월 18일자 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와 소유건물 임차인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 임차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9, 10	(각 정정청구) 박○○ 對 뉴스경남 ⁽⁹⁾ , 인터넷 뉴스경남 ⁽¹⁰⁾
조 정 대 상	『거창군수 박○○ 예비 후보자 아들 잘봐 달라 청탁 의혹』 제하의 기사 (뉴스경남 2016년 1월 13일자 5면, 인터넷 뉴스경남 1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시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로 선정되도록 병원에 청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 거창군수 예비 후보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경남 2016년 3월 11일자 5면, 인터넷 뉴스경남 3월 10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1~12	(정정·손배청구) 박○○ 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거제시도, 면사무소도, 경찰서도 두 손 든 막무가내식 ‘불법 횡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웃집 주 출입구 앞에 돌덩어리를 부어놓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거제시도, 면사무소도, 경찰도 두 손 든 막무가내식 ‘불법횡포’ 관련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종합면)
2016경남조정 13~16	(각 정정·손배청구) ○○○추진위원회 對 경남일보^(13·14), 인터넷 경남일보^(15·16)
조 정 대 상	『함안 ○○초교 과밀학급 해소』 제하의 기사 (경남일보 2016년 1월 11일자 7면, 인터넷 경남일보 1월 10일자 사회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함안 모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수직 증축을 통해 해소하기로 교육청과 최종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함안 ○○초교 과밀학급 해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인터넷 경남일보 2016년 3월 22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7	(반론청구) 밀양시 외 1인 對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기자의 시각 - 베일 속의 특보』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8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밀양시가 밀양 국제멀티미디어쇼의 기획·진행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전권을 주었으며, 예산 집행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베일 속의 특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19면)

2016경남조정 18~21	(각 정정·손배청구) 안○○ 對 함안뉴스 ^(18·19) , 인터넷 함안뉴스 ^(20·21)
조 정 대 상	『함안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 의원 징계 심사 착수』 제하의 기사 (함안뉴스 2016년 2월 15일자 1면, 인터넷 함안뉴스 2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의원인 신청인이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경남조정 22	(정정청구) 송○○ 외 6인 對 인터넷 김해뉴스
조 정 대 상	『더민주, 공○○ 김해시장 후보 교체 검토 파문』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해시 의원이 김해시장 보궐선거 교체 논란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인터뷰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2016경남조정 23~26	(각 정정·손배청구) 송인배 對 경남도민신문 ^(23·24)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5·26)
조 정 대 상	『양산갑 송인배 후보 시의원에 결의서 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6년 3월 25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3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무위원들에게 본인이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결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27~30	(각 정정·손배청구) ○○농업협동조합 외 1인 對 경남매일 ^(27·28) , 인터넷 경남매일 ^(29·30)
조 정 대 상	『농협 조합장 전횡·비리 말썽』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6년 3월 21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3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장이 각종 전횡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농업협동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6년 4월 2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4월 26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31~58	(각 정정·손배청구) (사) ○○○○○○ 외 1인 對 경남도민일보 ^(31·32)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33·34) , 경남신문 ^(35·36) , 인터넷 경남신문 ^(37·38) , 경남매일 ^(39·40) , 인터넷 경남매일 ^(41·42) , 경남일보 ^(43·44) , 인터넷 경남일보 ^(45·46) , 아시아투데이닷컴 ^(47·48) , KNS뉴스통신 ^(49·50) , 아시아뉴스통신 ^(51·52) , 뉴스웨이경남 ^(53·54) , 인터넷 포커스뉴스 ^(55·56) , 뉴시스 ^(57·58)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파행’ ○○시 장애인 복지관 정상화』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6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월 27일자 진주면) 외 1건 - 경남신문 :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오늘부터 정상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9면, 인터넷 경남신문 1월 27일자 사회면) - 경남매일 : 『○○ 장애인 복지관, 오늘부터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7면, 인터넷 경남매일 1월 26일자 지방자치면) - 경남일보 : 『○○ 장애인 복지관 오늘부터 정상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7일자 4면, 인터넷 경남일보 1월 27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 ○○시 장애인 복지관 수탁·심의 결과 ‘의의 없어’』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4일자 사회면) (2)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7일부터 ‘정상 운영’』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6일자 사회면) 외 5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탁 운영하던 모 지자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관리자 고용 승계 문제를 해당 지자체와 새 수탁법인이 해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6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5월 12일자 사회면) - 경남신문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12일자 9면, 인터넷 경남신문 5월 12일자 사회면) - 경남매일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7면, 인터넷 경남매일 5월 24일자 지방자치면) - 경남일보 : 『‘○○시 장애인 복지관 고용 승계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4면, 인터넷 경남일보 5월 24일자 사회면) 외 6개 매체

2016경남조정 59~62	(각 정정청구) ○○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對 창원KBS-1TV ⁽⁵⁹⁾ , KBS미디어 ⁽⁶⁰⁾ , MBC경남-TV ⁽⁶¹⁾ , 인터넷 MBC경남 ⁽⁶²⁾
조 정 대 상	- 창원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허가 불가능한 곳에 아파트?』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10일자, KBS미디어 5월 10일자 뉴스면) - MBC경남-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4일자, 인터넷 MBC경남 5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63~66	(각 손해청구) 금○○ 對 거제타임즈 ⁽⁶³⁾ , 거제여성신문 ⁽⁶⁴⁾ , 거제중앙신문 ⁽⁶⁵⁾ , 인터넷 거제중앙신문 ⁽⁶⁶⁾
조 정 대 상	- 거제타임즈 : 『의사 - 여교수 - 의사 부인 ‘모텔앞 난투극? - 사회지도층 인사 모럴헤저드 극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일자 사회면) - 거제여성신문 : 『의사 - 여교수 - 의사 부인 ‘모텔앞 난투극? - 사회지도층 인사 모럴헤저드 극심』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4일자 사회면) - 거제중앙신문 : 『사회지도층 일탈 ‘의사와 부인, 법정 공방』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10일자 종합면, 인터넷 거제중앙신문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분쟁 대상인 신청인의 사적 사안과 관련 분쟁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거제타임즈, 거제여성신문/내용 : 손해배상 각 2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거제중앙신문, 인터넷 거제중앙신문/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6경남조정 67·68	(반론·손배청구) 김○○ 對 거창신보
조 정 대 상	『제7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종두 의원, 부의장 표주숙 의원 선출』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거창군 의원인 신청인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금품매수 및 성적 모욕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것을 두고 군민의 명예를 훼손한 저질 행동이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보도문 [반론보도] 김○○ 의원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0일자 2면)

2016경남조정 69~7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 對 경남도민신문 ^(69~71)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2~74)
조 정 대 상	『산청 ○○ 농공단지 석탄재 매립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6년 8월 8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8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적법하게 진행중인 석탄재 매립공사가 토양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부정적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75·76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김해 청소 용역업체 구린 냄새』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1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김해시 청소 용역업체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김모 씨 “김해 청소 용역업체 비리와 무관” 주장』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5일자 18면)
2016경남조정 77~80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남해시대 ^(77·78) , 남해타임즈 ^(79·80)
조 정 대 상	『삼동 봉화산 산정 분지 파헤쳐야 하나』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8월 16일자 3면, 남해타임즈 8월 16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삼동 봉화 산정분지 개발 관련』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9월 6일자 5면, 인터넷 남해시대 9월 1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81~89, 98	(각 정정청구) ○○○○○○ (주) 對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⁸¹⁾ , 인터넷 경남일보 ⁽⁸²⁾ , 인터넷 서경방송 ⁽⁸³⁾ , 연합뉴스 ^(84,98) , 인터넷 포커스뉴스 ⁽⁸⁵⁾ , 뉴시스 ^(86~88) , 쿠키뉴스 ⁽⁸⁹⁾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 『하동군 운영 자연 휴양림 내 짚라인 사고 발생』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남일보 : 『하동 구재봉 ‘명물’ 놀이기구 짚라인서 사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사건사고면) • 인터넷 서경방송 : 『하동 구재봉 하강레포츠 사고 … 예견된 ‘인재’』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뉴스인타임면) • 연합뉴스 : 『하동 구재봉 짚라인 잇단 사고 … 운행 중단』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최신기사면) 외 1건 • 인터넷 포커스뉴스 : 『하동소방서, 자연 휴양림 짚라인 타던 2명 구조』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전국면) • 뉴시스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짚라인 타던 40대 중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9일자 전국면) 외 1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레포츠 시설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잘못 표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경남일보, 인터넷 서경방송, 연합뉴스, 인터넷 포커스뉴스, 뉴시스, 쿠키뉴스/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인터넷 일간뉴스경남/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남일보 : 『하동 구재봉 ‘명물’ 놀이기구 ○○○서 사고』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5일자 사건사고면) • 인터넷 서경방송 : 『하동 구재봉 하강 레포츠 사고 … 예견된 ‘인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뉴스인타임면) • 연합뉴스 : 『하동 구재봉 ○○○ 잇단 사고 … 운행 중단』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6일자 최신기사면) • 인터넷 포커스뉴스 : 『하동소방서, 자연 휴양림 ○○○ 타던 2명 구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4일자 전국면) • 뉴시스 : 『하동 구재봉 자연 휴양림, ○○○ 타던 40대 중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8일자 전국면) • 쿠키뉴스 : 『하동 자연 휴양림 활강시설 안전사고 발생 … 2명 부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6년 8월 24일자 전국면)

2016경남조정 90~9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 콘텐츠사업단 對 밀양시민신문 ^(90~92) , 인터넷 밀양시민신문 ^(93~95)
조 정 대 상	『밀양아리랑 사업 순수해야 대중화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밀양시민신문 2016년 7월 29일자 15면, 인터넷 밀양시민신문 7월 29일자 사설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밀양 아리랑의 대중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폄하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96~97	(정정·손배청구) 오영호 對 의령신문
조 정 대 상	『○○면 ○○주민 돈사 확장 반대, 의회에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의령군수인 신청인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돼지 축사를 불법 증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99~10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영남매일 ^(99·100) , YN뉴스 ^(101·102)
조 정 대 상	『조유식의 허튼소리 - 김해시 ○○협회장들 지원금 횡령 질주』 제하의 기사 (영남매일 2016년 7월 19일자 사회면, YN뉴스 7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김해시 모 협회장 재직 시 선수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103~106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남해시대 ^(103·104) , 남해타임즈 ^(105·106)
조 정 대 상	(1) 『왜 하필 남해관광 1번지 산지를 파헤치려 합니까?』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8월 30일자 3면, 남해타임즈 8월 30일자 종합면) (2) 『영산강 유역환경청, “과도한 자연 생태계 훼손 우려”』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9월 19일자 3면, 남해타임즈 9월 19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매우 부실하며, 환경청이 사실상 건립 불가를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107~110	(각 정정·반론청구) 이○○ 외 1인 對 경남도민일보 ^(107·108)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09·110)
조 정 대 상	『함안지방공사 인사전횡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6년 9월 28일자 6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9월 28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함안지방공사가 표적 징계, 특혜 승진 등 인사 전횡을 휘두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6경남조정 111~114	(각 정정·손배청구) 안○○ 對 경남신문 ^(111·112) , 함안뉴스 ^(113·114)
조 정 대 상	- 경남신문 : 『내년 경남 보궐선거 역대 최대규모 되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2일자 2면) - 함안뉴스 : 『안○○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함안군 의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중임에도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남신문/내용 : 반론보도,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기각 (함안뉴스/사유 : 진실한 사실에 관한 보도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기울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함안군 안○○ 의원 제명처분 관련』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6년 10월 19일자 4면)

2016경남조정 115, 116	(각 정정청구) 함양신문 (주) 對 주간함양 ⁽¹¹⁵⁾ , 함양뉴스 ⁽¹¹⁶⁾
조 정 대 상	『선거법 위반 재판 어디까지 갈까』 제하의 기사 (주간함양 2016년 10월 24일자 2면, 함양뉴스 10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지난 총선때 특정 후보가 실린 신문을 평소에 비해 많이 발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한 사실에 관한 보도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임)
2016경남조정 117~120	(각 정정·손배청구) ○○○○○ 미용학원 對 MBC경남-TV ^(117·118) , 인터넷 MBC경남 ^(119·120)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막무가내식 학원 운영 ... 명드는 미래』 제하의 보도 (MBC경남-TV 2016년 10월 26일자, 인터넷 MBC경남 10월 2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고, 학원장은 잠적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121	(정정청구) 오○○ 외 1인 對 인터넷 포커스뉴스
조 정 대 상	(1) 『김해 ○○○○○ 단지 아파트 입찰 비리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2일자 사회면) (2) 『김해 ○○○○○ 단지 입찰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사회면) (3) 『김해중부서, ○○○○○ 단지 입찰 비리 의혹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낙찰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경남조정 122·123, 127~134	(각 정정·손배청구) ○○○○○협동조합 對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조 정 대 상	(1) 『산청 ○○○○ 수탁자 전체시설 재위탁 추진』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9일자 사회면) (2) 『산청 ○○○○ 위탁업체 선정 특혜 의혹 - ○○○○협동조합 부실 알고도 선정 '화 자초' 지적』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6일자 종합면) (3) 『산청 ○○○○ 수탁자 조세 포탈·횡령 의혹 - 본점·지점 회계 분리 투명성 결여-』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8일자 종합면) (4) 『산청 ○○○○ 수탁자 숙박료 횡령·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사회면) (5) 『산청군 ○○○○ 파행 운영 끝이 안보인다』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4일자 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산청군에서 수탁계약한 한방 체험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6경남조정 124, 135	(각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¹²⁴⁾ , 인터넷 창원일보 ⁽¹³⁵⁾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소방서 직원, 청사 화장실서 목매 숨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지역면) • 인터넷 창원일보 : 『○○소방서 직원, 청사내 화장실서 숨진 채로 발견』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남편이 빗 때문에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2016경남조정 125, 126	(각 정정청구) 전○○ 對 하동군민신문 ⁽¹²⁵⁾ ,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¹²⁶⁾
조 정 대 상	(1) 『국도 19호선 “○○면 ○○마을 앞” 구간에 숨겨진 진실은?』 제하의 기사 (하동군민신문 2016년 10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10월 17일자 뉴스면) (2) 『〈발행인 칼럼〉 나의 오늘이 있음에는 곧 어제의 너가 있음을 알아야』 제하의 기사 (하동군민신문 2016년 10월 27일자 칼럼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10월 26일자 발행인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무원 친인척의 영향력을 동원해 마을 앞 국도를 곡선으로 설계변경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6경남조정 136	(정정청구) 거제시 對 거제인터넷신문
조 정 대 상	(1) 『고현항 매립지 ‘5만톤 유수지’ 건설 왜 빼먹었을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6일자 개발면) (2) 『유수지 건설될 때까지 고현항 매립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10일자 논평면)
신청인 주장	거제시가 고현항을 개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유수지 건설을 누락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5만톤 유수지 계획,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37·138	(정정·손배청구) ○○의료재단 ○○병원 對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보건소 협약 병원 사람 잡는다 - 정상인 치매 진단 함안서 발생 물의 “정신적 피해” 불만』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정상인을 치매환자로 판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보건소 협약 병원 사람 잡는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7년 1월 19일자 사회면)

2016경남조정 139, 144, 145	(각 정정청구) 진주시 對 경남도민뉴스 ⁽¹³⁹⁾ , 진주KBS-1TV ^(144,145)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뉴스 : 『쌀값이 폭락했는데 이창희 시장은 농부를 뒤에 두고 웃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1월 2일자 기자수첩면) - 진주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진주시 ‘야당 위원 거부 - 예산 전액 삭감’』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22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추천 시의원 편집위원 거부 ‘논란 확산’』 제하의 보도 (2016년 12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진주시장이 쌀값 폭락에 시름하는 농민 옆에서 웃고 있다는 왜곡된 사진 보도로 피해를 입었으며, 진주시 시정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경남도민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자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취하 (진주KBS-1TV/사유 : 당사자간 화해)
2016경남조정 140~143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남해시대 ^(140·141) , 남해타임즈 ^(142·143)
조 정 대 상	(1)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학교당국이 나서라』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10월 25일자 6면, 남해타임즈 10월 27일자 종합면) (2) 『A중학교, 등교거부 왜 벌어졌나?』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6년 11월 1일자 종합면, 남해타임즈 11월 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평소 정규수업과목 대신 파행수업을 진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제주중재부

2016제주조정 1	(손배청구) 강○○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영어회화 강사 정리하고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1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영어전문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신청인이 울먹이며 발표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6제주조정 2	(반론청구) ○○○○○ (주)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특급 호텔 불법 증축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이 설치한 시설물이 불법 증축 건축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2016제주조정 3~10	(각 추후·손배청구) 이○○ 對 JIBS ^(3·4) , 제주KBS-1TV ^(5·6) , KCTV ^(7·8) , 시사제주 ^(9·10)
조 정 대 상	• JIBS : 720뉴스 프로그램 『○○○○연구원 전시실 공사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1일자) • 제주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비리 백화점’ 제주 ○○○○연구원 비자금도 조성?』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1일자) • KCTV : KCTV뉴스 프로그램 『○○○○연구원 전시실 공사 특정업체에 특혜』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1일자) • 시사제주 : 『직원들 해외 연수 가로 찬 치사한(?) ‘기관장’... 절반 이상 ‘독식’』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0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기관장 재직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추후보도 청구의 당사자 부적격)

2016제주조정 1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제주신보
조 정 대 상	『애월서 승용차, 트럭 충돌 사고 … 2명 경상』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통사고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6제주조정 12~15	(각 정정·손배청구) (농) ○○ 외 1인 對 제주일보 ^(12·13) , 인터넷 제주일보 ^(14·15)
조 정 대 상	『중산간 임야 무차별 산림 훼손』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16년 2월 25일자 4면, 인터넷 제주일보 2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허가 없이 중산간 임야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중산간 임야 무차별 산림훼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제주일보 2016년 3월 25일자 2면, 인터넷 제주일보 3월 25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16	(손배청구) 김○○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7 프로그램 『어린이집 장애 아동 학대 의혹』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의 장애 아동 학대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노출 및 검색차단 - 동의 후 이행)

2016제주조정 17·18, 21·2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제주신보 ^(17·18) , 제주신보 ^(21·22)
조 정 대 상	『이호테우 해변, 캠핑카·푸드 트럭 ‘몸살’』 제하의 기사 (제주신보 2016년 5월 25일자 3면, 인터넷 제주신보 5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캠핑카들이 불법 영업을 해 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기사에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캠핑 현장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캠핑카 산업 권장 따로, 규제 따로』 제하의 기사 (제주신보 2016년 6월 30일자 3면, 인터넷 제주신보 6월 30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19, 20	(각 정정청구) ○○○○ 병원 對 한라일보 ⁽¹⁹⁾ , 인터넷 한라일보 ⁽²⁰⁾
조 정 대 상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VI) ⑫소아외과가 없었다고?』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4월 15일자 10면, 인터넷 한라일보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내 소아외과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초 개설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소아외과의 역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7월 22일자 10면, 인터넷 한라일보 7월 22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송○○ 외 1인 對 제주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주차장 폐쇄 - 테라스 통제 ...‘도 넘은’ 건물주 갑질』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건물주인 신청인들이 세입자인 카페 주인을 내쫓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6제주조정 25~28, 31~34	(각 정정·손배청구) (학) ○○학원 對 제주KBS-1TV ^(25·26,31·32) , KBS미디어 ^(27·28,33·34)
조 정 대 상	(1)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끝나지 않은 제주○○대 논란, 누구의 책임인가?』 제하의 보도 (제주 KBS-1TV 2016년 6월 1일자, KBS미디어 6월 1일자 다시보기면) (2)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복수 학위인가?』 제하의 보도 (제주 KBS-1TV 2016년 6월 29일자, KBS미디어 6월 2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가 대학교 교비로 매입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25~28) • 각 취하 ^(31~34) (사유 : 자진취하)

2016제주조정 29·30	(정정·손배청구) (주) ○○리조트제주지사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리비 안내면 단전?』 제하의 보도 (2016년 5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장기 관리비 미납 세입자에 대해 일시 전기와 온수를 끊은 것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리권 분쟁 오피스텔 관리행위 가처분 기각』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31일자)

2016제주조정 35·36	(정정·손배청구) 김○○ 對 제주환경일보
조 정 대 상	『6개월 짜리 동장 행정의 일관성 결여』 제하의 기사 (2016년 7월 31일자 환경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 제주 모 기초단체장인 신청인이 재임 시절 직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향피제 전 ○○읍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1일자 환경뉴스면)

2016제주조정 37, 38	(각 정정청구) (주) ○○○○주택 對 한라일보 ⁽³⁷⁾ , 인터넷 한라일보 ⁽³⁸⁾
조 정 대 상	『중산간 국유지 무단점용으로 몸살』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9월 9일자 1면, 인터넷 한라일보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건설 폐기물과 토사 등을 적치하는 등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국유지 무단 점용 원상 회복해야』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6년 9월 9일자 5면, 인터넷 한라일보 9월 19일자 사회면)

2016제주조정 39~4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학)○○학원 외 1인 對 제주KBS-1TV ^(39~41) , KBS미디어 ^(42~44)
조 정 대 상	시사파일제주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복수 학위인가”』 제하의 보도 (제주KBS-1TV 2016년 6월 29일자, KBS미디어 6월 2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의 모 호텔 학교 복수 학위제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신력도 없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6광주중재 1~4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영암신문 ^(1·2) , 인터넷 영암신문 ^(3·4)
중 재 대 상	『삼호읍 D승마장, 불법 측사운영 말썽』 제하의 기사 (영암신문 2015년 6월 30일자 사회면, 인터넷 영암신문 6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승마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삼호읍 D승마장’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영암신문 2016년 1월 22일자 4면, 인터넷 영암신문 1월 29일자 뉴스면)

2016광주중재 5~9	(각 추후청구) (사) ○○○○장애인협회 ○○협회 ○○지부 對 인터넷 광주드림 ⁽⁵⁾ , 미디어전남 ⁽⁶⁾ , 전라닷컴 ⁽⁷⁾ , 데일리저널 ⁽⁸⁾ , 인터넷 동부매일 ⁽⁹⁾
중 재 대 상	- 인터넷 광주드림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 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시민&자치면) - 미디어전남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 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전남동부면) - 전라닷컴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 수급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사회면) - 데일리저널 :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 수급 … 엄정 조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자치면) - 인터넷 동부매일 : 『‘보조금 부정 수급한 ○○장애인 단체’ 고발 당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형사고발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광주드림 : 『[추후보도문] 검찰, ○○장애인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 수급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0일자 시민&자치면) - 미디어전남 : 『검찰, ○○장애인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 징수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1일자 탐뉴스면) - 전라닷컴 : 『검찰, ○○장애인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 수급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9일자 사회면) - 데일리저널 : 『[추후보도문] 검찰, ○○장애인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 수급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동부매일 : 『[추후보도문] 검찰, ○○장애인협회 ○○지부 지원금 부정 수급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7일자 사회면)

2016광주중재 10~13	(각 정정·반론청구) (주) ○○○○○ 對 우리군민신문 ^(10·11) ,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2·13)
중 재 대 상	『장성군 수의계약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0월 31일자 1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0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유명 회사인데도 장성군으로부터 많은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장성군 특정 업체 몰아주기' 관련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우리군민신문 2016년 12월 12일자 4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2월 14일자 행정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주 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397-3114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홈페이지 : www.pac.or.kr
*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 블로그 : pacblog.k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 역

부 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 구

(42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 주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B동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 전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 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 원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 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전 북

(550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 남

(5145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제 주

(63223)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6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제작 2017년 4월 30일

발행 2017년 4월 30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교육콘텐츠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알래스카인디고(주) 02) 2277-6777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 02)397-3114 FAX : 02)397-3089

WWW.pac.or.kr